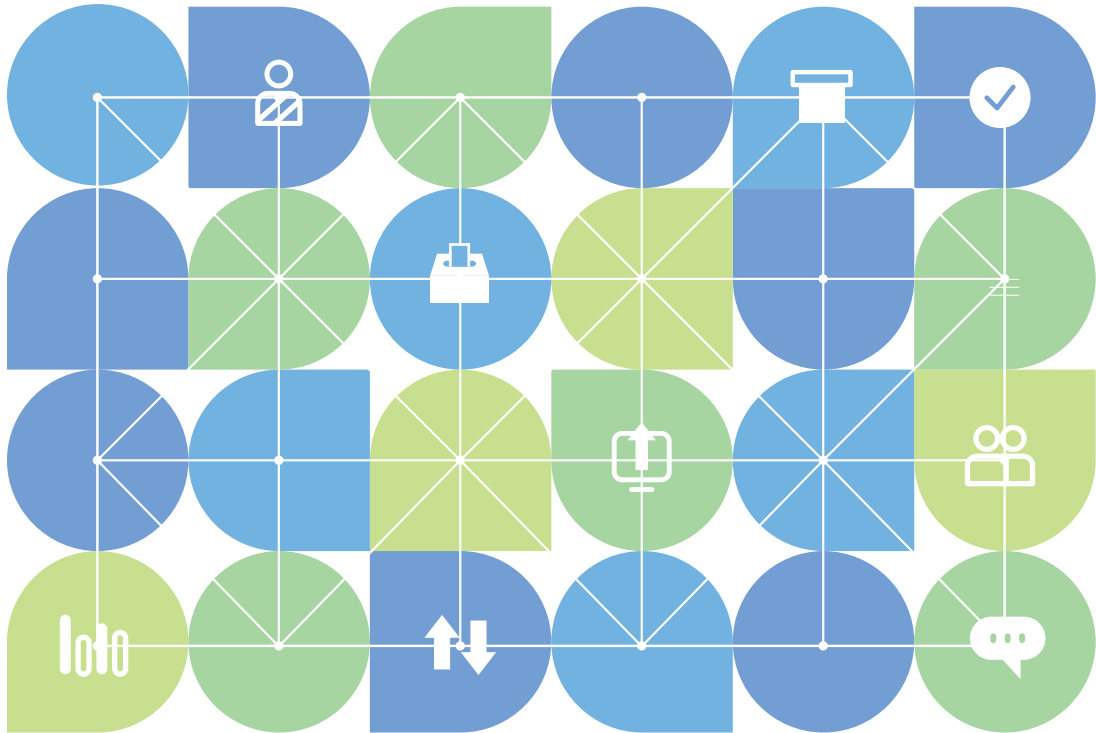


최종보고서

선거 절차사무 개선방안

구·시·군위원회 절차사무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원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제 출 문

선거연수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선거 절차사무 개선방안-구·시·군위원회 절차사무를 중심으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2년 12월 15일

한국행정연구원
원장 최상한

▣ 연구진 ▣

연구책임자 : 최순영 (한국행정연구원/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자 : 이광희 (한국행정연구원/선임연구위원)

정윤진 (한국행정연구원/초청연구위원)

조임곤 (경기대 행정학과/교수)

김대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교수)

연구참여자 : 홍성연 (한국행정연구원/연구원)

박건우 (한국행정연구원/연구보조원)

김승연 (한국행정연구원/연구보조원)

본 연구보고서는 2022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연구용역 사업으로 수행된 것으로서, 본 연구에서 제시된 의견이나 대안 등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견해가 아닙니다.

목 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3
2. 연구의 목적	4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1. 연구의 내용 및 범위	5
1) 구·시·군위원회 업무분석	5
2) 개선대상 업무 선정	5
3) 선거운동(선거벽보, 선거공보, 거리현수막)의 효과성 분석 및 개선안 제안	5
4) 제도개선안(결론)	5
2. 연구의 방법	7
제2장 선거 절차사무 기간별 분석	9
제1절 D-60~D-31[2022.4.2.~2022.5.1]	11
1. 업무일정	11
2. 실태 및 문제점	12
1) 선거 일반	12
2) (사전)투표관리	12
3) 개표관리	13
4) 선거물품	14
제2절 D-30~후보자등록전일(D-21)[2022.5.2.~2022.5.11]	16
1. 업무일정	16
2. 실태 및 문제점	17
1) 선거인명부	17
제3절 후보자등록(D-20)~선거기간 개시 전일(D-14)	19
1. 업무일정	19

2. 실태 및 문제점	20
1) 후보자등록	20
2) 선거운동	22
3) 투표관리	23
제4절 선거기간개시(D-13)~사전투표 전일(D-6)	25
1. 업무일정	25
2. 실태 및 문제점	26
1) 선거운동관리 - 선거벽보	26
2) 선거운동관리 - 선거공보	30
3) 사전투표관리	31
4) 투표관리 - 거소투표관리	33
5) 투표관리 - 투표용지 인쇄, 검수, 보관 등	35
제5절 사전투표 이후(D-5~D-0)	37
1. 업무일정	37
2. 실태 및 문제점	38
1) 선거인명부	38
2) 사전투표관리 - 우편투표 접수 업무	38
3) (사전)투표관리 - 참관인 관련 업무	41
4) 사전투표관리 - 제도운영에 대한 개선방안 논의	42
5) 투표관리	43
6) 개표관리	45
7) 선거관리경비 집행	47

제3장 업무처리에 투입되는 조직 및 인력 분석 49

제1절 구시군위원회 인력 분석	51
1. 위원회 정원에 대한 검토	51
2. 사무보조원 수 월별 추이	57
3. 사전투표관리관 위촉 검토	59
4. 사전투표 장비운영요원 위촉 검토	62
5. 투표관리관 위촉 검토	65
6. 근무 시간 분포	73

제2절 대리지표에 의한 구사군 선거위원회 업무량 분석	78
1. 후보자수와 선거운동 등	78
1) 후보자 수	78
2) 각종 신고 신청건수	81
3) 선거벽보 첨부 장소수	95
4) 선거공보 총수	98
5) 접지형·거소투표자용, 군인 등 발송 신청자용 선거공보수	102
6) 기관·시설 안의 기표소 총 수	105
2. 사전투표 및 개표 관련	108
1) 사전투표 및 개표 관련 일자별 우편투표 회송용봉투 접수 건수	109
2) 사전투표 및 개표 관련 우편투표 회송용봉투 접수기	111
3. 투표지분류기 운영 총수	112

제4장 공직선거 절차사무 개선을 위한 방안 **113**

제1절 인력 및 예산 확보와 효율적 운영	115
1. 선거 절차사무 관리인력 및 예산 확보와 효율적 운영	115
2. 교대근무 제도 도입 등	118
3. 보고의 효율화	121
제2절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과의 협업 제도	122
제3절 전문가 활용	125
1. 기존 전문직군 활용	125
2. 회계사, 세무사 등 외부 전문가 활용	126
제4절 후보자등록 관련 개선방안	127
1. 국세청 연말정산 시스템과 같은 후보자등록 시스템 구축 필요	127
2. 후보자등록서류 예비 검토 업무개선 방안	130
3. 정당에서 후보자등록과 관련하여 1차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	131
4. 예비후보자공약집 검토 관련 개선방안	131
5. 후보자등록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	134
제5절 교육 관련 개선방안	135
1. 선거 절차사무분야 교육프로그램 다양화	135

2. 매뉴얼 교육 및 자동 검색 시스템	135
3. 체계적인 온라인 교육 시스템 마련	136
제6절 선거인명부 업무 효율화	137
제7절 선거벽보 및 선거공보 관련 업무개선 방안	138
1. 선거벽보 및 선거공보 표준화 및 선거벽보 수량 감축	138
2. 선거벽보 첩부·철거 업무 외주화 등	140
3. 선거벽보 첩부수량 결정기준을 인구수에서 공공기관 수로 변경 검토	140
4. 선거공보 발송 장소 확보를 위한 중앙 차원의 협조체계 구축	141
5. 선거공보의 위법사항 등에 대한 검토	142
제8절 투·개표 관련 업무개선 방안	143
1. 사전투표 및 선거일 투표 관련 업무 효율화	143
2. (사전)투·개표 참관인 관련 업무개선 방안	144
3. 투표 방식 일원화 방안	145
4. 투·개표 관리 업무개선 방안	146
5. 투표지분류기 교육, 모의시험 등은 D-60 이전에 평소에 진행	148
제9절 선거 물품·장비 관련 업무개선 방안	149
제10절 선거관리경비 집행업무 개선	151
제11절 업무자동화 및 인공지능 적용 직무	152

제5장 선거관리관련 법제개선방안 **155**

제1절 개관	157
제2절 지방자치단체 인력 협조	159
제3절 선거벽보첩부 및 선거공보발송	165
제4절 예비후보자등록 및 예비후보자공약집 검토	173
제5절 후보자등록신청 서류 검토	180
제6절 사전투표	186
제7절 선거방송토론	189

제8절 개표	191
제9절 기관·시설 안의 기표소 운영	193
제10절 투표참관인	194

부록 199

부록 1) 선거벽보·선거공보·거리현수막 효과성 분석	201
부록 2) 유권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집단 간 평균 차이 분석과 교차분석 결과	234
부록 3) 선거벽보 첩부 관련 17개 시도 법정수량과 첩부장소수 등 분석	263
부록 4) 출퇴근시간 및 휴일근무자 비율	328
부록 5) 개선대상 업무 선정을 위한 인터뷰	341
부록 6) 전문가 자문의견	377

...

제1장

서론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각종 제도의 도입으로 선거 절차가 추가되어 왔으나, 기존 절차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과부하 발생
- 복잡한 선거 절차사무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실수 발생, 단순 실수도 부정선거 의혹 제기 빌미 제공
- 선거절차에 대하여 업무과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거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지 않을 수 있도록 선거절차 사무의 투명성, 객관성 등을 강화할 필요
- 현재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구·시·군위원회’라 함) 선거 절차사무 처리 현황을 살펴보고, 핵심적 과정을 중심으로 효율적 업무처리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

2. 연구의 목적

- 구·시·군위원회 선거 절차사무의 개선으로 유권자의 선거 참여는 보장하면서 선거 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 연구
- 선거 절차사무 업무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를 통한 선거관리 환경변화에 대응
- 자동화, 정보화 등을 통한 업무부담 감소와 업무의 정확성과 신속성 개선 방안 모색
- 효율적 업무처리를 위한 제도 개선으로 업무과부하 해소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내용 및 범위

1) 구·시·군위원회 업무분석

- 선거 절차사무 절차별, 일정별 업무처리 절차 상세 분석
- 업무처리에 투입되는 조직, 인력, 예산 등 분석

2) 개선대상 업무 선정

- 업무조정, 간소화, 외부화, 정보화 등 개선 가능한 업무분석
- 개선 가능성 검토를 위한 법률검토, 예산추계 등 실시
- 업무 담당자 대상 설문조사, 심층인터뷰 등 진행

3) 선거운동(선거벽보, 선거공보, 거리현수막)의 효과성 분석 및 개선안 제안

- 선거별, 지역별, 세대별 효과성 측정을 위한 설문조사 및 분석
- 선거벽보 첨부 가능 장소 등 현황파악을 통한 현행 법정수량의 적정성 분석
- 선거운동 환경변화에 따른 선거벽보·선거공보 수량조정 및 선거벽보 첨부 장소 등 개선안 제시
 - ※ 효과성 분석 데이터 및 공공시설물 현황 등 객관적 자료 활용

4) 제도개선안(결론)

- 업무개선사항, 제도개선사항(법률개정 등)을 구분하여 추천방법 제시
 - ※ 각 개선안 관련 국내·외 유사 행정사례 조사 및 분석

- 업무개선안의 경우 효과적 인력운영 방향, 적정장비 수량, 필요 시설 및 예산 등 구체적 개선안 제시
- 제도개선안의 경우 관련법, 관련 기관 현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법률 개정 방안 등 제시

2. 연구의 방법

○ 국내·외 문헌 및 자료 조사

- 국내·외 사례 등 보고서, 논문, 외국 문헌 등에 대한 조사분석

○ 선거 관련 법령 분석

- 공직선거법, 공직선거관리규칙 등 관련 법령 분석

○ 업무담당자 대상 설문조사(조사표 조사) 및 심층인터뷰

- 업무처리에 투입되는 조직, 인력 분석을 위하여 249개 구시군위원회에 대한 조사표(온라인 홈페이지 이용) 조사분석: 도시지역(대도시, 중소도시), 도농복합지역 도시지역, 농촌지역(읍/면지역)으로 구분하여 업무량 분석 등
- 업무개선사항 등에 대하여 업무 담당자 대상 설문조사, 인터뷰 등 진행
- 업무조정, 간소화, 외부화, 정보화 등 개선가능한 업무 도출을 위하여 발주처 및 전국 구시군위원회 등 조사표 및 심층인터뷰 조사
- 선거절차 개선을 위한 업무담당자 조사 및 심층인터뷰

<심층인터뷰 질문 예시>

- (선거 관련)담당 업무 중 개선이 가장 시급한 업무와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자동화, 정보화 등을 통해 업무부담을 줄이고, 업무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업무가 있습니까?
-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있습니까? (제도적 요인, 언론, 정치적 요인, 다른 정부조직 등)

○ 국민 대상 설문조사: 일반국민 1,000명

- 선거벽보 등의 선거별·지역별·세대별 효과성과 관리업무의 적정성 분석을 위하여 일반국민 대상 설문조사
- 선거별 효과성 측정을 위하여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광역단체장/광역의원/기초단체장/기초의원)의 선거별 효과성 측정을 위한 설문문항 설계
- 지역별 효과성 측정과 관리업무의 적정성 분석을 위하여 도시지역 500명, 도농복합지역 도시지역 300명, 농촌지역(읍/면 지역) 200명으로 구분하여 샘플링
- 세대별 효과성 측정을 위하여 60세 이상, 40세 이상 60세 미만, 20세 이상 40세 미만의 3개 집단으로 구분하여 세대 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비비례층화표출(disproportional

stratified sampling)로 각 집단별 최소 200표본 확보

- 전국을 5개 권역(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으로 구분하여 집락 및 다단계 표출(가장 작은 인구권도 표본수 최소 100명 확보)

○ 전문가 자문 및 브레인스토밍 회의

- 정치학 및 법학, 행정학 전문가 등 전문가 자문
- 선거절차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진 및 전문가 브레인스토밍 회의

...

제2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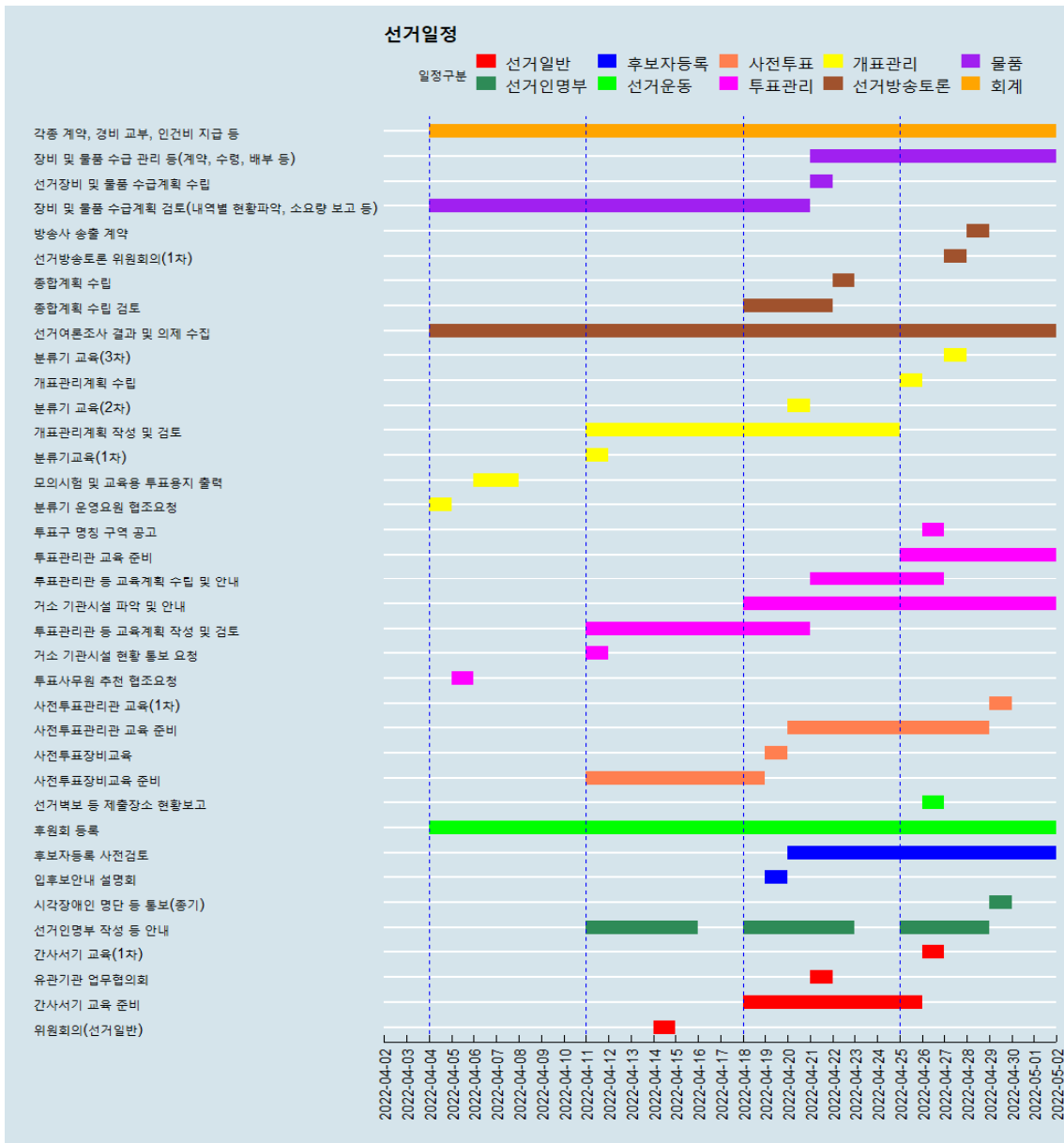
선거 절차사무 기간별 분석

제2장 선거 절차사무 기간별 분석

제1절 D-60~D-31 [2022.4.2.~2022.5.1]

1. 업무일정¹⁾

〈그림 2-1〉 D-60~D-31[2022.4.2.~2022.5.1.]의 업무일정



1) 업무 일정은 '법정사무일정 및 각 위원회 업무처리현황 등을 고려하여 예시로 작성한 것임'.

2. 실태 및 문제점

1) 선거 일반

- 계획 수립 과정에서 큰 어려움이 없음
- 유관기관 협의에서 일부 어려움이 있음
 - 우체국, 경찰서 등과의 업무 협의는 괜찮음
 - 지방자치단체의 인력, 시설 등 협의에 어려움이 많음
 - 문서로 안내했음에도 전화로 협의해야 하는 상황이 지속되어 업무 부담
 - 지방자치단체 노조의 반발로 선거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
 - 평소 지방자치단체 및 노조와 유대관계를 맺어 놓는 것이 필요함
- 위원회 조직인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읍·면·동위원회’라 함)의 형식적 운영
 - 읍·면·동주민센터 소속 공무원의 간사서기 겸직에 따른 업무 무관심으로 비협조
 - 위원 활동 지원 미비로 선거관리업무 실질적 수행 불가능
- 선거사무보조원 인력 확보와 교육의 어려움
 - 기존 인력풀을 활용하기 어려워 대학생, 휴학생, 취업준비생 등을 활용
 - 52시간 제한이 있어서 선거사무보조원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함
 - 일반인들을 구하기는 쉽지만 전문적인 분야에 투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 선거사무보조원은 해당 업무를 안 해봤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관련 교육이 필요하나, 퇴직금 등의 문제로 상시적 고용이 어려워 교육에 차질을 빚고 있음
 - 선거사무보조원 교육기간을 근무기간에 포함하도록 해야 하며, 투표일 2개월 이전에 미리 뽑을 필요가 있음

2) (사전)투표관리

- (사전)투표소 확보가 어려움

- 예산 문제라기보다 시설 자체가 없는 지역이 많음
- 장애인용 시설이 구비되지 못한 경우도 많아 이런 시설을 활용할 경우 민원이 많이 발생함
- 학교의 경우 협조가 쉽지 않음, 사전투표의 경우 금요일이 포함되므로 사전투표소로 학교를 사용하기 어려움, 모의시험 경우에도 화, 목 등 평일에 하기 때문에 학교를 사용하기 어려움
- 도서관, 시민회관 등 관내 공공시설도 고려하였지만 섭외도 쉽지 않고 계단 등이 있어서 로비만 활용 가능하여 어려움이 있음
- 투표일이 되면 사람들이 몰려 건물이 지저분해지기도 하고, 시설주에게 재산 피해가 가기도 하며, 안전 점검이나 소방 점검이 필수적이어서, 민간 시설의 경우 섭외하기 어려움
- 법령에 따라 빌려주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이런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기 어렵고, 향후 협조를 받는데 더 큰 장애를 줄 수 있음

○ 수어통역사 여부 입력 방식의 어려움

- 선거관리시스템에 사전투표소의 현황을 입력할 때 수어통역사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 시기에는 수어통역사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추후에 정보 수정이 이루어지게 되며, 중앙선관위에 수정 요청을 해야 하는 업무 절차가 복잡함

3) 개표관리

○ 개표장소 협조의 어려움

- 개표장소는 보통 관내의 대학교 체육관을 빌림. 그러나 학교가 옛날처럼 협조적이지 않음. 투표일 전부터 체육관을 빌려야 되는데 학사일정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임. 그리고 투표소 지정이 되면 소방서나 경찰서 같은 유관기관들도 학교에 별도로 요구하거나 점검하기 때문에 학교 측에선 선뜻 안 내주려는 경향이 있음.

○ 투표지분류기 교육의 경우 교육대상자는 많으나 교육 담당 인력이 부족함

- 교육매뉴얼의 경우 대선, 지선용을 별도로 만들어 활용하는 사례 있음
- 교육을 주로 선거계장들이 담당하는데, 선거계장의 역량에 따라 교육의 질이 차이가 나며, 따라서 믿고 볼 수 있는 교육 자료가 필요함
- 광역행정동으로 운영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 개표관리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사람은

책임자밖에 없는 수준임

- 투표관리관, 직무대행, 장비담당자를 분리해서 교육한 것이 효과적
 - 투표관리관들의 경우 예상 문제와 사례, 투표참관인 참관사항 등을 주로 교육, 직무대행의 경우 실습 교재를 별도로 만들어 배포, 장비담당의 경우 실습교육을 많이 함
- 투표지분류기 모의시험을 위해 일반인 인력 활용하는 과정에서 시간을 맞추기 어려움

4) 선거물품²⁾

- 선거물품 종류가 너무 많고 업체마다 배송하는 물품이 다름
 - 선거물품 배분 작업에 시간이 많이 소요됨
 - 다른 업무로 복잡하고 바쁜 시기에 추가된 물품 검수 및 배분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
- 선거물품 배송업체의 배송서비스 문제
 - 주민자치센터의 경우 점심 휴무제를 시행하고 있어서 점심때 배송 물품을 받지 않고 있는데, 점심때 물품 배송이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서 읍·면·동 직원들이 식사를 중단하고 급하게 오는 상황이 많으며, 이에 대해 주민자치센터 직원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함
 - 배송업체의 배달원이 물품을 주민자치센터 앞에 그냥 두고 가는 경우도 있는데, 주민자치센터 근무 인원이 많지 않아 소수의 직원들이 무거운 물품이 들고 옮겨야 함
 - 일부 지역의 경우 물품 수량이 워낙 많아서 검수 및 배분에 시간이 많이 소요됨
- 선거물품이 추가될 경우 물품 관리에 어려움 발생
 - 추가될 경우 공통으로 들어가는 물품 세트를 열고 닫아야 하는 작업이 반복되어 물품 세트 박스가 망가지는 경우 발생
 - 선거가 임박한 막바지에 너무 많은 물품이 내려오니 읍·면·동위원회에서 통제하기 어려웠으며, 심지어 투표가 이미 끝난 뒤에 내려와서 못 주는 경우도 발생함
- 선거물품 배부의 어려움
 - 물품이 오면 기본적으로 검수를 해야 하는데, 물량이 많은 지역의 경우 시간이 오

2) 물품 관련 업무의 경우 이후 시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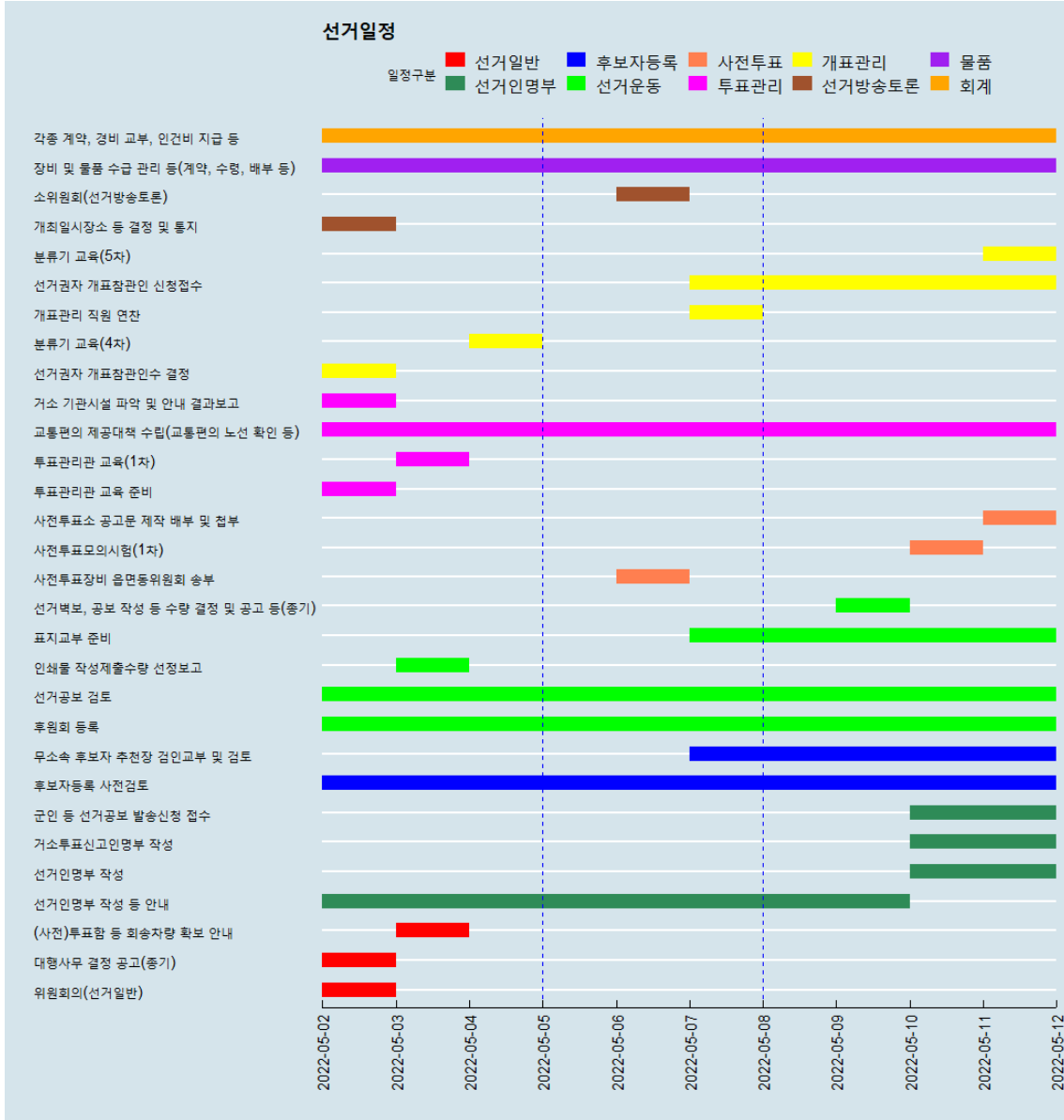
래 걸리기도 함.

- 광역행정동으로 이루어진 지역의 경우 읍·면·동위원회가 많게는 5개의 사전투표소를 관리하기 때문에 구·시·군위원회가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구·시·군위원회가 물품 배부 업무 전체를 담당함
- 사전투표 관련 물품의 경우 예측하기 어려운 점이 부정선거 시비 등의 민원을 발생시키고 있음
 - 사전투표율을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예측이 잘못될 경우 부족한 물품을 충당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 사전투표 기간에 유투버가 지키고 있기 때문에 차에 뭔가를 싣는 행위 자체를 문제 삼기도 함, 따라서 예측치를 최대한으로 해서 물품을 많이 확보하게 되는데 물품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이 또한 부정선거 논란이 될 수 있음
- 사전투표 장비, 투표지분류기 등을 보관할 장소 물색 어려움
 - 단기 임대할 수 있는 장소를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임대료 부담이 있음
 - 장소를 찾았다고 하더라도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과도 거리가 있어, 물건이 도착했을 때 등을 대비하여 인력이 필요함. 그러나 일용 인부 단가가 낮아 지원자가 없음
- 소모품 수불대장 작성으로 인한 불편함
 - 수불대장 작성은 부정선거 논란을 없애기 위해 선거 물품을 얼마나 썼는지 명확히 하는 것이지만, 물품이 올 때 새 물품만 오는 것도 아니고 일부 사용한 물품도 있으며, 재고량이 많은 경우 다음 선거 시 필요한 소모품을 구입하기 어려움

제2절 D-30~후보자등록전일(D-21) [2022.5.2.~2022.5.11]

1. 업무일정

〈그림 2-2〉 D-30~후보자등록 전일(D-21)[2022.5.2.~2022.5.11.]의 업무일정



2. 실태 및 문제점

1) 선거인명부

○ 최종 선거인수 확정과정의 어려움

- 최종 선거인수는 읍면동사무소에서 구사군청을 거쳐 시도청에 보고하고, 그다음 행정안전부에서 취합된 자료를 중앙위원회로 보내고, 구사군위원회는 자료를 다시 시도위원회에 보내 중앙위원회가 이를 취합하고 있음, 자료를 취합하는 기관도 많고, 집계하는 기관도 다르니 선거인 관련 수치가 상이하게 나올 수밖에 없음
- 두 기관에 취합한 수치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면, 읍·면·동사무소에서 원인을 찾아야 하는데, 찾는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해당 마감 날짜에 맞출 때까지 구·시·군위원회의 모든 직원이 밤새 대기해야 함

○ 선거인명부 파일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음

- 시기마다 받아야 하는 선거인명부 파일들이 직관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고, 세세한 부분이 누락된 경우가 있어 업무를 처음 맡은 담당자는 어려워함
- 선거인명부가 확정된 후 시·도에 있는 자료와 대조하라고 하는데 관련 자료가 도착할 때까지 시간이 지체되어 힘들고, 구체적으로 뭘 대조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음
- 지방자치단체에서 사망을 확정 지으면 자동으로 선거인명부 시스템에 반영되어야 하는데, 현재는 연동되지 않고 있음

○ 선거인명부 관리 권한이 이원화되어 있어 선거관리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 간 책임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 선거인명부 작성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에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작성한 것을 전산으로 받도록 되어 있으며, 숫자가 맞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 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등록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으므로 선거인명부 업무가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선거인명부 업무가 선거관련 업무이므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 명부작성과 확정 시기 사이에 사망자가 발생하여, 선거인명부에 변동이 생길 수 있으나,

-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사실들을 잘 알려주지 않고 있음
- 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등록 전산 정보를 모름에도 선거인명부 관련 업무가 선거법에 명시된 것을 이유로 선거인명부 관련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 상황임
 - 선거인명부 교육이 예전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업무 편람에 명시돼있었지만, 현재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해야 할 근거가 없음
- 선거인명부 작성 감독 상황 입력 및 보고의 실효성 없음
- 전산 감독의 특성상 인력이 많이 투입되어 감독하는 경우 없음
 - 감독의 기준도 모호함, 읍·면·동위원회 보고가 타당성 있으면 넘어감

제3절 후보자등록(D-20)~선거기간 개시 전일(D-14)

1. 업무일정³⁾

〈그림 2-3〉 후보자등록(D-20)~선거기간 개시 전일(D-14)[2022.5.12.~2022.5.18.]의 업무일정



3) (2022.5.12.~2022.5.18.)

2. 실태 및 문제점

1) 후보자등록

- 후보자등록과 관련한 예비 검토 업무가 비효율적으로 진행됨
 - 후보자등록신청 서류가 워낙 복잡하고 다양해서 후보자 1인 당 평균적으로 3-4번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음
 - 후보자등록 시, 전과기록 및 학력에 관한 사항을 스캔한 후 개인 정보 유출을 막아주는 프로그램을 돌리며, 프로그램을 돌린 후 개인 정보가 유출되지 않았다는 마킹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됨
 - 후보자등록신청 서류를 검토할 때마다 검토 기록을 대장에 작성하게 되어 있어, 서류 검토와 동시에 대장 작성 업무를 수행해야 함
 - 정당마다 일정이 다르다 보니 당내 경선이 늦게 끝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후보자등록 기간이 2-3일 밖에 남지 않게 되고, 그 짧은 기간에 몇 십 명의 후보자등록 업무가 집중되는 상황이 발생함
- 후보자등록신청 프로그램의 비효율성
 - 후보자들이 스스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지만 후보자들이 다루기엔 쉽지 않고, 중앙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음
 - * “어떤 후보자가 중앙위원회에 전화했더니, 본인들도 모르겠으니 구·시·군위원회에 물어보라고 답변한 경우도 있었고, 구·시·군위원회 직원이 후보자등록 프로그램에 문제가 생겨 게시판에 질문을 올렸더니 중앙위원회는 지금 해결하지 못하니 다른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처리하라는 답변도 있었음”
 - 현행 재산신고 양식이 너무 난해하며, 고령의 후보자들은 시스템에 접근하기 어렵고 컴퓨터 문서 작업도 힘들므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예비검토를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나, 효율적인 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함
 - 후보자 등록의 경우 연동 시스템이 없어 후보자 재산 신고 등에 오류가 발생하면 책임성 문제가 생기고, 후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잘못 작성할 경우 누구의 책임인지 불분명함
 - 따라서 연말정산시스템과 같은 후보자등록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제기됨, 즉 후보자의 재산, 세금 등이 연동될 경우 수기로 작성할 필요가 없으

며 실수도 줄어들 것임

- 이러한 연동시스템 개발을 위해서는 유관기관 협조, 활용 가능한 시스템 현황 파악, 법적 근거 마련 등이 이루어져야 함

○ 후보자에 대한 교육의 실효성이 약함

- 후보자들에 대하여 설명회를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만, 후보자 본인은 선거운동으로 바빠서 참석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사무원들이 참석하지만 제대로 듣지 않는 경우가 많음

○ 후보자 관련 정보에 대한 유관기관 간 협업의 어려움

- 피선거권 및 범죄 경력에 관한 협조 의뢰를 관할 기관에 요청하며, 세무서에는 세금 납부 및 체납 증명 발급에 관한 협조를 요청함
- 선거법에는 관련 자료들을 발급하게 되어 있는데, 해당 기관에서 해 줄 의무를 명시한 법이 없어서, 유관기관이 적극적이지 않으면 협조받기가 어려움
- 이러한 협조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유관기관에 별도의 안내 없이 협조가 잘 진행되기를 바라는 요구가 높음

○ 후보자 등록과 관련한 예비 검토 업무에 대한 책임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 예비 검토를 하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수습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함, 예비 검토는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차후에 편하기 위해서 하는 업무로 생각함
- 가장 어려운 점은 재산 신고 부분이며, 예비검토의 70% 이상을 차지함, 세금, 병력, 학력, 전과 등은 증명서를 발급받고 옮겨 적으면 되지만 재산신고는 후보자 본인이 스스로 적어 오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 심사가 어려움, 재산을 타인과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 주식을 가지고 있으나 총량을 모르는 경우, 은행별 예·적금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 등 복잡한 경우가 많음
- 재산신고의 경우, 국회의원선거나 대통령선거에서는 보좌관들이 도와주는 경우가 많지만 지방선거에서는 후보자 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 후보자들이 어려워하고 신고 내용이 부정확함
- 후보자가 공직자인 경우 공직자 재산신고에 등록한 것과 전년도 말 기준으로 후보자 등록에 신고한 것과 다를 때가 문제가 발생함. 후보자 측은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제출하는데, 구사군위원회는 그 사람의 재산이 얼마인지 확인할 권한이나 수단이 없음, 하지만 기존의 재산신고와 후보자 등록 시의 재산 내역이 상이하면 중앙위원회는 구사군위원회가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문책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구시·군위원회에서 예비 검토를 하지만 작성된 내용의 법적 책임은 전적으로 후보자에게 있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고 실제로 후보자들에게 그렇게 안내함, 그러나 후보자 등록일이 다가올수록 업무량이 많아지면서 검토 과정에서 담당자의 실수나 착오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해 후보자는 구시·군위원회의 책임을 제기하고 있음

○ 후보자 공약집 검토업무 논란

- 후보자 공약집에 대한 검토업무도 수행하고 있는데, 이 업무 역시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음
- 후보자측이 공약집 관련 위반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 먼저 검토 요청을 하는데,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검토를 수행한 구시·군위원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이 나타남
- 책임 사유는 검토자가 아닌 후보자 측 본인에게 있어야 하므로 법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됨
- 형식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해당 요건에 맞추어 달라고 후보자측에 요청할 수 있으나, 내용 측면에서 법적으로 위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나서서 판단하기 어려움

2) 선거운동

○ 표지 교부 신청

- 후보자 선거사무 관계자는 선거사무원 표지를 목에 두르고 선거운동을 해야 하며, 선거사무원 표지는 구시·군위원회가 발급해주고, 해당 인원을 등재함
- 인영 신고하는 날에 표지 교부를 같이 신청하면 인영 신고 담당자와 표지 교부 담당자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하나 매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관련 날짜를 따로 떨어뜨려 놓으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제시됨

○ 후원회 등록

- 기초단체장의 경우에는 후원금을 거의 제한까지 다 채워서 실제로 선거 운동할 때 정치자금으로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으나, 구시·군의원의 경우 기부액 자체도 현저히 낮고, 주로 주변인들한테 자잘하게 받는 정도이며 정치자금이라고는 볼 수 없음
- 후원회의 취지는 자금이 없는 후보자들을 위한 것이지만, 실제로 정치 자금이 부족한 후보

들에게 후원금 제도가 도움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이 많음

- 실제로 100만 원 받아서 선거사무 관계자들한테 인건비 지급하고 사무소 임차비도 내고 나면 후보자 본인이 순수 정치 자금으로 운용할 수 있는 돈이 얼마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후원회라는 제도가 실용성 있다고 보긴 어려움

○ 선거벽보 및 선거공보 접수

- 선거벽보는 후보자들이 읍·면·동위원회에 제출하는데, 업무 종료 시간인 오후 6시까지 제출해야 함. 하지만 제출 마지막 날에는 오후 18시 이후 제출하면 과태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 오후 6시까지 제출하지 않는 후보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과태료를 납부하고라도 제출할 경우를 대비하여 그날 밤까지 기다려야 하며, 읍·면·동위원회 직원들이 이에 관해 민원을 제기하고 있음.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마감 시간을 앞당겨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됨
- 선거공보도 늦게라도 내고자 하는 후보자가 있으면 밤 24시까지 기다려야 함. 선거공보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선거공보에 있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 마저 내지 않을 시 후보자 등록이 무효가 되므로 이 자료를 받기 위한 대기시간이 길어짐
- 후보자정보공개자료 규격에 평균이 없고 일정 크기 이하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너무 작게 인쇄할 경우 발송 작업에 지장을 초래함

○ 선거벽보 및 선거공보 검토와 관련된 업무 부담이 큼

- 선거공보 예비 검토는 의무적이지 않지만 만약의 경우를 고려해 안내 차원에서 해주는 것이며, 내용 검토보다 위법한 사항을 문익하는 경우가 있어서 검토하지 않을 수 없음
- 형식적인 검토 수준은 가능하나 그 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는 없음
- 선거공보의 경우, 수량이 많아 검토에 장시간 소요될 뿐만 아니라 허위사실이라고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 난처함
- 선거벽보와 선거공보의 크기를 표준화하고, 수량을 축소하는 의견이 많이 제기되고 있음

3) 투표관리

○ 투표용지 인쇄 및 확인 업무의 어려움

- 거소 투표용지를 인쇄하는데 업무가 많은 편임, 거소 투표용지를 발송하려면 큰 봉투 안에 후보자별 선거공보가 들어가고, 내부 작은 봉투 안에는 투표용지가 들어가는데, 해당

투표용지를 사무실에서 미리 출력해 놓음

- 투표용지 인쇄 감독을 위해 직원이 직접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쇄소에 가서 투표용지 인쇄 과정을 일일이 확인해야 함. 디지털 인쇄가 가능한 큰 규모의 인쇄소의 경우 인쇄소에서 직접 확인하지만, 디지털 인쇄가 가능하지 않은 작은 인쇄소의 경우 투표용지를 하나하나씩 다 확인해야 함

○ 투표지분류기 검수

- 투표지분류기 검수는 편람에 없는 업무이지만, 중앙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수행하고 있음

제4절 선거기간개시(D-13)~사전투표 전일(D-6)

1. 업무일정⁴⁾

〈그림 2-4〉 선거기간개시(D-13)~사전투표 전일(D-06)[2022.5.19.~2022.5.26.]의 업무일정



4) (2022.5.19.~2022.5.26.)

2. 실태 및 문제점

1) 선거운동관리 - 선거벽보

○ 선거벽보 첩부 업무 실태

- 선거벽보의 경우 모든 후보자의 벽보를 한 장소에 부착하며, 총 첩부장소 수는 해당 구·시·군위원회에서 작업하는 총 장소의 수이며, 총 첩부수량은 첩부한 벽보의 총량이며, 이를 통해 장소당 평균 첩부수량을 산정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경기도 ○○○의 경우 장소당 평균 첩부수량은 16.24매임(반올림하여 16매 산정)이며, 여기에 투표안내문 1장, 선거 간 구분을 위한 간지 4장을 더해 약 21매의 벽보판을 만들어 첩부한다고 볼 수 있음
- 선거벽보의 규격은 장당 길이(높이) 53cm, 너비 38cm, 무게는 1m²당 100g으로 선거벽보 한 장당 20g정도이며, 벽보판은 대략 한 칸에 길이(높이) 60cm, 너비 51cm로 한 칸의 무게는 60g임. 벽보판의 처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지대를 사용하는데 양 끝에 70g, 두 칸마다 25g의 지지대를 사용
- 이를 통해 추정하면 ○○○의 경우 한곳에 붙이는 벽보판은 높이 60cm, 길이 약 10m 정도이며, 총 무게는 약 2kg임. 선거벽보의 크기와 무게를 통해 선거벽보 첩부의 어려움을 추측할 수 있음
 - 길이 : $21 * 51 = 1071$ (센티미터)
 - 무게 : (칸당 60+20) * 21 + (양끝 지지대 70) * 2 + (보강지지대 25) * (총칸 수/2, 내림) = 2070(그램)
- 이와 같은 벽보판을 총 410곳의 장소에 제출마감일 후 2일 이내에 모두 첩부하여야 하는데, 단시간에 크고 무거운 것을 다량 첩부하는 업무의 어려움도 있지만, 벽보판이 워낙 무겁고 큰 까닭에 첩부 이후 바람 등에 의해 첩부 상태가 느슨해져 안전상의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순회하며 첩부 상황을 확인하고 보완해야 함

○ 선거벽보 관련 사무는 많으나 담당 인력이 부족함

- 선거벽보 업무는 많은데 인력은 부족하여, 선거 절차사무를 수행하지 않은 공정선거지원단 등에서 선거벽보 업무 인력을 차출하는 사례들이 있으며, 자체 인력이 부족한 구·시·군 위원회는 읍·면·동위원회로부터 지원받아야 하나, 주민자치센터 직원을 다르게 부르는 것

에 불과한 읍·면·동위원회로부터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기 어려움

- 선거벽보 첩부는 주로 이전에 첩부했던 내역이 있던 곳으로 하지만, 승낙서를 다시 받아야 하며, 대선과는 다르게 지방선거 때는 첩부 장소도 많아져서, 읍면동위원회의 간사 서기들이 선거벽보 첩부장소 승낙서 업무를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나타남
- 선거벽보와 관련된 현장점검은 읍면동위원회의 업무이지만 읍면동위원회 직원이 거부하고 있어서 거의 사무보조원이 수행하거나 외주를 주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 외주를 주는 경우에도 읍·면·동위원회가 선거벽보 첩부 장소를 선정하지만, 장소 확인 등 용역업체와의 업무협조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음
- 읍·면·동위원회에서 첩부하는 것보다 용역업체가 첩부하는 것이 업무 효율성을 높이지만, 선거벽보 첩부 마감 시한이 너무 빠듯하여 구·시·군위원회의 업무 피로도 증가

○ 선거벽보 첩부 관련 업무의 외주화 방안에 대한 논란

- 용역업체 선정 및 선정된 용역업체와의 업무 협의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만, 한번 해보면 노하우가 축적되므로, 외주를 주는 것이 직접 수행하는 것보다 업무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 선거벽보첩부 업무 외주를 구·시·군위원회가 직접 하는 경우보다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위탁하는 경우 업무 효율성이 더 높아진다는 의견도 제시됨
- 선거벽보 전체를 외주를 주는 방안은 처음에 시행착오를 많이 겪을 수 있음, 전문적으로 외주를 맡을 수 있는 업체를 찾기 힘든 지역도 많음
- 선거벽보 첩부 업무를 위탁할 경우, 예산 처리 문제가 발생하였음, 구·시·군위원회 예산으로 편성된 용역비가 없어서 중앙위원회가 수용비를 내려주었음

○ 샘플위원회(구로구와 제천시)의 공공기관 수와 첩부장소 비교

- 서울 구로구 공공기관 수는 191개이며, 구로구 (법정) 첩부장소수는 209개임
- 충북 제천시 공공기관 수는 259개이며, 제천시 (법정) 첩부장소수는 146개임
 - 제천시 공공기관 현황 중에서 기타(정치인 사무실 또는 후보자 선거사무소) 제외해야 하고, 노인복지시설에 경로당과 노인정은 포함
 - 시골 지역 경로당과 마을회관은 같은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가 대다수임

5) 출처는 서울 구로구 지역 공공기관 공공·사회기관 업종 전화번호부임. <http://tel.nett.kr>(검색일: 2022.10.14.). 해당 사이트에서 구로구의 모든 시설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음. 그러나 데이터 형식의 자료는 아님.

〈표 2-1〉 서울 구로구 공공기관 수와 첩부장소수

구 분	구로구 공공기관 수	구로구 (법정) 첩부장소수
행정기관	8	
주민센터	15	
치안시설	17	
소방시설	3	
공단 및 공사	8	
공공복지시설	14	
우정시설	18	
연구원	2	
영사관	1	
교육기관	56	
노인복지시설	49	
시설복지시설	107	
유치원	17	
총 계	315	
진한색 총계	191	209

출처: <http://tel.nett.kr/서울> 구로구 지역 공공기관 공공,사회기관 업종 전화번호

〈표 2-2〉 충북 제천시 공공기관 수와 첩부장소 수

구 분	충북 제천시 공공기관 수	제천시 (법정) 첩부장소수
행정기관	10	
주민센터	17	
치안시설	14	
소방시설	2	
공단 및 공사	9	
공공복지시설	22	
우정시설	17	
연구원	1	
교육기관	48	
노인복지시설	119	
-	0	
-	0	
기타 시설미집계	0	
총 계	259	
진한 색 총계	259	146

○ 전국 유권자를 대상(1,159명)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 ‘귀하는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위한 선거벽보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에 대하여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94.9%(1,100명)임

〈표 2-3〉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위한 선거벽보를 보신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지역별 응답

		선거벽보인지				전체	
		있다		없다		빈도	거주지 중 %
		빈도	거주지 중 %	빈도	거주지 중 %		
거주지	서울	205	95.8%	9	4.2%	214	100.0%
	부산	61	93.8%	4	6.2%	65	100.0%
	대구	67	95.7%	3	4.3%	70	100.0%
	인천	62	92.5%	5	7.5%	67	100.0%
	광주	45	91.8%	4	8.2%	49	100.0%
	대전	40	95.2%	2	4.8%	42	100.0%
	울산	26	100.0%	0	0.0%	26	100.0%
	세종	20	90.9%	2	9.1%	22	100.0%
	경기	142	95.9%	6	4.1%	148	100.0%
	강원	50	96.2%	2	3.8%	52	100.0%
	충북	42	93.3%	3	6.7%	45	100.0%
	충남	54	96.4%	2	3.6%	56	100.0%
	전북	56	93.3%	4	6.7%	60	100.0%
	전남	50	98.0%	1	2.0%	51	100.0%
	경북	48	88.9%	6	11.1%	54	100.0%
	경남	55	96.5%	2	3.5%	57	100.0%
	제주	77	95.1%	4	4.9%	81	100.0%
	전체	1100	94.9%	59	5.1%	1159	100.0%

○ 선거벽보·선거공보·거리현수막이 최종 후보선택(투표)에 미친 영향력

- 선거벽보 평균은 2.2점, 선거공보 평균은 2.8점, 거리현수막은 2.2점으로 나타나, 모두 보통 미만의 응답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선거공보의 영향력이 크다고 할 수 있음

○ 선거벽보의 효용성 문제

- 정보화 시대에 SNS나 방송 언론 등, 온라인 선거운동 방법이 많이 발달한 상황에서 선거 벽보라는 종이 매체를 노상에 붙여 선거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음

- 선거벽보의 경우 벽보 한 장에 정보를 담아야 하므로 선거공보에 비해 전달할 수 있는 정보량이 적음
- 훼손된 선거벽보를 보수하는 일선 현장에서는 선거벽보를 보는 사람도 많이 없는 것 같고, 비비람에는 굉장히 취약하며, 첩부장소에 대한 사용 승낙서를 일일이 받아야 하는 등 관련 절차 사무가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음

2) 선거운동관리 - 선거공보

○ 선거공보 배부와 관련한 업무 부담이 많음

- 선거공보 인쇄물의 배송일자를 예측하기 어려움
- 선거공보를 읍·면·동위원회에 배부해야 하는데, 읍·면·동위원회에서 받으러 오지 않고 직접 보내므로 비용이 많이 소요됨
- 선거공보는 등기로 보내는 게 아니라 일반 우편으로 보내므로 각 가정에 제대로 전달이 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음. 우체국에 협조 요청을 해서 세대별로 우편함에 꽂는 식으로 발송을 하는 사례도 있으나,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 우편함 자체가 없어서 그냥 통으로 놔둘 수밖에 없는 세대도 있으며, 이로 인해 본인들이 선거공보를 못 받았다고 민원 전화가 오는 경우도 많음. 선거공보를 발송하는 주체는 읍·면·동위원회다 보니까 구·시·군위원회는 확인할 방안이 없음.
- 구·시·군위원회에서 발송하는 선거공보는 일부 수량이고, 실제 대부분 선거공보는 전부 읍·면·동위원회(주민자치센터)에서 발송되는데, 이 작업을 하려면 읍·면·동위원회(주민자치센터)가 20-30명의 인력을 동원해야 하며,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두 장이 들어가는 경우, 안 들어가는 경우 등 여러 가지 실수가 발생함. 그리고 이러한 실수에 대한 민원 전화가 업무에 지장이 될 정도로 많이 오고, 이러한 민원에 잘못 대응했다가는 언론에도 나올 수 있어서 직원들의 부담이 과중함
- 선거공보 작업의 경우 동네 여성회 등 공무원 이외의 인력들도 참여하는데 이런 인력들의 경우 전문적이지도 않고 책임감이 약하여 선거공보 작업에 실수가 많이 발생함

○ 선거공보의 규격이 다양해서 발송 작업에 어려움이 많음

- 명함만한 사이즈의 경우 누락되거나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와 관련해 민원

이 제기되면 누락된 경우에는 추가로 배부하거나 더 들어간 데는 회수하는 등 대응업무가 많음

- 너무 작은 경우 잘 보이지도 않아 유권자의 알 권리 보장 침해

○ 선거공보 업무의 외주화 방안 논란

- 선거공보 업무를 외주화하는 방안은 2017년부터 논의되었지만 선거벽보와 달리 실수할 가능성이 많고, 책임성 등의 문제가 있어서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노동조합은 다음 국회의원선거부터 선거공보 업무의 공공 위탁을 준비하고 있으나, 전 국민의 주소 정보가 포함되어 위탁을 맡기기 어려우며, 노조가 위탁을 고집하면 협의가 안 될 것이므로 선거법 개정으로 아예 위탁 쪽으로 방향을 잡든지, 아니면 위탁은 어려우니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로 확실하게 하는 방안이 필요함

○ 선거공보 발송 장소가 없는 지역이 있음

- 가장 적합한 곳이 학교 강당, 체육관 등이지만 학부모 반대로 활용하기 어려움

- 관외 지역이나 물류센터 등을 활용할 경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선거공보 발송보고 업무의 비효율성

- 선거공보가 몇 부가 발송됐는지, 몇 부가 반송됐는지와 같은 사항들을 전부 보고 해야 하는데, 촉박한 시기에 이러한 사항들을 일일이 챙기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선거공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음

- 정치적 성향이 강한 유권자들은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의 공보가 빠져있다고 구·시·군위 원회 직원에게 직접 자택까지 오라고 하는 사례가 있음

- 이런 유권자들의 경우,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활용하기 위해 특정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빼 것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거론되며, 언론을 통해서 이를 이슈화시켜서 그 후보자를 홍보 하는, 소위 ‘노이즈 마케팅’ 방식의 선거운동이 우려됨

3) 사전투표관리

○ 사전투표 장비 문제

- 사전투표 인원이 사전투표를 처음 실시했을 때와 비교하여 최소 2배 이상 증가했으나 관련 장비 수량은 그대로이며, 중앙위원회가 배정하는 수량으로는 선거인 수를 감당할 수가 없음
 - 4년 이상 지난 장비 많은데, 수량 부족에 장비까지 노후화되어 투표가 중단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함. 그러면 현장에 있던 선거인들이 의구심을 품게 되고, 결국 외부 단체에서 근거 없는 의혹들을 제기하는 빌미가 되고 있음
 - 장비 수리 요청이 오면 외부 장비 제작업체에서 현장 지원 요원을 불렀으나, 그 업체가 구·시·군위원회뿐만 아니라 광역지방자치단체 전체를 담당하는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 부르기 쉽지 않음
 - 또한 불가피하게 장비를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 생겨도 관련 업체가 장비를 신규 제작하지 않아 대체할 장비가 없으며, 따라서 작동이 잘되지 않는 장비로 억지로 진행하다 보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음
 - 보안 USB 작동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통신망이 불안정한 경우도 많음
- 사전투표 모의시험이 다소 많음
 - 사전투표 모의시험은 여러 번 할수록 불안감이 줄어들겠지만, 실무 차원에서 두 번만 해도 충분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 사전투표관리관은 공무원이 담당하도록 되어 있어 협조가 비교적 이루어짐
 - 사전투표관리관은 총 책임자이므로 읍·면·동 직원 등을 선호하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노조와의 협력이 필요하며, 특히 적정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함
 - 선거관리위원회법 규칙에서는 6만 원으로 정하고 있으나, 코로나로 인해 한시적 사례금으로 15만 원 가량 추가 지급함
 - 본인 확인, 명부조회, 투표함 관리 등의 경우는 일반인으로 변경함
 - 사전투표소 기재 공고문 첨부(투표구마다 5매) 업무의 비효율성
 - 구·시·군위원회는 모든 사전투표소를 기재한 큰 공고문을 거리, 버스정류장 벽 등에 붙이는데 해당 업무의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사전투표소는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며, 공고문 첨부 대신에 사전투표소를 투표안내문 봉투 뒷면에다가 인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4) 투표관리 - 거소투표관리

○ 거소투표 관리의 어려움

- 선거인명부 작성 기간에 거소투표 신고가 들어오면, 관련 업무에 인력이 계속 투입되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함
- 거소투표는 신고자들에게 투표용지를 보내주는 우편투표의 형식이며, 부정 투표를 예방하기 위해 투표 신고가 들어오면 본인이 신고한 것이 맞는지 필체 확인을 하는데, 공정선거 지원단들이 확인반을 꾸려서 많이 나가고 있음
- 점자형선거공보를 제출한 후보자가 있고 안 낸 후보자도 있어서 헷갈리고, 지방선거 기초의원 같은 경우는 후보자별로 거소 투표한 사람의 주소를 별도로 구분해야 함

○ 시·도별 거소투표 신고인수 현황

〈표 2-4〉 시·도별 거소투표 신고인수

거소투표신고인수	2022-05-24	2022-05-25	2022-05-26	2022-05-27	2022-05-28	총계
서울	40	1,235	278	561	-	2,114
부산	93	599	820	25	-	1,537
대구	106	313	561	69	-	1,049
인천	213	811	258	-	-	1,282
광주	16	356	509	-	-	881
대전	12	68	350	-	-	430
울산	13	155	142	-	-	310
경기	445	2,290	2,148	432	-	5,315
강원	25	442	425	85	-	977
충북	383	604	198	67	-	1,252
충남	308	470	223	-	12	1,013
전북	307	902	712	-	-	1,921
전남	317	1,247	1,201	96	-	2,861
경북	267	992	890	-	-	2,149
경남	691	983	837	215	-	2,726
제주	111	102	284	-	-	497
총계	3,347	11,569	9,836	1,550	12	26,314

○ 거소투표용지 발송업무의 어려움

- 거소투표용지 발송의 경우 기초의원선거나 시·도의원선거는 선거구별로 투표용지 종류가 달라서 신청자별로 투표용지를 조합해야 해서 이 과정이 굉장히 까다로우며 검토 과정을 여러 번 거쳐야 해서 단시간에 할 수 없음
- 거소투표용지 발송 시 투표용지를 뽑고 봉투에 넣어서 보내는 거라 준비하는 작업이 많은 편인데, 주소 라벨부터 대량으로 들어감

○ 기관·시설 안의 기표소 운영 업무의 부담과 비효율성

- 거소투표 신고인이 10명 이상인 경우 의무적으로 기관·시설 안의 기표소 설치 대상이 되는데, 선거일 전 일주일 내외가 가장 바쁜 시기여서 실질적으로 대상이 되는 기관을 담당 직원이 나가서 참관하는 것은 어려움. 가장 큰 곳 등 중요도에 따라 선택적으로 참관하고 나머지는 공정선거지원단 분들의 도움을 활용하며, 단순히 참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날 필요한 설비 세팅을 하고 안내도 해줘야 하므로 업무가 많은 편임

○ 기관·시설 안의 기표소 설치 제도의 효용성에 대한 논란

- 기관·시설 안의 기표소 설치의 취지가 대리투표 방지라고 할 수 있는데, 기표소를 설치해도 기관·시설에 수용된 사람들이 기표소에서 투표하지 않을 경우 거소투표를 강제할 방법이 없으며, 실제로 전원이 투표하지 않은 사례가 있는 등 투입하는 시간이나 노력에 비해 효율적이지 않음
- 실제로 거소투표 신고자가 있는데 하지 않는 경우, 기관의 담당자가 거소투표 제도를 환자들한테 설명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해 구·시·군위원회가 전부 통제할 수는 없으며, 대체로 구·시·군위원회의 거소투표 담당자가 한 명이어서 기관·시설 거소투표를 신청한 곳만 나가서 해주고 있음
- 거소투표 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시설임에도 기관·시설 거소투표 신고를 하지 않는 시설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있으나, 이러한 시설을 확인할 방도가 없고 시간적 여유도 없어서 과태료 제도의 실효성이 약함
- 또한 거소투표를 하는 병원에서 투표를 담당하는 직원이 이 제도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음. 기관·시설의 경우 보통 정신병원인 경우가 많은데 투표자의 대부분이 정신이 또렷하지 않아서 병원 시설 담당자가 본인이 원하는 후보자를 신고자 대신 찍은 뒤 우체통에 넣어버리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음

- 중앙위원회는 구·시·군위원회 담당자가 현장에 나가서 거소투표 의사를 확인하라고 하는데, 확인을 할 수 없는 게 실정임. 정신병원에 가서 환자한테 물어보면 본인의 신고 여부조차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할 정도로 정신이 또렷하지 않으며, 더욱이 팔을 사용하는데 제약이 있는 환자들은 담당자가 신고서를 대필해줘야 하는 경우들이 있음. 이런 경우들을 일일이 감독할 인력도 없고 그럴 시간도 없음
- 옛날엔 병실에서 했는데 현행 제도는 왜 시간을 정해서 환자들을 줄 세우는지 불편하다고 호소하는 환자들도 있으며, 투표지를 어디 넣어야 하는지 모르는 유권자도 많음

5) 투표관리 - 투표용지 인쇄, 검수, 보관 등⁶⁾

- 투표용지 인쇄업체 섭외에 어려움이 있으며, 읍셋 방식을 활용한 인쇄로 인해 투표용지 검수 업무가 많음
 - 수도권 등을 제외한 많은 지역에서 디지털 기계를 사용하는 업체는 거의 없으며 읍셋 방식 등 기존 기술을 이용하는 업체마저 없어지는 추세여서, 다른 지역에 있는 인쇄업체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음
 - 디지털 인쇄를 채택한 경우 인쇄소에서 투표용지를 확인하지만, 읍셋 방식을 채택한 경우 투표용지 인쇄과정을 일일이 확인해야 함
 - 읍셋 방식은 큰 판에다가 투표용지 여러 개를 찍어낸 뒤 사람이 재단하여 자르는 방식을 뜻하는데, 투표용지를 자르는 과정에서 좌우 여백이 1mm라도 차이가 나면 투표지분류기에서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처럼 재단이 잘못된 경우 전체를 다시 인쇄해야 하므로 시간이 많이 소요됨
 - 또 읍셋 방식은 잉크로 찍어내야 해서 오류가 종종 발생함, 즉 투표용지에 인쇄 오류로 점이 찍혀 있으면 기표를 안 했음에도 점이 찍혀 있는 대로 투표지분류기가 인식하므로 개표 오류로 이어지게 됨
 - 따라서 읍셋 방식으로 인쇄된 투표용지의 경우 사람이 일일이 검수해야 하는데, 검수해야 하는 투표용지가 30만 장 이상인 경우도 있을 정도로 많은 편이며, 많은 양의 투표용지에 대한 검수 작업으로 인해 실수가 발생하기도 함

6) 투표용지 인쇄는 선거기간 개시(D-20)~사전투표 전일(D-6)에 진행되나 투표용지 검수, 교부 및 송부는 사전투표 이후(D-5~D-0)에 이루어지며, 인쇄와 검수 업무의 특성상 합쳐서 기술함.

- 검수하는 날 거소투표용지 발송, 사전투표 교육 등 업무가 겹쳐서 시설 활용 등에 어려움이 발생함
- 투표용지 보관의 문제
 - 최종 검수 후 포장해서 선거일 전날 아침에 배부하는데, 배부 전까지 보관할 장소가 없는 경우 구사군위원회 회의실에 보관하는 사례가 있음
 - 선거 물품과 투표용지를 같이 보관함으로써 보안 문제 발생 가능성 있음
- 투표용지 인쇄 축소 방안 필요
 - 투표용지는 실제로 선거인 수보다 축소해서 인쇄하게 되는데, 대선 때는 선거인수의 70%만 인쇄를 했고, 지방선거의 경우 투표율이 더 낮으므로 60% 정도 인쇄하였음, 이처럼 축소해서 인쇄하였는데도 폐기되는 투표용지가 많음
 - 선거별 투표율, 사전투표율 등을 고려하여 선거일 투표에 사용하는 투표용지 인쇄량을 축소할 필요가 있으며, 선거일 투표에서도 사전투표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제5절 사전투표 이후(D-5~D-0)

1. 업무일정)

〈그림 2-5〉 사전투표 이후(D-5~D-0)[2022.5.27.~2022.6.03.]의 업무일정



7) (2022.5.27.~2022.6.1.)

2. 실태 및 문제점

1) 선거인명부

○ 선거일 투표에서도 통합선거인명부 활용 필요

- 사전투표의 경우 투표용지발급기에 투표자 정보를 입력하고 지문인증을 하는데 이것이 중앙의 통합 서버시스템에 연계되어 선거일에 사용할 통합선거인명부 인쇄 시 사전투표자라고 출력됨
- 현재는 선거일 투표 선거인명부가 종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선거인명부 등재번호를 찾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며, 동명이인 같은 경우 착오가 발생할 수 있음
- 선거일 투표에도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면 종이로 출력하지 않고도 투표소에서 지문으로 인증할 수 있어 자원 낭비를 줄이고 명부 대조 업무를 개선하며, 동명이인이 투표소를 잘못 방문할 경우 올바른 투표소로 안내하는 프로그램도 활용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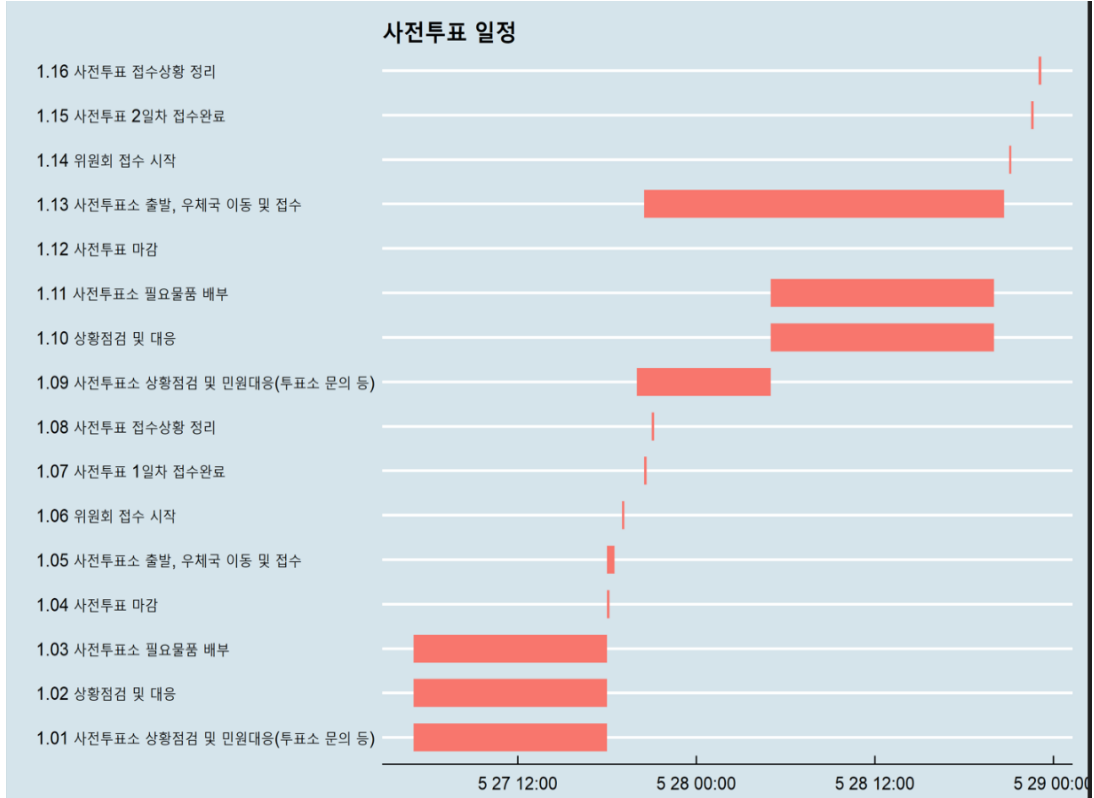
2) 사전투표관리 - 우편투표 접수 업무

- 사전투표일 시간별 업무는 다음의 <표 2-5>과 같으며,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2-6>과 같음

〈표 2-5〉 사전투표일 시간별 업무

시간		시간별 업무
사전투표 1일차	05:00	사전투표소 개시상황점검 투표소 위치 문의 전화 대응
	종일	사전투표소 상황점검 필요 물품 배부(수시)
	18:00	사전투표 마감
	18:30	사전투표소 출발 우체국 이동, 우편투표 접수
	19:00	관내사전 투표함 접수
	20:30	사전투표 1일차 접수 완료
	21:00	사전투표 접수상황 정리
사전투표 2일차	05:00	사전투표소 개시상황점검 투표소 위치 문의 전화 대응
	종일	사전투표소 상황점검 필요 물품 배부(수시)
	20:00	사전투표 마감
	20:30	사전투표소 출발 우체국 이동, 우편투표 접수
	21:00	관내사전 투표함 접수
	22:30	사전투표 2일차 접수 완료
	23:00	사전투표 접수상황 정리

〈그림 2-6〉 사전투표일 시간별 업무



- 우편투표 접수업무의 양이 많고 비효율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됨
 - 사전투표를 하게 되면 다른 지역 유권자가 투표한 투표지의 경우 회송용 봉투에 넣어 유권자의 관할 구·시·군위원회로 배달시키게 되는데, 우편투표 물량이 구·시·군위원회에 따라 과다한 경우가 있음
 - 우편투표 이송 방식은 두 가지인데, 읍·면·동 사전투표소에서 우체국에 먼저 갔다가 회송용봉투를 접수하고 구·시·군위원회에 와서 관내사전투표함을 내려 놓거나, 읍·면·동사전투표소에서 구·시·군위원회에 먼저 들려 관내사전투표함을 내려 놓은 다음 우체국으로 가서 회송용봉투를 접수하는 방법임
 - 우체국은 우편투표와 관련한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우편투표 접수과정에서 구·시·군위원회에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으며, 이 과정에서 종종 마찰을 빚기도 함
 - 구·시·군위원회에 우편투표 회송이 만 통 이상 한 번에 오는 경우가 있으며, 우체국과 구·시·군위원회가 동시에 확인해야 함
 - 이처럼 우편투표 접수 업무량이 많고 기계 오류 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수십만 명 중에서 한두 장 걸러내기 위해 수많은 인력이 새벽까지 일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전산시스템이 있음에도 구·시·군위원회와 우체국이 이중으로 확인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우편투표 회송용봉투 접수기가 노후화되고 부족함
 - 우편투표의 누락 방지를 위해 확인 작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바코드를 찍는 작업을 수행함, 그런데 일일이 손으로 찍는 바코드 작업이 힘들므로 우편투표를 접수하는 기계(바코드를 읽는 기계)를 활용함
 - 우편투표 회송용봉투 접수기는 바코드를 롤링해서 넣는 기계인데 두 장이 한꺼번에 들어가거나 바코드가 안 찍히는 등의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수량도 부족하여 시간이 많이 소요
- 우편투표 접수를 둘러싼 부정선거 논란과 우편투표 접수작업에 대한 감시카메라 설치 요구 등 민원 발생
 - 과거 부재자투표 때는 수량이 적었기 때문에 하나하나 바코드를 찍어서 송부가 가능했으나, 사전투표가 도입되면서 수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밤새는 경우도 종종 있으므로 직원들이 힘들어하며 부정선거 의혹도 제기되고 있음

- 보관장소에만 감시카메라가 있어도 충분하지만, 접수작업을 수행하는 장소에서 부정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접수작업 장소에도 감시카메라를 설치해야 한다는 민원이 제기됨
 - 사전투표 제도가 도입된 이후 우편투표가 들어오게 되면서 일부 유투버들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이러한 민원에도 대응해야 하므로 업무가 과중되고 있음
- 우체국이 바코드 작업을 하고 이를 선거관리위원회 시스템에 연동시키는 방법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이 방안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됨
- 예전에 이런 방법을 실제로 적용해 본 적이 있는데 오류가 발생할 경우 회송용봉투를 확인하여 수정하는 과정이 매우 힘들다고 함
 - 예를 들어 우체국이 우편투표 접수 시 바코드 입력 버튼을 누르게 되는데, 오류가 발생해도 그대로 접수가 되며, 실제로 오류가 발생했을 때 바코드의 끝자리가 99로 시작되면 99로 시작되는 회송용봉투를 모두 찾아서 비교해야 하니 이러한 과정이 너무 힘들다고 호소함

3) (사전)투표관리 - 참관인 관련 업무

- 참관인 교체 신청 업무가 과중
- 참관인이 (사전)투표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참관하게 되어 있고 참관인 교체는 참관인이 참석할 수 없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하여 만들어 놓은 규정인데, 지금은 아예 신고할 때 교체 인원까지 신고가 들어옴
 - 참관인 수당 혹은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사람들을 동원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오전 오후로 나누어 참관인을 교체하는 관행이 일반화되어 있음
 - 투표참관인은 투표소당 8명까지 할 수 있으며, 종일 근무해도 수당이 10만 원이고 교체로 반나절만 근무해도 6시간 이상이면 같은 수당을 주고 있으므로, 교체의 유인 동기로 작용함, 따라서 8시간 이상 근무자에게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이 필요함
 - 제도 취지에 따르면 한 번 신고하면 될 것을 두 번 신고하므로 신고 관련된 절차 업무가 추가되며, 추첨 등 관련 절차에 대한 민원 업무가 많이 발생함
 - 참관인 접수 및 교체 신고가 서면 및 선거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 방식 모두 가능하여 불편하므로 선거관리시스템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으며, 선거관리시스템의 경우 인증서 받는 절차가 복잡하므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됨

- 사전투표 기간에는 사전투표소에서 교체 신고를 할 수 있으나 투표관리관이 정당한 신고권자인지 확인하기 위한 인영 확인 등 관련 업무가 많음
- 참관인 교체 시 교체 신고서가 들어와야 하는데, 선거일에도 가능하고 투표장에서도 가능하므로 업무가 복잡해지는 문제가 있음, 그래서 교체 신고 방법을 표준화시키자는 의견도 있고, 시기적으로 바쁜 선거일에는 교체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들이 제기된 바 있음

○ 참관인 지원자 모집 및 참관인 접수와 관련된 업무가 어려움

- 대선에서는 참관인 지원자가 너무 많고 지방선거에서는 지원자가 거의 없는 편이며, 참관인이 없는 경우 자체적으로 선정해야 함. 참관인은 유권자가 투표하면 투표함 봉인까지 지켜보아야 하므로 최소한 아침 5시 반까지는 투표소에 출석해야 하며, 투표가 끝날 때까지 있어야 하므로 참관인을 구하기 어려움
- 부정선거 방지·감시하는 단체가 대선 때는 참관인으로, 지방선거 때는 관람인으로 들어오는 경우 이들을 통제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즉 사소한 빌미를 잡아 계속 문제를 제기해서 정작 필요한 선거 절차사무를 진행하는데 지장을 주고 있음
- 참관인의 경우 읍·면·동위원회에서 접수하지만 접수 마지막 날 참관인 관련 전화 응대 업무가 상당히 많음
- 정당에서 투표참관인, 개표참관인을 신고하는 시기가 투표가 임박하여 이루어지는데, 선거관리위원회 신고에 관한 안내를 정당선거사무소장이나 후보자 연락소장한테 안내하지만 문서를 잘 보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로 파악됨

4) 사전투표관리 - 제도운영에 대한 개선방안 논의

○ 중앙위원회가 사전투표 등 가장 바쁜 시기에 새로운 지시를 구·시·군위원회로 전달하는 경우 충분한 설명과 동기부여가 미흡함

- 지난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때 코로나19 확진자가 임시투표소에서 투표한 투표지를 넣은 봉투를 사전투표소 내부로 이송하는 운반 도구(바구니, 상자 등)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에는 없었으나 중앙선관위의 갑작스러운 지시로 인해 시행하였으며, 이러한 새로운 방침에 대하여 설명이 충분하게 제공되지 않음
- 그리하여 구·시·군위원회 직원들은 변경된 방침에 대해 유관기관이나 일반 국민들에 대해 설명하기 어려웠으며,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불만이 높았는데 이런 문제들

이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지적됨

- 또한 언론에서 논란이 되자 지방자치단체들은 휘하 직원들을 굉장히 보호하였으나 중앙 위원회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평가되며, 이로 인해 일선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된 것으로 평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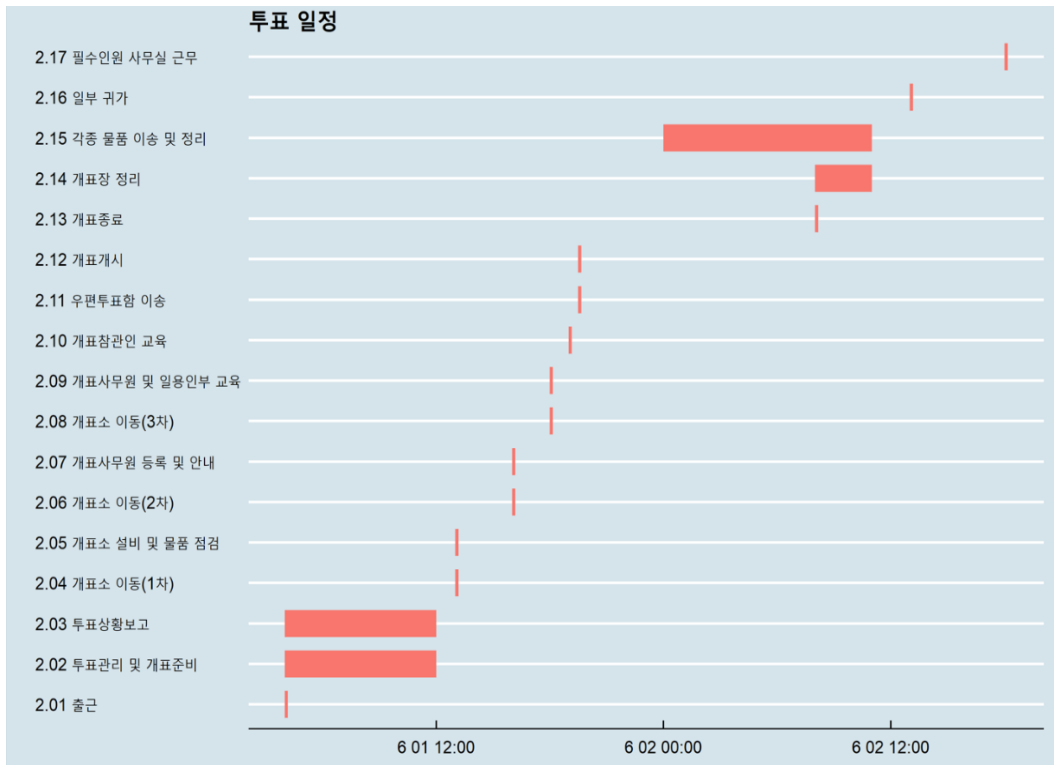
○ 사전투표 제도 취지의 퇴색과 이를 둘러싼 논란

- 사전투표라는 제도의 본래 목적이 퇴색된 것 같다는 의견이 있는데, 특히 사전투표와 선거일 투표 사이에 벌어진 사안들에 대해서 유권자의 표심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음
- 사전투표 후 구사군위원회에 우편투표가 들어오게 되면서 부정선거 의혹이 생겨났고, 이에 따른 유투버들 대응 업무도 추가로 발생함
- 유권자의 편리한 시간을 활용하자는 사전투표 제도의 취지에 따르면 사전투표를 오전 6시에 시작할 이유가 없으며, 선거일 투표와 같이 사전투표를 오전 6시에 시작하므로 사전투표 기간에도 모든 직원이 투표 시작 2-3시간 전에 출근해야 하는 상황임
- 사전투표 시간 조정에 대한 요구가 높으나, 조정 방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사전투표 시작 시간을 늦추는 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공통되나 퇴근 이후로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이 많으며, 사전투표를 주말에만 하자는 방안, 사전투표와 선거일 투표를 연속해서 시행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고 있음, 사전투표가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안정화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

5) 투표관리

- 선거일 시간별 업무는 다음의 <표 2-6>과 같으며,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2-7>과 같음

〈그림 2-7〉 선거일 시간별 업무



〈표 2-6〉 선거일 시간별 업무

시간		업무
선거당일	04:30	출근
	05:00	투표소 개시상황점검 투표소 위치 문의 전화 대응
	매시간	투표상황보고
	종일	투표관리 및 개표준비
	13:00	개표소 이동(1차) : 개표소 설비 및 물품 점검
	16:00	개표소 이동(2차) : 개표사무원 등록 및 안내
	18:00	개표소 이동(3차) : 개표사무원 및 일용인부 교육
	19:00	개표참관인 교육
	19:30	우편투표함 이송 개표 개시
익일	오전	개표종료 및 개표장 정리
	11:00	각종 물품 이송 및 창고 적치
	14:00	일부 귀가
	18:00까지	필수인원 사무실 근무 : 개표결과 문의 및 수당 입금요구 등 민원 대응

○ 선거일 투표진행상황 보고관련 문제

- 1시간마다 투표진행상황을 보고해야 하는데 민원 대응 업무 등 다른 업무와 중첩되어 보고하지 못하면 독촉 전화가 계속 오는 상황임
- 읍·면·동위원회도 바쁘기 때문에 아무리 보고와 관련된 지침을 내려줘도 챙기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며, 중앙선관위로부터 독촉 지시가 와도 막상 읍·면·동위원회에 독촉하는데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 보고 내용이 지엽적인 사항들이 많기 때문임

○ 투표사무원 대우 문제

- 투표사무원들이 새벽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기본적으로 열두 시간 동안 근무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새벽 네 시쯤 버스도 없는 상황에서 출근해야 하지만, 이에 대해 별도로 여비를 보조해주지도 않음

○ 투표 끝난 후의 투표지 보관 문제

- 투표 이전의 투표용지는 구사군위원회 회의실에 보관하는 것이 보안상으로 적절하나, 투표 이후의 투표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관하는 것이 필요함
- 선거 소송을 제기할 경우 투표지가 폐기되지 않고 부정선거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계속 감시하므로 스트레스가 많음

○ 선거 끝나고 투표소마다 임시 기표대 현황을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하는 업무가 번거로움

- 임시 기표대가 설치된 곳이 많지 않으므로 설치되지 않은 곳을 선거관리시스템에 '0'으로 입력해야 하는 업무는 불필요함, 설치된 곳만 입력하는 방식으로 바꿀 필요가 있음

○ 선거일 투표관리관 관리의 어려움

- 코로나로 인해 투표관리관 위촉 및 교체가 이루어지는 문제로 어려움이 컸음
- 투표관리관 교육을 위해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장소가 많지 않음

6) 개표관리

○ 유·무효표를 둘러싼 논란

- 주요 정당의 경우 표의 유·무효 여부를 놓고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경우가 많음, 투표지에 이물질이 찍혀있으면 투표지분류기가 미분류 대상으로 간주하여 재분류 대상으로 가는

데, 참관인들은 본인들 정당에 찍힌 투표지를 재분류 대상으로 간주하는 것에 대해 부정선거 의혹들을 제기하고 있음

- 유·무효표와 관련된 이슈가 대부분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논란이 발생하며, 따라서 중앙위원회에서 유·무효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적이 있으나 대부분의 내용이 가이드라인을 보지 않아도 누구나 수긍할만한 명확한 사안들 뿐이며, 논란은 당사자들이 수긍하지 못하는 예민한 요소들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보통 현장 직원들의 판단을 통해서 진행하며,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투표지 한 장에 대한 유·무효 판단이 위원장까지 올라가게 됨
- 유·무효표 논란이 정치적 이슈와 밀접하게 엮인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현장에서는 중앙위원회의 대처가 미온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중앙위원회가 이러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아 현장의 실무자들만 각종 유튜브와 단체들에게 시달리고 있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음
- 투표지분류기의 노후화도 부정선거 시비의 근거로 되기도 함, 투표지분류기의 최신형이 2018년형이고 그 전 모델이 2014년형인데, 2018년형을 최신기종이라고 하면 참관인이나 일반인들에게 신뢰성을 주지 못하고 있음

○ 개표사무원 인력이 부족함

- 참관인들은 말 그대로 참관인이고 개표사무원은 실제 업무를 수행하므로 참관인보다 수당이 많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개표사무원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인센티브 명목으로 수당이 추가 지급되어 개표사무원 확보에 도움이 되었지만, 코로나에 따른 임시방편이며 다음 선거에서는 사무원 수당을 올리기 위한 예산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판단됨

○ 개표 상황 보고 및 개표상황표를 팩스를 보내는 업무가 비효율적임

- 개표상황표를 팩스로 보고하는데 팩스가 잘 작동하지 않는 기술적 문제가 있으며, 보고 내용에 오류가 있어도 시·도위원회에서는 정확히 잡아내지 못함
- 밤늦게 잠도 못 자고 개표상황을 입력하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며, 개표상황 보고가 오류를 걸러내어 수정하는데 있다면, 실제 수정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으나, 오류를 잡아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에서 그 취지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점도 있음

- 개표가 끝나도 보고가 마무리되지 못하면 퇴근도 못하고 대기해야 하는 상황에서 매 시간 보고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에 제기되고 있음

7) 선거관리경비 집행

○ 4대 보험 및 일용직 소득신고 업무가 많음

- 회계 담당 주무관들이 대체로 신규 직원인 경우가 많아 회계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많지 않은 편임
- 4대 보험이나 원천세를 각 구시군 위원회별로 지출하는데, 고용 보험이나 소득세 원천세 분야는 전문적인 세법 지식이나 노무 관리 지식이 필요하며, 회계를 전담한다고 하나, 대상 인원은 많아지면서 세세한 계산 같은 부분에서 착오가 발생함
- 관련 매뉴얼이 있기는 하지만 매뉴얼을 본다고 해서 당장 해결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 특징이 있음
- 담당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한데, 계약 업무 등에 대해 온라인 강의 등을 교육이 이루어지지만 실무에 적용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음

○ 비선거 기간에는 돌발 상황이 없으나 선거기간에는 돌발 상황이 많음

- 이번 선거에서 코로나 때문에 한시 사례금 예산이 반영되는 경우 업무 처리를 급하게 해야 해서 어려웠음, 선거일 이틀 전에 예산이 내려왔고 이를 또 투표사무원 수당 지급을 위해 읍·면·동위원회에 교부해야 하는데 시간이 부족했음
- 특별 한시 상여금의 경우 관련 예산의 편성 과정이나 집행 방법에 대해 지침이 그때그때 다르게 내려왔으며, 공문도 아닌 방식으로 전달되어, 예산 처리 과정이 순조롭지 못함
- 지침이 수시로 바뀌면서 예산 집행 방법 등에 대한 질의 사항이 많았으나 중앙위원회의 지침이 일관되지 못하여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음

○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겹치면서 업무 편중 현상이 심해짐

- 단일 선거가 아니라 양대 선거가 겹치면서 업무 편중 현상이 너무 심해지는 경향이 있었고, 사람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물리적인 업무의 양은 한계가 있는데, 회계 처리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여유롭게 할 수 없었음

○ 예산 집행 기준의 현실화와 유연화 필요

- 예산이 부족해 집행 기준에 있는 예산도 쓰기 빠듯하며, 꼭 필요한 부분인데 집행 기준에 없어서 집행하기 어려운 점이 많음
- 회계 예산을 짤 때 예산 편성 집행 기준으로 예산을 늘려주고 있으나, 기준에 부합하는 것 외에 지출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므로 예산을 수립할 때 목적을 너무 따지지 말고 자유롭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제기됨

...

제3장

업무처리에 투입되는 조직 및 인력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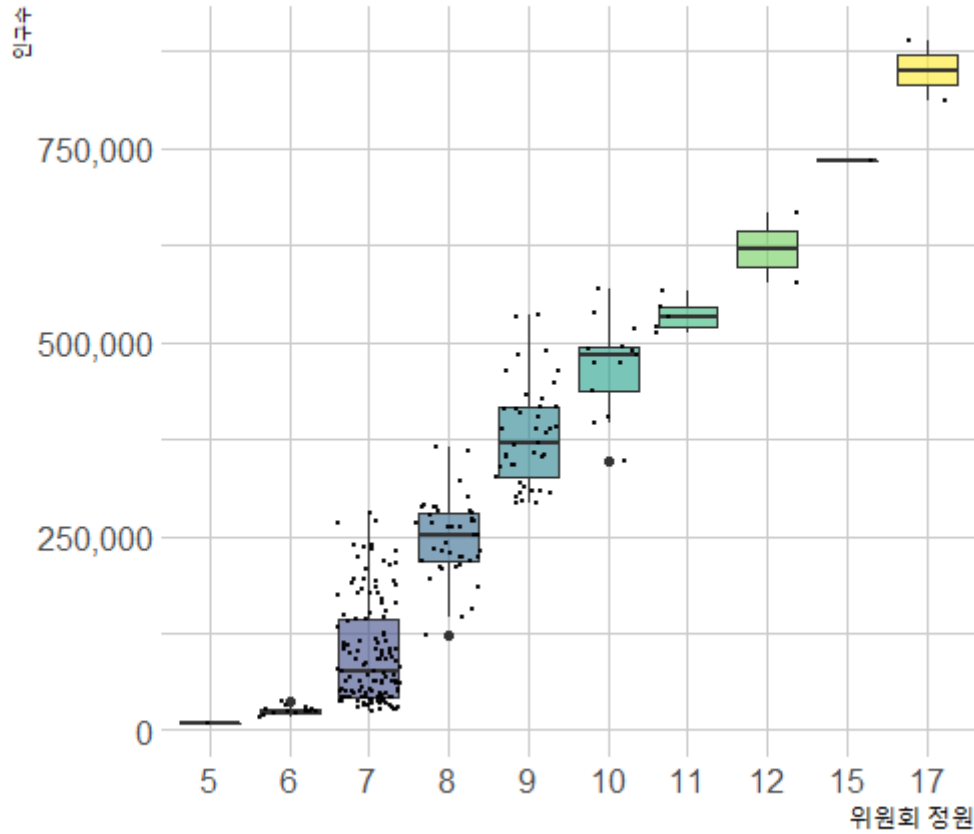
제3장 업무처리에 투입되는 조직 및 인력 분석

제1절 구시·군위원회 인력 분석

1. 위원회 정원에 대한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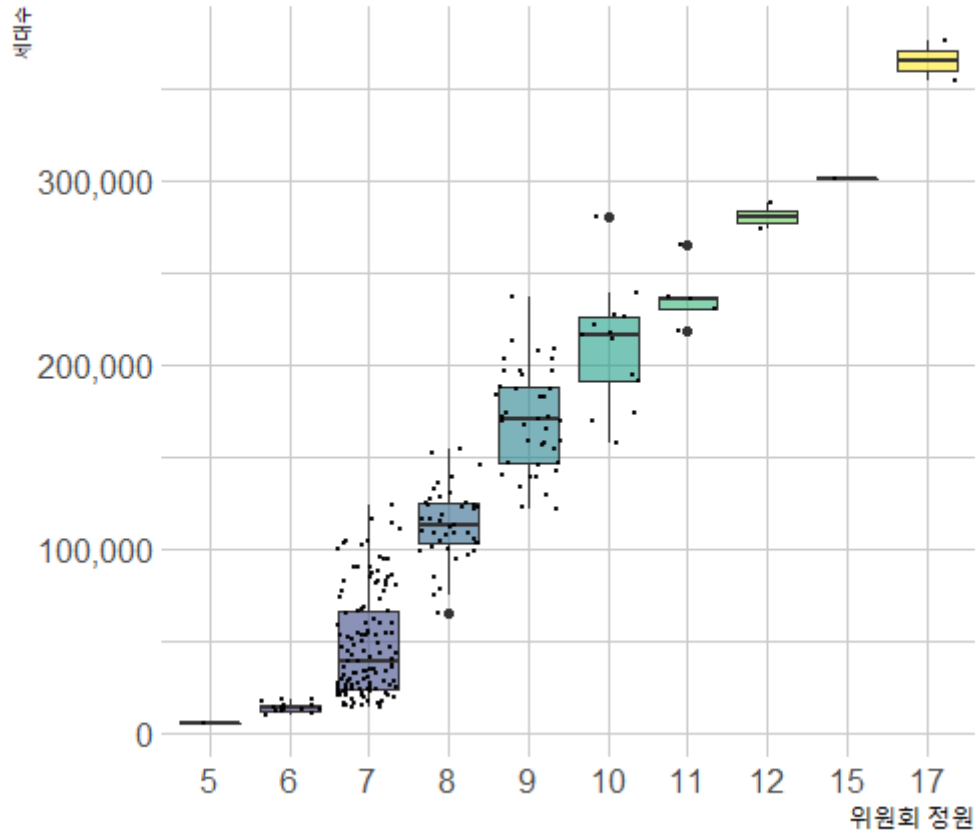
- 구시군위원회 정원과 인구수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위원회 정원 5인과 위원회 정원 6인 경우는 위원회 소재 인구수의 변동 폭은 매우 적음
 - 위원회 정원 7인의 경우는 해당 위원회 소재 인구수 분포가 매우 다양하며 일부는 위원회 정원 8인의 경우보다 인구가 많아 정원 증가가 필요함을 볼 수 있음
 - 위원회 정원 8인의 경우는 해당 위원회 소재 인구수 분포가 다양하나 담당하고 있는 구역의 인구수 분포로 보면 정원의 할당이 비교적 적정함
 - 위원회 정원 9인의 경우는 위원회 정원 10인과 위원회 정원 11인의 인구와 겹치는 부분이 존재하며, 이는 정원 증가 필요성을 의미함
 - 위원회 정원 12인, 15인, 17인의 경우는 인구 분포로 볼 때 정원의 할당이 적정함
- 구시군위원회 정원과 세대수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인구수와 같이 위원회 정원 5인과 위원회 정원 6인 경우는 위원회 소재 세대수의 변동 폭은 매우 적음
 - 위원회 정원 7인의 경우는 해당 위원회 소재 세대수 분포가 매우 다양하며 일부는 위원회 정원 8인의 경우보다 인구가 많음
 - 위원회 정원 8인의 경우는 해당 위원회 소재 세대수 분포가 다양하나 담당하고 있는 구역의 세대수 분포로 보면 정원의 할당이 비교적 적정함
 - 위원회 정원 9인의 경우는 위원회 정원 10인과 위원회 정원 11인의 세대수와 겹치는 부분이 존재하여, 인구수 경우에서와 같이 정원 증가의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음
 - 위원회 정원 12인, 15인, 17인의 경우는 세대 분포로 볼 때 정원의 할당이 비교적 적정함
- 구시군위원회 정원과 나이 18세 이상 주민수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으며, 인구수와 세대수 관계에서의 내용과 유사함

〈그림 3-1〉 구·시·군위원회 정원과 인구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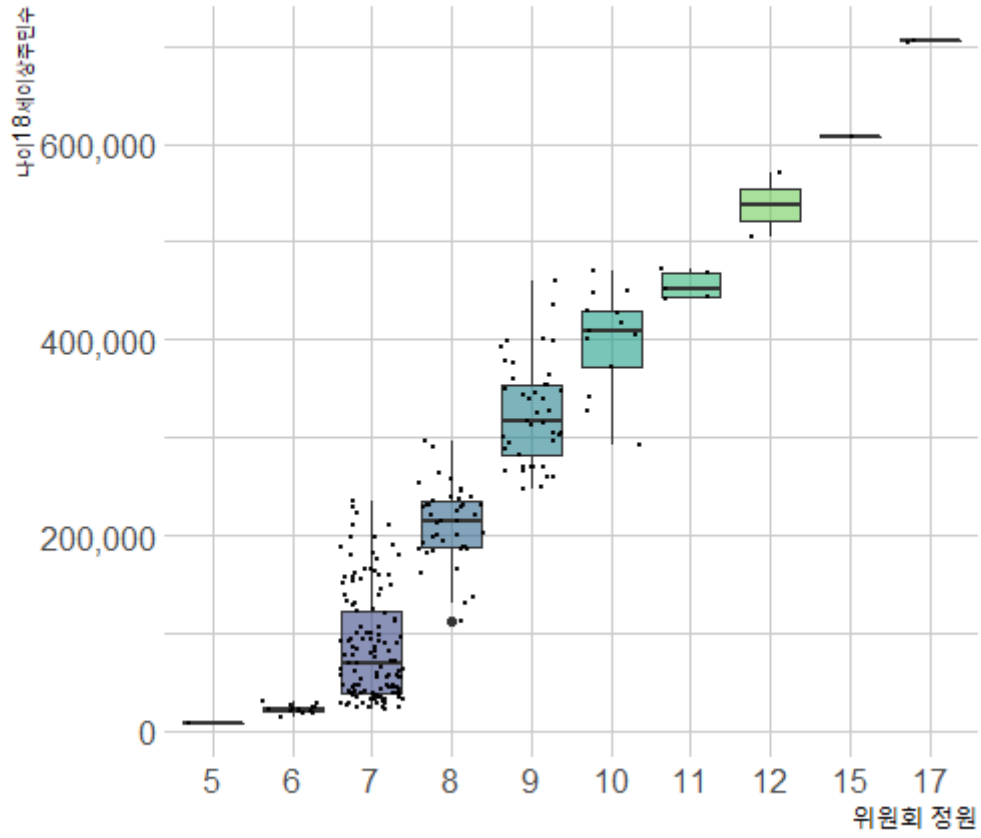
- 구·시·군위원회 정원과 사전투표소수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공직선거법 제148조에 의하면, 읍·면·동마다 1개소씩 사전투표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나, 일정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음
 - 위원회 정원 7인, 8인, 9인의 경우는 사전투표소수의 분포가 매우 다양하며, 위원회 정원 10인의 경우도 사전투표소수의 분포가 다양함. 사전투표소수로 본다면 정원 7인은 8인, 정원 8인은 정원 9인, 정원 8인은 정원 9인, 정원 9인은 정원 10인, 정원 10인은 정원 11인 정도의 증원이 필요한 위원회가 많음을 볼 수 있음
 - 특이하게 위원회 정원 15인의 경우는 사전투표소수가 적게 나타나고 있음

〈그림 3-2〉 구·시·군위원회 정원과 세대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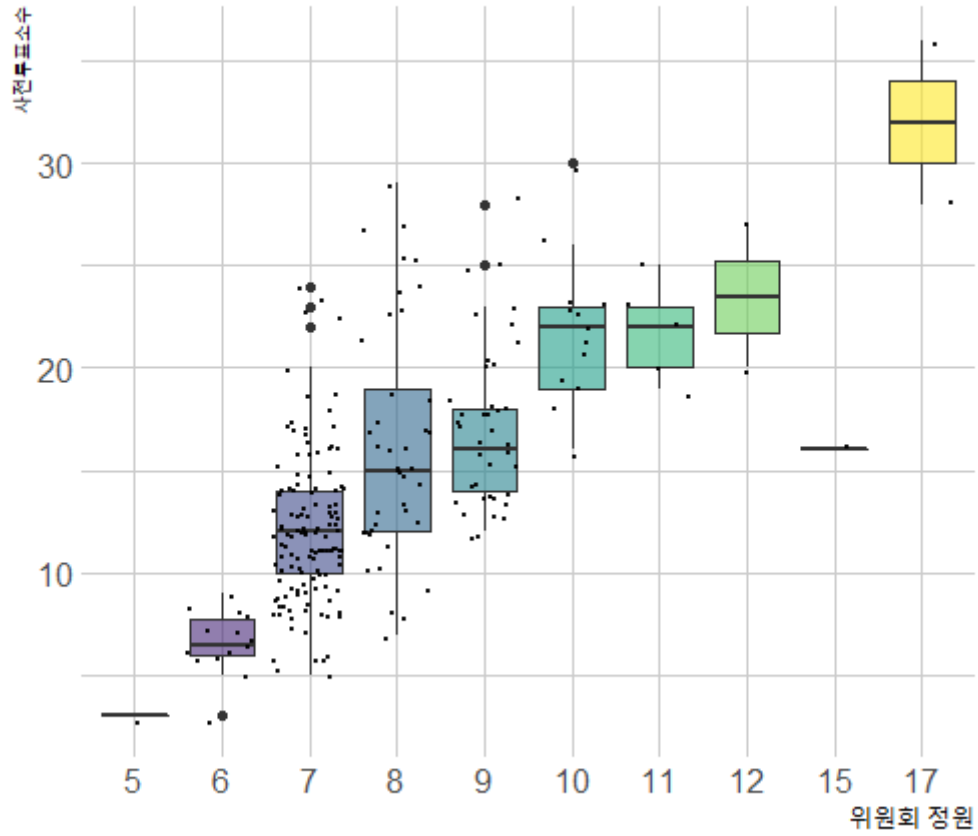


- 구·시·군위원회 정원과 사전투표소수와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공직선거법 제31조에 의하면, 읍·면·동에 투표구를 두며, 하나의 읍·면·동에 2 이상의 투표구를 둘 수 있음
 - 투표소수의 경우는 사전투표소수에 비하여 위원회 정원과 투표소수의 관계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결국 사전투표소수의 등장으로 위원회 정원과 투표구의 업무량에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따른 정원 증가의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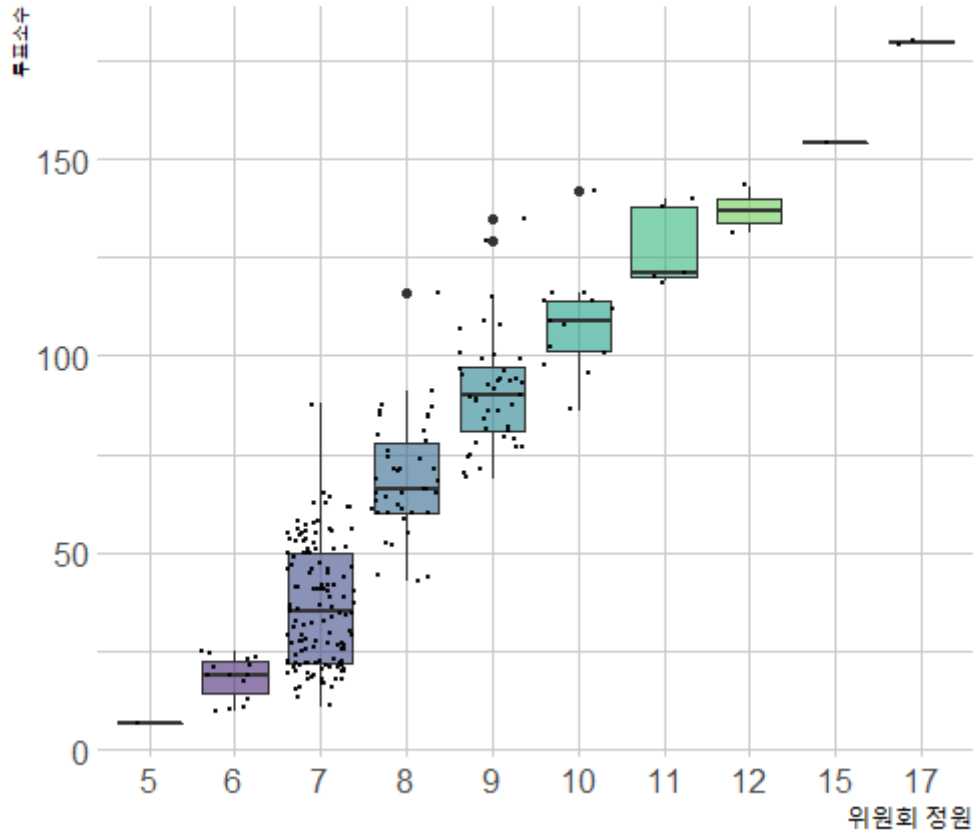
〈그림 3-3〉 구·시·군위원회 정원과 나이 18세이상 주민수 관계



〈그림 3-4〉 구·시·군위원회 정원과 사전투표소수 관계



〈그림 3-5〉 구·시·군위원회 정원과 투표소수 관계



2. 사무보조원 수 월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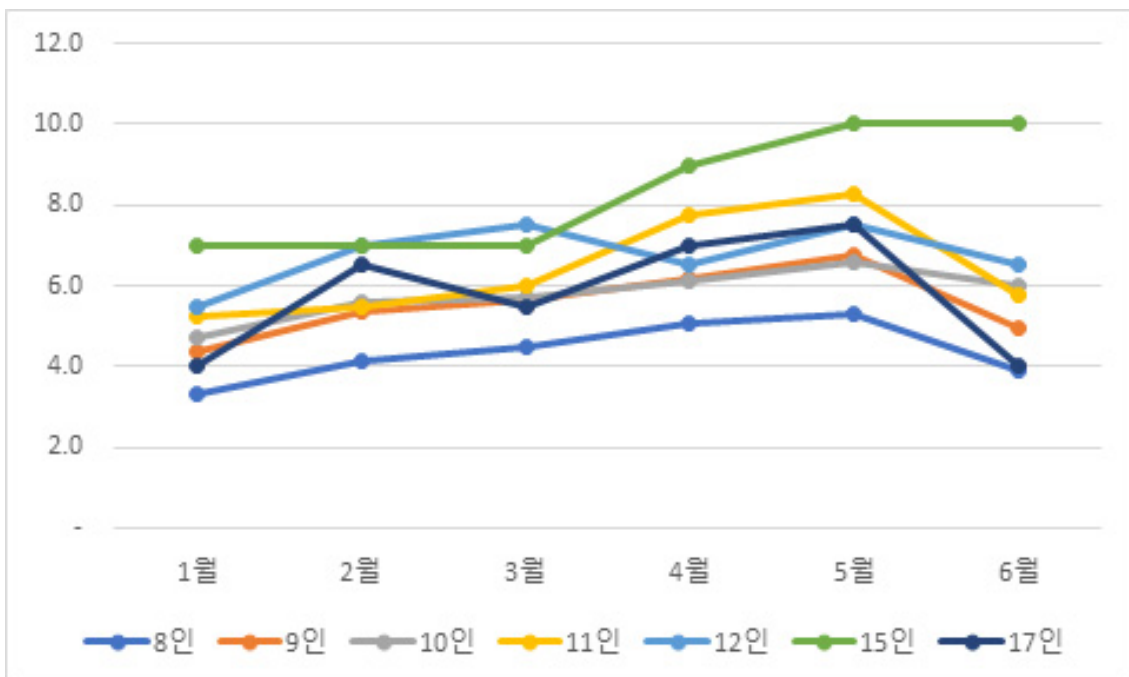
○ 구·시·군위원회 정원과 사무보조원수와의 관계를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 변동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위원회 정원 12인과 위원회 정원 17인을 제외하고는 1월부터 5월까지의 사무보조원 수는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음
- 위원회 정원 12인도 4월에 감소하다가 6월에 다시 증가하고 있으며, 위원회 정원 17인도 3월에 감소하다가 4월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음

〈표 3-1〉 구·시·군위원회 정원과 월별 사무보조원 추이

위원회정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8	3.3	4.2	4.5	5.1	5.3	3.9
9	4.4	5.4	5.7	6.2	6.8	4.9
10	4.7	5.6	5.7	6.1	6.6	6.0
11	5.3	5.5	6.0	7.8	8.3	5.8
12	5.5	7.0	7.5	6.5	7.5	6.5
15	7.0	7.0	7.0	9.0	10.0	10.0
17	4.0	6.5	5.5	7.0	7.5	4.0

〈그림 3-6〉 구·시·군위원회 정원과 월별 사무보조원 추이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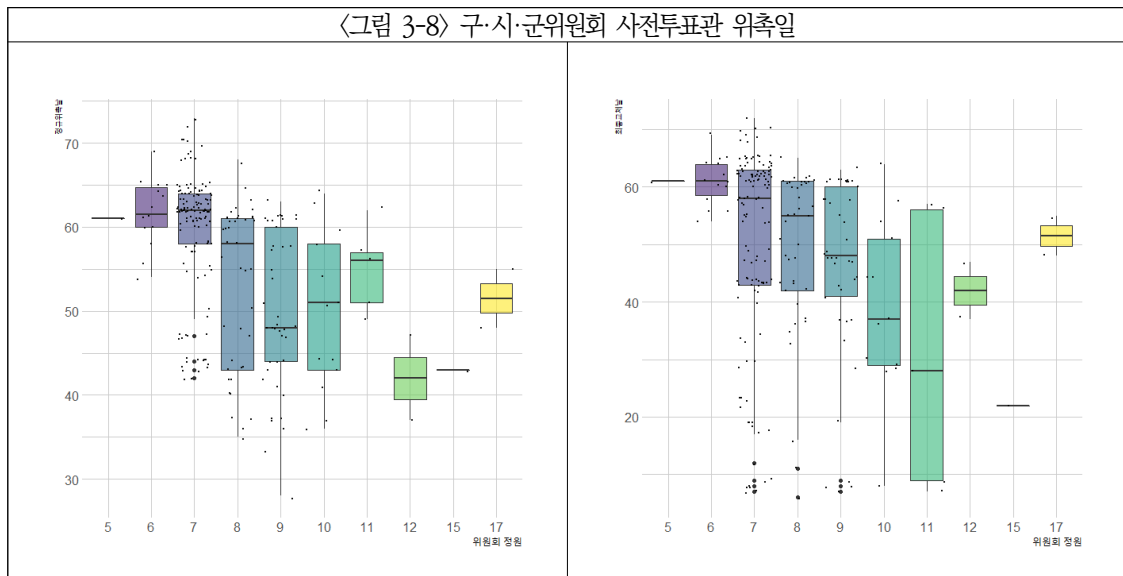
〈그림 3-7〉 구·시·군위원회 정원과 사무보조원수 관계의 박스 플롯



- 이러한 사무보조원수의 증가는 업무량 대비 정원의 부족의 결과로 볼 수 있고, 선거가 다가 올수록 늘어나는 업무량의 증가를 의미함
- 위의 경우 1월의 경우는 맨위의 왼쪽 그림, 2월의 경우는 맨위의 오른쪽 그림의 순으로 1월부터 6월까지의 사무보조원수 추이를 보이고 있음

3. 사전투표관리관 위촉 검토

- 여기에서는 사전투표관리관 위촉일, 최종위촉일, 교체회수 등을 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거부 등으로 위촉이 늦어져 선거 준비에 차질을 경험했던 구·시·군 위원회 현황을 검토하고자 함
 - (사전)투표관리관 위촉 및 공고·통보는 D-60까지로 되어 있음
- 아래의 그림에서 Y축 수치는 사전투표관 위촉일을 2022년 6월 1일로부터 역산한 수치로, 사전투표관 위촉이 6월 1일로부터 며칠 전에 이루어졌나를 보여주고 있음
- 왼쪽 그림에서는 많은 경우가 60 보다 낮은 경우가 발견되고 있는데, 이는 사전투표관리관 위촉 및 공고·통보가 늦어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음
- 오른쪽 그림에서는 사전투표관의 교체 등으로 사전투표관리관 위촉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날을 표시하고 있음



○ 다음의 표는 사전투표관리관 최종 위촉일이 선거 30일전에 이루어진 구·시·군위원회 목록을 보여주고 있음

〈표 3-2〉 구·시·군위원회 사전투표관리관 최종 위촉일 30일 미만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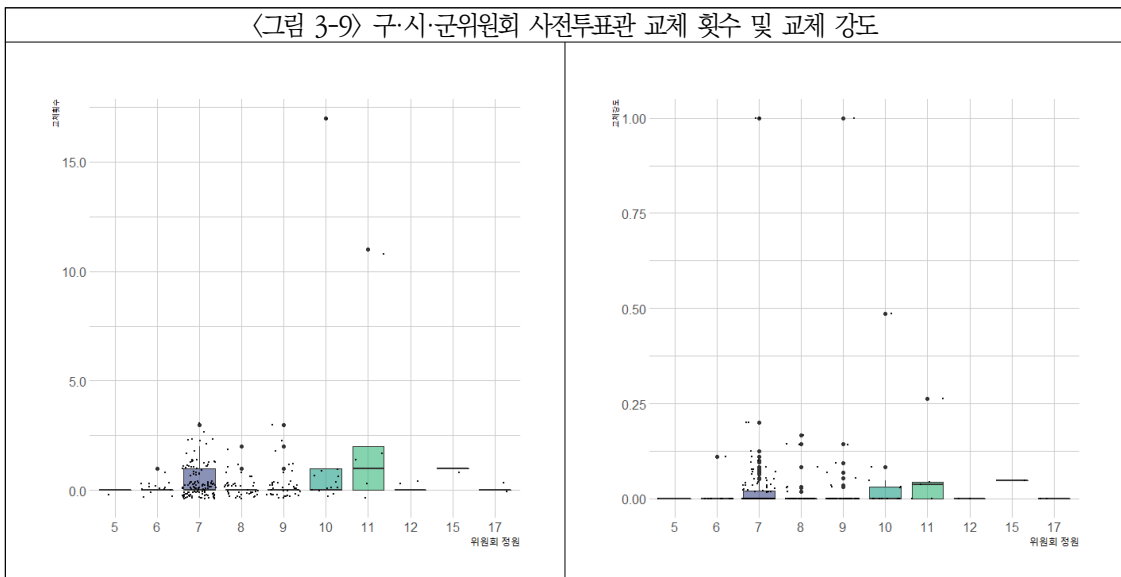
위원회	정원/위원회 이름	정규위촉날	최종교체날	교체횟수(A)	교체기간(B)	교체강도(A/B)
7	강원도 속초시	62	18	1	44	2.27%
	강원도 평창군	68	17	2	51	3.92%
	경기도 수원시장안구	61	30	1	31	3.23%
	경기도 양평군	63	12	1	51	1.96%
	경상남도 고성군	62	19	1	43	2.33%
	경상남도 남해군	64	29	1	35	2.86%
	경상북도 문경시	64	23	2	41	4.88%
	경상북도 성주군	64	9	2	55	3.64%
	경상북도 영덕군	70	7	1	63	1.59%
	대구광역시 남구	61	30	2	31	6.45%
	대구광역시 중구	61	22	3	39	7.69%
	부산광역시 영도구	47	18	1	29	3.45%
	울산광역시 동구	58	9	1	49	2.04%
	전라남도 고흥군	63	7	3	56	5.36%
	전라남도 장흥군	60	23	1	37	2.70%
	전라남도 화순군	73	19	1	54	1.85%
	전라북도 완주군	58	19	1	39	2.56%
	충청남도 당진시	61	8	1	53	1.89%
	충청남도 청양군	62	8	2	54	3.70%
	충청남도 홍성군	62	23	2	39	5.13%
충청북도 음성군	63	8	1	55	1.82%	
8	부산광역시 남구	43	11	1	32	3.13%
	서울특별시 성동구	40	16	2	24	8.33%
	충청북도 충주시	61	6	1	55	1.82%
9	경기도 고양시덕양구	44	7	2	37	5.41%
	경기도 광명시	48	19	2	29	6.90%
	서울특별시 광진구	36	8	1	28	3.57%
	서울특별시 도봉구	28	28	0	0	0.00%
	서울특별시 마포구	40	8	3	32	9.38%
	서울특별시 성북구	41	9	1	32	3.13%
10	경기도 시흥시	41	29	1	12	8.33%
	경상남도 진주시	63	28	1	35	2.86%
	대전광역시 서구	60	28	1	32	3.13%
	인천광역시 부평구	43	8	17	35	48.5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51	30	1	21	4.76%
11	경기도 평택시	51	28	1	23	4.35%
	서울특별시 강남구	49	7	11	42	26.19%
	인천광역시 남동구	62	9	2	53	3.77%
15	경기도 남양주시	43	22	1	21	4.76%

- 인천광역시 부평구는 17명의 교체가 35일 동안 이루어졌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시 42일 동안 11번의 교체가 이루어졌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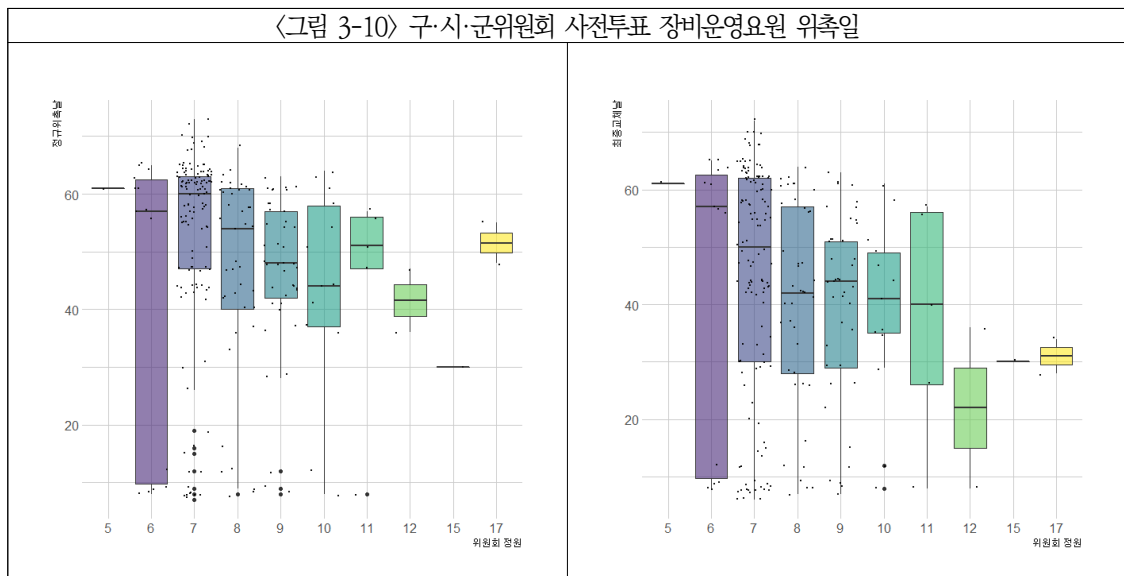
- 사전투표관리관이 선거 7일 이전에 이루어진 구·시·군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경상북도 영덕군, 전라남도 고흥군,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등임

- 아래의 그림의 왼편 그림에서는 사전투표관리관교체 횟수를 보여주고 있음. 구·시·군위원회 정원이 7인, 8인, 9인인 곳에서 빈번한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음
- 오른편 그림에서는 사전투표관의 교체 강도를 교체횟수에서 교체가 이루어진 총 기간으로 나누어 계산한 것으로 구·시·군위원회 정원 7인에서 11인에서 교체강도가 높음을 알 수 있음



4. 사전투표 장비운영요원 위촉 검토

- 여기에서는 사전투표 장비운영요원 위촉일, 최종위촉일, 교체회수 등을 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거부 등으로 위촉이 늦어져 선거 준비에 차질을 경험했던 구시군위원회 현황을 검토하고자 함
 - (사전)투표관리관 위촉 및 공고·통보는 D-60까지로 되어 있으며, 2022년 6월 1일 선거에서는 4월 25일까지 사전투표 운용장비 등 일부 수량 배부가 이루어져 있음
- 아래의 그림에서 Y축 수치는 사전투표 장비운영요원 위촉일을 2022년 6월 1일로 부터 역산한 수치로, 사전투표 장비운영요원 위촉이 6월 1일로부터 며칠 전에 이루어졌나를 보여주고 있음
- 왼편 그림에서는 많은 경우가 60 보다 낮은 경우가 발견되고 있는데, 이는 사전투표관리 장비운영요원 위촉 및 공고·통보가 늦어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음
- 오른편 그림에서는 사전투표 장비운영요원의 교체 등으로 사전투표 장비운영요원 위촉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날을 표시하고 있음
 - 오른쪽의 그림의 평균이 더 아래로 있는 것은 사전투표 장비운영요원 위촉에 어려움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음



- 다음의 표는 사전투표관리관 최종 위촉일이 선거 30일전에 이루어진 구·시·군위원회 목록을 보여주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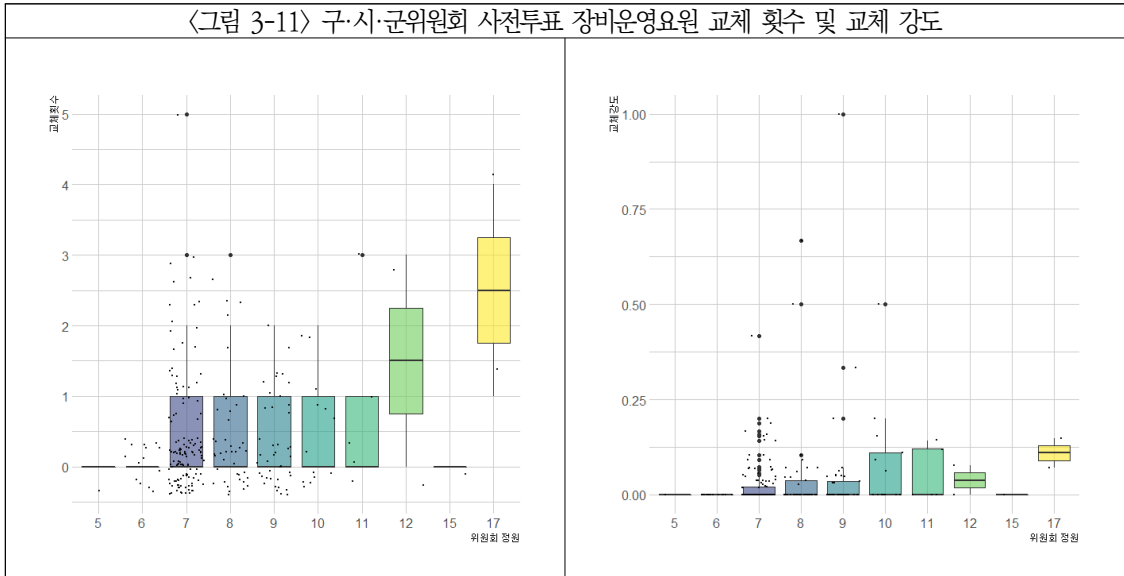
- 우선 교체횟수가 없어도 선거 30일 전에 사전투표 장비요원이 확정된 곳이 많은 것은 그만큼 위촉에 애로사항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음
- 교체횟수도 많게는 5회까지 이루어져 있음

〈표 3-3〉 구·시·군위원회 사전투표 장비요원 최종 위촉일 30일 미만 현황

위원회정원/위원회		정규위촉날	최종교체날	교체횟수	교체시간	교체강도
6	강원도양구군	12	12	0	0	0.00%
	강원도양양군	9	9	0	0	0.00%
	인천광역시옹진군	9	9	0	0	0.00%
	전라북도무주군	8	8	0	0	0.00%
	충청북도증평군	8	8	0	0	0.00%
7	강원도인제군	7	7	0	0	0.00%
	강원도정선군	58	29	2	29	6.90%
	강원도철원군	8	8	0	0	0.00%
	강원도홍천군	8	8	0	0	0.00%
	경기도양일산동구	44	6	1	38	2.63%
	경기도양주시	47	28	3	19	15.79%
	경기도연천군	8	8	0	0	0.00%
	경기도오산시	47	6	2	41	4.88%
	경상남도의령군	65	23	1	42	2.38%
	경상남도함안군	30	30	0	0	0.00%
	경상북도김천시	8	8	0	0	0.00%
	경상북도상주시	63	14	1	49	2.04%
	경상북도성주군	64	14	2	50	4.00%
	경상북도영덕군	63	9	1	54	1.85%
	경상북도영주시	12	12	0	0	0.00%
	경상북도영천시	62	29	3	33	9.09%
	경상북도의성군	62	30	1	32	3.13%
	대구광역시남구	58	30	1	28	3.57%
	대구광역시중구	61	7	1	54	1.85%
	부산광역시중구	8	8	0	0	0.00%
	울산광역시중구	8	8	0	0	0.00%
	전라남도광양시	47	20	1	27	3.70%
	전라남도보성군	16	16	0	0	0.00%
	전라남도신안군	8	8	0	0	0.00%
	전라남도장성군	63	29	1	34	2.94%
전라남도해남군	62	9	1	53	1.89%	

	전라북도고창군	19	19	0	0	0.00%
	전라북도김제시	12	12	0	0	0.00%
	충청남도공주시	62	8	2	54	3.70%
	충청남도금산군	15	15	0	0	0.00%
	충청남도홍성군	26	26	0	0	0.00%
	충북청주시서원구	9	9	0	0	0.00%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	47	6	3	41	7.32%
8	경기성남시중원구	62	29	2	33	6.06%
	경상남도거제시	12	12	0	0	0.00%
	경상북도경주시	16	16	0	0	0.00%
	경북포항시남구	55	28	1	27	3.70%
	대전광역시동구	8	8	0	0	0.00%
	부산광역시남구	43	7	1	36	2.78%
	부산광역시북구	9	9	0	0	0.00%
	서울특별시성동구	48	26	1	22	4.55%
	서울특별시종로구	12	12	0	0	0.00%
	울산광역시울주군	8	8	0	0	0.00%
	전라북도익산시	68	26	3	42	7.14%
	충남천안시동남구	54	26	2	28	7.14%
9	경기도광주시	9	9	0	0	0.00%
9	경기도김포시	48	15	1	33	3.03%
	경기도파주시	12	12	0	0	0.00%
	광주광역시서서구	47	26	1	21	4.76%
	대전광역시유성구	48	29	1	19	5.26%
	서울특별시강동구	8	8	0	0	0.00%
	서울특별시강북구	42	22	1	20	5.00%
	서울특별시도봉구	28	7	1	21	4.76%
	서울특별시동작구	29	29	0	0	0.00%
	서울특별시성북구	41	9	1	32	3.13%
	충청남도아산시	54	26	2	28	7.14%
10	부산광역시해운대구	51	29	2	22	9.09%
10	인천광역시부평구	8	8	0	0	0.00%
10	제주도제주시	12	12	0	0	0.00%
11	경기도평택시	51	26	3	25	12.00%
	인천광역시남동구	8	8	0	0	0.00%
12	서울특별시송파구	47	8	3	39	7.69%
15	경기도남양주시	30	30	0	0	0.00%
17	경기도부천시	55	28	4	27	14.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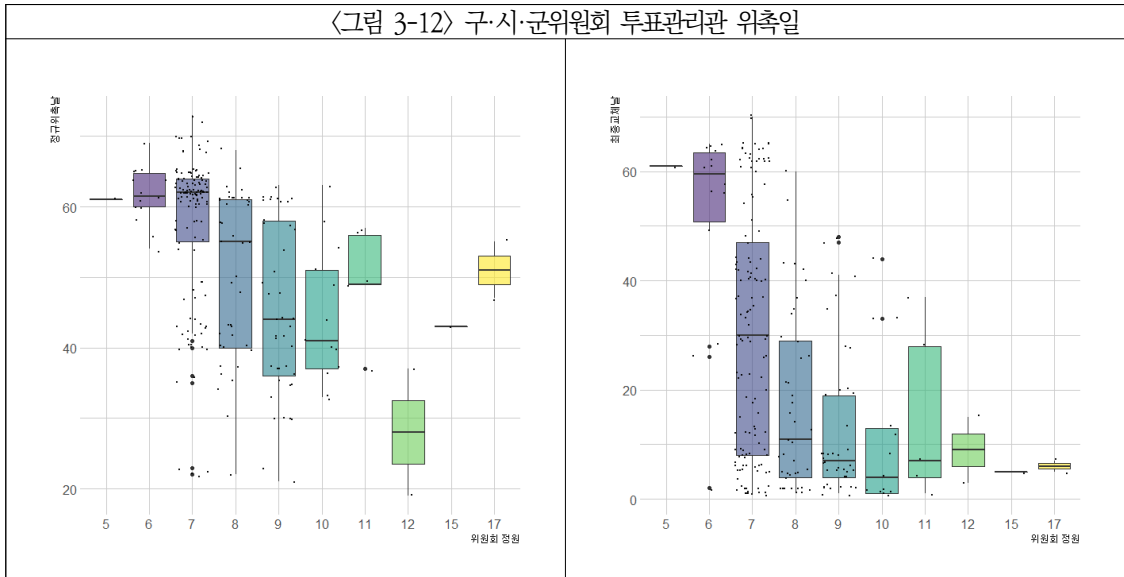
- 아래의 그림의 왼편 그림에서는 사전투표 장비운영요원 교체 횟수를 보여주고 있음. 구·시·군위원회 정원이 7인, 8인, 9인인 곳에서 빈번한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음
- 오른편 그림에서는 사전투표 장비운영요원의 교체 강도를 교체횟수에서 교체가 이루어진 총기간으로 나누어 계산한 것으로 구·시·군위원회 정원 7인에서 10인에서 교체강도가 높음을 알 수 있음



5. 투표관리관 위촉 검토

- 여기에서는 투표관리관 위촉일, 최종위촉일, 교체회수 등을 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거부 등으로 위촉이 늦어져 선거 준비에 차질을 경험했던 구시군위원회 현황을 검토하고자 함
 - 투표관리관 위촉 및 공고·통보는 D-60까지로 되어 있음
- 아래의 그림에서 Y축 수치는 투표관리관 위촉일을 2022년 6월 1일로부터 역산한 수치로, 투표관리관 위촉이 6월 1일로부터 며칠 전에 이루어졌나를 보여주고 있음
- 왼편 그림에서는 많은 경우가 60 보다 낮은 경우가 발견되고 있는데, 이는 투표관리관 위촉 및 공고·통보가 늦어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음
- 오른편 그림에서는 투표관리관의 교체 등으로 투표관리관 위촉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날을 표시하고 있음

- 위원회 정원 6인 이상 부터는 최종위촉일이 거의 0에 가까워 투표관리관 위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다음의 표는 사전투표관리관 최종 위촉일이 선거 30일전에 이루어진 구·시·군위원회 목록을 보여주고 있음

〈표 3-4〉 구·시·군위원회 투표관리관 최종 위촉일 30일 미만 현황

위원회정원/ 이름		정규위촉날	최종교체날	교체횟수	교체시간	교체강도
6	강원도양양군	54	28	1	26	3.85%
	인천광역시옹진군	60	2	1	58	1.72%
	전라북도장수군	60	26	1	34	2.94%
7	강원도동해시	63	23	3	40	7.50%
	강원도삼척시	64	2	3	62	4.84%
	강원도영월군	69	13	3	56	5.36%
	강원도정선군	61	2	3	59	5.08%
	강원도철원군	62	6	2	56	3.57%
	경기도가평군	60	1	2	59	3.39%
	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	35	8	18	27	66.67%
	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	36	12	16	24	66.67%
	경기도구리시	48	30	1	18	5.56%
	경기도성남시수정구	49	1	1	48	2.08%
	경기도수원시장안구	58	1	7	57	12.28%
	경기도안양시만안구	40	6	9	34	26.47%
	경기도양주시	47	7	5	40	12.50%
	경기도양평군	63	1	4	62	6.45%

경상남도거창군	70	9	12	61	19.67%
경상남도고성군	62	4	1	58	1.72%
경상남도남해군	64	29	3	35	8.57%
경상남도밀양시	63	29	6	34	17.65%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	42	5	17	37	45.95%
경상남도통영시	65	22	3	43	6.98%
경상남도하동군	64	5	2	59	3.39%
경상남도함안군	57	9	2	48	4.17%
경상남도합천군	68	16	1	52	1.92%
경상북도문경시	64	23	6	41	14.63%
경상북도상주시	63	5	1	58	1.72%
경상북도영덕군	70	10	2	60	3.33%
경상북도영주시	64	1	2	63	3.17%
경상북도청도군	62	1	5	61	8.20%
광주광역시남구	47	15	2	32	6.25%
광주광역시동구	44	5	4	39	10.26%
대구광역시서구	62	2	18	60	30.00%
대구광역시중구	61	20	7	41	17.07%
부산광역시기장군	40	30	1	10	10.00%
부산광역시연제구	42	8	2	34	5.88%
울산광역시동구	58	9	4	49	8.16%
울산광역시북구	42	2	1	40	2.50%
울산광역시중구	62	2	3	60	5.00%
인천광역시강화군	55	30	2	25	8.00%
인천광역시동구	57	12	1	45	2.22%
인천광역시중구	61	2	42	59	71.19%
전라남도강진군	72	26	1	46	2.17%
전라남도고흥군	63	13	3	50	6.00%
전라남도광양시	23	5	2	18	11.11%
전라남도무안군	60	29	2	31	6.45%
전라남도보성군	64	22	1	42	2.38%
전라남도영암군	68	12	5	56	8.93%
전라남도장흥군	60	23	1	37	2.70%
전라남도화순군	73	19	2	54	3.70%
전라북도고창군	63	12	4	51	7.84%
전라북도김제시	60	9	2	51	3.92%
전라북도순창군	62	29	3	33	9.09%
전라북도완주군	58	18	4	40	10.00%
전라북도정읍시	61	6	2	55	3.64%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	63	8	5	55	9.09%

	충청남도공주시	62	8	4	54	7.41%
	충청남도논산시	54	1	1	53	1.89%
	충청남도당진시	61	8	6	53	11.32%
	충청남도서산시	61	28	1	33	3.03%
	충청남도예산군	62	18	9	44	20.45%
	충청남도태안군	62	26	1	36	2.78%
	충청남도홍성군	62	6	23	56	41.07%
	충청북도괴산군	68	1	1	67	1.49%
	충청북도보은군	65	5	1	60	1.67%
	충청북도진천군	65	8	17	57	29.82%
	충청북도청주시서원구	22	6	5	16	31.25%
	충청북도청주시청원구	22	6	1	16	6.25%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	22	12	3	10	30.00%
	8	강원도춘천시	63	5	4	58
경기도군포시		61	5	35	56	62.50%
경기도성남시중원구		49	14	1	35	2.86%
경기도수원시영통구		58	16	15	42	35.71%
경기도수원시팔달구		61	1	3	60	5.00%
경기도용인시수지구		34	2	5	32	15.63%
경기도용인시처인구		40	4	31	36	86.11%
경기도하남시		37	7	1	30	3.33%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		40	2	2	38	5.26%
경상북도경산시		62	2	1	60	1.67%
경상북도경주시		48	5	1	43	2.33%
경상북도안동시		62	29	3	33	9.09%
경상북도포항시남구		55	5	4	50	8.00%
경상북도포항시북구		56	2	2	54	3.70%
대구광역시달성군		61	8	17	53	32.08%
대전광역시동구		50	10	3	40	7.50%
대전광역시중구		58	26	3	32	9.38%
부산광역시남구		43	11	2	32	6.25%
부산광역시동래구		42	5	5	37	13.51%
부산광역시사상구		43	2	2	41	4.88%
서울특별시금천구		37	21	2	16	12.50%
서울특별시용산구		30	26	1	4	25.00%
서울특별시종로구		35	2	2	33	6.06%
울산광역시울주군		55	18	4	37	10.81%
전라남도목포시		65	30	3	35	8.57%
전라남도순천시		61	13	3	48	6.25%

	전라남도여수시	60	8	24	52	46.15%
	전라북도익산시	68	1	2	67	2.99%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	36	19	2	17	11.76%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	61	21	3	40	7.50%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	22	2	4	20	20.00%
	충청북도충주시	61	4	1	57	1.75%
9	강원도원주시	61	6	4	55	7.27%
	경기도고양시덕양구	35	2	2	33	6.06%
	경기도광명시	48	19	3	29	10.34%
	경기도김포시	23	8	2	15	13.33%
	경기도수원시권선구	58	7	7	51	13.73%
	경기도안산시단원구	61	5	10	56	17.86%
	경기도안산시상록구	57	5	45	52	86.54%
	경기도용인시기흥구	35	6	27	29	93.10%
	경기도의정부시	30	8	8	22	36.36%
	경기도파주시	42	5	118	37	318.92%
	경상북도구미시	63	5	6	58	10.34%
	광주광역시북구	42	20	5	22	22.73%
	광주광역시서구	44	7	1	37	2.70%
	대구광역시동구	61	7	8	54	14.81%
	대구광역시수성구	58	8	20	50	40.00%
	부산광역시진구	35	2	2	33	6.06%
	서울특별시강동구	37	28	4	9	44.44%
	서울특별시강북구	37	4	4	33	12.12%
	서울특별시광진구	30	2	2	28	7.14%
	서울특별시구로구	37	2	12	35	34.29%
	서울특별시도봉구	21	9	1	12	8.33%
	서울특별시동대문구	61	1	2	60	3.33%
	서울특별시동작구	33	20	6	13	46.15%
	서울특별시마포구	40	2	18	38	47.37%
	서울특별시서대문구	51	4	4	47	8.51%
	서울특별시서초구	30	3	16	27	59.26%
	서울특별시성북구	41	1	1	40	2.50%
	서울특별시양천구	30	28	1	2	50.00%
	서울특별시중랑구	61	19	4	42	9.52%
	울산광역시남구	61	8	2	53	3.77%
	인천광역시계양구	49	8	2	41	4.88%
	인천광역시미추홀구	44	13	41	31	132.26%
	인천광역시연수구	44	5	36	39	92.31%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	36	8	4	28	14.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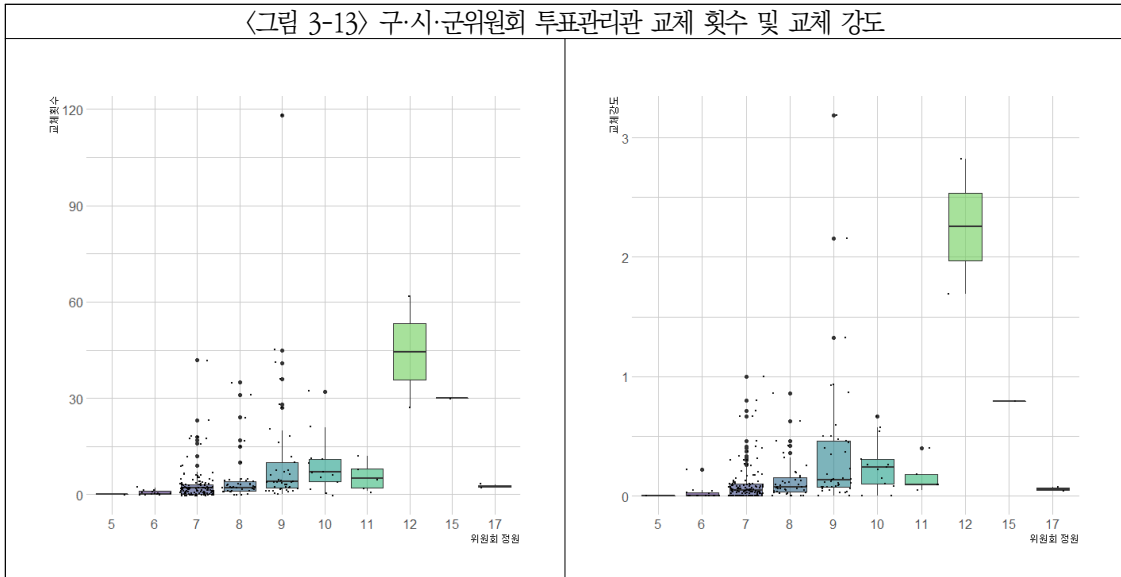
	충청남도아산시	57	2	4	55	7.27%
10	경기도성남시분당구	49	1	7	48	14.58%
	경상남도김해시	54	4	5	50	10.00%
	경상남도진주시	63	12	4	51	7.84%
	대구광역시북구	58	2	32	56	57.14%
	대전광역시서구	51	1	11	50	22.00%
	부산광역시해운대구	41	2	21	39	53.85%
	서울특별시관악구	37	1	11	36	30.56%
	인천광역시부평구	33	8	6	25	24.00%
	인천광역시서구	40	1	10	39	25.64%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40	13	7	27	25.93%
11	경기도평택시	37	7	12	30	40.00%
	대구광역시달서구	56	1	5	55	9.09%
	서울특별시강남구	49	28	2	21	9.52%
	인천광역시남동구	49	4	8	45	17.78%
12	서울특별시강서구	37	15	62	22	281.82%
	서울특별시송파구	19	3	27	16	168.75%
15	경기도남양주시	43	5	30	38	78.95%
17	경기도부천시	55	7	2	48	4.17%
	경기도화성시	47	5	3	42	7.14%

- 경기도 파주시는 118명의 교체가 37일 동안 이루어졌음

- 투표관리관이 선거 1일 이전에 이루어진 구·시·군위원회는 경기도가평군, 경기도성남시수정구, 경기도수원시장안구, 경기도양평군, 경상북도영주시, 경상북도청도군, 충청남도논산시, 충청북도괴산군, 경기도수원시팔달구, 전라북도익산시, 서울특별시동대문구, 서울특별시성북구, 경기도성남시분당구, 대전광역시서구, 서울특별시관악구, 인천광역시서구, 대구광역시달서구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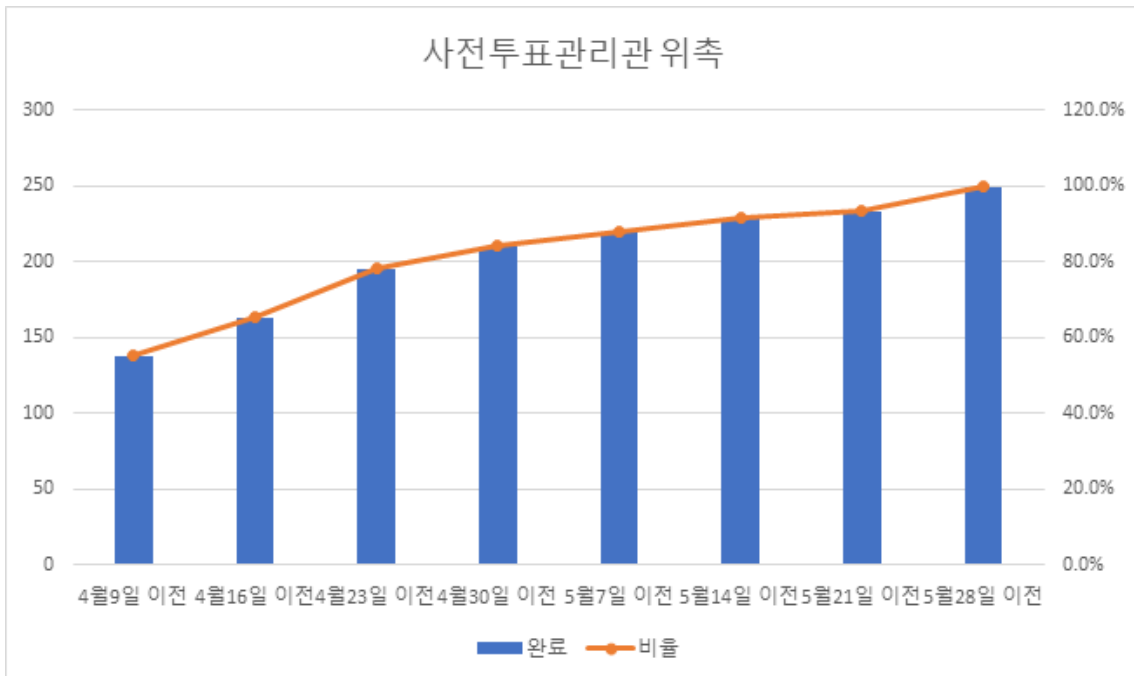
○ 아래의 그림의 왼편 그림에서는 투표관리관교체 횟수를 보여주고 있음. 구·시·군위원회 정원이 7인, 8인, 9인인 곳에서 빈번한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음

○오른편 그림에서는 투표관리관의 교체 강도를 교체횟수에서 교체가 이루어진 총기간으로 나누어 계산한 것으로 구·시·군위원회 정원 7인에서 11인에서 교체강도가 높음을 알 수 있음



○ 이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그림 3-14〉 사전투표관리관 위촉



〈표 3-5〉 사전투표 관리관 위촉 현황

구분	완료	비율	교체중	비율	합계
4월9일 이전	138	55.4%	111	44.6%	249
4월16일 이전	163	65.5%	86	34.5%	249
4월23일 이전	195	78.3%	54	21.7%	249
4월30일 이전	210	84.3%	39	15.7%	249
5월7일 이전	219	88.0%	30	12.0%	249
5월14일 이전	228	91.6%	21	8.4%	249
5월21일 이전	233	93.6%	16	6.4%	249
5월28일 이전	249	100.0%	0	0.0%	2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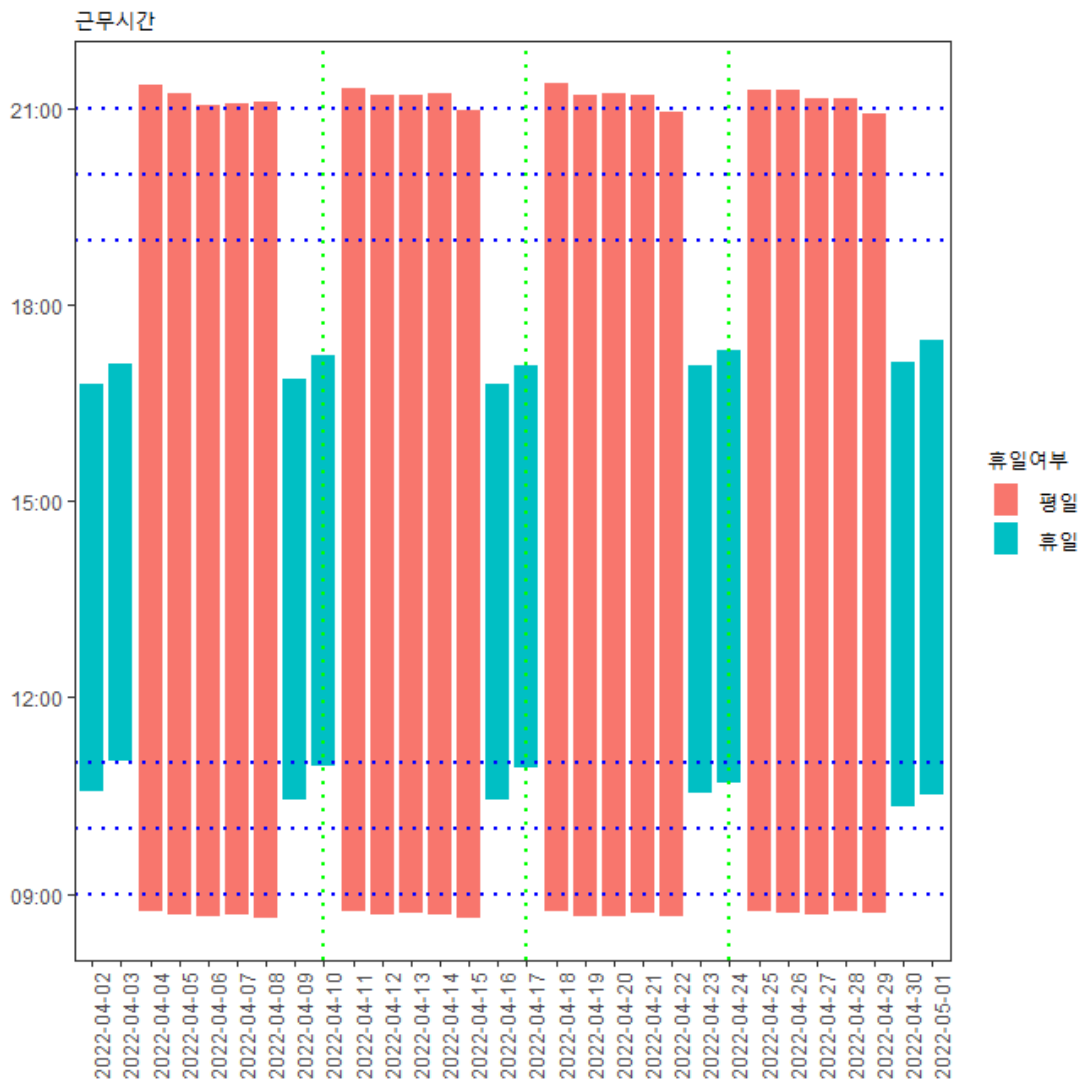
- 4월 9일 이전에는 전체선거구의 약 55.4% 138개소가 사전투표관리관 위촉을 완료하였지만, 심지어 투표 10일전인 5월 21일에도 16개 선거구가 사전투표관리관 위촉을 완료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

6. 근무 시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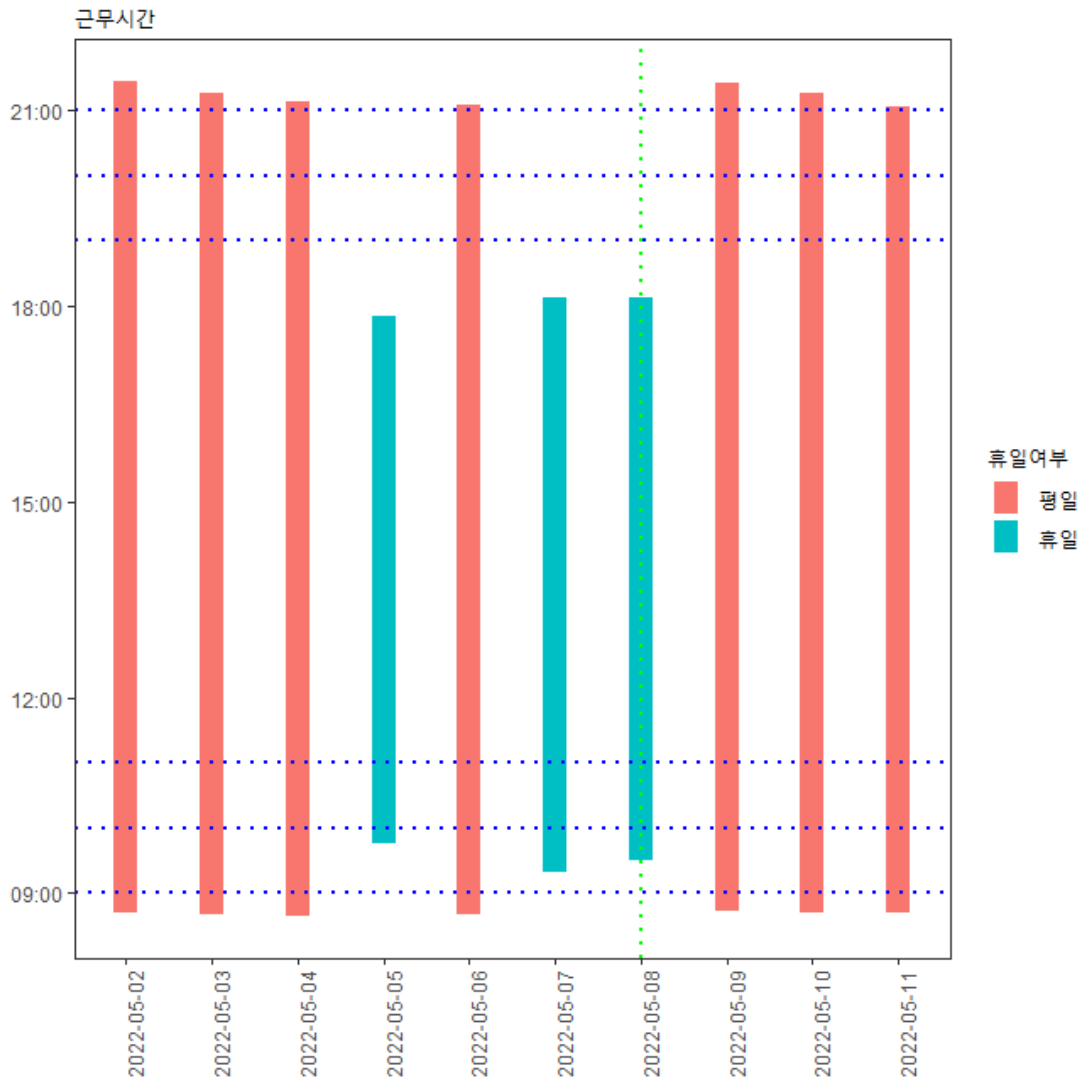
○ 기간별 근무시간 분포를 보면 다음과 같음

- 아래의 그림에서 휴일은 하늘색, 붉은색은 평일임
- 평균 근무시간은 D-60이후 거의 9시를 넘고 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휴일의 퇴근 시간도 오후 6시를 넘고 있을 정도로 힘든 상황임을 알 수 있음
- 5월 28일은 출근시간이 6시이며 선거 당일도 출근시간은 6시이며 퇴근을 하지 못하고 새벽부터 근무를 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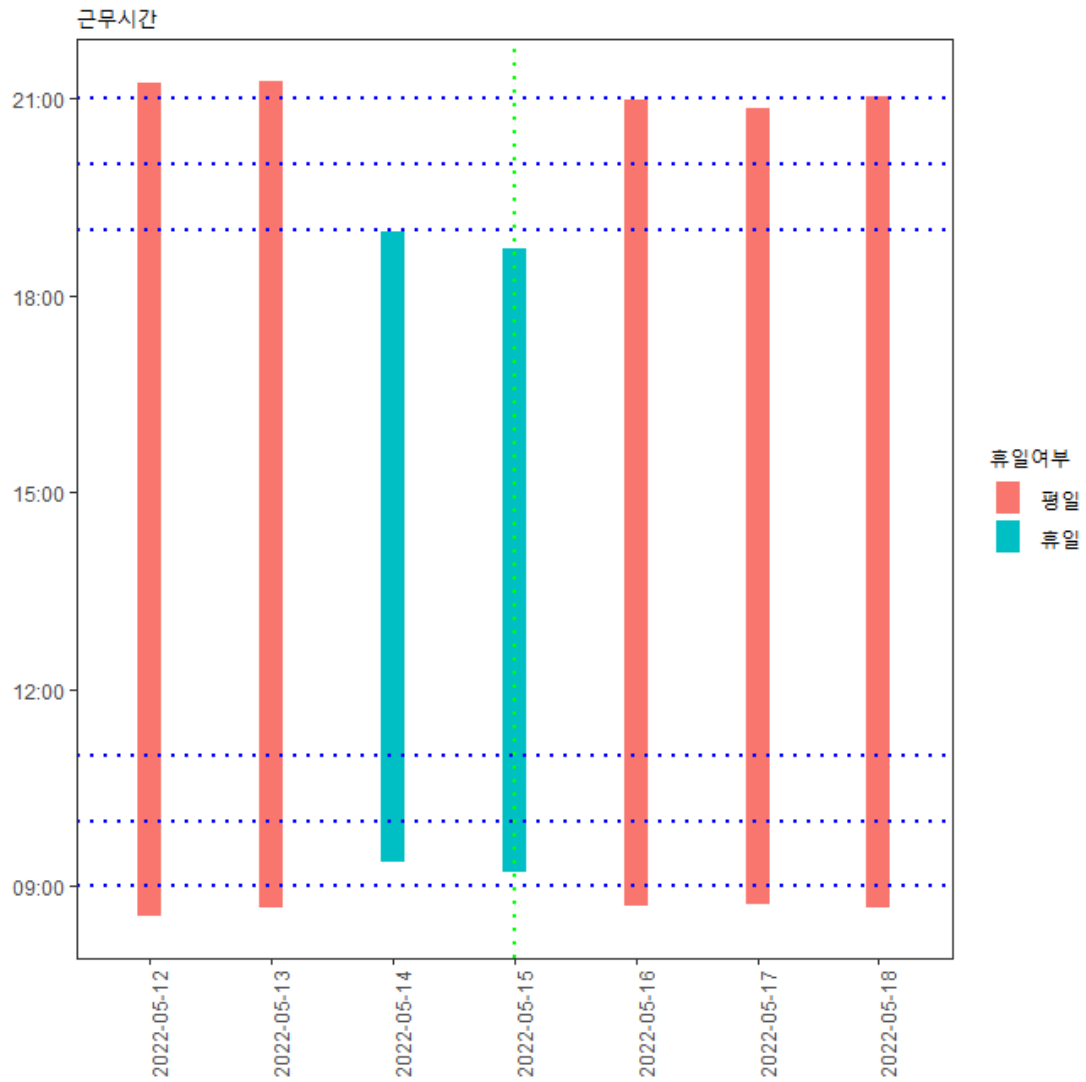
〈그림 3-15〉 D-60~D-31 근무시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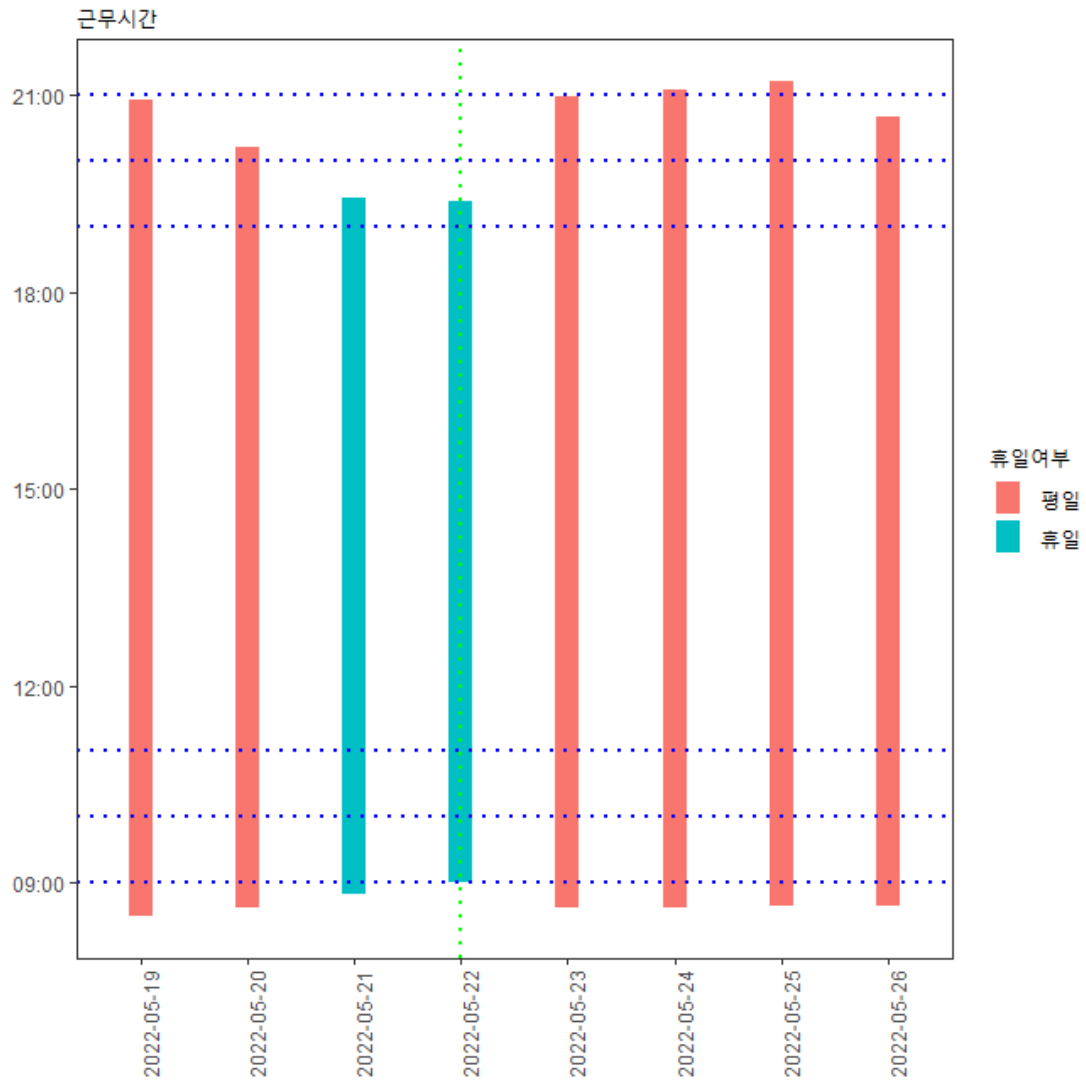
〈그림 3-16〉 D-30~후보자등록 전일 근무시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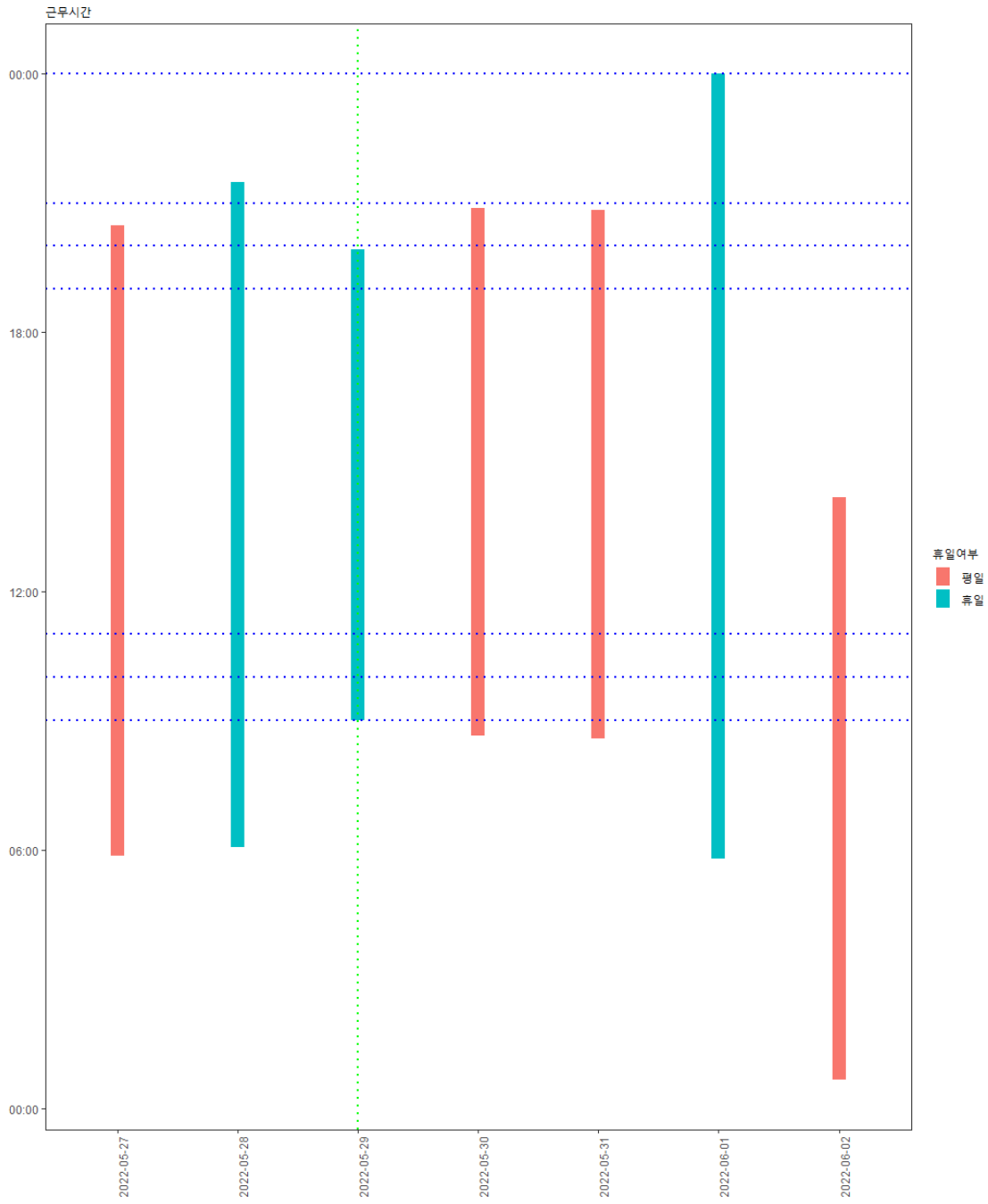
〈그림 3-17〉 후보자등록~선거기간까지 전일 근무시간 분포



〈그림 3-18〉 선거기간개시~사전투표 전일 근무시간 분포



〈그림 3-19〉 사전투표 이후 근무시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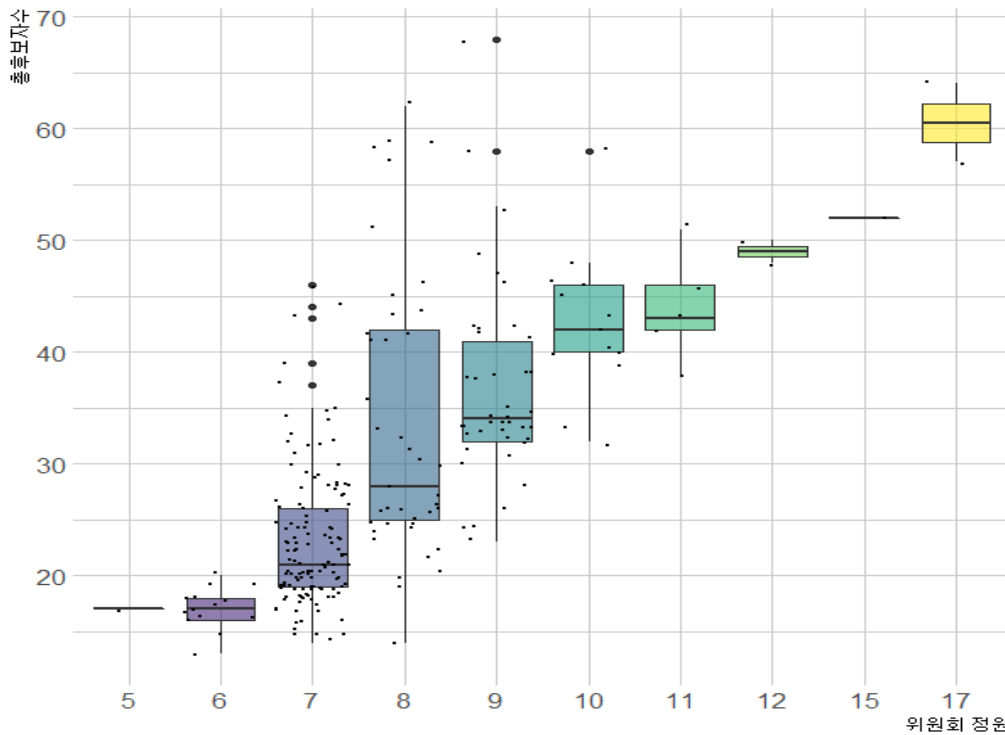
제2절 대리지표에 의한 구·시·군 선거위원회 업무량 분석

1. 후보자수와 선거운동 등

1) 후보자 수

- 후보자수는 등록서류 예비검토 관련 업무량을 측정할 수 있는 대리 지표로 볼 수 있음
 - 다음의 그림은 위원회 정원과 총후보자수의 관계를 표시한 것임
 - 위원회 정원 5인과 6인의 경우는 후보자수가 상대적으로 적음
 - 위원회 7인, 8인, 9인의 경우는 정원이 많은 위원회 보다 후보자수가 많은 위원회도 있어서 이러한 구에 대한 배려가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음

〈그림 3-20〉 구·시·군위원회 정원과 총후보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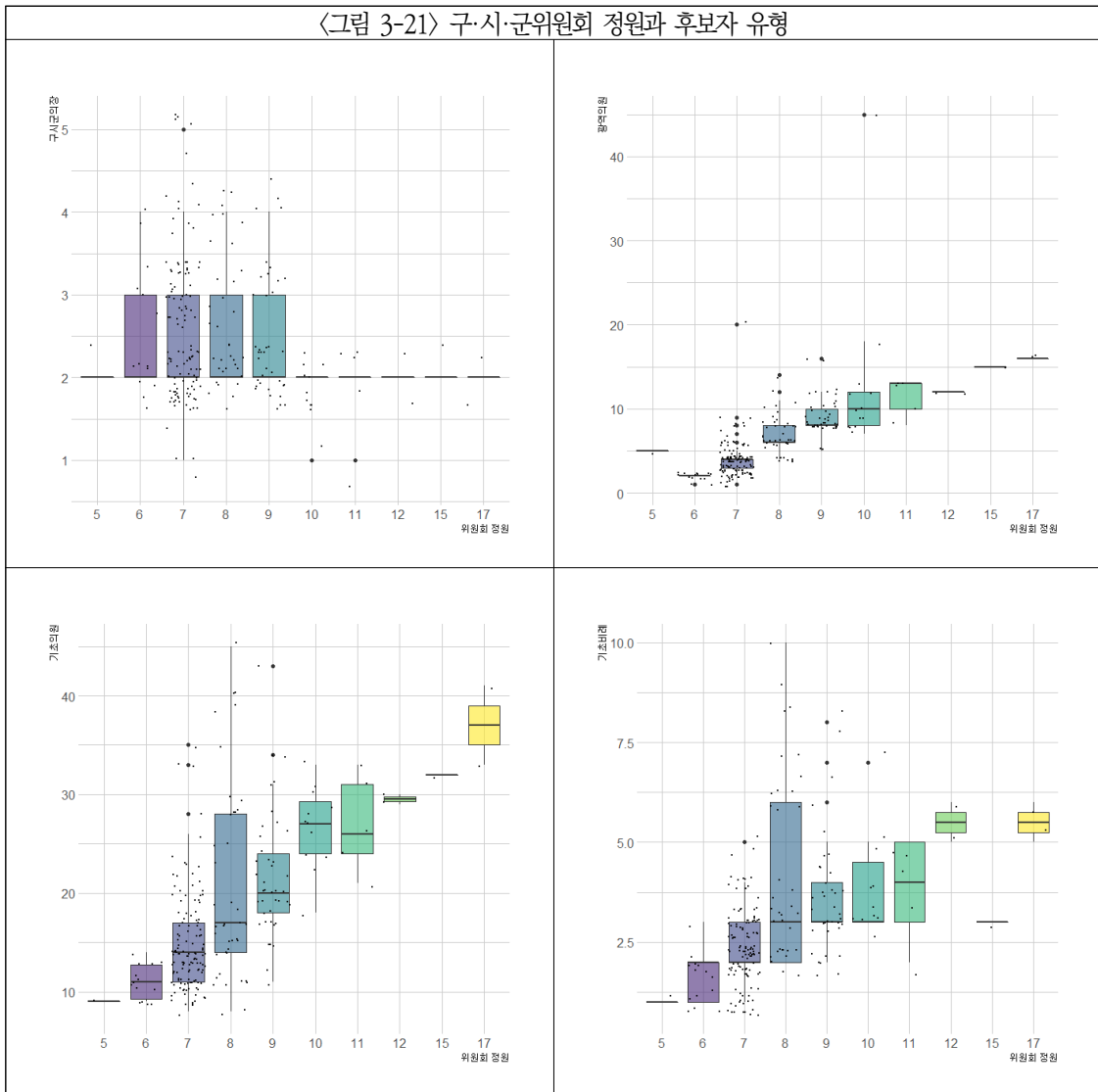
- 위원회 정원 7인, 8인, 9인이면서 총후보자수가 35인 이상인 위원회는 아래와 같음

〈표 3-6〉 구·시·군위원회 정원 7, 8, 9인 중 총후보자수 부담이 많은 위원회

위원회정원/이름	인구수	세대수	18세이상	사전투표소수	투표소수	총후보자수	
7	경상북도 김천시	140,326	68,511	120,671	22	53	46
	경상북도 상주시	95,629	49,057	85,025	24	56	44
	경상북도 영주시	101,982	50,311	89,484	19	47	35
	전라남도 광양시	150,682	67,254	125,602	12	46	37
	전라남도 나주시	116,846	59,134	99,231	20	42	39
	전라북도 정읍시	106,613	54,368	93,641	23	46	43
	충청남도 당진시	167,556	80,040	139,947	14	50	35
8	강원도 강릉시	213,127	103,121	185,974	21	65	45
	강원도 춘천시	287,660	131,789	245,452	25	85	58
	경상남도 거제시	241,514	104,079	194,554	18	62	43
	경상북도 경산시	268,601	125,101	231,056	15	78	41
	경상북도 경주시	252,213	123,395	221,044	23	71	51
	경상북도 안동시	157,053	77,779	136,616	24	74	42
	경북 포항시남구	230,975	109,613	198,007	15	80	44
	경북 포항시북구	273,213	123,002	231,823	15	84	36
	전라남도 목포시	218,754	103,369	183,520	23	66	57
	전라남도 순천시	281,614	124,266	235,894	24	86	59
	전라남도 여수시	276,987	128,463	237,415	27	116	59
	전라북도 군산시	265,679	122,625	225,442	27	85	41
	전라북도 익산시	278,475	130,342	240,082	29	87	62
	충남 천안서북구	360,243	154,483	290,150	12	91	46
충청북도 충주시	209,608	99,918	181,181	25	76	42	
9	강원도 원주시	358,102	165,372	302,578	25	90	58
	경기 고양덕양구	534,874	236,572	459,718	23	129	49
	경기도 파주시	484,027	212,698	400,741	17	135	38
	경상남도 양산시	355,048	153,491	293,772	13	92	46
	경상북도 구미시	412,905	182,969	339,035	25	100	68
	광주광역시 북구	427,366	196,043	363,372	28	109	53
	광주광역시 서구	291,377	133,019	248,106	18	71	38
	대구광역시 동구	341,614	158,751	297,098	22	94	41
	대구광역시 수성구	417,250	171,605	349,975	23	99	42
	부산부산진구	353,397	173,747	314,706	20	89	38
	서울특별시 강동구	463,390	202,814	398,189	18	101	42
	서울 동대문구	338,439	169,610	301,507	14	86	42

서울특별시 마포구	370,221	181,811	324,854	16	93	38
서울특별시 성북구	431,195	196,204	376,058	20	96	42
울산광역시 남구	314,423	139,179	269,006	14	70	35
인천 미추홀구	409,105	196,400	359,027	21	93	35
전북 전주완산구	367,961	167,090	312,647	20	94	47
충청남도 아산시	325,534	146,928	264,861	17	95	38

〈그림 3-21〉 구·시·군위원회 정원과 후보자 유형



- 아래의 그림은 후보자 유형별 후보자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위원회 정원 7인, 8인, 9인의 경우는 구시군의장선거 후보자수가 오히려 정원이 많은 곳보다 많으며, 광역의원선거 후보자수가 정원이 많은 위원회보다 많은 경우가 발견되고, 기초의원선거와 기초비례선거도

유사한 사례가 발견되고 있음

- 이는 위원회 정원이 실제 등록 후보자수에서 발생하는 업무량을 반영하고 있지 못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감안한 정원 추가 배정 또는 사무보조원의 추가 배정 등이 필요함

2) 각종 신고 신청건수

○ 각종 신고 신청 역시 업무량을 야기하는 주요 지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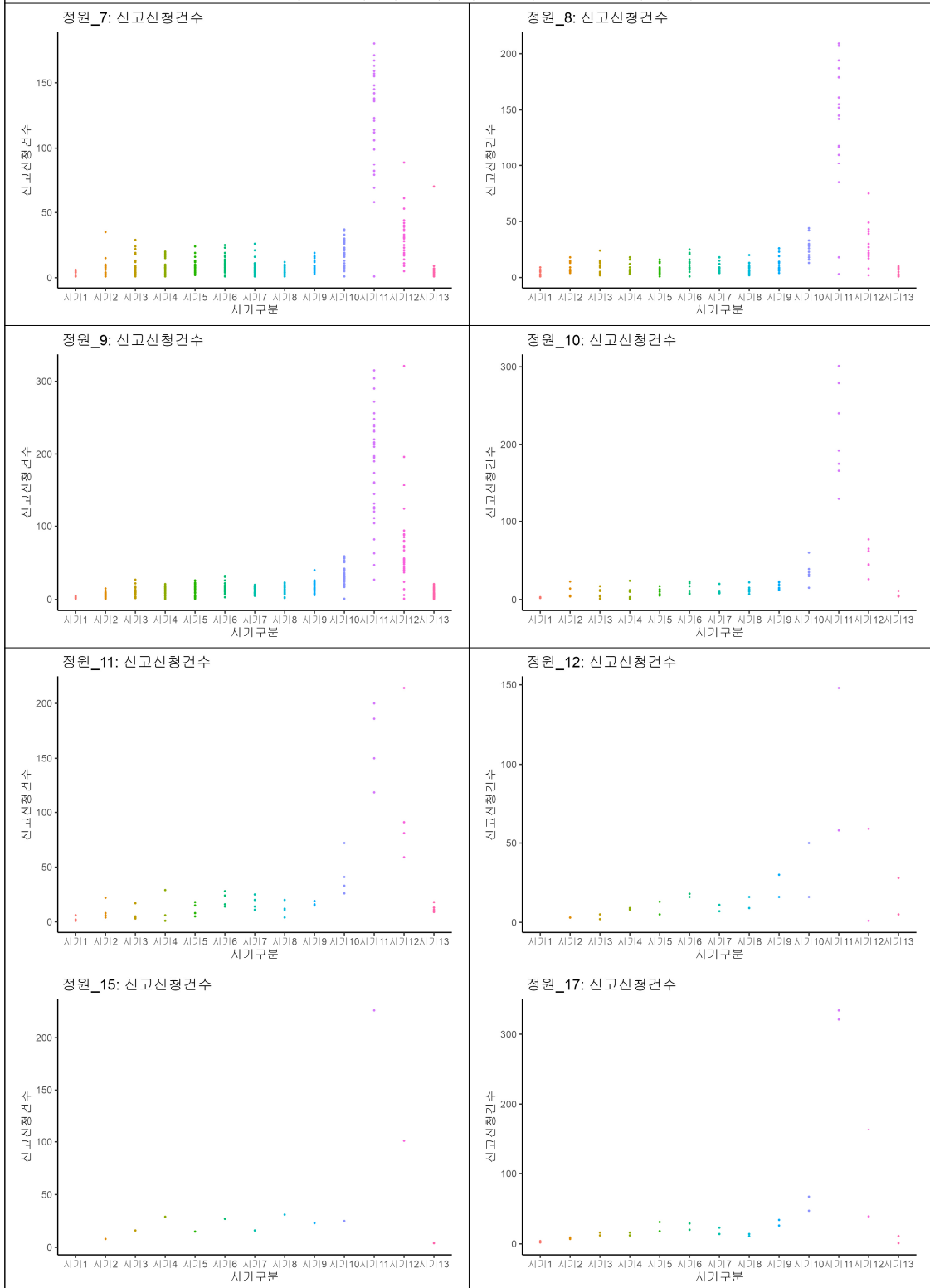
- 여기에서는 업무가 몰리는 시기 추이를 살펴보고자 함
- 여기의 시기 구분은 다음과 같음

〈표 3-7〉 신고 신청건수 분석에서의 시기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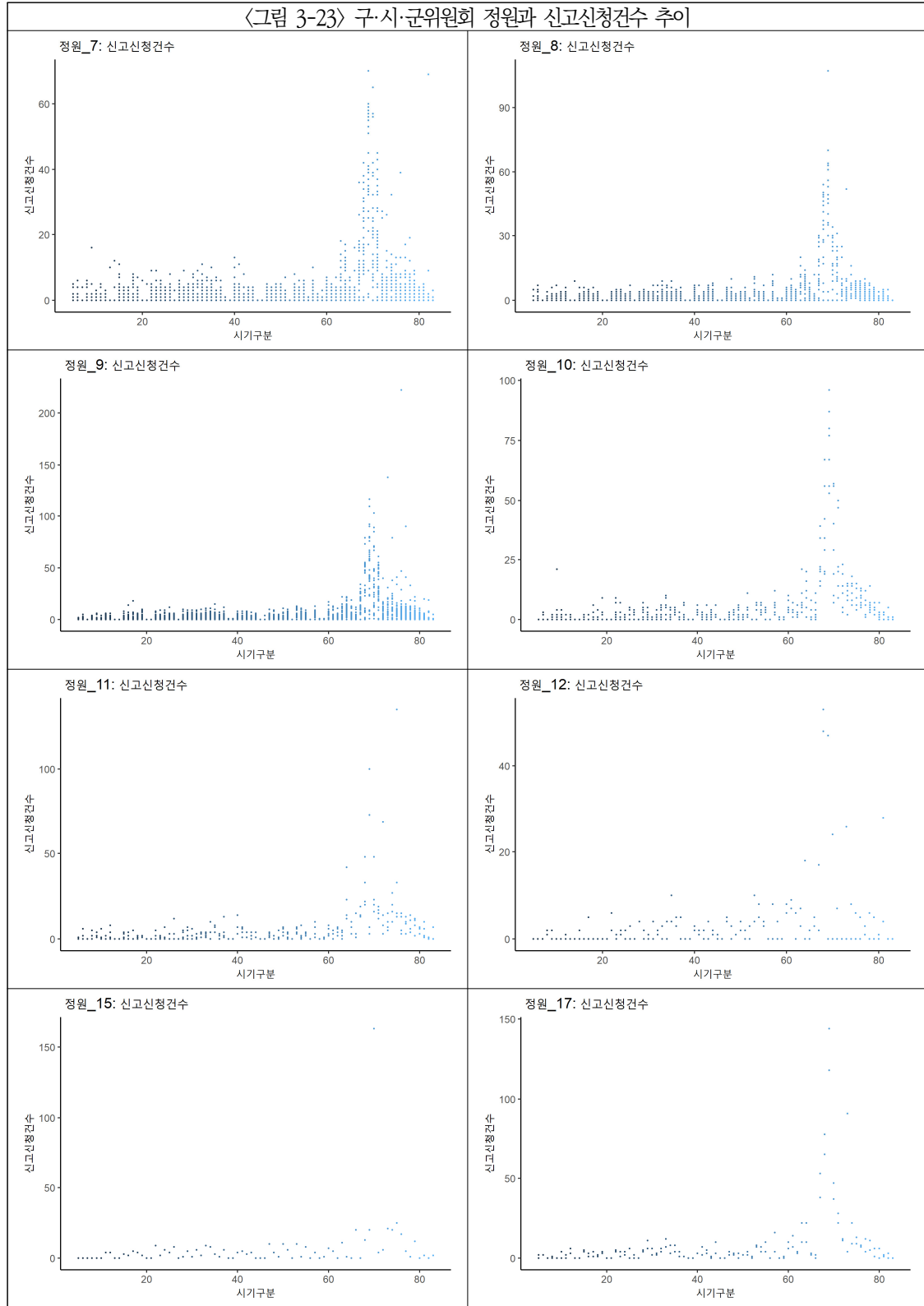
항목	시기
시기1	2022-03-06 - 2022-03-12
시기2	2022-03-13 - 2022-03-19
시기3	2022-03-20 - 2022-03-26
시기4	2022-03-27 - 2022-04-02
시기5	2022-04-03 - 2022-04-09
시기6	2022-04-10 - 2022-04-16
시기7	2022-04-17 - 2022-04-23
시기8	2022-04-24 - 2022-04-30
시기9	2022-05-01 - 2022-05-07
시기10	2022-05-08 - 2022-05-14
시기11	2022-05-15 - 2022-05-21
시기12	2022-05-22 - 2022-05-28
시기13	2022-05-29 - 2022-06-01

- 다음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고 신청건수는 시기 11 (2022-05-15 ~ 2022-05-21)에 피크를 이루고 있으며, 시기 12에도 상당수 존재하고 있음
 - 따라서 약 2주간은 추가적인 사무보조원 등의 운영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음

〈그림 3-22〉 구·시·군위원회 정원과 신고신청건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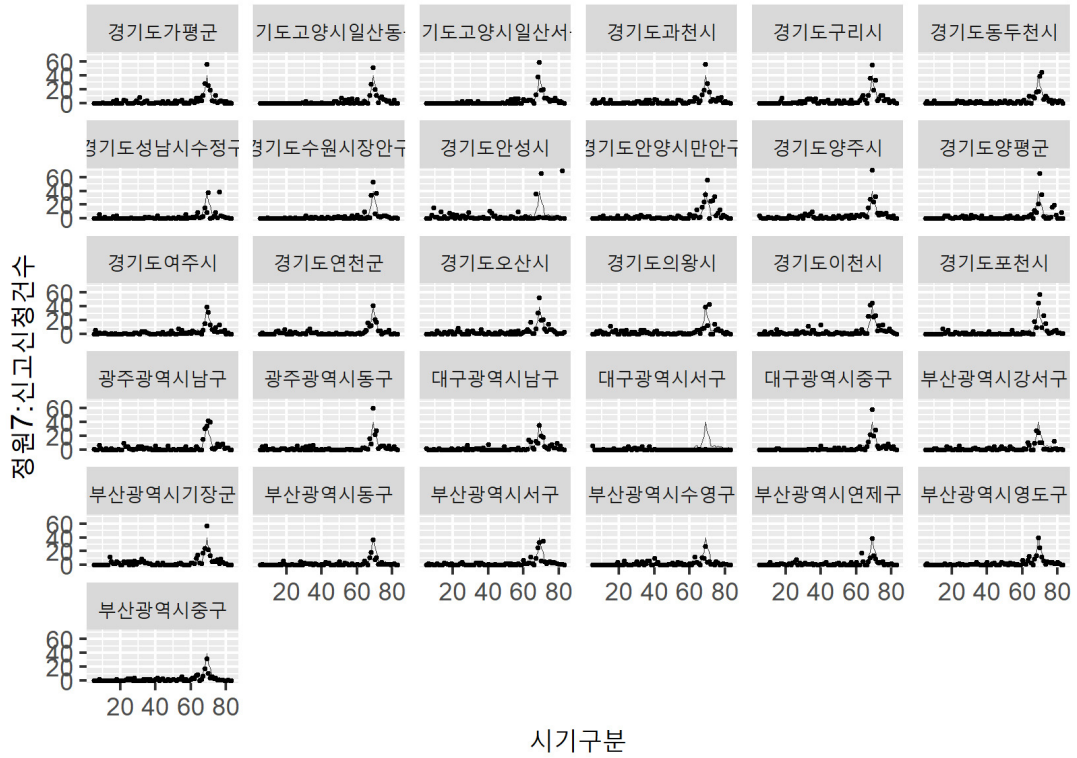


○ 신고 신청건수를 선거 당일까지 일일 분석을 하면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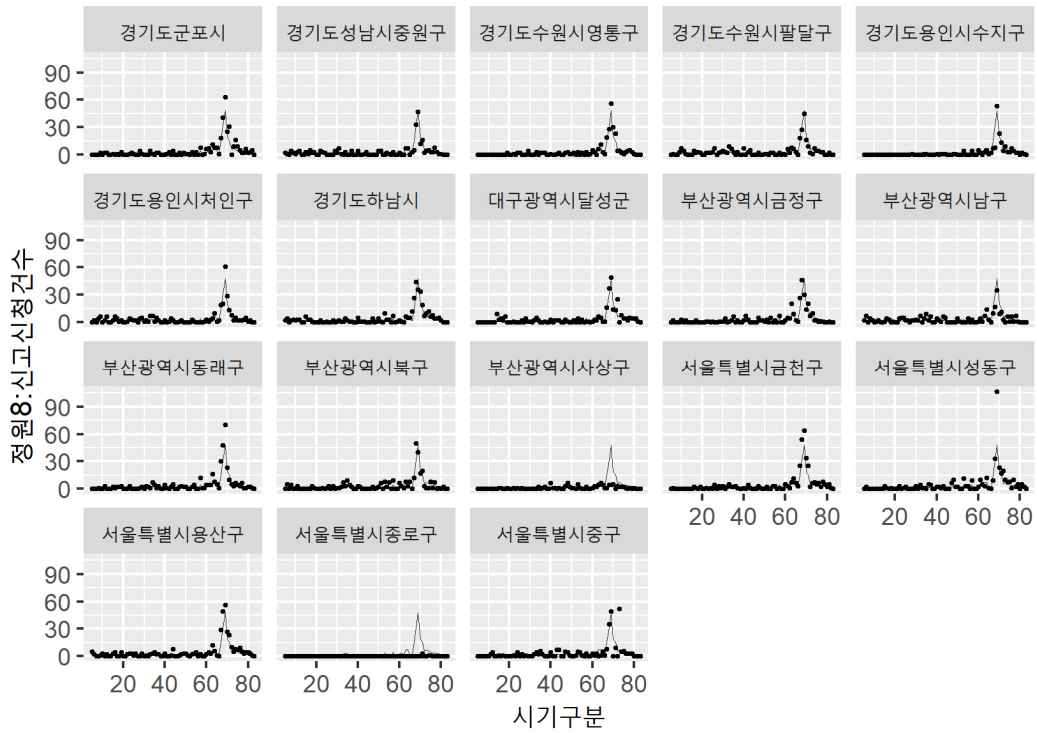


- 정원별 위원회별 신고 신청건수를 선거 당일까지 일일 분석을 하면 다음과 같음.
여기에서 점선은 구시군위원회 신고 신청건수이며, 실선은 정원별 신고 신청건수
평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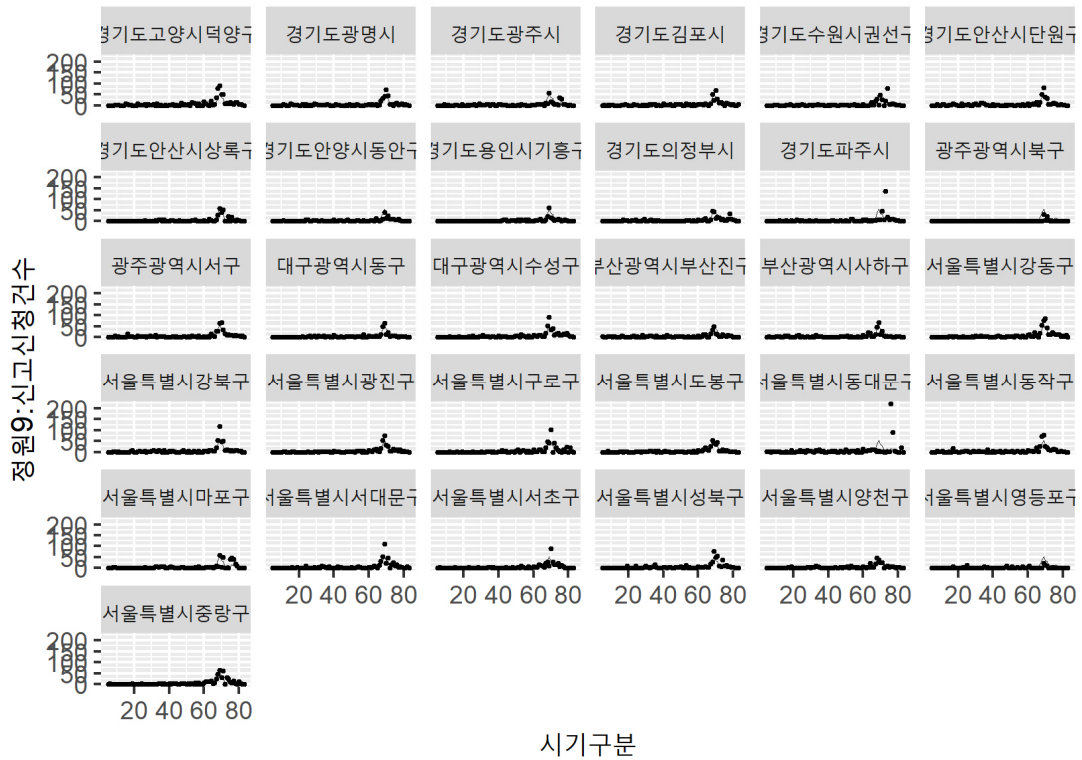
〈그림 3-24〉 정원 7인 위원회 신고신청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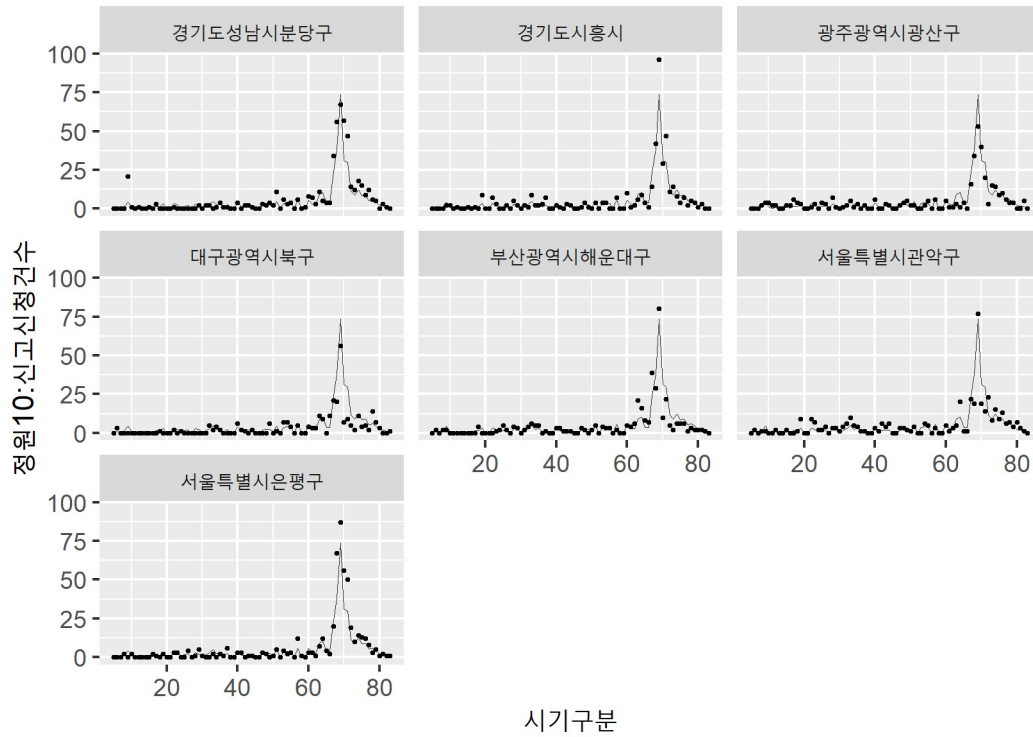
〈그림 3-25〉 정월 8인 위원회 신고신청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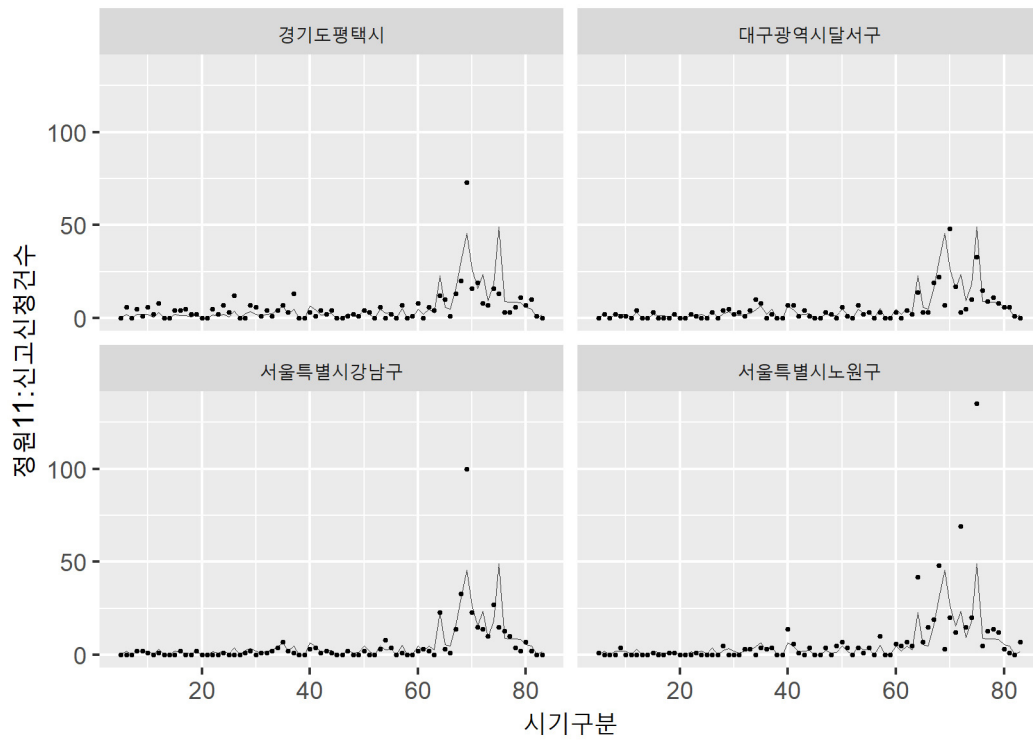
〈그림 3-26〉 정월 9인 위원회 신고신청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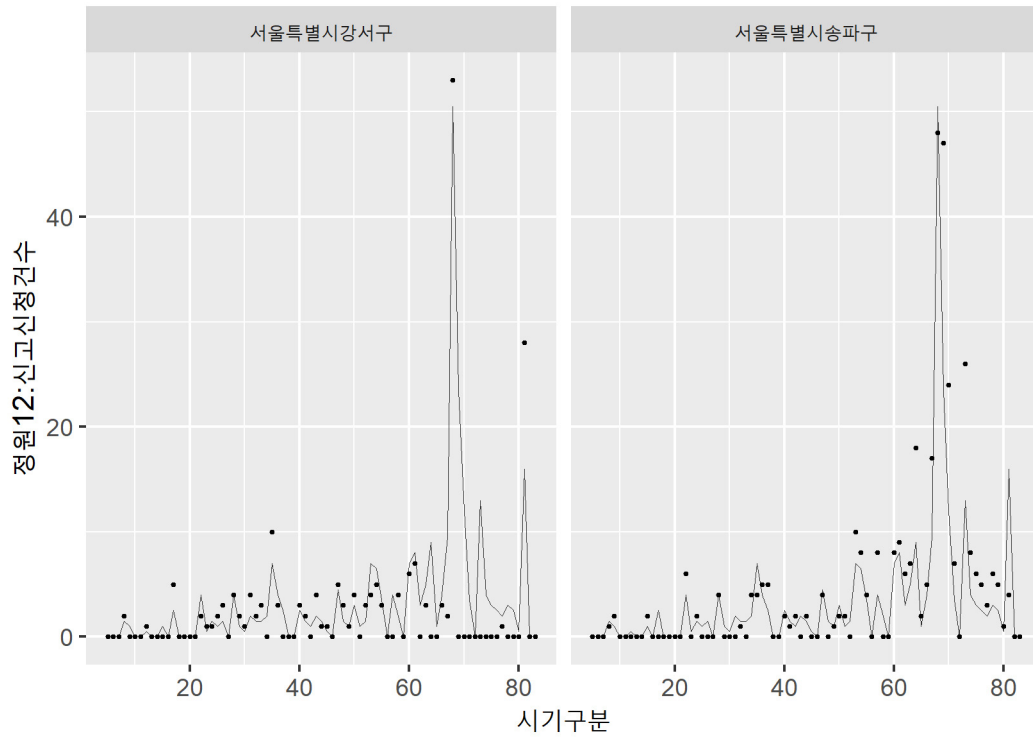
〈그림 3-27〉 정원 10인 위원회 신고신청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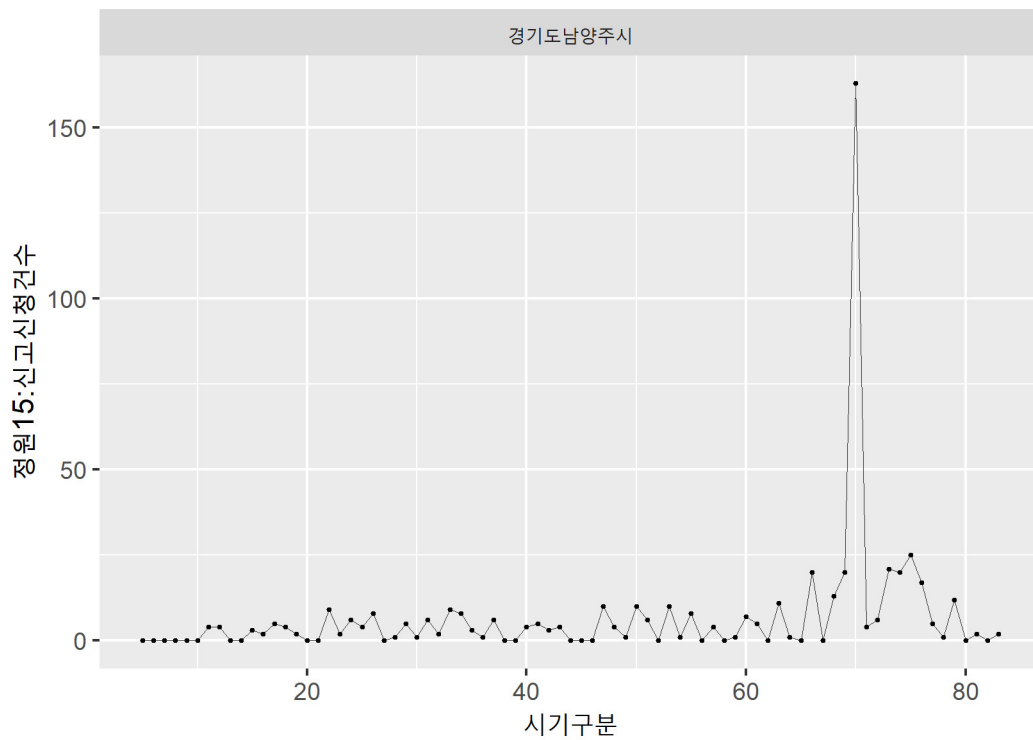
〈그림 3-28〉 정원 11인 위원회 신고신청건수



〈그림 3-29〉 정원 12인 위원회 신고신청건수



〈그림 3-30〉 정원 15인 위원회 신고신청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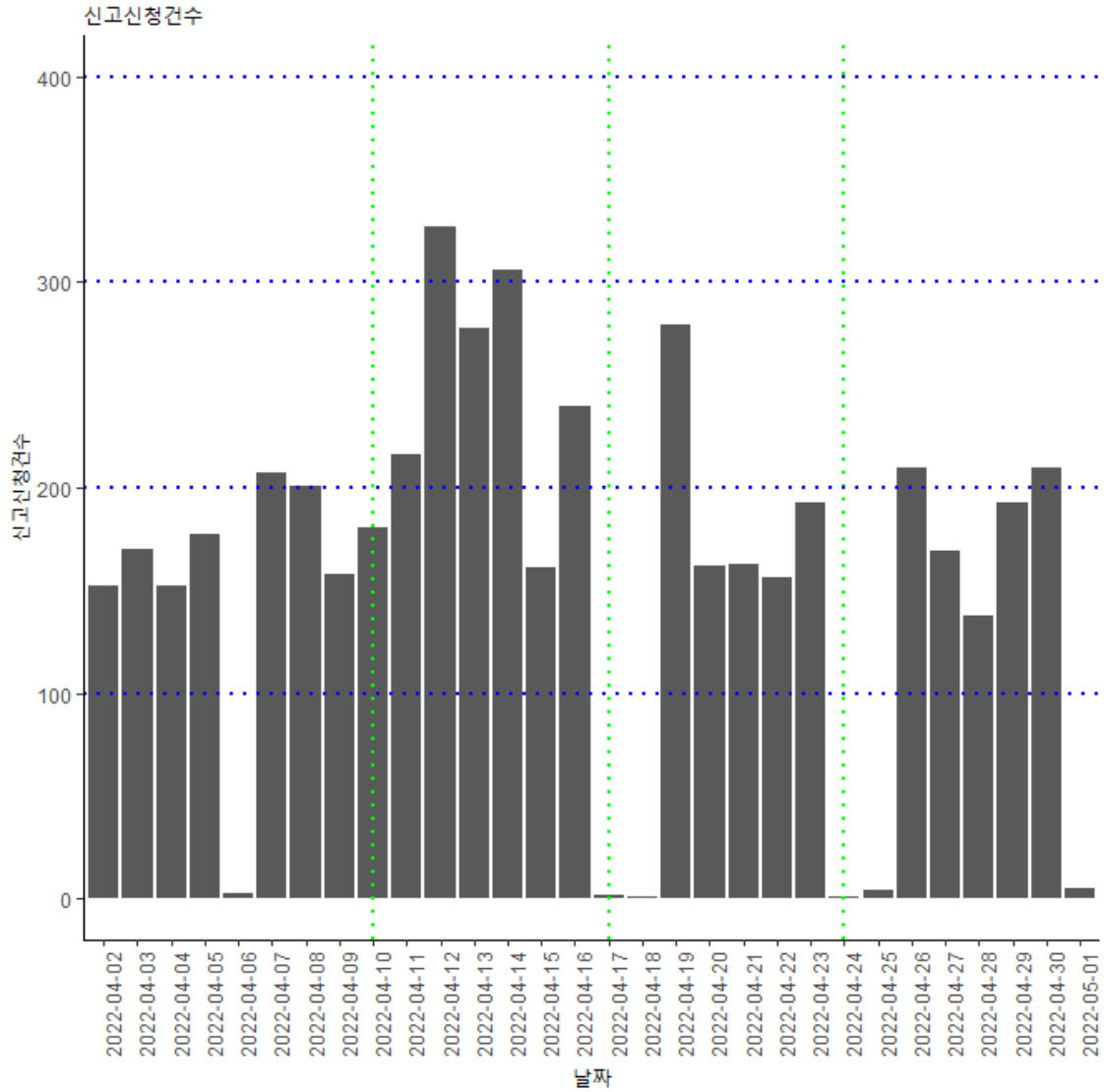


〈그림 3-31〉 정원 17인 위원회 신고신청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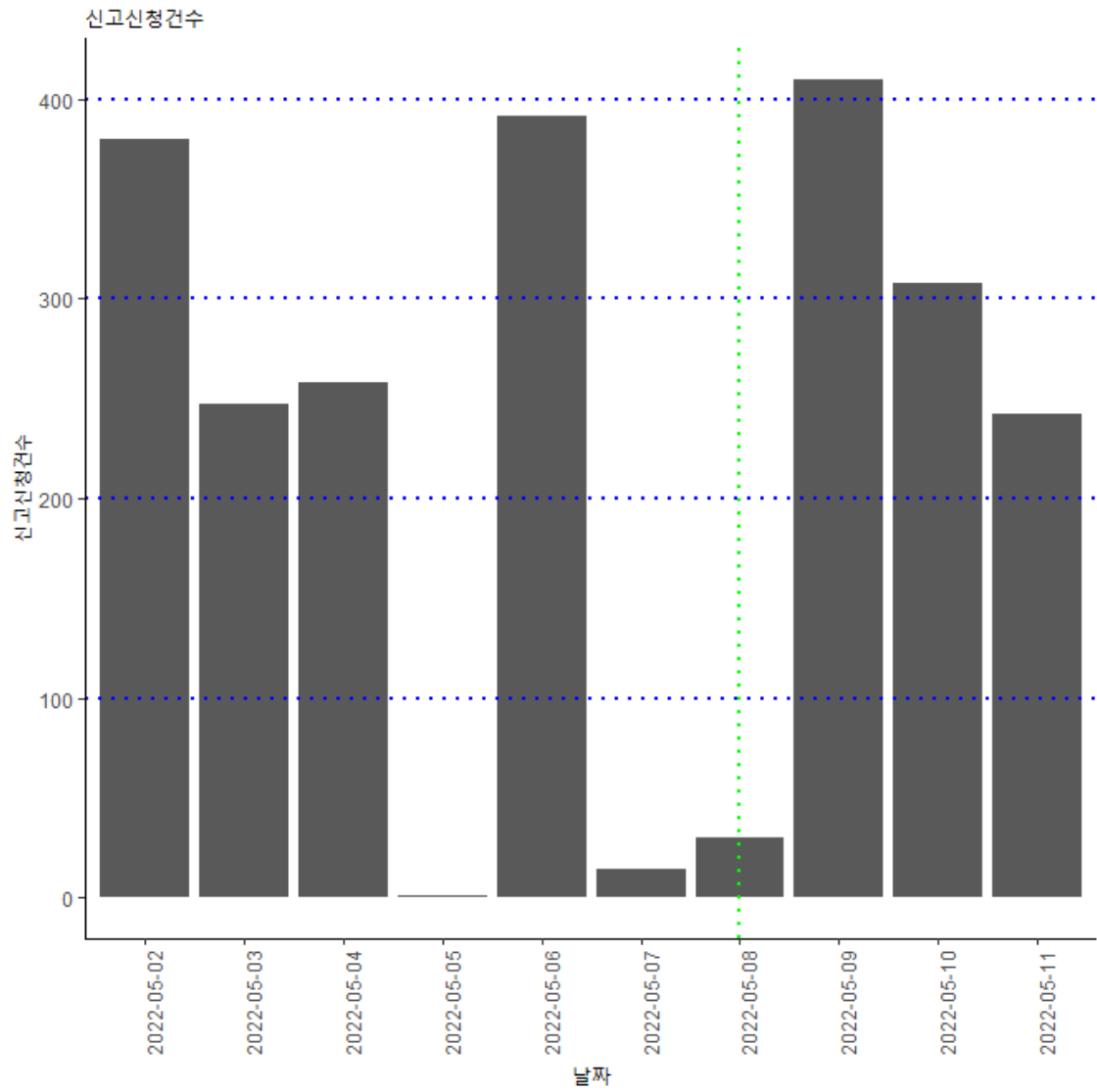


○ 기간별 신고신청 건수 전체를 보면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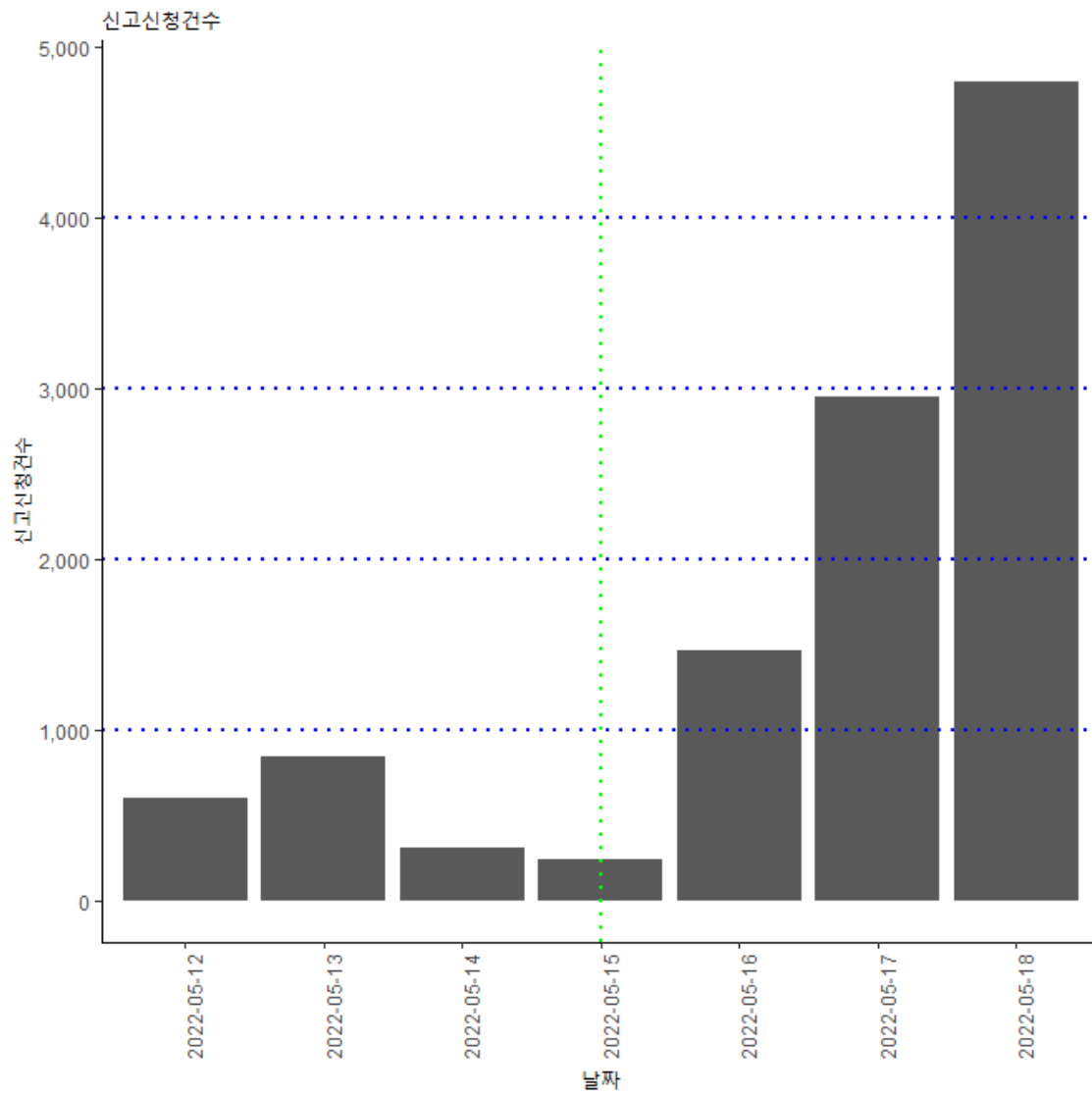
〈그림 3-32〉 D-60~D-31 신고신청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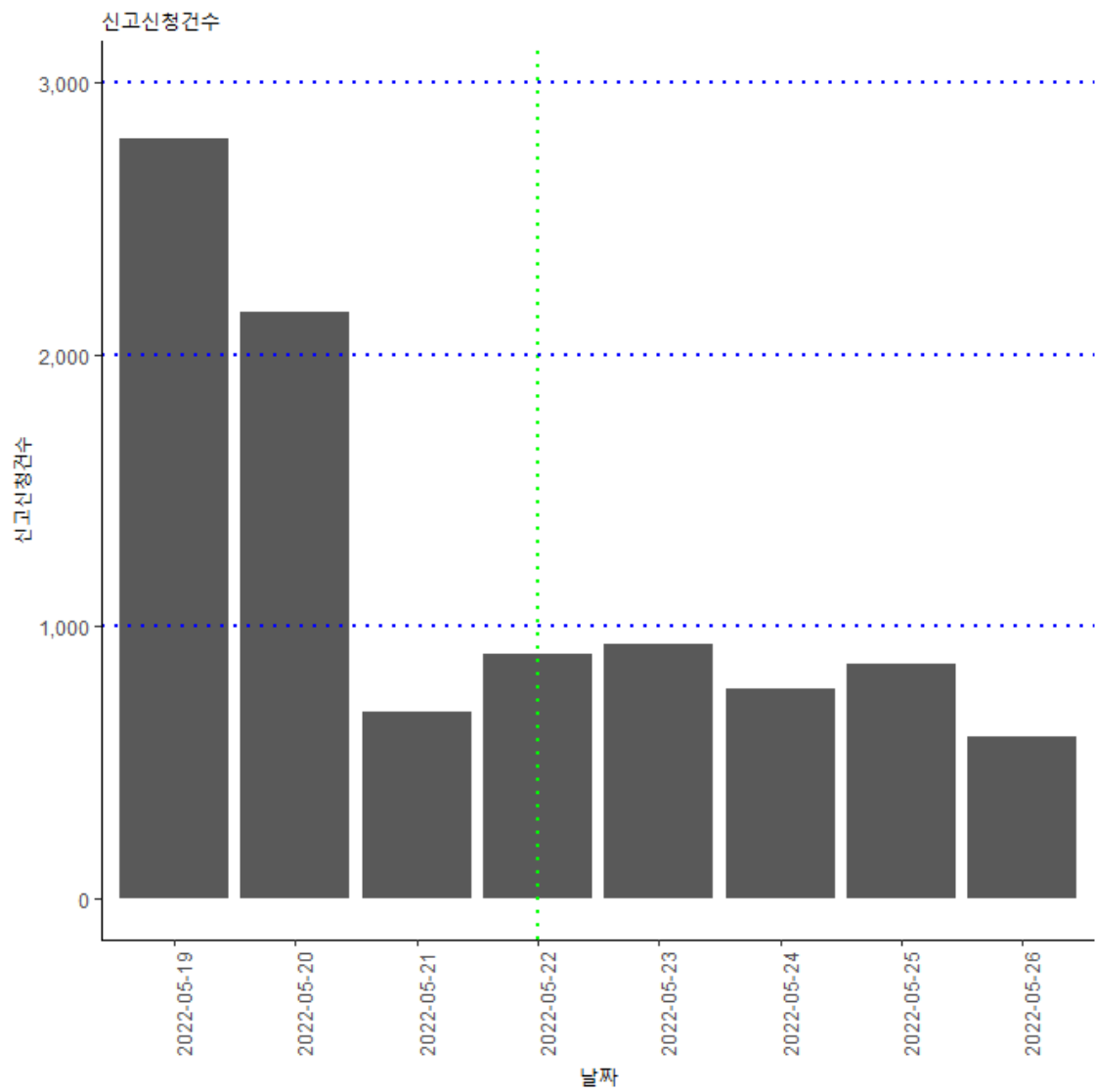
〈그림 3-33〉 D-30~후보자등록 전일 신고신청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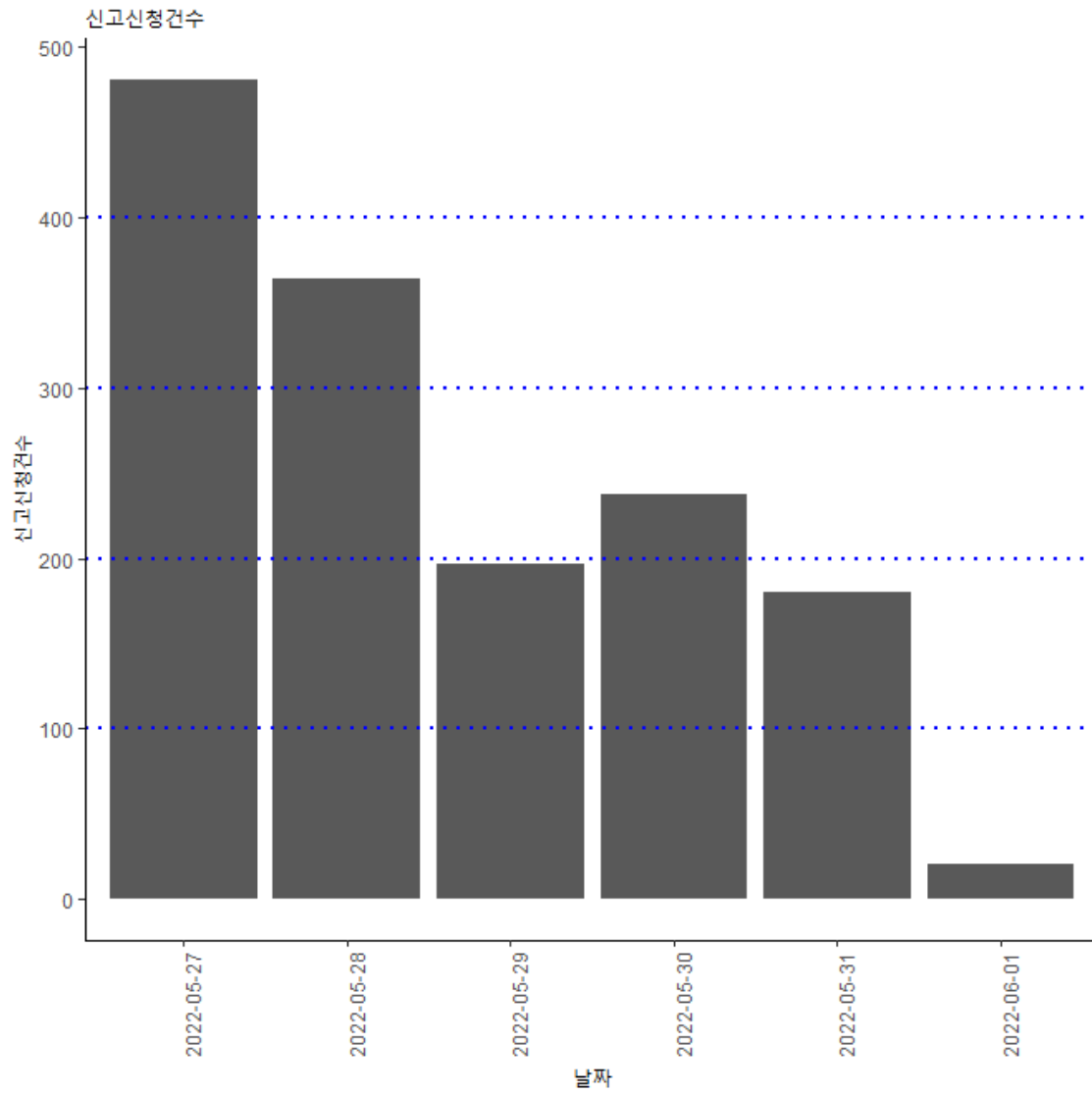
〈그림 3-34〉 후보자등록~선거기간개시 전일 신고신청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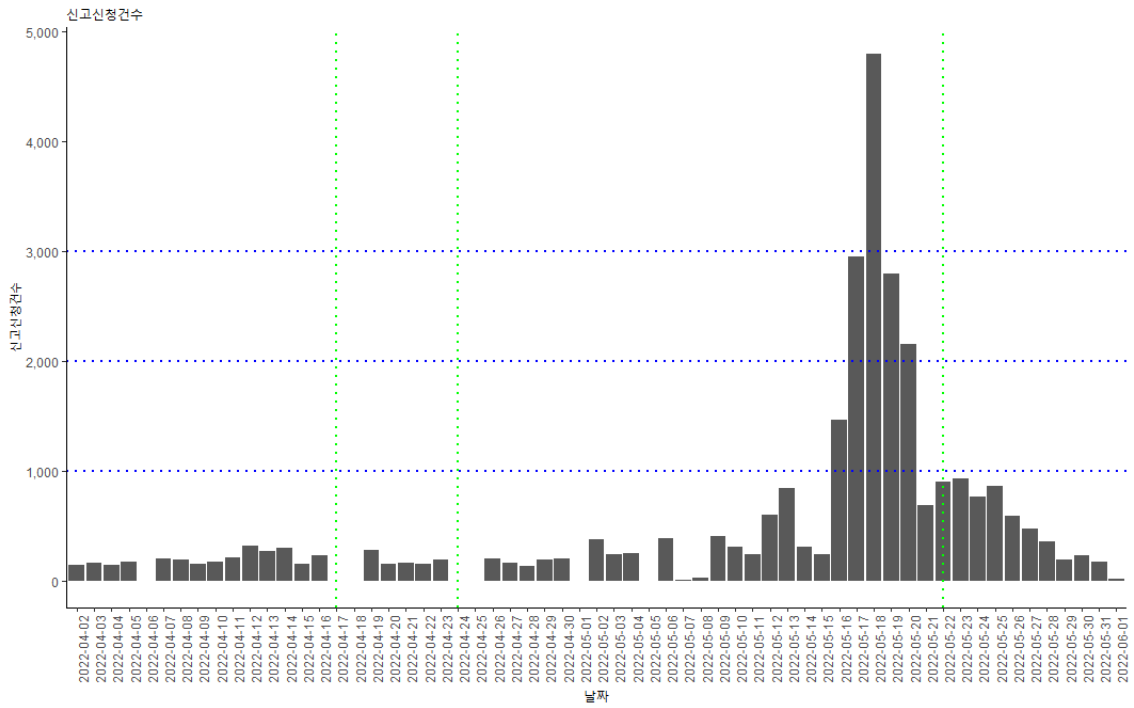
〈그림 3-35〉 선거기간개시~사전투표 전일 신고신청건수



〈그림 3-36〉 사전투표 이후 신고신청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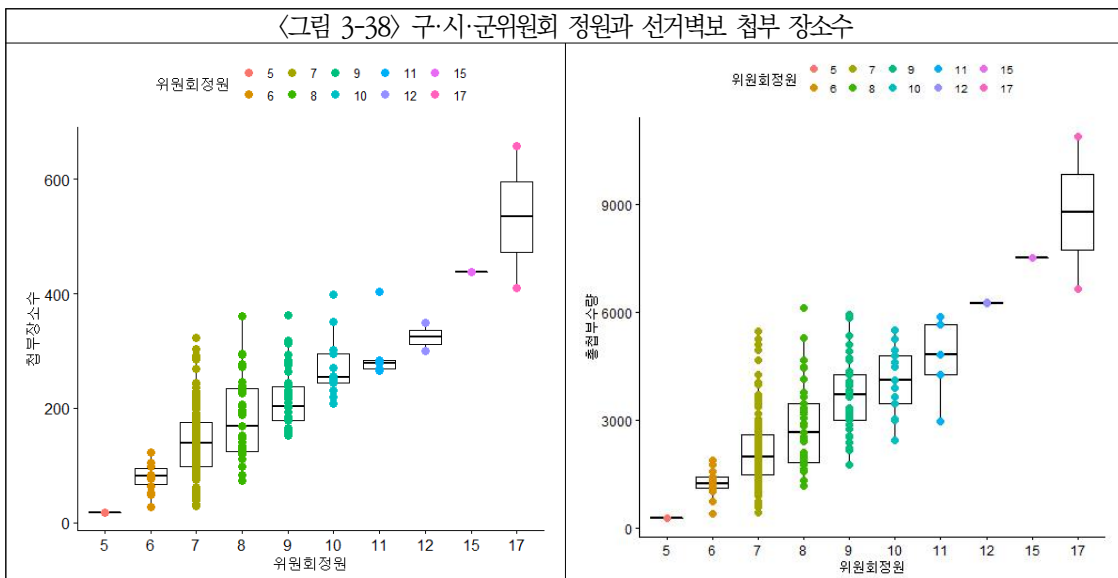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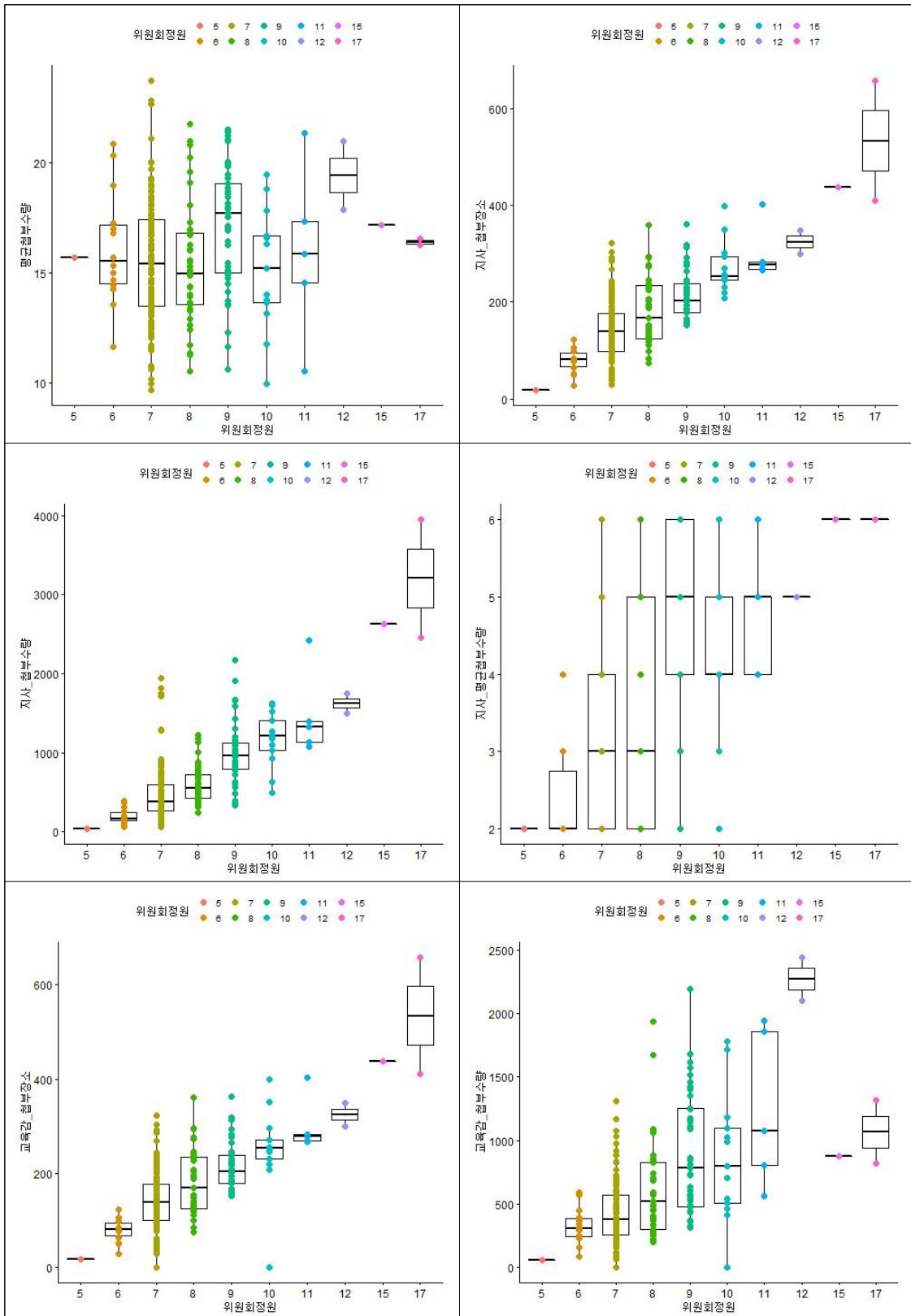
〈그림 3-37〉 전체기간 신고신청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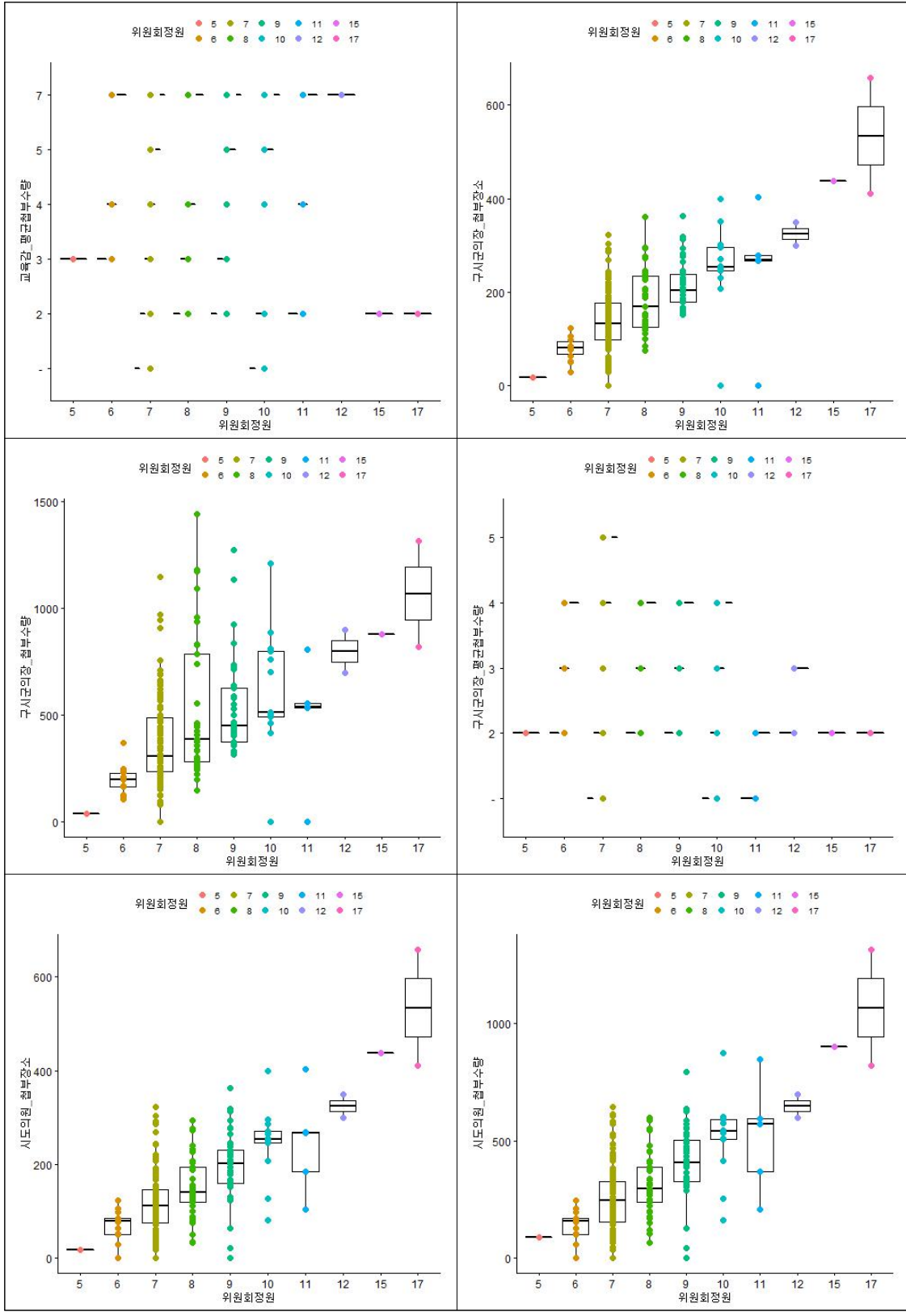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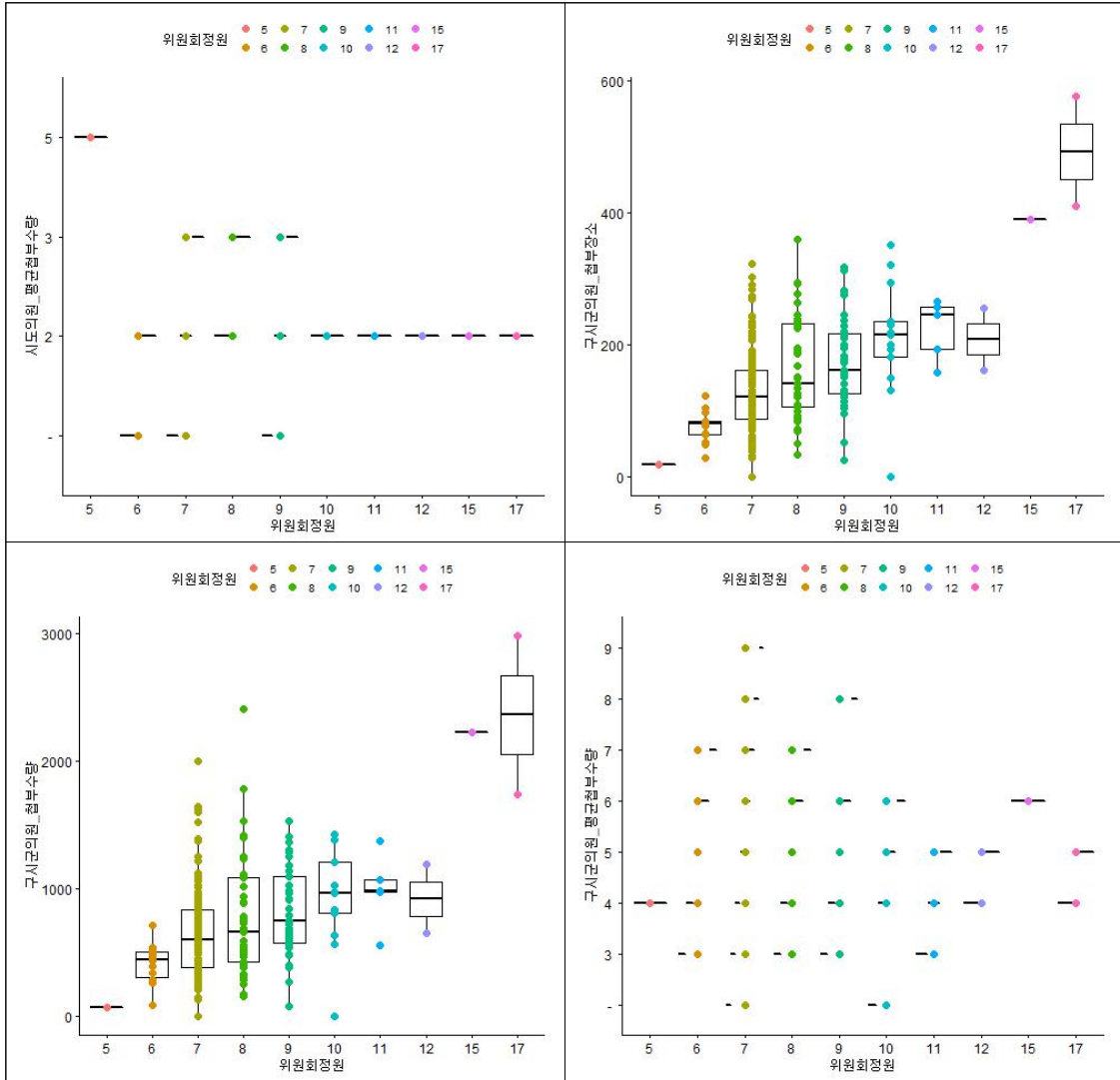
3) 선거벽보 첩부 장소수

- 여기에서는 선거벽보 첩부 장소수로 선거 관련 업무량을 측정하고자 함
 - 첩부장소수는 대체로 위원회 정원과 비례하고 있으나, 위원회 정원 7인부터 10인사이
는 첩부장소수에 큰 차이가 발견되고 있지 않아, 현행 정원은 첩부장소수를 반영하고 있지
않음
 - 총첩부수량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이 발견되고 있음
 - 평균첩부수량에서는 위원회 정원과 거의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첩부에 따른 업무량
반영을 위한 증원 필요함
 - 지사의 첩부장소는 위원회 정원에 비례하고 있음
 - 지사의 첩부수량도 위원회 정원과 비례하고 있으나, 위원회 정원 7인부터 10인사이
는 첩부수량에 큰 차이가 발견되고 있지 않음
 - 교육감선거의 경우도 시도지사선거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음
 - 구시군의장선거의 첩부장소는 위원회 정원에 비례하고 있음
 - 구시군의장선거의 첩부수량도 위원회 정원과 비례하고 있으나, 위원회 정원 7인부터 10인
사이
는 첩부수량에 큰 차이가 발견되고 있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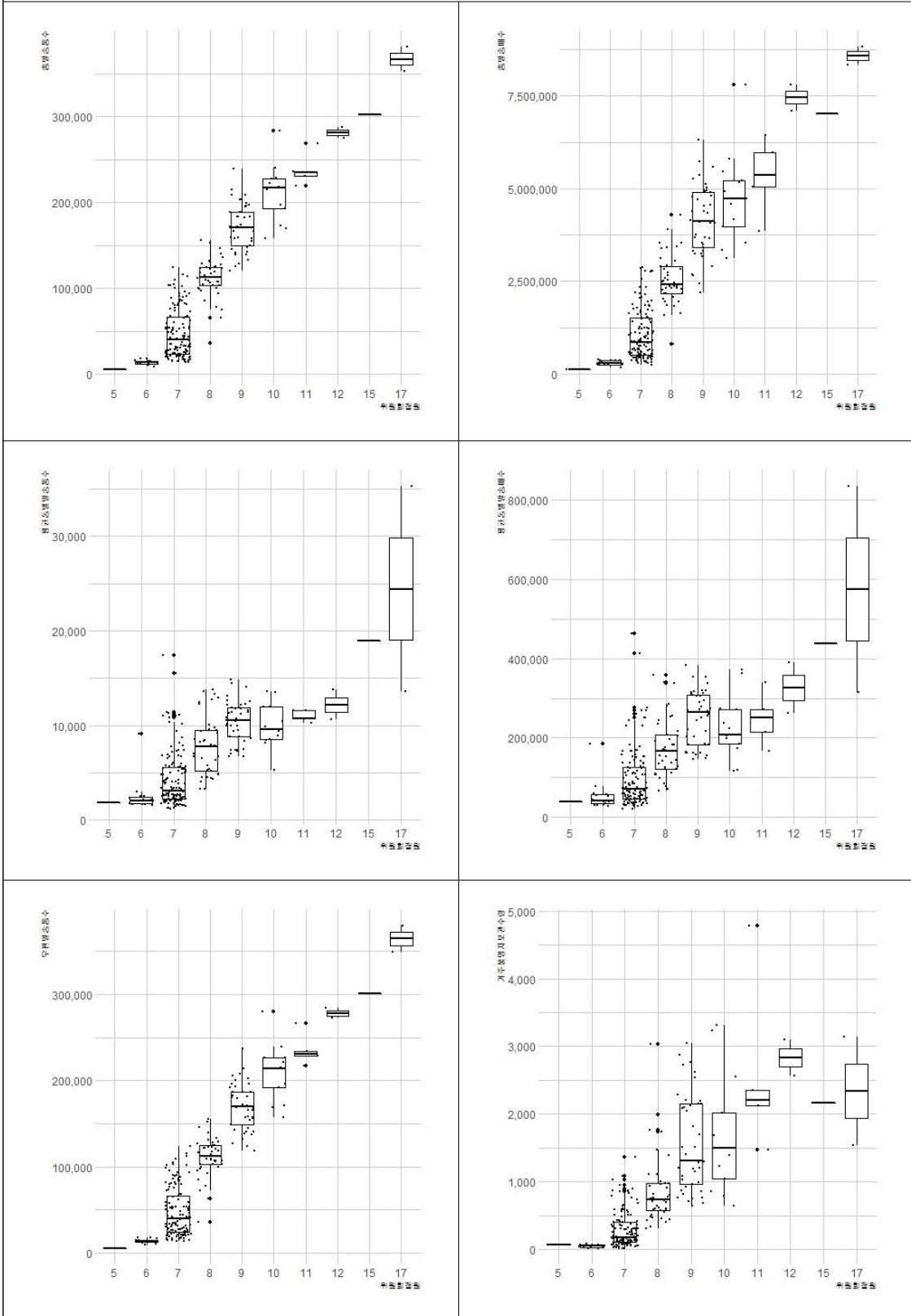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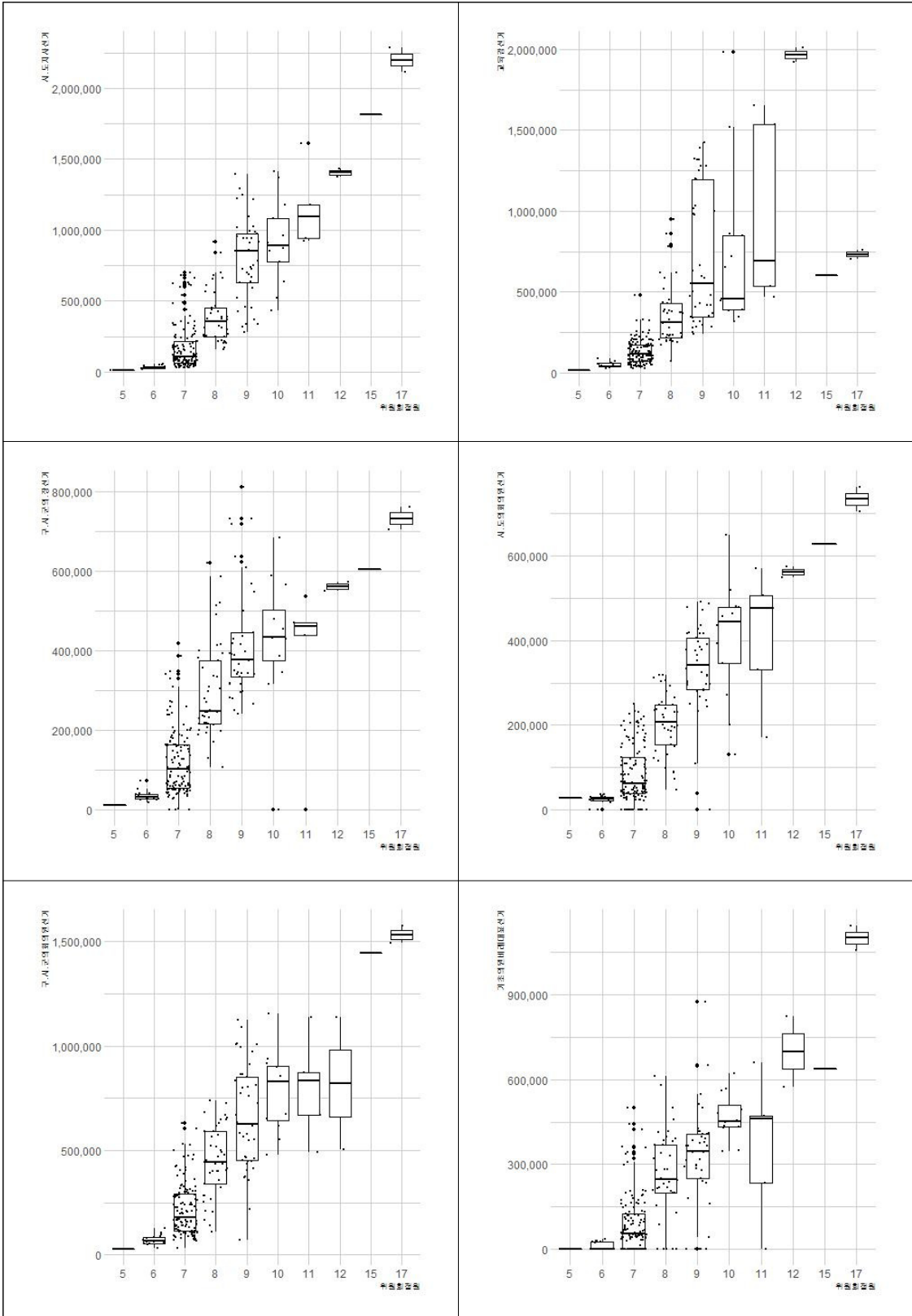
- 시도의원선거의 경우도 구시군의장선거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음
- 구시군의원선거의 첩부장소수와 구시군의원선거 첩부수량은 위원회 7인부터 위원회 12인까지는 큰 차이가 발견되고 있지 않아서, 이를 반영한 인력배분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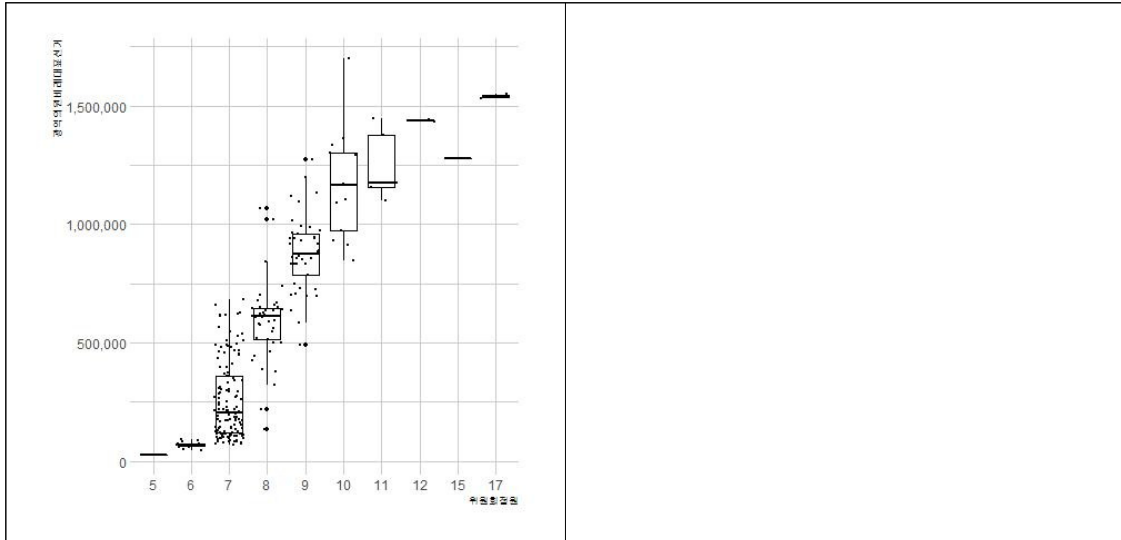
4) 선거공보 총수

○ 여기에서는 선거공보 총수로 선거 관련 업무량을 측정하고자 함

〈그림 3-39〉 구·시·군위원회 정원과 선거공보 총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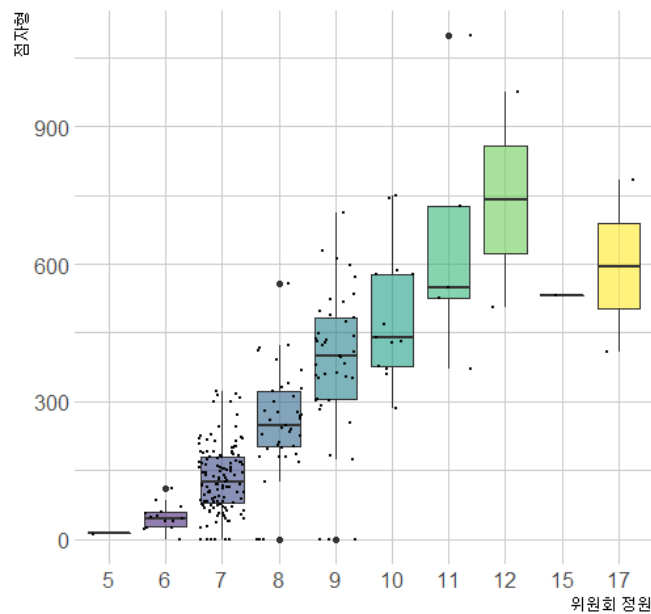
- 총발송통수는 위원회 정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다만 정원 1인 차이에서는 총발송통수와 정원의 관계가 역전되는 곳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업무량은 인력 증원에 반영하여야 함
- 총발송매수에서도 이와 같은 설명이 가능함
- 또한 여기에서 정원이 많은 곳에서의 총발송통수와 총발송매수를 줄일 수 있는 여기가 필요한지도 검토하여야 함
- 평균 통별 발송통수와 평균 동별 발송매수에서도 위원회 7인부터 위원회 12인까지의 업무량이 동일한 경우도 있어서 선거공보 총수에서 발생하는 업무량에 따른 인력 증원이 필요함
- 우편발송통수는 위원회 정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
- 거주불명자 보관수량에서 위원회 정원 8인부터 17인까지가 업무량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음
- 시도지사선거 발송매수도 위원회 정원과 비례하나 위원회 정원 7인부터 10인사이의 업무량에 차이가 없는 경우도 발견되고 있음
- 교육감선거 발송매수도 시도지사선거 발송매수와 유사함. 오히려 정원 15인과 정원 17인의 경우는 적게 나타나고 있음
- 구시군의장선거의 경우도 정원에 비례하나 위원회 정원 7인부터 10인사이의 업무량 차이가 명확하지 않음
- 시도의회의원선거 발송매수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음

- 구시군의회의원선거 발송매수에서는 위원회 정원 9인부터 12인까지가 유사함
- 기초의원비례대표선거도 위원회 정원 8인부터 11인까지 유사함
- 광역의원비례대표선거 발송매수는 위원회 정원과 비례하나, 일부 구간에서는 정원과 업무량이 일치하지 않음
- 따라서 발송매수를 고려한 인력 증원을 생각할 수 있음

5) 점자형·거소투표자용, 군인 등 발송 신청자용 선거공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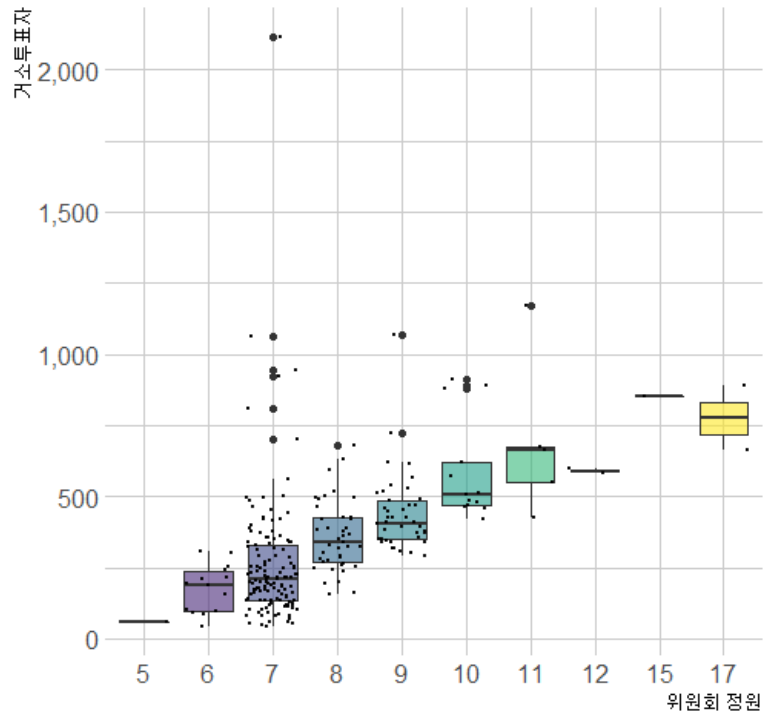
- 여기에서는 점자형·거소투표자용, 군인 등 발송 신청자용 선거공보수로 업무량을 위원회 정원별로 살펴보고자 함
- 점자형 선거공보 발송수는 위원회 정원과 관계가 많으나, 위원회 정원 7인부터 10인사이의 업무량이 정원을 반영하고 있지 않음

〈그림 3-40〉 구·시·군위원회 정원과 점자형 발송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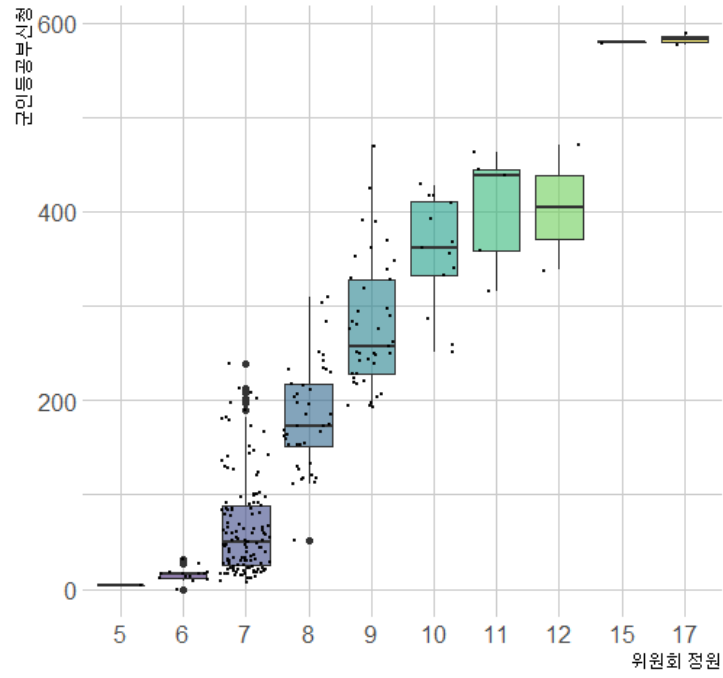
- 위원회 정원과 거소투표자수 관계를 보면 평균 값은 위원회 정원과 비례하나, 위원회 7인부터 11인 사이에서는 거소투표자수가 많아지고 있음
- 최소한 위원회 정원 7인에 대해서는 업무량을 반영한 인력배분이 필요함

〈그림 3-41〉 구·시·군위원회 정원과 거소투표자수



- 위원회 정원과 군인 등 발송 신청자용 선거공보수 관계를 보면 정원과 비례하나, 위원회 7인부터 9인 사이에서는 위원회 정원과 군인등공부신청수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음
- 따라서 군인 등 발송 신청자용 선거공보수를 감안한 인력 배분이 이루어져야 함

〈그림 3-42〉 구·시·군위원회 정원과 군인등공부신청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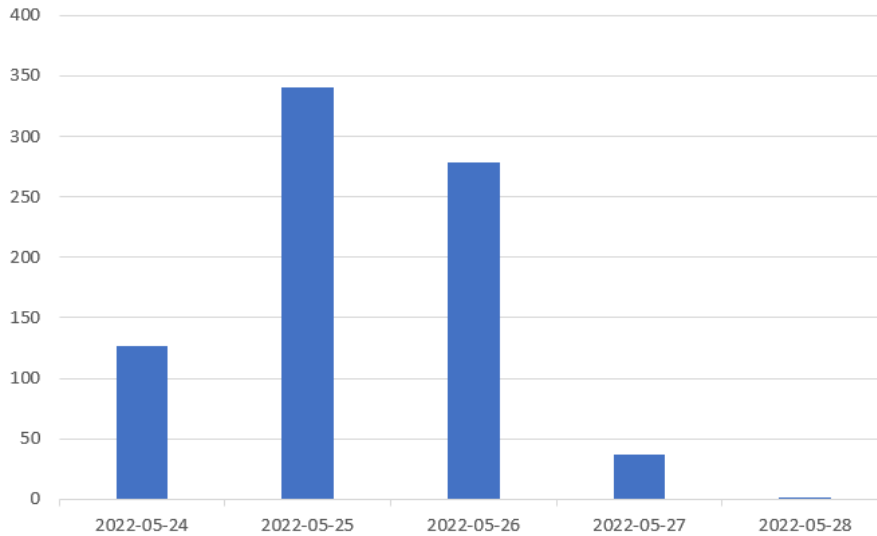
6) 기관·시설 안의 기표소 총 수

○ 기관·시설 안의 기표소수 전체 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3-8〉 시기별 기관·시설 안의 기표소수

구분	2022-05-24	2022-05-25	2022-05-26	2022-05-27	2022-05-28
기표소수	127	341	278	37	1

〈그림 3-43〉 기관·시설 안의 기표소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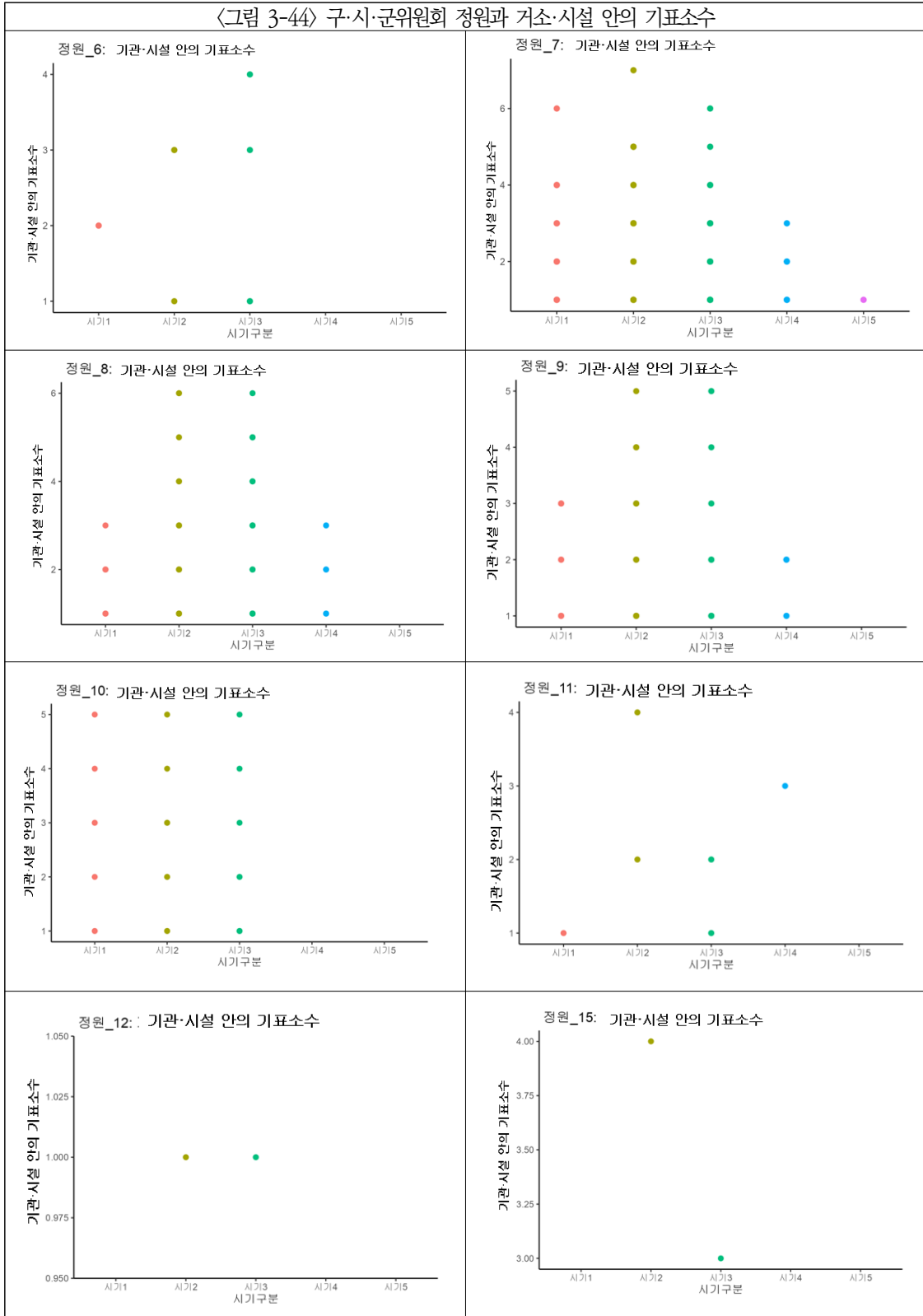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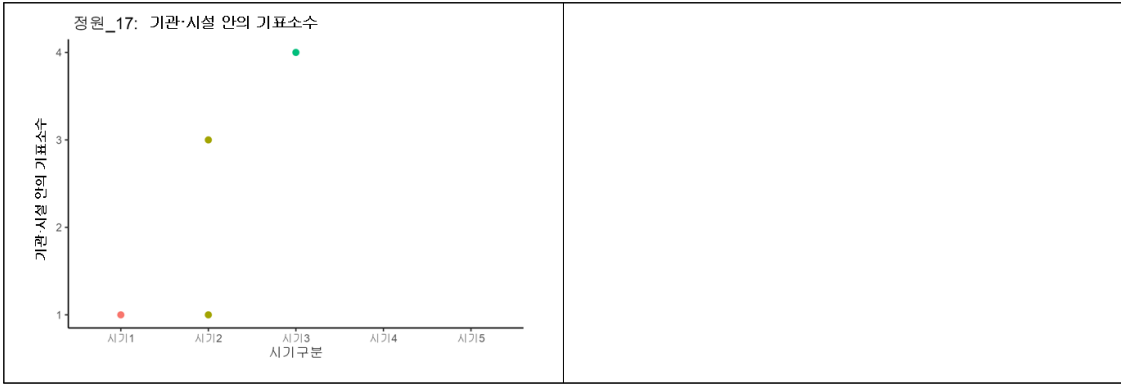
○ 위원회 정원별 기관·시설 안의 기표소수를 다음과 같은 시기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표 3-9〉 기관·시설 안의 기표소수 분석을 위한 시기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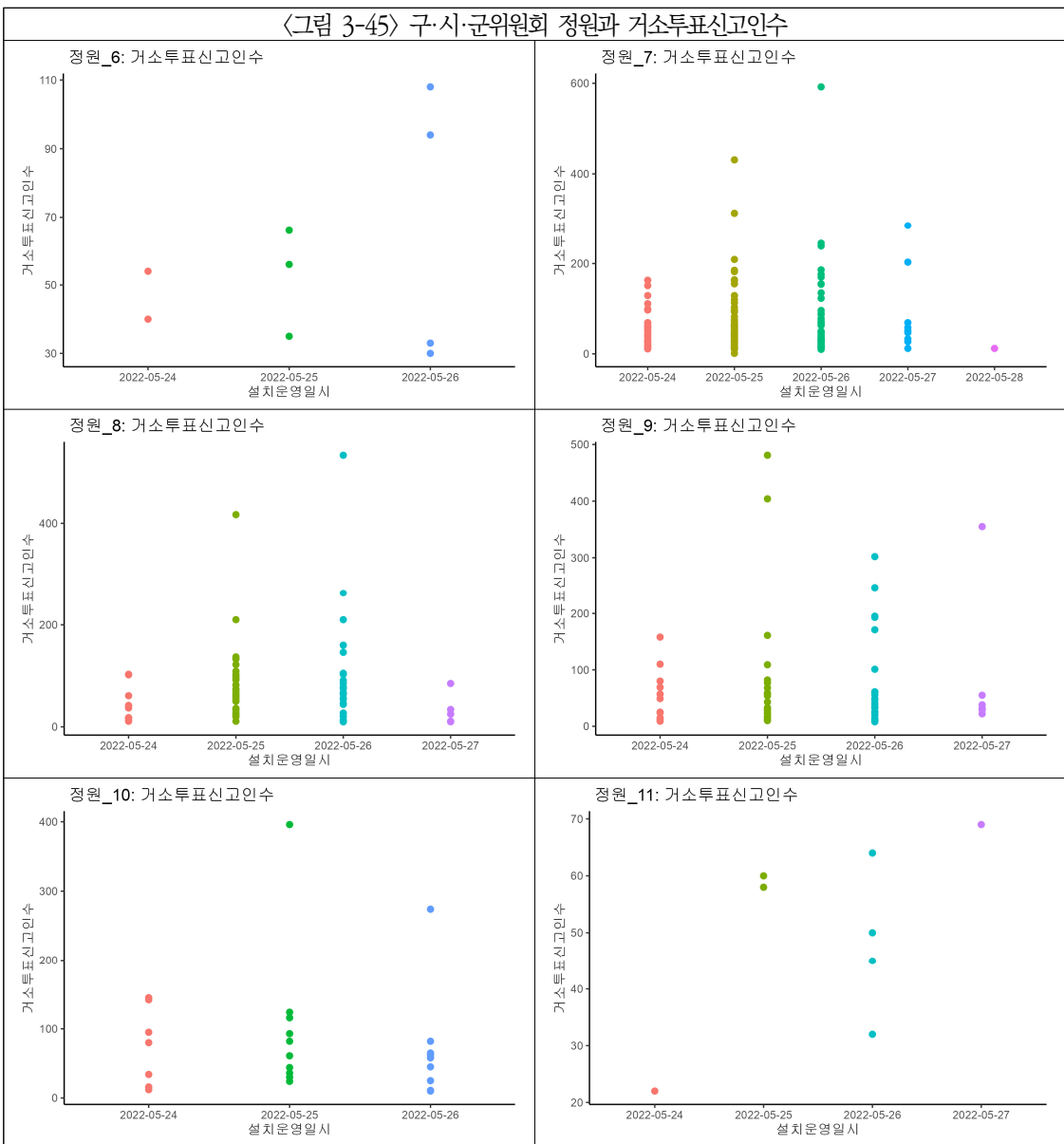
구분	시기
시기1	2022-05-24
시기2	2022-05-25
시기3	2022-05-26
시기4	2022-05-27
시기5	2022-05-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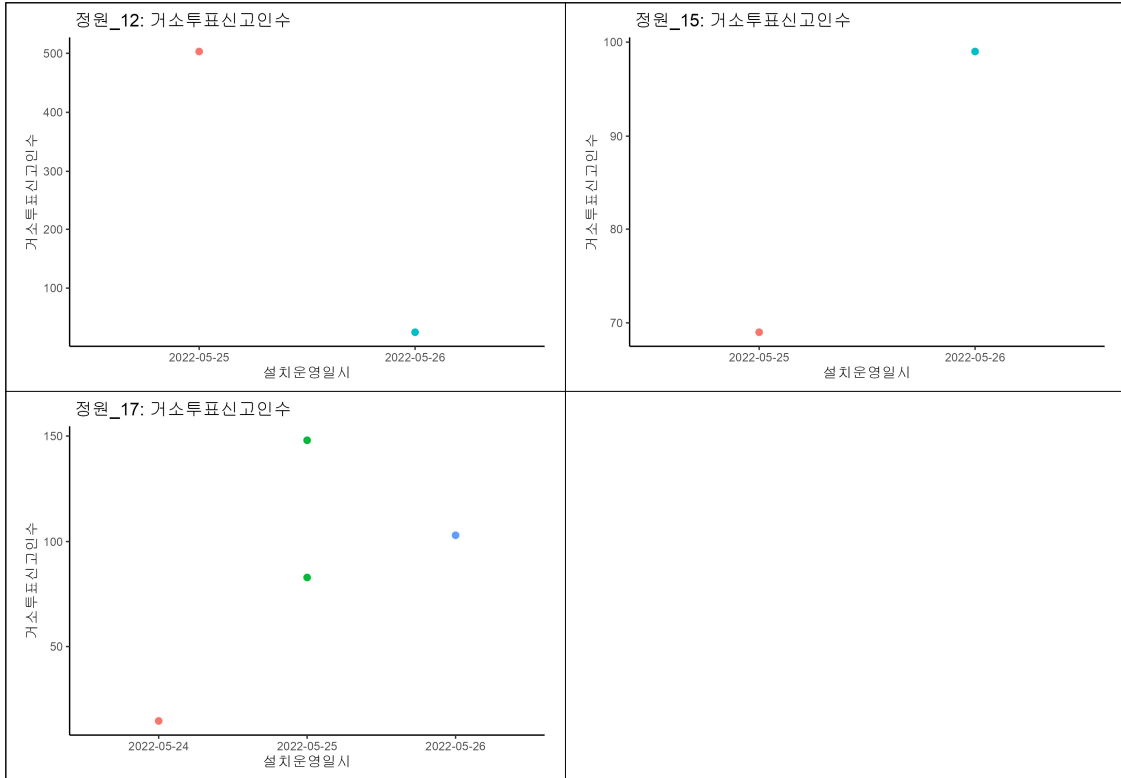
○ 위원회 정원 7인부터 11인까지가 기관·시설 안의 기표소수가 많음





○ 위원회 정원 7인부터 10인까지가 거소투표신고인수가 많음





- 따라서 위원회 정원 7인부터 10인까지에 대해서는 거소투표신고인수에 대한 업무량을 반영하여야 함

2. 사전투표 및 개표 관련

- 우편투표 회송용봉투 접수 건수 평균 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3-10〉 우편투표 회송용봉투 접수 평균 건수

시기	2022-05-28	2022-05-29	2022-05-30	2022-05-31	2022-06-01	총합계
접수	802,993	1,255,537	510,072	3,942	5	2,572,549

- 위원회 정원별 우편투표 회송용봉투 접수 건수 평균은 다음과 같음

〈표 3-11〉 위원회 정원별 우편투표 회송용봉투 접수 평균 건수

정원	2022-05-28	2022-05-29	2022-05-30	2022-05-31	2022-06-01
5	146.0		65.0	1,087.0	-
6	618.2	725.8	338.6	3.2	-
7	1,930.4	2,261.0	981.7	5.8	0.0
8	4,466.0	5,464.1	2,497.3	16.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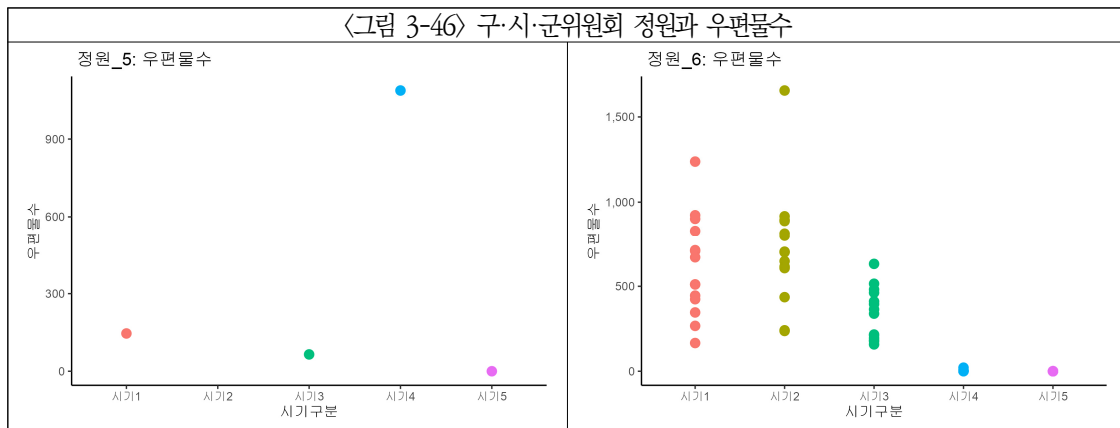
9	4,921.5	10,273.8	3,687.3	18.4	0.0
10	7,158.5	11,419.8	3,863.8	24.5	-
11	7,106.6	13,074.6	4,837.8	33.2	-
12	3,397.5	20,558.5	10,135.5	18.5	-
15	9,632.0	14,803.0	5,857.0	42.0	-
17	7,631.0	19,350.0	12,257.5	48.0	-
전체	3,224.9	5,062.6	2,048.5	16.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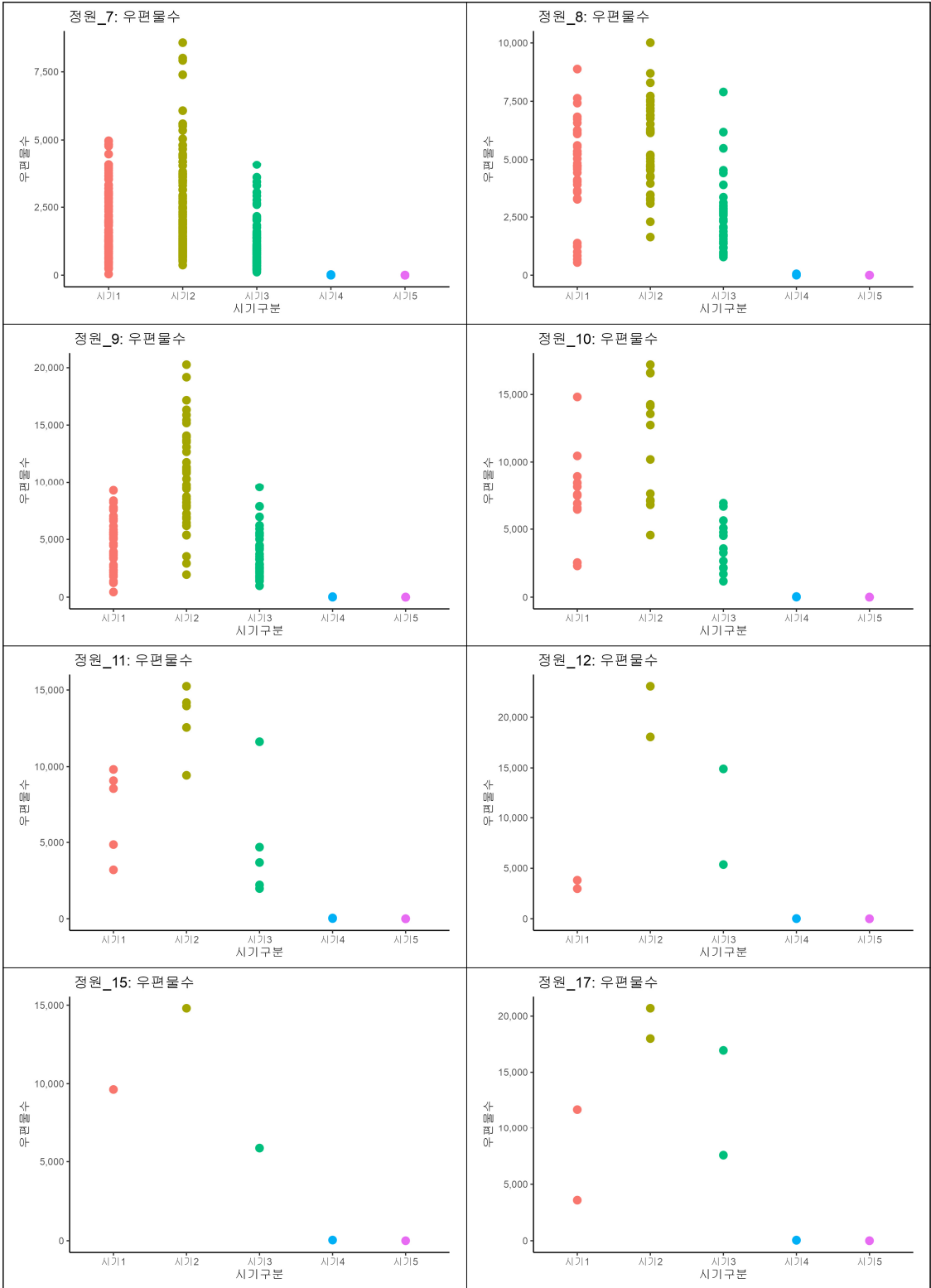
1) 사전투표 및 개표 관련 일자별 우편투표 회송용봉투 접수 건수

〈표 3-12〉 우편투표 회송용봉투 접수 분석을 위한 시기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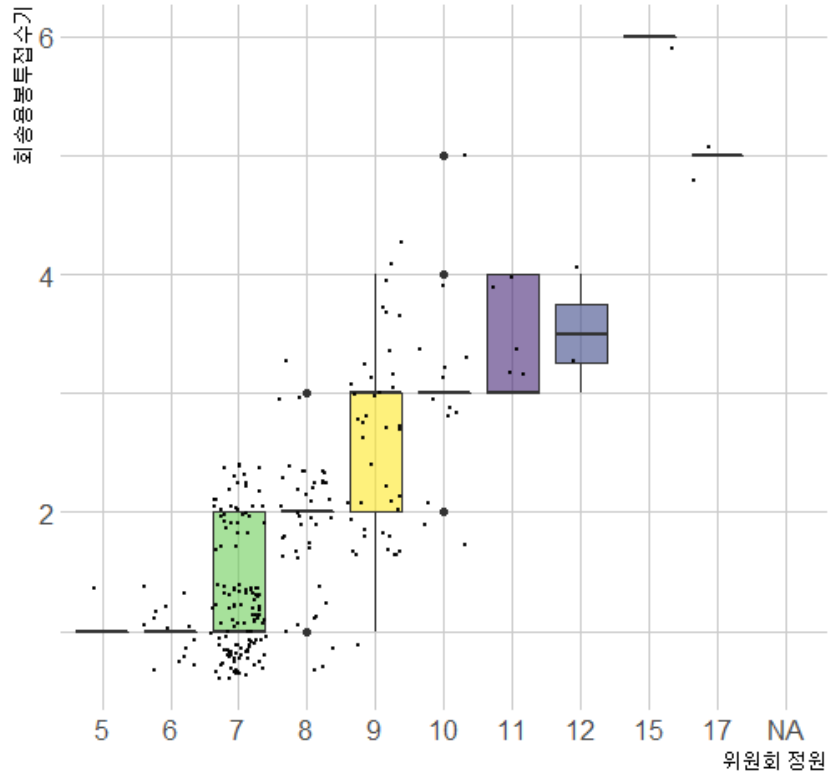
구분	날짜
시기1	2022-05-28
시기2	2022-05-29
시기3	2022-05-30
시기4	2022-05-31
시기5	2022-06-01

- 회송용봉투 접수수의 경우도 위원회 정원 8인부터 17인까지는 차이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정원 8인부터 11인까지는 우편투표 회송용봉투 접수 건수에 대한 배려가 필요함





〈그림 3-47〉 구·시·군위원회 정원과 회송용봉투 접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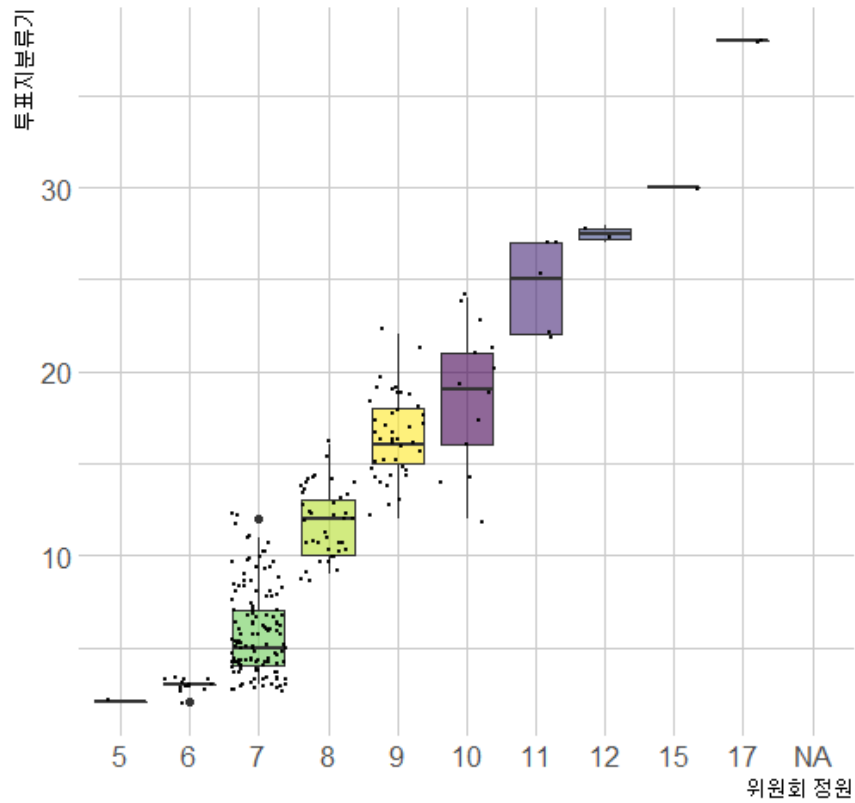
2) 사전투표 및 개표 관련 우편투표 회송용봉투 접수기

- 회송용봉투 접수기 수량은 대체로 위원회 정원과 비례하고 있으나, 위원회 정원 7인부터 10인까지는 업무량과 정원이 일치하지 않고 있음

3. 투표지분류기 운영 총수

- 투표지분류기 수량은 대체로 위원회 정원과 비례하고 있음

〈그림 3-48〉 구·시·군위원회 정원과 투표지분류기



...

제4장

공직선거 절차사무 개선을 위한 방안

제4장 공직선거 절차사무 개선을 위한 방안

제1절 인력 및 예산 확보와 효율적 운영

1. 선거 절차사무 관리인력 및 예산 확보와 효율적 운영

□ 인력 및 예산 확보와 유연한 접근 필요

- 구·시·군위원회에 따라 후보자 수 과다 등으로 업무량이 많은 위원회에는 인력 및 예산을 더 배정하는 유연한 접근이 필요함
 - 선거관리업무의 특성은 특정 기간에 업무가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이므로 선거사무보조 인력 등 대체인력을 적극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선거사무보조원 등 인력의 충분한 확보 필요
 - 특히 D-20~D-14에는 동시다발적으로 업무가 발생함에 따라 인력이 부족하며, 퇴근 시간 23시 이후로 늦으며, 피로도가 누적되기 시작하므로 유관기관 인력 협조가 필수적이며, 선거사무보조원 등 인력의 충분한 확보가 필요함
- 선거사무보조원 예산 확보의 중요성
 - 선거사무보조원에 대하여 교육 기간을 포함한 예산 확보 필요
- 중앙위원회 소속 직원을 시기별, 구·시·군위원회별 선거관리 규모를 감안 탄력적으로 지원하여 효율성 극대화 필요 있음
- 선거시기별 채용되는 선거사무보조인력을 대상으로 주 52시간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 선거기간에만 적용되는 특수임금제도 등을 운용 필요
 - 안정적 선거사무보조 인력 확보를 위해 대학·휴학·취업준비생 등을 활용하고 있으나, 주 52시간제 규정 적용으로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일반인들 모집은 보다 쉽지만 투표지분류기 운용 등 전문분야에는 투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 선거벽보 첩부 업무 민간업체 위탁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 필요
 - 2022년 실시한 양대 선거에 있어 일부 위원회에서는 선거벽보 첩부·철거 업무를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추진하였으며, 업무량 경감 등 좋은 결과를 얻었음

- 2024년 실시 예정인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도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노조를 중심으로 선거벽보 등 대행사무 거부가 예상되고 있으므로 사전 대비를 위해 선거벽보 첩부·철거 업무를 전면 민간업체 위탁하여 추진하는 방안 검토 필요함
 - 선거벽보 첩부 업무를 민간업체에 위탁하기 위해서는 소요예산 확보가 전제조건임으로 예산당국(기획재정부 등)과의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함
 - 예산불용액 발생이 차년도 예산 삭감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적정예산 편성·확보 필요함.
-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한 예산 관련 대안
 - 국선을 대비하기 위해선 예산 항목 변경, 예산 크기 조정 등의 대안이 필요할 것임
 - 인센티브 강구 필요
 - 업무 효율성과 인력 확보를 동시에 챙길 수 있는 해결책은 인센티브로 귀결됨. 그러나 수당의 경우 예산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 수당 이외의 비물질적인 인센티브를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인력 지원 필요
 - 대선 때 중앙위원회에서 파견 나온 직원들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여 효율성 제고에 기여함
- 선거절차사무 관리인력 확보 방안⁸⁾
- 정치외교 및 행정학 관련 전공 대학(원)생 활용 방안 검토 필요
 - 전공 교육과 연계 또는 대외 활동 인정 교육 프로그램 개발
 - 교육 프로그램 수료시 위원장 또는 사무총장 명의 수료증 발급 및 출석 인정
 - 지역별 참여 학교 확대 후 선관위 서포터즈 활동 지원 및 민주시민 교육과 연계 방안 검토
 - 참여학교 교수 활용 교육프로그램 공동 개발, 교차 특강
 - 참여 인센티브: 기본 수당 외 우수 활동자 시상, 지역 연수 기회 부여, 참여 경험 공모전 개최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연계 방안 검토

8) 전문가 서면자문의견(2022.11.28.)

- 지방자치단체 문화센터 활용 관리인력 상시 교육 및 선거관리인력 풀 확대
- 선거관심 제고 민주시민 교육 확대 의미
- 참여 인센티브: 우수 모범사례 추진 구·시·군위원회 견학 등
- 정치학/행정학 관련 학회 협업 체계 구축 필요
- 교육프로그램 개발, 선거관리인력 풀 확대 및 유지 방안 관련
- 선거관리 업무 유형 및 난이도별 참여 방법 다변화 고려할 필요. 학회 전문 인력 활용 방안 검토 필요
- 퇴직공무원 활용 방안 검토 필요

□ 인터뷰 결과

- 후보자수에 따라 업무량이 달라짐. 예를 들면 대구·경북 및 광주·전남지역 같이 특정 정당에 유리한 지역에서는 업무량이 많지 않다고 볼 수 있음. 서울과 경기도 지역은 업무가 과중함
- 이에 특정 시기에 업무가 많이 몰리는 위원회에 인력을 좀 더 배치하는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인력을 더 주고 싶지만, 위원회별 공무원 정원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 대안으로 선거사무보조 인력이 필요한데, 이들을 고용할 예산도 충분하지 않음
- 현재 재배정되는 예산으로는 선거사무보조원을 2명밖에 채용할 수 없음. 그 대신 채용 가능 기간이 5개월이면 3개월만 고용하는 등, 고용기간을 줄이고 그 대신 고용인력을 늘리는 방식으로 운영 하고 있음
- 사전투표관리는 투표용지발급기 등 사전투표장비를 사용하는데, 사전투표장비를 구입할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사전투표관리에 차질을 빚었던 사례도 있음. 심지어 보유하고 있는 사전투표장비도 2014년, 2018년도에 만들어져 노후화된 것이 많음
- 선거벽보 첩부 대행사무로 읍·면·동위원회에서 간사·서기가 하도록 대행 업무로 지정해주지만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노조가 대행 업무를 거부해서 구·시·군위

원회에서 민간업체를 통해 업무를 위탁하여 추진하였음

- 즉, 읍·면·동위원회에서 한 것이 아니라 구·시·군위원회에서 민간업체를 선정 후 경비를 주고 위탁함
- 대행사무 추진에 소요되는 경비(일용임금)는 읍·면·동위원회에 개산금 형태로 교부하고 있으나, 민간업체에 위탁할 경우에는 사업비(일반수용비)로 집행해야되기 때문에 예산 목간전용이 필요함
- 일전에 관련 질의를 했을 때는 예산 목간 전용을 했다고 함. 지방선거 관리경비는 통으로 받기도 하고, 국비(대선·국회의원선거관리경비는 기획재정부 승인 후 중앙위원회 사무총장)보다 목간 전용 절차(결재: 구·시·군위원회 사무과장)가 용이하기 때문에 전용의 가능성 높음

2. 교대근무 제도 도입 등

□ 선거기간(D-60~D-0) 교대근무 제도 도입과 가외성 확보

- 모든 직원의 일가정 양립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가정의 긴급한 필요에 대응할 수 있는 여유를 갖도록 할 필요가 있음. 업무량이 몰리는 선거기간(D-60~D-0)이라 하더라도 여유인력과 여유시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선거사무보조원 확보와 유관기관 인력 협조로 교대근무제 도입 필요
- 교대근무제 도입
 - 교대 근무가 가능해 진다면 지방 공무원들도 해당 업무를 거부할 이유가 없어 보임. 젊은 세대 공무원들은 휴일에 쉬고자 하는 경향성이 많아짐
- 제2장 <표 2-3>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선거기간 평일 1일 근무시간은 13시간 ~ 15시간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음. 2교대 근무조를 편성하여 하루 8시간씩 근무하도록 하면, 1일 2인 총 16시간의 근무시간을 확보할 수 있음. 1~3시간은 중첩근무가 가능하도록 편성하는 것이 가능할 것임
 - 하지만, 현재 구·시·군위원회 인력으로는 2교대조를 편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공공기관 인력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공직선거법 제5조(선거사무협조)에서는 ‘관공서 기타 공공기관은 선거사무에 관하여 선거

- 관리위원회의 협조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선거사무에 관하여 장소와 시기별로 업무량이 폭주하는 구사군위원회와 피크기에 적합한 공공기관의 업무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기관장 MOU 체결 등을 통하여 선거기간 선거사무 협조를 공공기관의 업무분장표에 넣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퇴직공무원, 자생조직회원, 정치외교 및 행정학 전공 대학(원)생 등 인력풀을 조성하여 사무보조업무 수행 필요

○ 유관기관 인력 협조로 교대근무제 도입 필요

- 특히 D-20 이후에는 동시다발적으로 업무가 발생함에 따라 인력이 부족하고, 퇴근 시간이 11시 이후로 늦으므로 유관기관 인력 협조 및 선거사무보조원 활용으로 교대근무제 도입이 필요

○ 사전투표 시간을 9시부터 오후 6시로 하고 사전투표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단점은 새벽에 빨리 투표하고, 일상을 누리고 싶은 사람에 대한 배려가 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음

※ 교대근무제

○ 교대근무제의 의의(최순영 외, 2013: 67)

- 교대근무란 작업자들을 2개 반 이상으로 나누어 각각 다른 시간대에 근무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장의 전체 작업시간을 늘리는 근로자 작업 일정이나 작업 조직 방법을 말함
- 교대근무제는 근로자를 둘 이상의 조로 나누어 각 근로자의 근무시간대를 일정주기마다 바꾸어 일하는 제도로 2교대 근무제와 3교대 근무제가 일반적임(박태원, 2001: 최순영 외, 2013: 67에서 재인용)

○ 교대근무제의 종류(최순영 외, 2013: 67-72)

- 교대근무제에는 2교대 근무제와 3교대 근무제 등이 있음. 2교대 근무제는 근무자를 2개조로 나누어 1개조가 하루(24시간)를 근무하고 다음 근무조와 교대하는 근무방식임. 이러한 2교대 근무제는 막대한 업무시간과 야간근무로 인한 스트레스의 증가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현실적으로 일반기업체에서도 '경비직' 이외에는 채택하지 않는 제도임
- 3교대 근무제는 근무자를 3개조로 나누어 1개조가 각각 8시간씩 근무하는 방법임. 지하철

공사의 경우 4개조를 편성하여 1일 8시간 3교대근무를 채택하고 있음. 경찰공무원의 경우는 12시간을 근무하고 24시간을 휴무하는 3교대 방식을 택하고 있고, 교정직 공무원의 경우 당번, 비번, 일근 방식의 변형된 3교대근무제⁹⁾를 채택하고 있음

- 3교대 근무는 하루 24시간에 1, 2조가 주, 야간으로 투입됐다면 당일 휴무에 들어간 3조가 다음날 아침 투입돼 주간근무를 하고, 다시 1조가 야간근무를 하는 방식의 로테이션이 이뤄짐. 2개조로 나누어 24시간씩 근무를 서는 2교대 방식에 비해서는 투입인력이 많으나, 근무하중이 적다는 것이 장점임
- 노동부(2002)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교대 유형으로 사업장에서 2교대가 40.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교대 사업장 중에서도 2조 2교대가 46.5%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음(김은주 2007: 5; 최순영 외, 2013: 68에서 재인용)

□ 클라우드 공무원단 제도 법제화 필요

○ 클라우드 공무원단 시범도입 및 확대

- 클라우드 공무원단은 공무원의 채용과 활용의 유연성을 제고하여 긴급하게 대응해야 할 다양한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퇴임 공무원, 계약직 등 다양한 형태의 고용방식을 고려하는 한편 클라우드 공무원단의 구성, 규모, 그리고 성과평가 등과 관련된 법제 마련 필요(문명재, 2021: 647)

□ 인터뷰 결과

- 5월 27일 정도부터는 정말 힘들. 사전투표를 하면 개시가 6시임. 그럼 5시까지 돌아가야 하고 통근시간 고려하면 4시 출발함. 하루 종일 정신없이 일하다가 밤 8시나 10시에 집에 감. 일주일 간 계속 이 스케줄로 살아야 함

9) 변형된 3교대 근무방식은 현재 교정직 공무원의 근무방식으로 일근 근무자는 8시간을 근무하고, 당번근무자는 24시간, 비번 근무자는 휴무를 취하는 근무방식으로 8시간 3교대근무보다 적은 인원으로 업무를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 방식도 장기적으로 근무자의 피로가 누적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음.

3. 보고의 효율화

- 인터뷰 결과, 하나의 업무 단위 밑에 달려있는 내부적인 보고들은 세세하게 할 필요까진 없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는데, 보고 시스템의 간소화가 필요함
 - 특히 선거일 당일 투표율 보고와 관련하여 한 시간 단위의 보고가 이루어지기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행정력 낭비임. 보고를 하면 보고를 받는 쪽도 있기 마련인데, 그러면 한 시간 단위로 모든 투표구의 보고를 받아야 됨. 이는 받는 쪽 입장에서 비효율적임. 보고 시간의 간격을 더 늘리거나 보고 자체를 시스템화하는 등의 대안이 필요함
- 보고 시간의 간격을 더 늘리거나 보고 자체를 시스템화하는 등의 대안이 필요
 - 또한, 인공지능 등 지능형 인프라¹⁰⁾를 활용하여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10) 지능형 인프라는 ICBMA(IoT, Cloud Computing, Big Data, Mobile, AI), 5G, 6G, Blockchain(공공 거래 장부라고도 부르며 가상 화폐로 거래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해킹을 막는 기술) 등의 기술을 의미함.

제2절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과의 협업 제도

□ 선거 절차 관련 사무가 지방자치단체 업무임을 명시하는 지방자치법 개정

○ 선거기간 동안 구·시·군선위원회 근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노조의 반발에 대응하기 위하여 선거 절차 관련 사무가 지방자치단체 업무임을 명시하는 지방자치법 개정 필요¹¹⁾

○ 선거사무에 대하여 장소와 시기에 따라 한시적으로 공공기관 인력의 활용 방안 적극적 모색 필요

- 공직선거법 제5조(선거사무협조)에서는 ‘관공서 기타 공공기관은 선거사무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선거사무에 관하여 장소와 시기별로 업무량이 폭주하는 구·시·군위원회와 피크기에 적합한 공공기관의 업무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기관장 MOU 체결 등을 통하여 선거기간 선거사무 협조를 공공기관의 업무분장표에 넣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선거사무에 대한 지방공무원의 협조를 얻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등의 평가지표에 선거사무 협조를 포함하는 방안

- 공직선거법 제5조와 같은 규정이 있어도 협조를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협조를 얻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음. 따라서 협조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의 평가 권한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유관기관 협업 활성화 방안

○ 선거기간동안 (사전)투표·개표사무원으로 위촉되어 종사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국가공무원 등 유관기관 직원 포함)에 대한 동기부여 및 인센티브 효과성 제고를 위해 (사전)투표·개표사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현실화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선거절차 업무 수당을 현실화시키는 방안 필요

11) 법제 개선방안에 관한 제5장 참조.

- 투표소, 개표소, 선거홍보물 발송 장소 등 선거관리시설 확보를 위해 교육청 외에 공공기관, 종교시설 등 시설을 소유한 기관·단체와 협력적인 네트워크를 유지하거나 또는 공식적인 MOU를 맺을 필요가 있음
 - 예산 문제라기보다 적정규모 이상의 시설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고, 학부모 등의 반대로 학교 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움
- 유관기관 인력 협조와 수당
 - 인력 문제의 경우 해결책이 수당으로 귀결되는 경향이 있음. 그러나 ○○구 같은 경우 인터뷰에서 알 수 있듯 수당이 유효한 해결책으로써 작용하지 못했음
 - 인력 문제의 원인은 과중한 업무나 보상의 부족으로 대표되는 기존의 선거 사무의 문제에서 기인하는 바가 큼. 즉, 불필요한 절차 사무를 재편하고 업무 부문에서의 혁신을 이루는 과정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혁신을 지방자치단체와 노조에게 효과적으로 어필할 수 있어야 인력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을 것임
- 지방 공무원들의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 사무에 대한 협력의무를 법에 명시¹²⁾할 필요가 있음. 또한, 선거 사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심을 유도하고, 지방공무원의 선거사무 협조가 공무원 성과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선거사무 협조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과 MOU체결
 - 선거사무 협조에 대한 인센티브 시스템 구축
 - 선거사무보조원에 대한 수당 현실화 필요
- 투표관리관 업무를 지원하는 공무원들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방안이 필요함
 - ○○광역시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로 특별 휴가를 5일 내에서 부여할 수 있음. 과거에는 하루였던 것을 이틀을 주었더니 인력확보가 수월해짐. 단, 지방자치단체장이 변경되면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시스템으로 제도화가 필요함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업무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고, 선거 절차사무 협조를 지방자치단체 평

12) 제5장 지방자치법 개정안 참조. 제18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에 대한 균형적인 공공서비스 제공, 지역 간 균형발전, 그리고 선거사무관리를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가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인터뷰 결과

- 구·시·군위원회는 선거벽보 첩부, 사전투표소 설비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읍·면·동 위원회 대행할 업무로 지정하여 추진하여 왔는데, 2022년도 양대 선거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노조 중심으로 대행사무 업무를 거부하다 보니 구·시·군위원회에서 선거벽보 첩부·철거, 선거홍보물 발송 업무를 직접 수행한 곳도 많음
- 선거일 투표관리 업무는 읍·면·동위원회에서 관리하도록(공직선거법 제 147조, 151조) 규정되어 있음
-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동주민센터 소속 공무원 또는 상급기관인 시청 소속 공무원이거나 동주민센터에서 고용한 일반인들이 대다수임

제3절 전문가 활용

1. 기존 전문직군 활용

-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서류 및 각종 홍보물 작성·검토 등에 전문가 활용
-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류, (예비)후보자 각종 홍보물 등 선거운동에 사용되는 서류 및 자료를 검토할 선거행정전문가 양성 교육 및 인증제도 필요
 - 행정사, 법무사,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정치학 및 행정학 박사, 환경 및 교통 등 기타 공약 관련 전문가가 선거에 관한 전문성 교육을 받고, 소정의 절차를 거치면, 각 전문 분야 내의 선거분과 전문가로 등록하도록 하여 이들을 선거 정보 검토 전문가로 활용하는 방안 필요
 - 후보자가 선거 전문가 3인의 검토를 거쳐 후보자 정보를 등록하도록 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인터뷰 결과
- (예비)후보자 홍보물(선거공보, 선거벽보, 후보자공약집 등) 사전 검토와 관련 형식적 요건 구비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고 법규 위반되는 사항(위반소지가 있는 사항 포함)은 수정·보완하도록 안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홍보물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예비)후보자들은 선거관리위원회 사전 검토를 받았다는 사유를 들어 법적 책임 등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 책임성 소재가 모호해지는 문제가 있으므로 후보자 홍보물 등 사전검토 확인은 외부전문가 활용

2. 회계사, 세무사 등 외부 전문가 활용

- 구시·군위원회에서 어려움을 토로하는 4대 보험 업무, 임금지급 업무 등을 회계사, 세무사 또는 노무사 등을 활용하여 진행

제4절 후보자등록 관련 개선방안

1. 국세청 연말정산 시스템과 같은 후보자등록 시스템 구축 필요

□ 후보자등록시스템의 자동화 방안

- 국세청 연말정산 시스템처럼 후보자의 재산, 세금 등이 연동이 되어 수기로 작성할 필요 없이 자동적으로 등록이 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

□ 후보자 등록 시 피선거권 및 범죄 경력에 관한 관할기관의 협조 의무를 법에 명시

- 후보자 등록 시 피선거권 및 범죄 경력에 관한 관할기관의 협조 의무를 법에 명시하고, 후보자 등록 시 별도 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피선거권 및 범죄경력 조회가 이루어질 있도록 절차를 보완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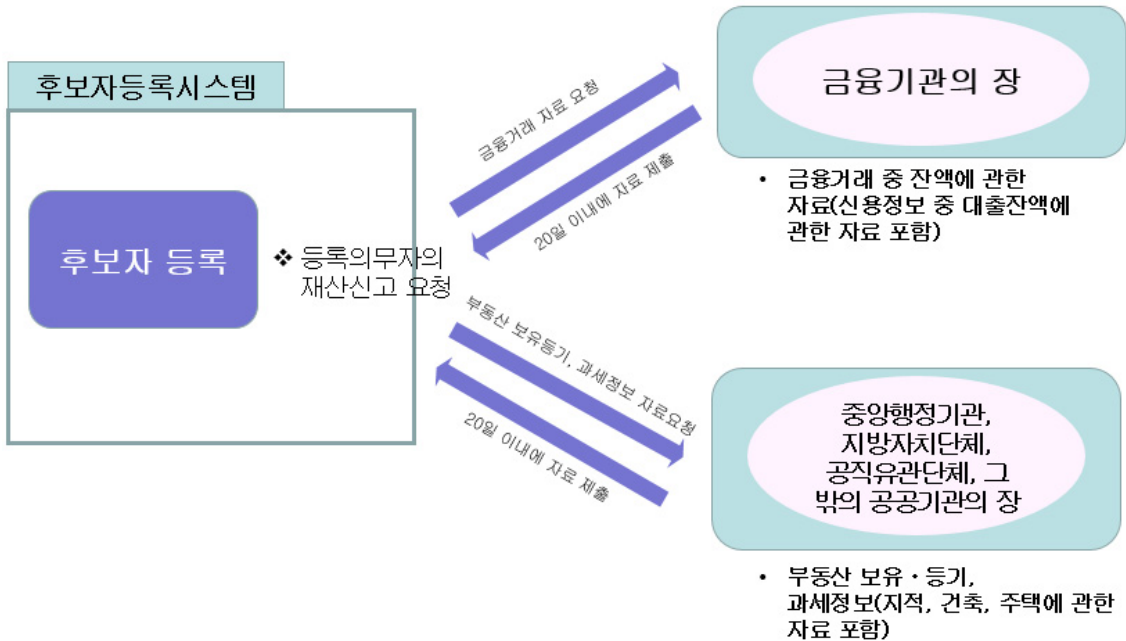
□ 후보자등록과 재산신고 연계

- 후보자등록 시 자동적으로 후보자의 재산, 세금 납부내역 등의 연동이 이루어져 별도의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동화할 필요가 있음
- 공직자윤리법 제6조의5(금융거래정보·부동산정보의 제공 및 활용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후보자등록이 이루어지면, 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요청이 자동적으로 처리되고, 금융기관의 장은 금융거래 중 잔액에 관한 자료(신용정보 중 대출 잔액에 관한 자료 포함)를 2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의 장에게 부동산 보유·등기, 과세정보(지적, 건축, 주택에 관한 자료 포함)의 제공 요청이 전달되도록 하고, 이들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관련 자료를 2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후보자등록과 재산신고 연계에 관한 이상과 같은 내용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 <그림 5-1>과 같음

- 공직자윤리법 제6조의5(금융거래정보·부동산정보의 제공 및 활용 등) 제1항에서는 재산등록·신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의무자가 요청하면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거래 중 잔액에 관한 자료(신용정보 중 대출 잔액에 관한 자료 포함)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금융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20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도록 하고 있음¹³⁾
 - 공직자윤리법 제6조의5(금융거래정보·부동산정보의 제공 및 활용 등) 제2항에서는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의무자로부터 재산등록·신고를 위하여 명의인의 동의를 받아 부동산 보유·등기, 과세정보(지적, 건축, 주택에 관한 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제공을 요청 받으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20일 이내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공직자윤리법 제6조의 5 제1항과 제2항에 따르면, 요청 후 20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후보자 등록 후 즉시 정보를 제공받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정보제공 소요기간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거나 후보자 등록 기간을 앞당기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13) 공직자윤리법제6조의5(금융거래정보·부동산정보의 제공 및 활용 등) 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등록·신고”라 한다)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동의를 받아 등록의무자가 요청하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금융기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등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에게 금융거래 중 잔액에 관한 자료(신용정보 중 대출 잔액에 관한 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금융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20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이 동의할 때에는 금융거래 중 잔액에 관한 자료를 제공한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

〈그림 4-1〉 후보자등록과 재산신고의 연계



□ 후보자 재산신고 관련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기준 마련

○ 후보자 재산신고에 대하여는 어디까지가 개인책임이고 어디부터가 국가의 책임인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필요함

- 재산등록을 예로 들어보면, 재산이라는 요소가 굉장히 다분화 되어 있음. 본인도 본인 재산을 모르는 경우가 비일비재함. 본인도 모르는 것을 어느 한 기관이 누구의 책임인가를 가려내는 것은 쉽지 않다고 보지만, 그런 부분에서의 원칙이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런 부분들은 변호사한테 자문을 들었다고 해서 맹신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님. 변호사들도 다 의견이 갈라지기 때문임. 따라서 외부 전문가한테 맡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까지 국가에서 책임을 질지 그 기준을 정하는 것이 중요함. 선거 과정에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신고를 했으면 그걸 신뢰해주는 관점에서 가는 것이지, 거짓말을 했냐 안했느냐를 집요하게 잡아내는 과정이 아니라고 봄¹⁴⁾

□ 후보자등록시스템 관련¹⁵⁾

○ 후보자등록시스템 마련 시 수집정보 관리방안과 그 법적 근거 검토 필요

14) 전문가의견(2022.11.29.)

15) 전문가 서면자문의견(2022.11.28.)

□ 인터뷰 결과

- 후보자등록시스템에서 후보자의 재산, 세금 납부내역 등이 연동이 될 경우 수기로 작성할 필요가 없으며 실수도 줄어들 것임. 여기에는 기관 협조가 필요하며, 활용이 가능한 시스템 현황을 우선적으로 파악하면 좋을 것임
- 후보자 등록 시 피선거권 및 범죄 경력에 관한 관할기관의 협조 의무를 법에 명시하고, 후보자 등록 시 별도 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피선거권 및 범죄경력 조회가 이루어질 있도록 절차를 보완할 필요
- 후보자 등록정보의 신뢰성은 후보자 등록을 직접 받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고 있으나 이는 형식적인 부분에 대한 것이며, 내용에 대한 부분은 검증하기가 어려움. ‘등록정보에 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하는 문제가 발생함

2. 후보자등록서류 예비 검토 업무개선 방안

- 후보자등록 시 재산 신고의 경우 국민의 입장에서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간소화
 - 현행 선거관리위원회 재산신고 양식이 난해하므로 대폭 개선
 - 정당 후보자들이 정당에 제출하는 양식, 공직자가 재산을 등록하는 양식 등을 활용
- 후보자등록 시 재산관련 부분을 간소화
 - 후보자 본인도 파악하지 못하는 재산 부분까지 확인하기 어려움
 - 체납 등과 같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에 한정해서 기재하는 것도 방법임
- 후보자들이 변호사 등 전문가를 활용하여 검토를 수행하되, 전문가 자문 비용은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보전하도록 함
- 후보자등록 업무 간소화
 - 세금의 경우 증명서를 떼어서 순서대로 적으면 되지만, 나머지 부분의 경우 워낙 내용이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선거사무보조원과 함께 여러 번 검토해도 실수한 경험이 있다고 함. 책임 소재 문제 이전에 불필요한 절차 사무를 간소화하는 게 선행되어야 할 것임

3. 정당에서 후보자등록과 관련하여 1차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

- 공천 시 정당에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과 연계하여 후보자등록서류와 관련하여 교육을 실시 해준다면 업무가 수월해 질 것으로 기대

4. 예비후보자공약집 검토 관련 개선방안

- 선거관리위원회가 예비후보자공약집 검토에 대한 법적인 의무가 없으므로 공약집 검토 후 ‘선거관리위원회는 예비후보자공약집 검토에 대하여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라는 동의서를 받고 검토할 필요
- 예비후보자공약집의 내용에 대한 법적 책임은 예비후보자 본인에게 있음을 법에 명시하는 방안
 - 공직선거법 제49조(후보자등록 등)에 의하면, ‘후보자의 등록은 대통령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4일,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국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0일부터 2일간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도록 되어 있음(제1항).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제출할 서류에 예비후보자공약집이 포함됨(제4항 제6호)
 - 공직선거법 제60조의4에서는 예비후보자공약집에 대하여 ‘대통령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예비후보자는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우선순위·이행절차·이행기한·재원조달방안을 게재한 공약집(도서의 형태로 발간된 것을 말하며, 이하 “예비후보자공약집”이라 한다) 1종을 발간·배부할 수 있으며, 이를 배부하려는 때에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여야 하며, 다만,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음(제1항)

<표 4-1> 공직선거법에 예비후보자공약집의 내용에 대한 법적 책임에 관한 규정 마련

공직선거법 [시행 2022. 4. 20.]	공직선거법 개정안
제60조의4(예비후보자공약집) ① 대통령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예비후보자는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우선순위·이행절차·이행기한·재원조달방안을 게재한 공약집(도서의 형태로 발간된 것을 말하며, 이하 “예비후보자공약집”이라 한	<p>■‘예비후보자공약집의 내용에 대한 법적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명시</p> <p>제60조의4(예비후보자공약집) ① 대통령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예비후보자는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우선순위·이행절차·</p>

<p>다) 1종을 발간·배부할 수 있으며, 이를 배부하려는 때에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할 수 없다.</p> <p>② 제1항의 예비후보자가 선거공약 및 그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외에 자신의 사진·성명·학력(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말한다)·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예비후보자공약집에 게재하는 경우 그 게재면수는 표지를 포함한 전체면수의 100분의 10을 넘을 수 없으며,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 관한 사항은 예비후보자공약집에 게재할 수 없다.</p> <p>③ 예비후보자가 제1항에 따라 예비후보자공약집을 발간하여 판매하려는 때에는 발간 즉시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2권을 제출하여야 한다.</p> <p>④ 예비후보자공약집의 작성근거 등의 표시와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08. 2. 29.]</p>	<p>이행기한·재원조달방안을 게재한 공약집(도서의 형태로 발간된 것을 말하며, 이하 “예비후보자공약집”이라 한다) 1종을 발간·배부할 수 있으며, 이를 배부하려는 때에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할 수 없다.</p> <p>② 제1항의 예비후보자가 선거공약 및 그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외에 자신의 사진·성명·학력(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말한다)·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예비후보자공약집에 게재하는 경우 그 게재면수는 표지를 포함한 전체면수의 100분의 10을 넘을 수 없으며,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 관한 사항은 예비후보자공약집에 게재할 수 없다.</p> <p>③ 예비후보자가 제1항에 따라 예비후보자공약집을 발간하여 판매하려는 때에는 발간 즉시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2권을 제출하여야 한다.</p> <p>④ 예비후보자공약집의 내용에 대한 법적 책임은 예비후보자에게 있다.</p> <p>⑤ 예비후보자공약집의 작성근거 등의 표시와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08. 2. 29.]</p>
---	---

○ 검토 사무 배제 및 후보자등록 시스템 개편의 대안

- 후보자가 제출한 걸 검토 없이 그대로 받는 방안이 있음. 그러면 책임 소재가 온전히 그 후보자한테 돌아갈 수 있음
- 또한 시스템 자체를 바꾸는 방안이 있음. 현행 시스템은 등록을 받으면 그걸 스캔해서 인터넷에 또 올려야 되는 구조임. 그럴 바엔 차라리 후보자들이 직접 인터넷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개편하자는 의견이 있었음. 후보자 측에서 직접 전산 상에 등록하면 선거관리위원회 측에 직접 와서 몇 번씩 수정할 필요도 없기 때문임
-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후보자 본인이 시스템에 올리면 선거관리위원회 측에서 접수처리를 하는 등의 방식으로 개편해야 함. 선거사무원 신고는 이미 선거관리위원회 내부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음
- 즉, 요지는 표준화된 형식과 요건만 만든 뒤, 후보자가 직접 전산 상에 입력하고 나면 실수나 누락에 대한 책임을 후보자가 지게 하는 것임. 앞으로는 후보자 등록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의 개입을 최대한 배재하는 방향으로 가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5. 후보자등록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

- 투표용지 검토업무, 거소투표용지 발송업무, 선거벽보 첩부업무가 중첩되므로 일정 조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후보자등록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 필요¹⁶⁾

16) 제5장에서 후보자등록 일정을 5일 정도 앞당기는 방안에 대한 개정안을 제시함.

제5절 교육 관련 개선방안

1. 선거 절차사무분야 교육프로그램 다양화

- 교육대상별[위원, (사전)투표관리관, 투·개표사무원 등] 교육 자료, 매뉴얼 등의 우수사례를 모아서 공유할 필요가 있음
 - 교육매뉴얼의 경우 대선, 지선용을 별도로 만들어 활용하는 사례 있음
- 교육대상자 분리한 교육방식 운영
 - (사전)투표관리관의 경우 예상 문제와 사례, 참관인 참관요령 등을 주로 교육, (사전)투표관리관 직무대행자의 경우 실습 교재를 별도로 만들어 배부, 장비담당의 경우 실습교육을 많이 함
- 전문교육기관 지원 필요
 - 투표지분류기 교육의 경우 교육대상자는 많으나 교육 담당 인력이 부족

2. 매뉴얼 교육 및 자동 검색 시스템

- 매뉴얼 준비 및 교육
 - 기존의 선거 사무가 가진 문제점에 의해 경험 있는 인력들은 이탈하고, 매 선거때마다 새로운 인력들을 재교육시켜야 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음. 이는 인력 문제와 원인과 해결 방안을 공유함. 숙련된 인력들의 이탈을 방지하고 이들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절차사무 자체의 개편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에게 교부되는 매뉴얼의 경우, 선거에 따라 다르지만 적게는 70페이지부터 많게는 140페이지¹⁷⁾까지 분포하고 있음. 본질적으로 본인들의 업무가 아닌 이상, 이 정도 분량의 매뉴얼을 완벽하게 숙지하도록 하는 것은 다소 무리한 대안임. 이에 대한 절충안은 상기하였듯이 이미 투표사무를 경험해본 인력들, 이미 어느 정도 매뉴얼을 숙지하고 있을 인력들을 최대한 재투입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볼 수 있음. 현장의 모든 인력이 매뉴얼을 숙지하는 건 바람직하나, 현실적이라고는 볼 수 없음. 최소한 현장을 통제하고 지휘할 수 있는 인력이라도 매뉴얼을 완벽하게 숙지하고 있으면, 이로 인해

17) 매뉴얼 몇 가지를 찾아서 낸 분포임. 이 부분에 대해선 더 많은 자료가 필요함.

기인되는 문제점들을 유의미하게 예방할 수 있을 것임.

- 교육에 관해선 일괄적인 매뉴얼이 필요할 듯함. 그러나 각 사무마다 차이점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사무 전체를 안내하는 통일된 매뉴얼 하나와, 각 사무를 교육할 수 있는 간소화된 매뉴얼로 양분하는 편이 현실적일 것임

○ 매뉴얼 자동검색 시스템

- 신규 인력이 매뉴얼 숙지가 어렵다면, 업무처리에 필요한 핵심 사항은 간단한 매뉴얼 학습으로 가능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자동 검색시스템으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선거관련 안내사항이나 문의사항에 대한 응답을 해주는 매뉴얼 앱을 개발하는 방안도 있을 것임

○ 교육

- 인터뷰에서 공통적으로 나왔던 의견은 중앙 차원에서의 일괄적인 교육 서비스 제공임. 단순히 자료 제공의 형태에서 머무는 것 보다는 중앙 기관 차원에서의 체계적인 교육 제공, 혹은 교육 가능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편이 더 바람직할 것임

3. 체계적인 온라인 교육 시스템 마련

○ 일정별 선거 절차사무 관련 체계적인 온라인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교육을 법정 필수과목으로 넣는 방안 필요

- 사이트 같은걸 개설해서 각종 케이스나 교육 같은 것을 동영상으로 게재한 후, 이수한 인원 중 간단한 테스트 문항들을 통과한 인원들만 선발해도 충분함¹⁸⁾
- 어차피 선거대표사무원들은 공공기관 출신이 다수임. 교육을 법정필수과목으로 넣어놓으면 공공기관 직원들은 교육 시간을 채워하기 때문에 호응도가 높을 것이라고 봄¹⁹⁾

○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마련을 위하여 국가공무원 및 지방자치 인재개발원 등과의 협업 필요

18) 전문가 자문의견(2022.11.29.)

19) 전문가 자문의견(2022.11.29.)

제6절 선거인명부 업무 효율화

- 선거인명부 작성 감독 상황 입력 및 보고의 실효성이 없고 감독의 기준도 모호하므로 선거인명부 작성 감독 업무를 선거 절차 사무에서 삭제하거나 또는 읍·면·동 위원회 보고로 갈음하도록 함
- 선거인명부 대조 작업에 대한 가이드라인 필요하며, 자치단체장이 사망자 등이 발생하면 이를 수정 또는 삭제한 후 선거인명부를 확정하는데 수정 또는 삭제한 내용이 시스템에 자동으로 반영되는 연동화가 필요함
- 인구수 통보 접수
 - 최종 집계 기관을 행정안전부로 통일을 하는 방안이 있음. 주민등록 전산망은 자치단체의 업무인 만큼, 이편이 타당해보임
 - 선거인명부 업무는 공직선거법상 지방자치단체장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지 않아 선거관리위원회 업무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법에 명문화 필요
- 중앙위원회와 행정안전부 간에 해당 업무에 대한 책임성 문제와 역할 분담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음
 - 선거인명부는 일원화 및 통합 연계가 필요하고, 이는 결국 행정안전부의 소관이므로 행정안전부 측에서 조율을 할 필요가 있음
- 선거일 투표에서도 통합선거인명부 활용 필요
 - 사전투표의 경우 투표용지발급기에 투표자 정보를 입력하고 본인확인을 하는데 이것이 중앙위원회의 통합선거인명부 서버시스템에 연계되어 선거일 투표소에서 사용할 선거인명부 출력 시 사전투표자라고 기재됨
 - 현재는 선거일 투표소에서 사용하는 선거인명부가 종이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선거인명부 등재번호를 찾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며, 동명이인 같은 경우 착오가 발생할 수 있음
 - 선거일 투표에도 통합선거인명부 서버시스템을 사용하면 종지로 출력하지 않아 자원 낭비를 줄이고 선거인명부대조 업무를 개선하며, 동명이인이 투표소를 잘못 찾아 올 경우 올바른 투표소로 안내 가능

제7절 선거벽보 및 선거공보 관련 업무개선 방안

1. 선거벽보 및 선거공보 표준화 및 선거벽보 수량 감축

□ 선거벽보 및 공보 표준화 및 선거벽보 수량 감축

○ 대통령선거의 선거벽보 크기를 다른 선거와 같이 표준화하고 선거벽보 첩부 수량을 감축

- 현재 sns나 방송 언론 등 온라인 선거운동 방법이 많이 발달해 있으니 선거벽보의 실효성이 낮아졌으므로 선거벽보 첩부 수량 축소 필요
- 유권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2022년도 대통령선거 및 지방선거의 후보자와 정당에 대한 정보 수집을 위해 선호하는 매체는 어디였는지에 대하여 선호매체 1순위로 가장 많은 응답을 보인 것은 인터넷 검색 45.1%이며, 다음으로 신문 방송 등 언론 40.4%이며, 다음으로 선거벽보, 선거공보, 거리현수막 11.4%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선거벽보 첩부 수량 축소가 필요함
- 온라인 검색이 많으므로 선거벽보 첩부 수량을 1/2로 축소하는 대안(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시함

○ 선거공보규격을 표준화하여 대선과 지선 등 모든 선거에서 공통적으로 적용해야 함

- 일부 후보자는 명함 크기의 선거공보를 제출하는데 선거공보 발송이 누락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너무 작은 경우 잘 보이지도 않아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음

○ 선거공보의 개선방안 관련

- 선거벽보와 마찬가지로 선거공보 자체는 없애는 것이 최선이라는 의견이 있었음. 물론 기본 전제 조건은 모바일을 통한 정보 획득이기 때문에 모바일에 취약한 세대들에 대한 배려가 따라와야 할 것임
- 신청을 받거나 아니면 읍·면·동 주민센터에 선거공보를 비치해 놓아 원하는 사람만 현장에서 가지고 가는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이 있으나 행정편의주의 발상이 될 수 있음

□ 선거벽보 수량 감축에 대한 예고와 단계적 접근

- 선거벽보 수량 감축은 일시에 많은 수량을 감축하기보다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함
 - 선거공보나 선거벽보 감축도 없애겠다는 걸 미리 예고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면 4년 후 대선 때부터 점차 줄이겠다,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감축을 해야 함. 만약 이럼에도 불구하고 받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따로 링크를 주는 등, 사각지대를 보완할 방법은 많음. 솔직히 선거벽보나 선거공보나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점은 사람들 사이에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 그렇지만 반대하는 한 명 소수의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강행할 수 없는 것임. 그러나 그걸 과감하게 넘어서면 선거벽보를 붙이는 게 신기한 세상이 옴. 다만 그걸 할 수 없으니까 단계적으로 줄여나가야 할 것임²⁰⁾

□ 선거공보 및 선거벽보를 포털사이트 등에 게재하는 방안

- 향후 선거공보 및 선거벽보를 선관위 사이트에 게재를 하거나 포털사이트에 게재 후 선관위가 직접 관리하는 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²¹⁾

□ 선거공보 디지털화 등²²⁾

- 선거공보 디지털화 시급함
 - 환경보호 측면과 비용절감 측면 그리고 인터넷 보급률 고려 과감한 축소 필요
 - 정당별 유불리 완화 가능
- 다만, 선거벽보는 당분간 현행 유지가 바람직해 보임. 상당수 유권자와 미래 유권자들이 벽보를 통해 정보를 얻는 것으로 보임
 - 선거분위기 조성 과 홍보에 일정부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선거벽보 형식은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안 선호
 - 거리현수막은 대체보다는 보완 방식으로 개선이 필요함

20) 전문가(행정학 전공 박사) 의견(2022.11.29.)

21) 전문가(행정학 전공 박사) 의견(2022.11.29.)

22) 전문가 서면자문의견(2022.11.28.)

2. 선거벽보 첩부·철거 업무 외주화 등

- 선거벽보 첩부·철거 업무를 외주화하는 방향을 권고하고, 외주화를 결정한 구시·군 위원회 대상으로 사전에 관련 예산을 편성하도록 함
 - 용역업체 선정 및 선정된 용역업체와의 업무 협의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만, 일단 외주화를 시작하면 노하우가 축적되므로, 업무 효율성이 높아짐
 - 선거벽보 첩부·철거와 관련하여 외주를 주기 위해선 업무량을 줄이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 선거벽보 첩부장소 실사를 제외한 첩부상황 및 훼손 등 확인 업무를 업체 위탁
- 선거벽보 첩부·철거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용역을 맡기는 방안도 있음
 -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사례
- 선거벽보를 현수막형태로 대체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선거벽보 제작 및 첩부 과정이 여러 단계로 번거로움. 대신 미리 도안을 받아 현수막 업체에서 출력한 뒤 거리 게시하도록 하는 방안
- 선거벽보 첩부 장소 사용승낙서 징구는 선거일 전 100일 이상 기간을 두고 평소에 하는 것이 바람직함

3. 선거벽보 첩부수량 결정기준을 인구수에서 공공기관 수로 변경 검토

- 선거벽보 첩부수량 결정기준을 인구수에서 공공기관 수로 변경 검토 필요
 - 현행 법령상 선거벽보 첩부수량은 공직선거법 제64조(선거벽보), 공직선거법 제206조(선거벽보에 관한 특례),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9조(선거벽보)에 인구수를 기준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음²³⁾
- 선거벽보 첩부수량 결정 기준을 공공기관으로 할 경우에도 인구수 기준의 선거벽보 첩부수량과 큰 차이가 없고, 오히려 첩부수량이 증가 하는 것으로 보이나, 도심 지역 아파트의 경우 단지 내에 여러 개의 경로당이 있어 합리적인 기준(아파트

23) 부록 3] 참조.

단지 입구에 1곳 선택 등)에 따라 첩부할 경우 수량이 줄 수 있고, 시골 지역의 경우에도 마을회관이 경로당을 겸하는 경우가 대다수 이어서 인구 기준 첩부수량과 큰 차이가 없음

- 또한, 인구수 기준으로 선거벽보 첩부 수량을 결정하더라도, 첩부는 인구 이동이 많은 학교, 아파트 단지, 마을회관 등 공공기관 인근에 첩부하게 되어 인구 기준 첩부수량과 장소가 비슷함
- 기존 선거벽보 첩부장소 파악은 선거마다 전 선거 때의 첩부 장소를 참고하여 읍·면·동사무소 직원(간사·서기)이 파악하고, 사용승낙을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공공기관 기준으로 첩부 수량과 장소를 결정할 경우, 한 번 첩부장소를 파악하면 이후 선거에서 현황 관리가 편리하고, 사용승낙서 징구가 수월함
- 선거벽보 첩부장소가 공공기관 또는 그 인근이므로 선거벽보 첩부 후 관리(인위적인 선거벽보 훼손 방지 및 비·바람으로 훼손 됐을 경우 제보)가 수월하고, 선거벽보 첩부장소가 건물로 특정되어 있으므로 외부 업체 위탁이 용이함
- 선거벽보 효용성에 대한 비판이 있는 상황에서 합리적인 선거벽보 첩부수량 및 장소 결정으로 환경오염과 예산 낭비 지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

4. 선거공보 발송 장소 확보를 위한 중앙 차원의 협조체계 구축

- 선거공보 발송 장소 확보를 위해 교육청, 공공기관 등과의 협조체계를 중앙차원에서 구축할 필요가 있음
 - 가장 적합한 곳이 학교 강당, 체육관 등이지만 학부모 반대로 활용하기 어렵고, 관외 지역이나 물류 센터 등을 활용할 경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선거공보 작성 규격 표준화 관련 논의
 - 선거공보 발송 업무를 외주를 주기 위해서는 선거공보 작성 규격 표준화가 우선적으로 필요함. 그러나 선거공보 제작은 후보자들의 선거비용과 연결되어 있어 논의가 쉽지 않음
 - 선거공보 규격 표준화에 관해 자유 침해라는 지적도 나옴
- 선거공보 발송업무 외주화 관련
 - 선거공보는 전 국민 주소라는 개인정보 보안 문제로 외주화는 바람직하지 않음

- 선거사무보조 인력 및 관련 예산확보를 통한 문제해결이 필요함

5. 선거공보의 위법사항 등에 대한 검토

- 선거공보의 위법사항에 대한 검토는 변호사 등에게 자문 받고 자문 비용은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보조하는 방안 필요
 - 선거공보 예비 검토는 의무적이지 않지만 만약의 경우를 고려해 안내 차원에서 해주는 것임, 예비 검토를 해 줄 필요는 없지만 내용 검토보다 위법한 사항을 문의하는 경우가 있어서 검토하지 않을 수 없음
- 선거공보 검토를 위해 변호사 등의 전문 인력을 계약 형태로 외부에서 전담하는 방안
 - 우선적으로는 정당에서 1차 검토를 고려해줄 필요가 있음

제8절 투·개표 관련 업무개선 방안

1. 사전투표 및 선거일 투표 관련 업무 효율화

□ 사전투표 관련

- 사전투표소 현황 입력 시 수어통역사 여부를 입력하는 현행 방식에서 수어통역사가 실제로 확보되었을 때 시스템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변경 필요
 - 사전투표소의 현황을 입력할 때 수어통역사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 시기에는 수어통역사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추후에 정보 수정이 이루어지게 되며, 중앙위원회에 수정 요청을 해야 하는 업무 절차가 복잡함
 - ⇒ 인터뷰 결과, 수어 통역사 여부의 경우, 확실히 불필요한 업무가 발생하고 있음. 실제로 장소가 확정됐을 때 통역사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는 것임
- 사전투표 관련, 공통적으로 나오는 의견은 모의시험이 불필요하게 많다는 점임.
2회만 실시해도 충분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므로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사전투표소 명칭·소재지 및 설치·운영기간을 기재한 공고문 첨부 업무를 폐지하고, 그 대신 투표안내문 발송용 봉투 뒷면에 기재하여 안내

□ 기관·시설안의 기표소 운영

- 기관·시설안의 기표소 설치 의무기준을 거소투표신고인 10명 이상에서 20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설치 기준 인원 수 조정이 필요함
 - 기관·시설안에 10명 이상의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시설의 장은 의무적으로 거소투표를 위한 기표소를 설치해야 하는 규정으로 인해 기관·시설안에 설치하는 기표소 수가 늘어나고, 기표소 운영에 시간과 인력이 많이 소요되고 있음
 - 만일 제도를 계속 유지하고자 한다면 거소투표신고인 기준을 기존 10명에서 30 ~ 50명까지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음
- 현행 방식(서면신고)에서 시스템을 통해 기관·시설안의 기표소 설치 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변경 필요

- 기준에 맞지 않으면 아예 등록되지 않도록 함

□ (사전)투표소 설치 장소 협조 및 투표구 조정 문제

- (사전)투표소 설치 장소 협조 문제의 경우 대안으로써 투표구 조정이 제시 되고 있는 상황임. 그러므로 투표구 조정 문제에 대해 논하는 것이 장소 협조 문제의 대안도 될 수 있음. 지방의 경우 인구가 꾸준히 유출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투표구를 줄이는 것은 어느 시점에서선 반드시 논의될 수밖에 없는 문제임
 - 투표소까지 이동시 소요되는 시간에 따라 투표율이 얼마나 유의미한 영향을 받는 지에 대한 연구 조사가 필요함. 이동 소요시간별로 투표를 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설문을 통해 조사하는 방법이 있음. 조사 결과를 토대로 투표구 조정의 기준을 세워야 함

□ 장애인 사전투표 및 선거일 투표 관리 검토 필요²⁴⁾

- 장애 유형별 투표자 관리 매뉴얼 검토
- 투표보조 시 직접 및 비밀투표 원칙 준수 검토
- 향후 감염병 재 창궐시 사전 대비에 유용한 방안 병행 검토

2. (사전)투·개표 참관인 관련 업무개선 방안

- (사전)투표참관인 관련 규정 개정 필요
 - 사전투표와 선거일 투표의 참관인 기준을 통일시키는 방안 필요
 - 8시간 이상 근무자에게만 수당 지급
- (사전)투표참관인 교체 신청을 사전에 받지 않고, 교체 사유가 발생한 당일 신고서를 제출하고 현장에서 교체하도록 함
- (사전)투표참관인 관련 신고를 상호관리시스템으로 일원화하고 인증서 폐지 등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24) 전문가 서면자문의견(2022.11.28.)

○ (사전)투표참관인을 정당이 추천

- 인터뷰 결과, 정당인의 책임 하에 정당이 운영을 하는 걸로 바꾸자는 의견이 제시되었는데 설득력이 있음. 결국 정당 측에서는 본인들 선거이기 때문에 정말 참관하고 싶은 사람들을 해당 투표소에 보내게 될 것임. 만약 투표소에 참관인이 못 오게 되면 정당에서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정당 측에서도 제대로 된 사람을 보내줄 것임. 수당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더라도, 문제가 생겼을 시에는 정당에 대해서 처벌규정을 두고 운영해야 본인들도 책임감을 가지고 참관인을 선발할 것임
- 무소속 후보자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현행과 같이 참관인 선발이 가능할 것임

3. 투표 방식 일원화 방안

○ 선거사무 전반을 아우르는 대안으로, 사전투표와 선거일 투표를 일원화 시키자는 대안이 인터뷰에서 제시되었음

- 사전투표 방식으로 투표를 하되, 선거일을 정하지 않고 일정한 기간 동안 투표를 진행하는 방안임. 예를 들면 5일 내내 사전투표 방식으로 진행함
- 선거일 날 투표소는 투표구마다 설치하고, 사전투표소는 읍·면·동 별로 설치함. 그러나 시간이나 장소, 장비가 여의치 않으니 합의 지점을 찾아야 될 것임. 그래서 사전투표소 보다는 많은 투표소, 그러나 선거일 투표소보다는 적은 양이 될 것임
- 5일 동안 투표를 하되, 하루는 새벽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또 다른 날은 정오부터 밤9시까지 운영하는 등, 투표 시간을 탄력적으로 지정하면 최대한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음
- 사전투표 방식이기 때문에 투표용지가 발급기에서 바로 나옴. 투표용지를 종일 인쇄하지 않을 수 있어 시간 절약 측면에서도 효율적임
- 개표 측면에서도 효용성이 있음. 개표하는 현장을 가보면 선관위 직원들이 그날 새벽 4시에 출근해서 그 다음날 오후 3시쯤에 퇴근함. 거의 서른 몇 시간 정도를 단 1분도 지지 못하고 계속 일을 하는 상황임. 개표를 곧바로 진행하는 이유는 투표 결과를 빨리 알고 싶기 때문인데, 사전투표 형식을 채택하면 기간의 마지막 날은 투표를 빨리 끝내고 대낮부터 바로 개표를 하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개표 결과도 더 빨리 알 수 있는 장점이 있음

4. 투·개표 관리 업무개선 방안

- (사전)투표소 확보가 어려운 문제에 대하여는 교육청, 공공기관 등 시설을 가진 유관기관과의 협조가 중요
- 투표용지 검수업무, 거소투표용지 발송업무, 선거벽보 접수·첩부 업무가 중첩되므로 일정 조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후보자등록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 필요
- 사전투표 일정 및 시간을 조정하는 대안 검토
 - 현행 오전 6시 시작을 오전 8시 시작으로 변경 검토
 - 그러나 정치학 전공 전문가(대학 교수)는 사전투표 시간을 오전 6시 시작을 오전 8시 시작으로 변경하는 대안에 대하여 바람직하지 않다²⁵⁾는 의견임
- 우편투표 접수
 - 만약 우체국에서 등기번호와 연동시키는 방법을 채택하려면, 우체국에서 오류 없이 파일을 넘겨줄 수 있도록 부수적인 대안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 바코드를 찍는 이유는 누락 발생 시 어디서 누락됐는지를 알려는 목적이 있음. 따라서 바코드를 전부 찍기 보다는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된 것만 확인해도 될 것 같다는 방안이 제시됨
- 우편투표 회송용봉투 접수기 문제 개선
 - 인터뷰 결과에 의하면, 우편투표 회송용봉투 접수기 운용이 쉽지 않고 기계 대수도 부족한 문제가 있음. 5대의 기계로 3만 8천통의 우편투표 회송용봉투를 접수 해야 했음. 접수 중에도 2-3장씩 내부에서 겹치는 등, 기계 작동이 원활하지 않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음. 적정수량 확보하는 것만큼 접수기 자체를 개선하는 것도 중요함
 - 우편투표 회송용봉투 접수는 수량을 세고 또 접수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함. 실제 접수하는 과정에서 이중 투표자가 나오기 때문에 접수기로 걸러내는 작업이 필요함
 - 수십만 명 중에 한두 장을 걸러내고자 그 수많은 인력이 새벽까지 일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그러나 수십만 명중에 한두 명의 오차도 있어선 안되는 게 투표이기도 함. 이런 점을 주장의 논거로 삼아 현재 접수기가 지닌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25) 전문가 서면자문의견(2022.11.23.)

- 우편투표 회송용봉투 접수기 수량 제고
 - 우편투표 회송용봉투 검수를 위한 접수기(리더기) 추가
 - 과거 새벽까지 접수를 하던 것을, 리더기를 추가로 들여 시간을 축소함
 - 타 구시군위원회 회송용봉투를 걸러내기 위해 우체국 등기번호를 전산상 연계 필요
- 투표 끝난 후 투표지 보관장소 개선
 - 투표 이전의 투표용지는 구시군위원회 회의실에 보관하는 것이 보안상으로 적절하나, 투표 이후의 투표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관하는 것이 필요함
 - 선거 소송을 제기할 경우 투표지 폐기가 되지 않고 부정선거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계속 감시하므로 스트레스가 많음
- 임시 기표대 현황 입력 방식을 설치된 곳만 입력하는 방식으로 변경
 - 임시 기표대가 설치된 곳이 많지 않으므로 설치되지 않은 곳을 '0'으로 입력해야 하는 업무 불필요함, 설치된 곳만 입력하는 방식으로 바꿀 필요가 있음
- 개표상황을 팩스를 통해 보내는 방식에서 시스템을 통한 보고 및 개표상황표를 스캔해서 이메일이나 문자로 송부하는 방식으로 변경
- 개표시스템을 운영할 때 지역 특성을 반영
 - 통합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하나의 투표소에서 나온 투표는 바로 개표하는 방안이 필요
- 투표지분류기의 개선
 - 분류기를 최소한 2년에 한 번씩은 업그레이드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음.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유권자들에게 분류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을 홍보해야 한다는 점임. 제기되는 의혹에 대한 중앙 차원에서의 대응이 필요함
-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가 가장 필요한 사항임
 - 협조가 순조로우면 투·개표 책임사무원 위촉이 빠르고,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짐
 - 인터뷰 결과, 지방자치단체 협조를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업무에 대해 언급해주기를 기대함

5. 투표지분류기 교육, 모의시험 등은 D-60 이전에 평소에 진행

- 투표지분류기 교육, 모의시험 등은 본격 선거 준비가 시작되는 D-60 이전에 평소에 진행하여 준비를 완료할 필요가 있음
- D-60 ~ D-0에 진행되는 투표지분류기 교육 및 모의시험은 단순하게 확인만 하면 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제9절 선거 물품·장비 관련 업무개선 방안

- 중앙위원회에서 물품을 조기에 확정하여 정확히 배부하는 것이 중요
 - 물품 종류가 너무 많고 업체마다 배송하는 물품이 달라서, 물품 검수 및 배분 작업에 시간이 많이 소요됨
- 물품 검수 절차사무 간소화 및 물품소요량 예측의 합리화
 - 불필요하게 반복되는 물품 검수 절차사무를 줄여야 할 필요가 있음
 - 중앙에서 사전투표 예측수를 포함한 물품 소요량을 조금 더 확실하게 예측해야 함.
 - 확실한 예측을 통해 물품을 일괄적으로 보낼 필요가 있음
 - 물품 폐기와 관련해서 지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는데, 향후 선거 때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방향을 강구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음
- 사전투표 물품 관리를 위해 사전투표 예상 수를 지침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음
 - 투표요지 발급용 롤용지 등 물품의 경우 소요량을 예측하기 어려워 예비로 보관하고 있는 물품이 부정선거 시비 등의 민원을 발생시키고 있음
- 사전투표 장비 문제
 - 예산을 투입하여 장비를 더 확충하는 수밖에 없음. 중앙 차원에서 예산 확보의 타당성을 잘 설명해야 함
 - 예산을 투입해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장비가 한 대당 수 백 만원에 육박하며, 중앙에서도 다른 부분에 써야 될 예산이 있기 때문에 사정이 여의치 않은 것이 현실임. 예산 투입의 필요성에 대해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해야할 것임
 - 사전투표율 등을 근거로 하여 장비 관련 예산 확보 필요
- 사전투표율 등을 근거로 하여 장비 관련 예산 확보 필요
 - 사전투표 인원이 사전투표를 처음 실시했을 때와 비교하여 최소 2배 이상 증가했으나 관련 장비 수량은 그대로이며, 4년 이상 지난 장비도 많고, 관련 업체가 장비를 신규 제작하지 않으며, 장비 교체를 요청해도 시간이 많이 소요
- 선거물품 배송업체에게 위원회 업무담당자 개인전화번호를 주지 않은 것이 필요
 - 사무실로 전화하면 누군가가 받아서 메모하여 전달 가능함

- 선거 종료 후 일정 시기에 소모품을 폐기하는 지침 필요
 - 소모품 수불대장 작성은 부정선거 논란을 없애기 위해 선거 물품을 얼마나 썼는지 명확히 하는 것이지만, 물품이 올 때 새 물품만 오는 것도 아니고 일부 사용한 물품도 있으며, 재고량이 많은 경우 다음 선거 시 필요한 소모품을 구입하기 어려움
- 상급 위원회에서 물품을 미리 배부하는 방안
 - 물품이 도착하면 배분을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한 달에서 한 달반 전에 받아 선거 직전에 업무 부담을 분산시킬 필요가 있음

제10절 선거관리경비 집행업무 개선

- 중앙 또는 시도위원회에서 담당하되, 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 4대보험, 원천세 등 회계업무 역량 강화 교육 실시
 - 회계 담당 주무관들이 대체로 신규 직원인 경우가 많음
 - 4대보험이나 원천세를 각 구사군별로 지출하는데 내용 자체가 어려움, 매뉴얼이 있기는 하지만 매뉴얼을 본다고 해서 당장 해결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며 관련 교육 필요
- 중앙위원회는 돌발 상황에 대비해 예산지출 프로세스를 조금 더 일찍 준비
 - 이번 선거에서 코로나 때문에 한시 사례금 예산이 반영되는 경우 업무 처리를 급하게 해야 해서 어려웠으며, 선거일 이틀 전에 관련 예산이 내려왔고 이를 또 투표사무원 수당 지급을 위해 동에 배부해야 하는데 시간이 촉박했음
- 수당에 대한 내부 운용 기준 수립
 - 중앙 차원에서의 계획성 있는 예산 편성이 필요함
 - 긴급히 편성되는 수당에 대한 운용 기준 마련
- 계약 관련 업무 교육
 -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회계 담당자들한테 통일적인 교육 제공 필요

제11절 업무자동화 및 인공지능 적용 직무

□ 자동화 기계 활용 필요

- 사전투표 회송용봉투 접수수량이 많은 경우 자동화 기계나 임시인력 활용이 필요
- 계수를 용이하게 하는 개선방안 필요, 우체국과의 중복 업무가 발생되므로, 이 부분에 대한 보완점이 필요함

□ 절차와 과정의 자동화 혁신이 필요

- 선거 절차사무의 경우 다른 분야에서 IT기술을 활용하는 것에 비해 너무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음²⁶⁾
 -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QR코드 인증 같은 플랫폼들이 구축되어 있어서 마음만 먹으면 금방 개발하고 적용할 수 있음. 미리 바코드나 QR코드를 주는 방법 등, 방법은 굉장히 많음. 굳이 사람이 일일이 확인하는 방법을 고집해야 될 이유는 없음.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임
- CCTV 같은 경우엔 기존의 폐쇄회로 CCTV 대신, 네트워크식으로 교체해서 실시간으로 개방할 필요가 있음. CCTV를 오픈해서 보길 원하는 사람은 자택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임²⁷⁾

□ 인공지능 및 업무자동화 등을 활용하여 업무자동화 혁신²⁸⁾

- 바코드 찍는 업무나 투표 용지 확인 등 단순반복 직무를 대상으로 업무자동화 프로세스를 구현할 필요
 - 미래의 서비스 전달은 인간, AI, 자동화로 전환될 것임(Dhar, 2019; 김윤권 외, 2022에서 재인용)
 - 반복적이고 정형화된 일상적 지원 업무의 경우에는 AI를 적용하면, 업무를 더욱 빠르고

26) 행정학 전공 전문가 의견(2022.11.29.)

27) 행정학 전공 전문가 의견(2022.11.29.)

28) '알고리즘의 오류 등으로 문제가 생기면 대형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시급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전문가 자문의견(2022.11.23.)이 있었음.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일상적 업무를 자동화하게 되면, 의사결정의 품질도 개선할 수 있음(김윤권 외, 2020: 669-6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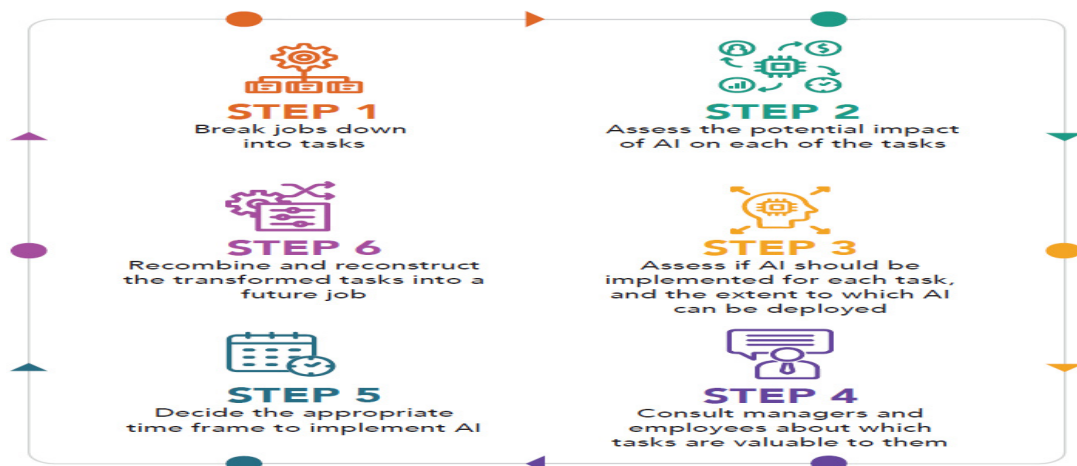
- 서비스 자동화 및 서비스 지능화는 서비스 관리 개념을 완전히 변화시킬 것임. 즉, 서비스 전달을 더욱 빠르고 저렴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함. 이러한 측면에서 서비스 관리는 서비스 운영(service operations)에서 서비스 디자인(service design)으로 전환될 것임(Shein, 2019; 김윤권 외, 2022에서 재인용)

○ 인공지능 활용 가능 직무기반 직무전환

- 조직 내 직무에 관한 AI의 영향을 평가할 때 조직이 직무기반 직무전환을 하는 단계는 다음 <그림>과 같음

- 1단계는 직무(jobs)를 과제(tasks)로 세분화함
- 2단계는 각 과제에 대한 AI의 잠재적 영향을 측정
- 3단계는 만일 AI가 각 과제를 위해 집행되어야 하는지를 그리고 AI가 배치될 수 있는지를 평가
- 4단계는 과제가 관리자와 조직구성원에게 가치가 있는지를 상담
- 5단계는 AI를 실행할 적절한 시간 프레임이 있는지 결정
- 6단계는 전환된 과제를 재결합하고 재구조화하여 미래 직무로 만듦(IMDA & PDPC, 2020: 17)

<그림 4-2> 인공지능 적용 직무전환 단계



출처: IMDA & PDPC(2020: 17); 김윤권 외(2021: 254에서 재인용)

- 자동화될 수 있는 직무의 자동화 필요 여부 결정 시 고려할 요인으로는 i) 투자수익률 고려(ROI), ii) 자동화 리스크와 비용 고려, 특히 자동화 오류로 인한 비용(예: 가짜 양/음성 반응, 기술 관련 사고 발생 등), iii) 도덕적·윤리적 이슈로 하지 말아야 할 경우(예: 차별), iv) 사회적 준비 및 수락 가능성, v) 인적 요인 고려 등이다(김도형·최지민 역, 2019: 116; 김윤권 외, 2021: 257에서 재인용)
- 업무자동화는 대부분 IT 기술과 연관되므로, 인소싱(insourcing) 기반의 업무양상보다는 아웃소싱(outsourcing)의 패턴이 증대할 것으로 예상됨(김윤권 외, 2021: 324)

○ 인쇄단계에서 투표용지 검수 자동화 장치 개발 필요

□ 인터뷰 결과

- 투표용지 인쇄 감독이 투표용지 찍으러 화물차 몰고 감. 투표용지 찍는 과정 다 확인함. 초고 확인하고 원판 들고 와서 하거나 인쇄소에서 하는 경우도 있음
 위원, 사무국장 또는 직원 입회하에 투표용지 인쇄 전 과정을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투표용지 인쇄 전 초고를 시·도위원회와 중복 교차 확인하고 투표용지 외부유출 등 예방을 위해 별도 차량(화물차 임차)을 운전하여 수송함
- 인쇄용지에 문제가 없는지 빠르게 훑어보는 방식으로 함. 경기 파주 같이 디지털 인쇄하는 데는 인쇄소에서 확인하지만, 작은 데는 하나하나씩 다 확인함
 인쇄된 투표용지는 선거별로 혼입, 일련번호 누락, 인쇄상태 등에 대해 문제가 없는지 빠르게 훑어보는 방식으로 검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경기 파주시 출판단지내 인쇄소의 디지털 인쇄기로 인쇄하는 위원회에서는 현장에서 투표용지 검수를 실시하지만, 소규모 시설에서 인쇄(오프셋인쇄기)하는 곳은 투표용지 한 장씩 일일이 확인함
- 디지털로 가능한 하지만, 현재는 선거사무보조인력이 고용되어 확인함. 그리고 각 투표소 단위로 다 묶어서 바로 투표소에 배부될 수 있도록 함. 점이 찍혀 있으면 기계 투표 분류기가 기표로 인식해서 미분류로 빼버리는 오류가 생김
- 좋은 시설 인쇄소에서 인쇄를 해야 하는데 인쇄시설도 부족함. 인쇄소를 감독할 때 쳐다보고 있다가 잉크가 튀기면 기계를 세워서 해당 종이를 빼고 다시 돌려야 함

...

제5장

선거관리관련 법제개선방안

제5장 선거관리관련 법제개선방안

제1절 개관

-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 제7장에서는 선거관리에 관한 3개의 조항을 두고 있음.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p>헌법 제114조 ①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p> <p>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p> <p>③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p> <p>④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p> <p>⑤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p> <p>⑥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p> <p>⑦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p> <p>헌법 제115조 ①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지시를 받은 당해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p> <p>헌법 제116조 ①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p> <p>②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p>

- 위 규정을 보면 헌법기관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선거관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직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헌법 제114조) 또한 선거운동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도록 하고 있음.(헌법 제116조)
-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 「선거관리위원회법」 등이 제정되어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대통령령)으로 「공직선거관리규칙」,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규칙」, 「당

내경선 위탁사무규칙」,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등이 제정되어 있음

- 다음으로 헌법 제115조에서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지시를 받은 당해 행정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하여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이처럼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를 두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음. 외국에서는 선거관리 그 자체는 전국적 조직을 갖고 있는 내무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선거비용이나 정치자금과 관련된 정치활동 투명성확보를 위한 국가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임. 이에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선거관리의 공정성 여부가 정치적으로 예민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3의 독립된 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관리를 맡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성낙인, 2015: 667)
 -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단독으로 선거관리임무를 수행하는 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등 타 기관의 협조를 받지 않을 수 없음.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사무에 대해서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도록 헌법에서 근거규정을 두고 있는 것도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공직선거법에서도 이러한 헌법규정을 구체화하여 선거사무협조에 관한 규정을 아래와 같이 두고 있음

공직선거법 제5조(선거사무협조) 관공서 기타 공공기관은 선거사무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 현재 선거관리의 문제점으로 1) 지방자치단체 인력 협조, 2) 선거인명부, 3) 선거벽보첩부 및 선거공보발송, 4) 예비후보자등록 및 예비후보자공약집 검토, 5) 후보자등록 신청서류 검토, 6) 사전투표, 7) 선거방송토론, 8) 개표, 9) 기관·시설 안의 기표소 운영, 10) 투표참관인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이하에서는 이 순서에 따라 관련 법령의 개선방안을 모색해보도록 하겠음

제2절 지방자치단체 인력 협조

- 선거기간 동안 집중되는 선거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가 필수적인 상황임.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노조의 비협조로 인해 사무원 모집기간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자치사무)에 선거관리업무를 명시하는 등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 방안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선거관리사무의 성질에 대해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무는 크게 1) 자치사무, 2) 단체위임사무, 3) 기관위임사무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임. 그 외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사무를 수행하는 공동사무도 존재함
 - 자치사무와 기관위임사무의 구별기준으로는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를 요하는 사무인지, 최종적인 책임귀속주체가 누구인지, 경비부담의 주체가 누구인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임.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추34 판결)
- 선거관리사무의 법적 성질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1) '대통령선거관리사무' 또는 '국회의원선거관리사무' 및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을 선출하는 '지방선거관리사무'를 나누어서 볼 필요가 있음
 - '대통령선거관리사무' 또는 '국회의원선거관리사무'의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를 요하는 사무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처리하게 될 경우 기관위임사무로 보는 것이 타당함
 - 그러나 '지방선거'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을 구성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와 달리 볼 필요가 있음
- 지방선거사무의 법적 성질에 관해서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음

강남구 등과 국회 등 간의 권한쟁의(헌재 2008. 6. 26. 2005헌라7 결정)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하는 지방선거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을 구성하고 그 기관의 각종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지방선거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존립을 위한 자치사무에 해당하고, 따라서 법률을 통하여 예외적으로 다른 행정주체에게 위임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고 그에 따른 비용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적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의 관여가 필요하거나 특정 사안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국가 전체의 문제와 직결되는 등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성을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필요에 따라 국가가 관여할 수 있다.

그런데 지방선거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해당하지만, 지방선거는 주민의 대의기관을 구성하는 민주적 방법인 동시에 대표기관으로 하여금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케 함으로써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불가결한 수단이라 할 것인 바, 선거와 투표에 대한 관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선거와 투표관리 등의 집행업무 담당기관을 일반행정기관과는 별도의 독립기관으로 구성하여 지방선거를 관리하도록 할 필요가 있고, 이에 이 사건 지방선거사무도 국가기관인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다.

한편, 구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에 비추어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다른 기관이 맡아 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비용은 원칙적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지방선거의 선거사무를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하는 경우에도 그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하고, 이에 피청구인 대한민국국회가 지방선거의 선거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위 헌법재판소 결정을 보면 지방선거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다만 선거와 투표관리 등의 집행업무 담당기관을 별도의 독립기관으로 구성하여 관리하도록 할 필요가 있어서 지방선거사무를 ‘국가기관’인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다고 판시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규칙」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부담대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역시 지방선거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 보는 전제에 서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규칙」 제3조(부담범위) 법 제277조(선거관리경비)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지방선거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의 관리준비와 실시에 필요한 경비

2. 선거에 관한 계도·홍보 및 단속사무에 필요한 경비
3. 선거에 관한 소청에 필요한 경비
4. 선거에 관한 소청의 결과로 부담하여야 할 경비
5. 선거에 관한 소송에 필요한 경비
6. 선거에 관한 소송의 결과로 부담하여야 할 경비
7. 선거결과 정리, 선거에 사용한 장비의 보수·정비 및 선거비용의 수입·지출에 관한 확인·조사에 필요한 경비
8. 선거관리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
9. 예측할 수 없는 경비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로서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의 합계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10. 보전비용

○ 지방자치법 제1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 여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2) 주민의 복지증진, 3)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진흥,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 6) 지역문화 위 및 지방소방, 7) 국제교류 및 협력 등이 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 위 지방자치법 규정에는 ‘지방선거관리’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그러나 위 규정은 어디까지 ‘예시’규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위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자치사무로 인정될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함. 헌법재판소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지방선거사무를 자치사무로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선거기간 동안 집중되는 선거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 중의 하나로 ‘지방선거관리사무’를 명시하는 방안을 채택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음. 이를 반영한 법안을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음

지방자치법(안)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자. 공유재산(公有財産) 관리
 차. 주민등록 관리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파. 지방선거의 관리

- 위와 같이 ‘지방선거의 관리’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의 하나로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찬반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우선 찬성논리로 1) 지방선거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속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조문은 판례와 일치하는 내용을 확인적 차원에서 규정하는 것이어서 문제가 없다는 점, 2) 위와 같이 명시함으로써 선거관리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음
- 다음으로 반대논리로 1) 지방선거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속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이미 있는 상태에서 확인적 차원에서 지방자치법에 규정을 두는 것이 그리 큰 의미를 갖기 힘들다는 점, 2)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지방선거관리를 포함시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을 강조하는 셈이 되어서 입법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저항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 3) 선거관리에 있어서 협조의무는 헌법(제115조 제1항, 제2항) 및 법률(공직선거법 제5조)에서 이미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에 자치사무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것이 불필요하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음
- 위와 같은 상반되는 논리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방자치법에 ‘지방선거관리 사무’를 자치사무로 열거하는 방안은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 다음으로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협조의무를 지방자치법에서 명시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 우선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13조에서 자치사무 중의 하나로 명시하는 것은 곤란함

- 지방자치법 제9장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에 선거관리사무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이 경우의 법안은 다음과 같음

지방자치법(안) 제18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에 대한 균형적인 공공서비스 제공, 지역 간 균형발전, 그리고 선거사무관리를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 위 법안에서 ‘선거관리사무’라고 할 때에는 1) ‘대통령선거관리사무’ 또는 ‘국회의원선거관리사무’ 뿐만 아니라 2) ‘지방선거관리사무’ 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의 대상이 되는 선거관리사무는 위 두 가지 유형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이는 1)과 2)가 사무의 성격은 다르지만 모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대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임
- 그런데 위와 같은 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찬반논리가 제시될 것으로 보임
 - 우선 찬성논리로는 1) 헌법 제115조에서 이미 선거관리사무와 관련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고 이를 확인적 차원에서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는 것이어서 문제가 없다는 점, 2) 위와 같은 규정이 들어가게 될 경우 특히 ‘대통령선거관리사무’ 또는 ‘국회의원선거관리사무’에서 인력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 보다 용이해진다는 점, 3) 지방자치법에서는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규정도 두고 있어서(제185조, 제189조 등)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는 ‘대통령선거관리사무’ 또는 ‘국회의원선거관리사무’에 관한 두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음
 - 다음으로 반대논리로는 1) 지방자치법 제183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을 규율하는 ‘일반적인 규정’이기 때문에, 선거관리사무와 같은 ‘특정사무’를 이 조문에서 규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점, 2) 지방자치법 제183조는 ‘지방분권’의 활성화를 위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을 명시한 것이어서, 여기에서 ‘대통령선거관리사무’ 또는 ‘국회의원선거관리사무’와 같은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것은 곤란하다는 점, 3) 지방자치법에서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기관위임사무 일반에 대한 규정이고, 특정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며, 이는 선거관련법에서 별도로 규율할 문제라는 점 등을 들 수 있음

- 지방자치법 제1조에서는 지방자치법의 목적을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음
 - 이러한 지방자치법의 목적을 고려할 때 ‘대통령선거관리사무’ 또는 ‘국회의원선거관리사무’와 같은 ‘특정의 기관위임사무’와 관련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의무를 ‘지방자치법’에서 규율하는 것은 설득력을 갖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지방자치법의 개정 이외에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촉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도 모색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대안 중의 하나로 공직선거법의 선거사무협조에 선거관리인력의 지원을 포함시키는 방법을 들 수 있음

공직선거법 제5조(선거사무협조) 관공서 기타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선거사무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 1. 선거관리인력의 지원
- 2. (생략)
- 3. (생략)
- 4. 그 외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무

- 위 규정은 현재 선거사무협조에 관해 포괄적으로 규정을 두고 있는데 보다 구체적으로 협조요청사항을 열거함으로써 선거사무협조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음

제3절 선거벽보첩부 및 선거공보발송

- 온라인을 통한 선거정보입수가 용이한 오늘날에는 선거벽보의 수를 감축하는 방안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음. 이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음

공직선거법 제64조(선거벽보) ① 선거운동에 사용하는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候補者만의 寫眞을 말한다)·성명·기호(제150조에 따라 투표용지에 인쇄할 정당 또는 후보자의 계재순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정당추천후보자의 소속정당명(無所屬候補者는 “無所屬”이라 표시한다)·경력(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외에는 게재할 수 없다. 이 경우 정규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졸업 또는 수료당시의 학교명(중퇴한 경우에는 수학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을 기재하고,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게재하는 때에는 그 교육과정명과 수학기간 및 학위를 취득한 때의 취득학위명을 기재하여야 하며, 정규학력의 최종학력과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은 제49조제4항제6호에 따라 학력증명서를 제출한 학력에 한하여 게재할 수 있다. 이하 같다)·정견 및 소속정당의 정강·정책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地域區國會議員選舉에 있어서는 比例代表國會議員候補者名單을, 地域區市·道議員選舉에 있어서는 비례대표시·도의원후보자 명단을,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후보자명단을 포함하며, 候補者외의 者의 人物寫眞을 제외한다)을 게재하여 동에 있어서는 인구 500명에 1매, 읍에 있어서는 인구 250명에 1매, 면에 있어서는 인구 100명에 1매의 비율을 한도로 작성·첩부한다. 다만, 인구밀집상태 및 첩부장소등을 감안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구 1천명에 1매의 비율까지 조정할 수 있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9조(선거벽보) ①(생략)

②구·시·군위원회가 법 제6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첩부하는 선거벽보는 읍·면·동을 단위로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한도로 균등하게 후보자의 기호순으로 길이를 상하로 하여 동시에 같은 장소에 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매수가 5매 미만인 경우에는 5매로 한다.

1. 읍, 동 및 2만명 이상인 면은 인구 1천명에 1매
2. 인구 5천명 이상 2만명 미만인 면은 50매에 인구 5천명을 넘는 매 1천명까지 마다 1매를 더한 매수
3. 인구 5천명 미만인 면은 인구 100명에 1매

- 온라인을 통한 선거정보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고령층 등을 고려할 때 선거벽보 제도를 전면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시기상조인 측면이 있으므로 현재의 50% 수준으로 선거벽보의 숫자를 줄이는 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음. 이 경우 위 규정을 다음

과 같이 개선할 수 있을 것임

공직선거법(안) 제64조(선거벽보) ① 선거운동에 사용하는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候補者만의 寫眞을 말한다)·성명·기호(제150조에 따라 투표용지에 인쇄할 정당 또는 후보자의 게재순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정당추천후보자의 소속정당명(無所屬候補者는 “無所屬”이라 표시한다)·경력[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외에는 게재할 수 없다. 이 경우 정규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졸업 또는 수료당시의 학교명(중퇴한 경우에는 수학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을 기재하고,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게재하는 때에는 그 교육과정명과 수학기간 및 학위를 취득한 때의 취득학위명을 기재하여야 하며, 정규학력의 최종학력과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은 제49조제4항제6호에 따라 학력증명서를 제출한 학력에 한하여 게재할 수 있다. 이하 같다]·정견 및 소속정당의 정강·정책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地域區國會議員選舉에 있어서는 比例代表國會議員候補者名單을, 地域區市·道議員選舉에 있어서는 비례대표시·도의원후보자 명단을,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후보자명단을 포함하며, 候補者외의 者의 人物寫眞을 제외한다)을 게재하여 동에 있어서는 인구 1천명에 1매, 읍에 있어서는 인구 500명에 1매, 면에 있어서는 인구 200명에 1매의 비율을 한도로 작성·첨부한다. 다만, 인구밀집상태 및 첨부장소등을 감안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구 2천명에 1매의 비율까지 조정할 수 있다.

공직선거관리규칙(안) 제29조(선거벽보) ①(생략)

②구·시·군위원회가 법 제6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첨부하는 선거벽보는 읍·면·동을 단위로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한도로 균등하게 후보자의 기호순으로 길이를 상하로 하여 동시에 같은 장소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매수가 5매 미만인 경우에는 5매로 한다.

1. 읍, 동 및 2만명 이상인 면은 인구 2천명에 1매

2. 인구 5천명 이상 2만명 미만인 면은 50매에 인구 5천명을 넘는 매 2천명까지 마다 1매를 더한 매수

3. 인구 5천명 미만인 면은 인구 200명에 1매

○ 선거벽보를 이처럼 인구를 기준으로 하여 첨부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비판이 제시될 수 있음

-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선거벽보첨부의 숫자를 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형식적인 기준에 해당하며, 선거정보에 대한 접근권의 균등한 확보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인정하기 힘들다는 비판이 그것임

- 그렇다면 인구수를 기준으로 하기 보다는 주민센터와 같은 공공기관 또는 투표소에만 선거벽보를 첩부하는 방안도 모색해볼 수 있음. 이를 반영한 개정안은 다음과 같음

공직선거법(안) 제64조(선거벽보) ① 선거운동에 사용하는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候補者만의 寫眞을 말한다)·성명·기호(제150조에 따라 투표용지에 인쇄할 정당 또는 후보자의 게재순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정당추천후보자의 소속정당명(無所屬候補者는 “無所屬”이라 표시한다)·경력[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외에는 게재할 수 없다. 이 경우 정규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졸업 또는 수료당시의 학교명(중퇴한 경우에는 수학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을 기재하고,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게재하는 때에는 그 교육과정명과 수학기간 및 학위를 취득한 때의 취득학위명을 기재하여야 하며, 정규학력의 최종학력과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은 제49조제4항제6호에 따라 학력증명서를 제출한 학력에 한하여 게재할 수 있다. 이하 같다]·정견 및 소속정당의 정강·정책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地域區國會議員選舉에 있어서는 比例代表國會議員候補者名單을, 地域區市·道議員選舉에 있어서는 비례대표시·도의원후보자 명단을,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후보자명단을 포함하며, 候補者외의 者의 人物寫眞을 제외한다)을 게재하여 주민센터, 투표소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장소에 작성·첩부한다.

공직선거관리규칙(안) 제29조(선거벽보) ①(생략)
② 구·시·군위원회가 법 제6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첩부하는 선거벽보는 읍·면·동을 단위로 균등하게 후보자의 기호순으로 길이를 상하로 하여 동시에 같은 장소에 첩부하여야 한다.

- 이처럼 주민센터와 같은 공공기관 또는 투표소에만 선거벽보를 첩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찬반견해가 제시될 수 있음
 - 찬성견해에서는 1) 공공기관 또는 투표소에만 선거벽보를 첩부하게 될 경우에는 선거벽보의 첩부숫자를 현저하게 줄일 수 있다는 점, 2) 공공기관 및 투표소는 주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장소들이어서 이곳들에만 선거벽보를 첩부하더라도 선거정보에 대한 접근권 확보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3) 선거공보를 통해서 선거정보를 확보할 수 있으므로 선거벽보의 숫자가 줄어들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음
 - 반대견해에서는 1) 공공기관 또는 투표소에만 선거벽보를 첩부하게 될 경우에는 선거벽보의 첩부숫자의 지나치게 줄어들어 선거정보의 확보에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는 점, 2) 공공기관이나 투표소와 먼 곳에 거주하는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에 선거정보에 대한 접근권 확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 3) 선거벽보와 선거공보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선거벽보의 숫자가 어느 정도는 확보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음

- 위와 같은 찬반견해가 제시될 수 있으나, 선거벽보의 중요성이 점차로 줄어들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주민센터와 같은 공공기관 또는 투표소에만 선거벽보를 첩부하는 방안을 향후 적극적으로 모색해볼 필요가 있음
- 선거공보의 경우에도 발송숫자를 줄일 필요가 있는데 현재 선거공보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음

공직선거법 제65조(선거공보) ①후보자(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그 추천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책자형 선거공보 1종(대통령선거에서는 전단형 선거공보 1종을 포함한다)을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모두의 사진·성명·학력·경력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책자형 선거공보의 수량은 당해 선거구 안의 세대수와 예상 거소투표신고인수 및 제5항에 따른 예상 신청자수를 합한 수에 상당하는 수 이내로, 전단형 선거공보의 수량은 당해 선거구 안의 세대수에 상당하는 수 이내로 한다.

④ (생략)

⑤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선거인 중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자신의 거주지로 책자형 선거공보를 발송해 줄 것을 서면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대장·경찰관서의 장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소속 군인·경찰공무원에게 선거공보의 발송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⑥ 선거공보의 제출과 발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대통령선거

가. 책자형 선거공보(접자형 선거공보를 포함한다)

후보자가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제51조에 따른 추가등록의 경우에는 추가등록마감일 후 2일)까지 배부할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당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확인하여 관할구역 안의 매세대에는 제출마감일 후 3일까지, 제5항에 따른 발송신청자에게는 선거일 전 10일까지 각각 우편으로 발송하고,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에게는 제154조에 따라 거소투표용지를 발송하는 때에 동봉하여 발송한다.

나. 전단형 선거공보

후보자가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10일까지 배부할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당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확인하여 제153조(투표안내문의 발송)의 규정에 따른 투표안내문을 발송하는 때에 이를 동봉하여 발송한다. 이 경우 선거인명부 확정결과 책자형 선거공보를 발송하지 아니한 세대가 있는 때에는 그 세대에 이를 전단형 선거공보와 함께 추가로 발송하여야 한다.

2.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

후보자가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7일까지 배부할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확인하여 제5항에 따른 발송신청자에게는 선거일 전 10일까지 우편으로 발송하고, 매세대에는 제153조에 따라 투표안내문을 발송하는 때에,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에게는 제154조에 따라 거소투표용지를 발송하는 때에 각각 동봉하여 발송한다.

- 선거공보에 대해서 온라인(이메일)을 통한 발송을 원하는 유권자의 경우 이들에게는 우편으로 선거공보를 발송하지 않고 온라인 발송으로 대신하는 방안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음. 이 경우 다음과 같은 개정안을 제시해볼 수 있음

공직선거법(안) 제65조(선거공보)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책자형 선거공보의 수량은 당해 선거구 안의 세대수와 예상 거소투표신고인수 및 제5항에 따른 예상 신청자수를 합한 수에 상당하는 수 이내로, 전단형 선거공보의 수량은 당해 선거구 안의 세대수에 상당하는 수 이내로 한다. **단, 제15항에 따라 온라인을 통한 발송을 신청한 세대수를 고려한다.**

⑤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선거인 중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자신의 거주지로 책자형 선거공보를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발송해 줄 것을 서면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대장·경찰관서의 장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소속 군인·경찰공무원에게 선거공보의 발송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⑥ 선거공보의 제출과 발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생략)

2. (생략)

3. **제1호와 제2호에서 제15항에 따라 선거공보를 온라인으로 발송해줄 것을 신청한 세대**에 대하여 **온라인으로 발송하는 경우에는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동봉하여 발송할 필요가 없다.**

⑬ **매세대 또는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은 선거개실일 전 30일까지 선거공보를 온라인으로 발송해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30조(선거공보) ① (생략)

② (생략)

③ 정당 또는 후보자가 제출할 선거공보등의 수량은 제2조에 따른 인구의 기준일 현재 구·시·군위원회(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선거구를 말한다)별 세대수(이하 이 항에서 “세대수”라 한다) 등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수에서 **온라인 발송을 신청한 숫자를 뺀 숫자를 기준으로 한 다음** 각각 그 100분의 5를 더한 수로 한다. 이 경우 제출할 수량의 단수가 10미만인 때에는 10매로 하고, 법과 이 규칙에 따라 작성할 수 있는 총수량의 단수가 100미만인 때에는 100매로 한다.

1. 책자형 선거공보

세대수와 예상 거소투표신고인수 및 법 제65조제5항에 따른 예상 신청자수를 합한 수

2. 접자형 선거공보
 법 제65조제7항에 따라 통보된 시각장애선거인수(이하 이 조에서 “시각장애선거인수”라 한다)

3. 전단형 선거공보
 세대수

4.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제출하여야 할 책자형 선거공보의 매수에서 제출한 책자형 선거공보의 매수를 뺀 수

- 다만 이처럼 선거공보에 대해서 우편발송과 온라인발송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규정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찬반견해가 제시될 수 있음
 - 우선 반대견해로는 1) 선거공보 발송에 대한 업무부담경감을 위해서 온라인발송제도를 도입하는 것인데, 오히려 온라인발송을 원하는 세대에 대해서 별도로 신청을 받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업무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 2) 후보자에게 제출을 요청하는 선거공보 숫자를 정함에 있어서 온라인발송신청자의 숫자를 고려해야 하는데 온라인발송신청자의 숫자 집계는 늦어질 경우에는 제출을 요청하는 선거공보 숫자를 확정하는 것도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 3) 전면적으로 온라인 발송방식으로 가지 않는 이상 양자를 병행하는 것은 오히려 선거공보 발송의 효율성을 전반적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 등이 그것임
 - 다음으로 찬성견해로는 1) 선거공보를 온라인으로 발송하는 방식으로 변경시키는 것이 장기적으로 가야할 방향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우편발송과 온라인발송을 잠정적으로 병행하는 것으로 인해 행정적 부담은 어느 정도 감수를 해야 한다는 점, 2) 우편발송과 온라인발송여부에 대해서 처음 한번 신청 발송방법을 변경하지 않는 한 다음 선거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방법을 채택하면 업무증가의 문제는 일시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 3) 플랫폼 상에서 발송방식의 선택과 선거공보의 발송이 자동적으로 연계되도록 하면 기존의 개별우편발송으로 인한 행정소요를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점 등이 그것임
- 위와 같은 찬반견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거공보에 대해서 우편발송과 온라인발송을 병행하는 방식에서의 전환은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는 벽보의 규격에 관해서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음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9조(선거벽보) ①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선거벽보는 후보자마다 1종으로 하고, 그 규격은 다음 각호에 의하되, 길이를 상하로 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거벽보를 인쇄하는 종이는 100g/m²이내의 종으로 한다.

1. 대통령선거
길이 76센티미터 너비 52센티미터
2. 지역구국회의원·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길이 53센티미터 너비 38센티미터

- 위 내용을 보면 대통령선거의 벽보규격과 지역구국회의원·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벽보규격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음
- 이에 대해서는 대통령선거용 벽보규격과 다른 선거와 같이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있음. 벽보가 선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선거용 벽보규격을 다른 선거의 규격수준으로 줄이는 것은 예산절감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음. 이러한 견해를 반영한 개정안은 다음과 같음

공직선거관리규칙(안) 제29조(선거벽보) ①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선거벽보는 후보자마다 1종으로 하고, 그 규격은 다음 각호에 의하되, 길이를 상하로 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거벽보를 인쇄하는 종이는 100g/m²이내의 종으로 한다.

1. 대통령선거
길이 53센티미터 너비 38센티미터
2. 지역구국회의원·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길이 53센티미터 너비 38센티미터

- 다음으로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는 선거공보의 규격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두고 있음

공직선거관리규칙 제30조(선거공보) ① 법 제65조제1항과 제4항에 따른 책자형 선거공보, 전단형 선거공보, 점자형 선거공보, 법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후보자가 작성하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이하 이 조에서 “선거공보등”이라 한다)는 각각 1종으로 하며, 그 규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책자형 선거공보, 점자형 선거공보, 후보자정보공개자료 길이 27센티미터 너비 19센티미터 이내
2. 전단형 선거공보
길이 38센티미터 너비 27센티미터 이내 또는 길이 54센티미터 너비 19센티미터 이내

- 위 내용을 보면 벽보와 달리 선거공보의 경우에는 규격을 통일하지 않고 일정범위 내에서 제작되면 허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이에 대해서는 벽보와 마찬가지로 선거공보도 규격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음. 그러나 후보자에 따라서는 선거비용문제 등으로 인해 선거공보의 크기를 작게 만들 수 밖에 없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음. 이를 일률적으로 통일할 경우 후보자등록에 장애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어서 이를 일률적으로 통일하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

제4절 예비후보자등록 및 예비후보자공약집 검토

○ 예비후보자 등록과 관련해서 공직선거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을 두고 있음

<p>공직선거법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 ①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는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그 날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등록을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통령선거 선거일 전 240일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시·도지사선거 선거일 전 120일 3.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자치구·시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 4. 군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 <p>② 제1항에 따라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56조제1항에 따른 해당 선거 기탁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2.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3. 제49조제4항제6호에 따른 학력에 관한 증명서(한글번역문을 첨부한다) <p>③ 제1항의 등록신청을 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이를 수리하되, 제2항에 따른 기탁금과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갖추지 아니한 등록신청은 수리할 수 없다. 이 경우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되, 피선거권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예비후보자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조회할 수 있으며, 그 조회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해당 사항을 조사하여 회보하여야 한다.</p> <p>④ 예비후보자등록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예비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1의2. 제2항제2호에 따른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 2.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5항에 따라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는 것이 발견된 때 3. 제57조의2제2항 본문 또는 제266조제2항·제3항에 따라 후보자가 될 수 없는 자에 해당하는 것이 발견된 때 4.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담임이 제한되는 사람이나 후보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는 것이 발견된 때

- 위 규정을 보면 피선거권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예비후보자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조회할 수 있으며, 그 조회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해당 사항을 조사하여 회보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또한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는 예비후보자등록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두고 있음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6조(예비후보자등록) ①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라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 초본(대통령선거,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한한다)
2. 가족관계증명서
3. 재직증명서(법 제16조제4항의 경우에 해당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한한다)
4. 사직원접수증 또는 해임증명서류(법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5항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② 제20조제3항은 예비후보자등록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후보자”는 “예비후보자”로 본다.

③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의(나)에 의하고, 사퇴신고서는 별지 제14호의 4서식에 의한다.

④ 법 제60조의2제2항 및 제8항에 따른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및 학력에 관한 증명서의 제출과 전과기록의 조회 및 회보에 관하여는 제20조제7항·제9항을 준용한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0조(후보자등록) ③관할선거구위원회가 법 제49조제8항 단서에 따라 후보자의 피선거권에 관한 조사를 함에 있어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후보자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읍장·면장과 해당 선거구를 관할하는 검찰청의 장에게 조회하되, 법 같은 조 제10항 후단에 따라 전과기록을 조회하는 때에 함께 할 수 있다.

⑦법 제4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후보자등록신청서, 정당의 추천서, 비례대표전국선거구국회의원(이하 “비례대표국회의원”이라 한다)후보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의 명부, 대통령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의 본인승낙서는 별지 제12호서식의(나) 내지 (바)에 의하고, 법 같은 조 제10항 전단에 따른 전과기록의 조회신청은 별지 제12호서식의(사)에 의하며, 법 같은 조제8항 단서 및 제10항 후단에 따른 피선거권 조사 의뢰 및 조회는 별지 제12호서식의(아) 및 (자)에 따르고, 법 같은 조 제4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의 납부 및 체납에 관한 신고서,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학력에 관한 증명서, 공직선거 후보자등록 경력 신고서의 제출은 별지 제12호서식의(차)부터 (파)에 따른다.

⑨법 제49조제4항제6호에서 “최종학력증명서”라 함은 재학증명서·재직증명서·졸업증명서(이를 발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졸업증 원본을 포함한다)·수료증명서(이를 발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료증원본을 포함한다) 기타 학교의 장이 발행한 최종학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 위 규정을 보면 관할선거구위원회가 예비후보자의 피선거권에 관한 조사를 함에 있어서는 「후보자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시장·읍장·면장과 해당 선거구를 관할하는 검찰청의 장에게 조회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또한 전과기록의 조회 양식과 피선거권 의뢰 및 조회 양식도 정해져 있음을 볼 수 있음
- 이러한 회보의무와 관련해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그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해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음. 즉, 회보의무의 법적인 구속력을 인정하고 있음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34521 판결 [손해배상(기)]

[1]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공무원 개인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공무원에게 경과실이 있을 뿐인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는데, 여기서 공무원의 중과실이란 공무원에게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한다.

[2] 공무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라고 하더라도 국가는 그러한 직무상의 의무 위반과 피해자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 경우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단순히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어야 한다.

[3] 공직선거법 제49조 제10항에 의하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또는 정당은 본인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소속 당원의 전과기록을 관할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조회할 수 있고, 당해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전과기록을 회보하여야 하며,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후보자에 대하여 후보자등록 마감 후 지체 없이 당해 선거구를 관할하는 검찰청의 장에게 후보자의 전과기록을 조회할 수 있고, 당해 검찰청의 장은 전과기록의 진위 여부를 지체 없이 회보하여야 한다. 그리고 같은 조 제11항, 제12항은 위 전과기록을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고, 이를 선거구민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이 위와 같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와 그 소속 정당에게 전과기록을 조회할 권리를 부여하고 수사기관에 회보의무를 부과한 것은 단순히 유권자의 알권리 보호 등 공공 일반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자신의 피선거권 유무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정당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범죄경력을 파악함으로써 부적격자를 공천함으로써 인하여 생길 수 있는 정당의 신뢰도 하락을 방지할 수 있게 하는 등 개별적인 이익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4] 공무원 갑이 내부전산망을 통해 을에 대한 범죄경력자료를 조회하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실효된 4건의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있음을 확인하고도 을의 공직선거 후보자용 범죄경력조회 회보서에 이를 기재하지 않은 사안에서, 갑의 중과실을 인정하여 국가배상책임 외에 공무원 개인의 배상책임까지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위와 같은 회보의무규정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견해가 제시되고 있음. 피선거권 관련 필요사항에 대해 조회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이 지체없이 해당 사항을 조사하여 회보하도록 하고는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회보가 지체되는 등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회보의무의 법적 구속력을 높여야 한다는 견해가 그것임
- 회보의무의 법적 구속력을 높이는 방안으로는 회보가 일정기간 이상 지체될 경우 해당 기관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음. 유사한 예로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을 들 수 있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63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정당한 이유없이 제24조제1항 또는 제50조의4제1항에 따른 방문조사 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실지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정당한 이유없이 제3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진술서 제출요구 또는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3. 정당한 이유없이 제36조제1항제2호 및 제4호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 등의 제출요구 및 사실조회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 등을 제출한 자

- 위 규정을 보면 위원회의 방문조사 또는 실지조사를 거부하거나 위원회의 진술서 제출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실제로 주한미군 제2사단과 같은 국가기관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있음
- 그러나 예비후보자등록과 관련된 회보의무의 법적 구속력을 높이기 위해서 국가인권위원회법과 마찬가지로 과태료를 두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의문임

-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이러한 규정을 둔 것은 인권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자와 피조사자라는 ‘비대등한 입장’에서 조사행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그런데 예비후보자등록과 관련된 회보의무는 기관간의 업무협조라는 ‘대등한 입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것은 지나친 것으로 보아야 함

- 현재 예비후보자등록과 관련된 회보의무 자체는 공직선거법에 의해 법적으로 인정되고 있으므로 별도의 입법조치를 취하는 것은 불필요함. 다만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회보지체를 막기 위해서는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연계 등 회보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다음으로 예비후보자의 공약집에 관해서 공직선거법은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음

공직선거관리법 제60조의4(예비후보자공약집) ① 대통령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예비후보자는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우선순위·이행절차·이행기한·재원조달방안을 게재한 공약집(도서의 형태로 발간된 것을 말하며, 이하 “예비후보자공약집”이라 한다) 1종을 발간·배부할 수 있으며, 이를 배부하려는 때에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예비후보자가 선거공약 및 그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외에 자신의 사진·성명·학력(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말한다)·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예비후보자공약집에 게재하는 경우 그 게재면수는 표지를 포함한 전체면수의 100분의 10을 넘을 수 없으며,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 관한 사항은 예비후보자공약집에 게재할 수 없다.

③ 예비후보자가 제1항에 따라 예비후보자공약집을 발간하여 판매하려는 때에는 발간 즉시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2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예비후보자공약집의 작성근거 등의 표시와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위 규정을 보면 예비후보자 공약집에 대해서 자신의 사진, 성명, 학력, 경력 등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담을 수 있는 면수를 제한하고,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에 관한 사항은 게재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그리고 이러한 예비후보자 공약집은 발간 즉시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다음으로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는 예비후보자 공약집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음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6조의3(예비후보자공약집) ① 법 제60조의4제1항에 따라 대통령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예비후보자가 발간·배부하는 예비후보자공약집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앞면

명칭(“예비후보자공약집”이라 적는다), 선거명, 예비후보자의 성명, 소속정당명(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은 “무소속”이라 적는다)

2. 맨 뒷면

작성근거(“이 예비후보자공약집은 「공직선거법」 제60조의4제1항에 따라 제작한 것입니다.”라고 적는다), 판매가격, 출판사(출판사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발간한 경우에는 그 인쇄사를 말한다)의 명칭·주소·전화번호

② 제1항의 예비후보자공약집에는 법 제150조에 따른 기호가 결정되기 전이라도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기호를 알 수 있는 때에는 그 기호를 게재할 수 있다.

③ 법 제60조의4 제3항에 따라 예비후보자가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예비후보자공약집을 제출하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의5서식에 따른다.

- 위 규정에서는 예비후보자공약집의 맨 앞면과 맨 뒷면에 기재할 사항을 명시하고 있음을 볼 수 있음. 또한 예비후보자 공약집을 제출할 때에 따라야 하는 서식도 정해두고 있음
- 실무적으로는 예비후보자공약집에 범위반사항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예비후보자측에서 검토를 요청할 경우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에 응하고 있음. 그런데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예비후보자측에서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책임을 돌리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러한 점 때문에 예비후보자공약집 검토의 법적 책임을 법령상 보다 명확하게 하는 방안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음
- 위 법령의 내용을 보면 예비후보자공약집이 발간된 직후에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만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예비후보자공약집의 범위반여부에 대한 검토를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야 할 의무는 없음.
 - 따라서 사실상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예비후보자공약집을 검토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이에 따른 법적인 책임이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임
- 이러한 책임소재를 명확하기 위해서 이에 관한 규정을 두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모색해볼 수 있음

공직선거관리법(안) 제60조의4(예비후보자공약집) ③ 예비후보자가 제1항에 따라 예비후보자공약집을 발간하여 판매하려는 때에는 발간 즉시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2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예비후보자는 예비후보자 공약집의 발간 및 제출 전에 제2항의 준수여부를 본인의 책임하에 점검해야 한다.

- 위와 같은 규정을 둘 경우 예비후보자공약집의 범위반여부 준수책임이 예비후보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이 보다 명확해지는 장점이 있음
 - 다만 이러한 규정을 두는 것이 실익이 있는지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이미 공직선거법 제60조의4 제2항에서 수범자를 예비후보자로 해서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제3항의 추가내용은 단순히 확인적 차원의 규정에 불과하다는 견해가 제시될 수 있기 때문임
 - 그러나 이와 같은 규정개선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실무상 이루어지고 있는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의 예비후보자공약집의 검토에 따른 책임이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좀 더 쉽게 인정될 것임

제5절 후보자등록신청 서류 검토

○ 후보자 등록과 관련해서 공직선거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을 두고 있음

<p>공직선거법 제49조(후보자등록 등) ① 후보자의 등록은 대통령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4일,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0일(이하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라 한다)부터 2일간(이하 “후보자등록기간”이라 한다)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p> <p>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56조제1항에 따른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2.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公職選舉候補者 등의 財産公開)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 3.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公職選舉候補者의 兵役事項申告 및 公開)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역사항에 관한 신고서 4. 최근 5년간의 후보자,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혼인한 딸과 외조부모 및 외손자녀를 제외한다)의 소득세(「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제출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재산세·종합부동산세의 납부 및 체납(10만원 이하 또는 3월 이내의 체납은 제외한다)에 관한 신고서. 이 경우 후보자의 직계존속은 자신의 세금납부 및 체납에 관한 신고를 거부할 수 있다. 5.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실효된 형을 포함하며, 이하 “전과기록”이라 한다)에 관한 증명서류 6. (생략) 7. (생략) <p>⑧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신청이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수리하여야 하되, 등록신청서·정당의 추천서와 본인승낙서·선거권자의 추천장·기탁금 및 제4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갖추지 아니하거나 제47조제3항에 따른 여성후보자 추천의 비율과 순위를 위반한 등록신청은 이를 수리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의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되,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하며, 그 조사를 의뢰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확인하여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회보하여야 한다.</p>

○ 위 규정을 보면 후보자의 등록은 대통령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4일,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0일부터 2일간 후보자등록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런데 투표용지 검토업무, 거소투표용지 발송업무, 벽보첨부업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선거일전 24일 또는 20일은 촉박하기 때문에 후보자등록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이 필요

하다는 견해가 있음. 이러한 견해를 반영하여 5일 정도의 시간을 더 부여할 경우 다음과 같이 개정안이 제시될 수 있음

공직선거법(안) 제49조(후보자등록 등) ① 후보자의 등록은 대통령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9일**,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5일**(이하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라 한다)부터 2일간(이하 “후보자등록기간”이라 한다) 관할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그런데 이처럼 후보자등록일자를 앞당기게 될 경우 예비후보자등록일 등 다른 일정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임
- 공직선거법 제49조를 보면 후보자등록신청이 있으며 즉시 이를 수리하도록 하되, 소정의 서류를 갖추지 아니할 경우에는 수리를 거부하도록 하고 있음. 즉, 소정의 서류를 갖추었는지에 대해서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는 후보자등록시 피선거권 여부의 판단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두고 있음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0조(후보자등록) ①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법 제4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신청관계서류외에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주민등록표 초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이하 「가족관계증명서」라 하며, 손자 또는 외손자 중 병역사항 신고대상자가 있는 때에는 그 손자 또는 외손자가 기록된 가족관계증명서를 포함한다) 및 재직증명서(법 제16조제4항의 경우에 해당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한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의 제출은 대통령선거,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한한다.

② 법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5항 본문에 따라 그 직을 그만두고 입후보하려는 사람은 사직원접수증 또는 해임된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관할선거구위원회가 법 제49조제8항 단서에 따라 후보자의 피선거권에 관한 조사를 함에 있어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후보자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읍장·면장과 해당선거구를 관할하는 검찰청의 장에게 조회하되, 법 같은 조 제10항 후단에 따라 전과기록을 조회하는 때에 함께 할 수 있다.

-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등록과정에서 실무적으로 사전검토를 해주고 있는 부분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행정절차법 제17조에서는 처분의 신청에 관해서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음

행정절차법 제17조(처분의 신청) ① 행정청에 처분을 구하는 신청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와 행정청이 미리 다른 방법을 정하여 공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분을 신청할 때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 행정청은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 접수기관, 처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인터넷 등을 통한 게시를 포함한다)하거나 이에 대한 편람을 갖추어 두고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행정청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 또는 거부하거나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되며,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접수증을 주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접수증을 주지 아니할 수 있다.

⑤ 행정청은 신청에 구비서류의 미비 등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⑥ 행정청은 신청인이 제5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된 신청을 되돌려 보낼 수 있다.

○ 후보자등록이 이루어질 경우 피선거권의 부여하고 하는 법적인 권한을 부여받는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행정절차법에 따른 ‘처분’이라고 할 수 있어서 위 행정절차법 제17조가 원칙적으로 적용된다고 할 수 있음. 이러한 행정절차법 제17조의 의미에 대해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음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두36007 판결 [폐기물처리사업계획부적합통보처분취소]

행정절차법 제17조에 의하면, 행정청은 신청에 구비서류의 미비 등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고(제5항), 신청인이 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된 신청을 되돌려 보낼 수 있으며(제6항), 신청인은 처분이 있기 전에는 그 신청의 내용을 보완·변경하거나 취하할 수 있다(제8항 본문).

이처럼 행정절차법 제17조가 ‘구비서류의 미비 등 흠의 보완’과 ‘신청 내용의 보완’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행정절차법 제17조 제5항은 신청인이 신청할 때 관계 법령에서 필수적으로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한 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와 같이 쉽게 보완이 가능한 사항을 누락하는 등의 흠이 있을 때 행정청이 곧바로 거부 처분을 하는 것보다는 신청인에게 보완할 기회를 주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행정절차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고자 함이지, 행정청으로 하여금 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기 전에 반드시 신청인에게 신청의 내용이나 처분의 실제적 발급요건에 관한 사항까지 보완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할 의무를 정한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 위 대법원 판례를 보면 행정절차법 제17조에 따른 ‘보완요구’는 신청인에게 누락된 서류를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취지에 불과하고 ‘실체적인 발급요건’까지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하는 취지라고 볼 수는 없다고 보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즉 실체적 발급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신청인의 책임임을 명확히 하고 있음

-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0조에 따르더라도 후보자등록의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는 신청인의 책임이라고 할 것임. 따라서 지역선관위에서 실무상 이루어지는 신청서류에 대한 검토는 어디까지나 편의제공의 차원으로 볼 것이고, 지역선관위가 사전검토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

○ 이러한 사전검토에 대해서 후보자 등록기간 중 특히 수도권 지역은 후보가 많아 사전검토업무가 과중해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사전검토를 해주지 않는 방안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현장에서 제시된 바 있음

- 그러나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등록신청 서류의 적정성을 사전적으로 검토하지 않을 수는 없음. 다만 관할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소속정당이 있는 경우 해당 정당에서 1차적으로 사전검토를 하도록 하고 이러한 사전검토를 받은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음

- 이렇게 될 경우 관할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부담이 경감될 수 있을 것임. 이러한 점을 반영한 개정안을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음

공직선거관리규칙(안) 제20조(후보자등록) ①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법 제4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신청관계서류외에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주민등록표 초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이하 「가족관계증명서」라 하며, 손자 또는 외손자 중 병역사항 신고대상자가 있는 때에는 그 손자 또는 외손자가 기록된 가족관계증명서를 포함한다) 및 재직증명서(법 제16조제4항의 경우에 해당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한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의 제출은 대통령선거,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한한다. **소속정당이 있는 경우 소속정당에서 후보자등록신청관계서류 및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구비여부에 대하여 사전검토를 한 다음 이에 대한 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 위와 같은 방안은 소속정당에서 후보자등록신청관계서류 및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구비여부를 우선 점검하도록 하는 방안인데 이 방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비판이 제기될 수 있음

- 무소속후보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사전검토를 받을 정당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무소속후보자에게는 정당의 사전검토확인서를 요구하는 것이 곤란함. 이렇게 될 경우 정당소속후보자와 무소속후보자간에 후보자등록과정에서 차별을 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음
-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정당의 사전검토제도를 입법화하는 것에는 한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 다음으로 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 제4호에 따른 재산신고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음. 이를 반영한 개정안을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음

공직선거관리규칙(안) 제20조(후보자등록) ④ 법 제49조 제3항 제4호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함에 있어서는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이와 같이 재산관련 신고를 함에 있어서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도록 할 경우에는 재산신고의 정확성을 높이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임
- 다만 이 경우에는 후보자등록과 관련해서 새로운 규제가 추가되는 셈인데, 이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검토비용을 국가가 보전해주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음. 이를 반영한 개정안은 다음과 같음

공직선거법(안)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보자를 위하여 부담한다. 이 경우 제3호의2 및 제5호의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1. 제64조에 따른 선거벽보의 첩부 및 철거의 비용(첩부 및 철거로 인한 원상복구 비용을 포함한다)
2. 제65조에 따른 점자형 선거공보(같은 조 제11항에 따라 후보자가 제출하는 저장매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작성비용과 책자형 선거공보(점자형 선거공보 및 같은 조 제9항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포함한다) 및 전단형 선거공보의 발송비용과 우편요금
3. 제66조(선거공약서)제8항의 규정에 따른 점자형 선거공약서의 작성비용
- 3의2. 활동보조인(예비후보자로서 선임하였던 활동보조인을 포함한다)의 수당, 실비 및 산재보험료
4.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의 규정에 의한 대담·토론회(합동방송연설회를 포함한다)의 개최비용
5. 제82조의3(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의 규정에 의한 정책토론회의 개최비용
6. 제161조(投票參觀)의 규정에 의한 투표참관인 및 제162조에 따른 사전투표참관인의 수

당과 식비

7. 제181조(開票參觀)의 규정에 의한 개표참관인의 수당과 식비

8. 제20조(후보자등록)에 따른 재산신고서 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검토비용

- 그러나 이처럼 후보자등록과정에서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재산신고서 검토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예산이 필요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 이러한 문제로 인해 만약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검토비용을 국가가 보전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후보자들에게 재정적인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점이 있음
 -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재산신고서 검토제도 도입이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실현가능한지 검토가 필요할 것임

제6절 사전투표

- 사전투표의 본래 목적은 본투표 때 투표를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인데, 현재 투표할 사람들이 미리 투표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어서 문제라는 지적이 있음. 사전투표와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음

<p>공직선거법 제148조(사전투표소의 설치) 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이하 “사전투표기간”이라 한다) 관할구역(선거구가 해당 구·시·군의 관할구역보다 작은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를 말한다)의 읍·면·동마다 1개소씩 사전투표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읍·면·동 관할구역에 군부대 밀집지역 등이 있는 경우 2. 읍·면·동이 설치·폐지·분할·합병되어 관할구역의 총 읍·면·동의 수가 줄어든 경우 3. 읍·면·동 관할구역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3항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 또는 같은 법 제39조의3 제1항에 따른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이 있는 경우 4. 천재지변 또는 전쟁·폭동,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p>②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사전투표소를 설치할 때에는 선거일 전 9일까지 그 명칭·소재지 및 설치·운영기간을 공고하고,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관할구역 안의 투표구마다 5개소에 공고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사전투표소의 설치장소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p> <p>공직선거관리규칙 제68조(사전투표소의 설치 및 설비) ① 사전투표소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67조의2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투표소”는 “사전투표소”로, “투표사무원”은 “사전투표사무원”으로 본다.</p> <p>④ 구·시·군위원회는 선거일 전 6일까지 사전투표소에 각각 다음의 설비를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전투표참관인의 좌석 2. 본인여부 확인 및 투표용지 발급에 필요한 전산설비 및 시설 3. 사전투표함 4. 기표소 5. 그 밖의 사전투표사무에 필요한 시설 <p>⑤ 관할구·시·군위원회는 법 제148조 제2항에 따른 사전투표소 설치의 공고와 통지를 하는 때에는 관할구역안에 설치한 사전투표소를 일괄하여 행한다. 이 경우 투표구마다 첨부하는 사전투표소 설치의 공고문에는 당해위원회의 청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p> <p>⑥ 사전투표사무원으로 위촉된 자가 사전투표사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제67조에 따른 사전투표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p>
--

- 위 규정을 보면 사전투표는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음

- 사전투표제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비판견해가 제시되고 있음. 1) 단순히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실행되는 사전투표 제도는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거를 방해한다는 점, 2) 사전투표 마감 이후에 후보자가 사퇴하면 결국 사전투표는 무효표가 되어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다는 점, 3) 특별한 사유 없이 일반 유권자에게도 선거일이 아닌 날짜에 투표를 하게하는 사전투표 제도를 규정한 특별규정은 특별법의 목적에 합당하지 않다는 점, 4) 이틀 동안의 사전투표는, 사전투표를 하지 않았다면 지출되지 않아도 될 국민세금이 사전투표 실시로 막대한 비용이 낭비되고 이것은 결국 국민 부담만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점 등이 그것임(이공주, 2014: 165-194)

○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사전투표제도의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우선 사전투표를 2일간 실시하고 있는데, 본투표와 마찬가지로 1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이 경우 개정안을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음

공직선거법(안) 제148조(사전투표소의 설치) 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5일부터 1일 동안(이하 “사전투표기간”이라 한다) 관할구역(선거구가 해당 구·시·군의 관할구역 보다 작은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를 말한다)의 읍·면·동마다 1개소씩 사전투표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이러한 개정안에 대해서는 사전투표가 선거일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를 위한 것으로 이틀 정도의 대안일을 제시하는 것이 투표율 제고에 바람직하다는 반대견해가 제시될 수 있음

- 그러나 선거일의 본투표가 원칙적인 모습이라는 점,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사전투표 제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1일로 축소하는 방안은 충분히 검토해볼 수 있을 것임

○ 다음으로 사전투표를 관외에서만 실시하자는 견해도 제시되고 있음

- 그러나 어차피 각 지역선거관리위원회별로 사전투표소를 설치하는 이상 투표율 제고를 위해서 관내사전투표를 금지시킬 명분이 크지는 않다고 보아야 함. 즉, 행정편의만을 위해서 사전투표의 범위나 시간을 제한하는 방안은 설득력을 갖기 힘들 것으로 보임

○ 이 외에도 사전투표에 대해서 부정선거의혹을 제기하는 민원인에 대한 응대문제가 제기

되고 있는데 이는 법령의 개선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할 것이고 사전 투표 자체에 대한 이해와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할 것임

○ 다음으로 사전투표시간에 대해서 공직선거법은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음

공직선거법 제155조(투표시간) ①투표소는 선거일 오전 6시에 열고 오후 6시(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오후 8시)에 닫는다. 다만, 마감할 때에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에게는 번호표를 부여하여 투표하게 한 후에 닫아야 한다.
②사전투표소는 사전투표기간 중 매일 오전 6시에 열고 오후 6시에 닫되, 제14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설치하는 사전투표소는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예상 투표자수 등을 고려하여 투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사전투표소에 이를 준용한다.

○ 위 규정을 보면 본투표와 사전투표 모두 오전 6시에 열고 오후 6시에 닫는 것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그런데 사전투표를 오전 6시에 여는 것이 선거관리상 지나친 부담으로 작동한다는 견해가 있음. 이러한 견해를 반영한 개정안은 다음과 같음

공직선거법 제155조(투표시간) ②사전투표소는 사전투표기간 중 매일 오전 8시에 열고 오후 6시에 닫되, 제14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설치하는 사전투표소는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예상 투표자수 등을 고려하여 투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사전투표소에 이를 준용한다.

○ 이렇게 개정을 할 경우에는 본투표는 오전 6시에 시작하는데 비해, 사전투표는 오전 8시에 시작하는 것이 되어서 차별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음. 또한 오전 6시로 정하는 이유가 출근을 하는 사람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오전 8시에 시작할 경우에는 출근자들을 고려할 수 없게 되어 부당하다는 지적도 나올 수 있음

-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본투표가 원칙이고 사전투표는 어디까지나 예외에 해당한다는 점, 사전투표로 인한 예산낭비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이러한 시작시간의 차이를 정당화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제7절 선거방송토론

- 선거방송토론에 관해서 참여후보확정 시기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음. 선거방송토론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음

<p>공직선거법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①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기간중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담·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p> <p>1. 대통령선거 후보자 중에서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3회 이상</p> <p>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해당 정당의 대표자가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는 제외한다) 중에서 지정하는 1명 또는 여러 명을 초청하여 2회 이상</p> <p>②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시·도지사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기간 중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담·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p> <p>1. 시·도지사선거 후보자 중에서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1회 이상</p> <p>2.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해당 정당의 대표자가 비례대표시·도의원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지역구시·도의원후보자는 제외한다) 중에서 지정하는 1명 또는 여러 명을 초청하여 1회 이상</p> <p>③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선거운동기간 중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의 후보자를 초청하여 1회 이상의 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합동방송연설회의 연설시간은 후보자마다 10분 이내의 범위에서 균등하게 배정하여야 한다.</p> <p>④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개최한다. 이 경우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부터 초청받은 후보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대담·토론회에 참석하여야 한다.</p> <p>1. (생략)</p> <p>2. (생략)</p> <p>3.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가.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나. 최근 4년 이내에 해당 선거구(선거구의 구역이 변경되어 변경된 구역이 직전 선거의 구역과 겹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실시된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그 보궐선거등을 포함한다)에 입후보하여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 다. 제1호 다목에 의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후보자</p>
--

- 다음으로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서는 선거방송토론회에 참석하는 후보자를 확정하는 절차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음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3조(대담·토론회) ①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각급토론위원회는 대담·토론회의 일시·장소 및 중계방송사(법 제82조의2 제10항 및 제11항에 따라 중계방송을 하는 방송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정하여 선거기간개시일까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중계방송사 및 법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서는 법 제82조의2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라 후보자 등을 지정할 정당을 말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후보자는 선거기간개시일의 다음 날까지 참석여부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참석확인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불참사유서를 해당 토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참석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참석을 포기한 것으로 보며, 참석확인서를 제출한 후보자가 대담·토론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담·토론회 개최일의 다음 날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불참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선거방송토론에서 참여후보를 확정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토론참석대상자를 조기에 확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으나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야 함
 -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선거기간개시일까지 후보자를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대한 후보자의 참석여부는 선거기간개시일의 다음날까지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처럼 후보자를 정하는 시점을 늦어도 선거기간개시일의 다음날까지로 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점이 적절한지에 대한 현황파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선거기간개시일 자체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선거방송토론 참여후보 확정시기만 앞당기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임. 그렇다면 선거기간개시일 자체를 앞당기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으나 이는 선거운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조문들과 연결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임

제8절 개표

- 개표와 관련해서 개표대상 투표지가 너무 많아서 업무가 과중하다는 의견이 있음.
 -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전자투표를 하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으나, 부정선거에 대한 우려로 인해 단기간에 현실화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서 전자투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은 여기에서 논의하지 않도록 함
 - 개표사무원들을 충분히 확보하여 개표업무에 투입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할 것이나 이는 예산의 확보가 있어야 할 것임
- 개표소가 지나치게 좁아 인員 및 장비를 수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는 견해가 있는데 이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개표소에 관한 규정들을 볼 필요가 있음

공직선거법 제173조(개표소) 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전 5일까지 그 구·시·군의 사무소 소재지 또는 당해 관할구역(당해 區域안에 적정한 場所가 없는 때에는 인접한 다른 區域을 포함한다)안에 설치할 개표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②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2개 이상의 개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③제147조(투표소의 설치)제3항의 규정은 개표소에 준용한다.
④2개 이상의 개표소를 설치하는 때의 개표의 절차 및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5조(개표소의 설비) ①구·시·군위원회는 선거일전일까지 개표소에 투표함의 접수에 필요한 시설, 투표함의 개함과 투표지의 점검, 심사·집계 및 정리등에 필요한 시설, 구·시·군위원회위원과 개표참관인의 좌석 및 일반인의 개표관람시설 기타 개표사무에 필요한 시설의 설비를 하여야 한다.
②구·시·군위원회가 **법 제173조(개표소)**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표소를 2개소이상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표소를 공고하는 때에 개표소별로 개표할 선거명을 공고하고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구·시·군위원회가 **법 제173조 제2항** 및 이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개소이상으로 나누어 설치한 개표소의 명칭은 각각 당해 구·시·군위원회의 명칭밑에 “제1개표소”, “제2개표소”등을 붙여 표시하며, 제1개표소는 당해 구·시·군위원회위원장, 제2개표소이상의 개표소에는 당해 구·시·군위원회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개표사무를 관장한다.

- 위 규정을 보면 2개 이상의 개표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처럼 개표소로 나누어질 경우에는 개표업무의 효율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비판이 있음

- 개표소가 최대한 나누어지지 않도록 하되, 개별 개표소의 규모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여 효율적인 개표업무가 진행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공직선거법(안) 제173조(개표소) ⑤ 개표소는 개표업무를 수행하는 인원 및 개표업무에 필요로 하는 장비를 수용하기에 적절한 규모의 장소에 정해야 한다.

- 개표소에서 활용되는 투표지분류기 등 장비의 노후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 투표지분류기가 노후화되어 작동불량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개표소에서 활용되는 장비들의 실태조사를 하고 그 교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 임. 이를 위해서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는 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음

공직선거관리규칙(안) 제95조(개표소의 설비) ④ 구·시·군위원회는 선거가 종료된 이후에 **투표지**분류기를 비롯한 개표소 설비의 실태조사결과를 작성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9절 기관·시설 안의 기표소 운영

- 거소투표가 가능한 기관 및 시설안의 기표소에 관해 공직선거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음

공직선거법 제149조(기관·시설 안의 기표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시설(이하 이 조에서 “기관·시설”이라 한다)로서 제38조제1항의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시설의 장은 그 명칭과 소재지 및 거소투표신고인수 등을 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 후 3일까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및 구치소
2.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 또는 같은 법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시설의 명칭과 소재지 및 거소투표신고인수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10명 이상의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시설의 장은 일시·장소를 정하여 해당 신고인의 거소투표를 위한 기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 위 규정에 따르면 10명 이상의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시설은 기표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 이처럼 기관시설 거소투표가 10명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투표소를 설치해야 하는 규정으로 인해 투표소 개수가 늘어나고 있고, 거소투표 준비에 시간이 인력이 많이 소요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거소투표신고인의 숫자를 2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음. 이 경우 개선안은 다음과 같음

공직선거법(안) 제149조(기관·시설 안의 기표소) ③ **20명 이상의**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시설의 장은 일시·장소를 정하여 해당 신고인의 거소투표를 위한 기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 다만 위와 같은 안을 채택하기 위해서는 10명 이상으로 했을 경우와 20명 이상으로 했을 경우 기표소를 설치해야 하는 시설의 숫자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함
 - 또한 요양원 등 노령자가 많은 시설의 기표소를 줄이게 될 경우 노령층의 투표참여가 저조해질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이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

제10절 투표참관인

○ 투표참관인에 관해서 공직선거법은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음

공직선거법 제161조(투표참관) ① 투표관리관은 투표참관인으로 하여금 투표용지의 교부상황과 투표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② 투표참관인은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이 후보자마다 투표소별로 2인을 선정하여 선거일 전 2일까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투표참관인은 투표소마다 8명으로 하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신고한 인원수가 8명을 넘는 때에는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첨에 의하여 지정한 자를 투표참관인으로 한다. 다만, 투표참관인의 선정이 없거나 선정·신고한 인원수가 4명에 미달하는 때에는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가 그 투표구를 관할하는 구·시·군의 구역안에 거주하는 선거권자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얻어 4명에 달할 때까지 선정한 자를 투표참관인으로 한다.

④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참관인을 지정하는 경우에 후보자수가 8명을 넘는 때에는 후보자별로 1명씩 우선 선정한 후 추첨에 의하여 8명을 지정하고, 후보자수가 8명에 미달하되 후보자가 선정·신고한 인원수가 8명을 넘는 때에는 후보자별로 1명씩 선정한 자를 우선 지정한 후 나머지 인원은 추첨에 의하여 지정한다.

⑤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은 그가 선정한 투표참관인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교체할 수 있으며, 선거일에는 투표소에서 교체신고할 수 있다.

⑥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가 선정한 투표참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참관을 거부하거나 그 직을 사임할 수 없다.

⑦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미성년자·제18조(選舉權이 없는 者)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제53조(公務員 등의 立候補)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배우자는 투표참관인이 될 수 없다.

⑧ 투표관리관은 원활한 투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투표참관인을 교대로 참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당·후보자별로 참관인수의 2분의 1씩 교대하여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⑨ 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의 교부상황과 투표상황을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투표참관인석을 마련하여야 한다.

⑩ 투표참관인은 투표에 간섭하거나 투표를 권유하거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⑪ 투표관리관은 투표참관인이 투표간섭 또는 부정투표 그 밖에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 시정을 요구한 경우에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⑫ 투표참관인은 투표소안에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투표상황을 촬영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162조(사전투표참관) ① 사전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참관인으로 하여금 사전투표 상황을 참관하게 하고, 제158조제6항제1호에 따라 관할 우체국장에게 투표지를 인계하기까지 일련의 과정에 동행하게 하여야 한다.

- ②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은 후보자마다 사전투표소별로 2명의 사전투표참관인을 선정하여 선거일 전 7일까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신고한 후 교체할 수 있으며 사전투표기간 중에는 사전투표소에서 교체신고를 할 수 있다.
- ③제2항에 따른 사전투표참관인의 선정이 없거나 한 후보자가 선정한 사전투표참관인밖에 없는 때에는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자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얻어 4인에 달할 때까지 선정한 자를 사전투표참관인으로 한다.
- ④사전투표참관에 관하여는 제161조제6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 “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관리관”으로, “투표참관인”은 “사전투표참관인”으로 본다.
- ⑤사전투표참관인신고서의 서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위 내용을 보면 선거일 투표 참관인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제161조에서, 사전투표 참관인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제162조에서 규율하고 있음
 - 두 가지 참관인은 여러 가지 면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음. 참관의 거부 또는 사임, 투표참관인의 자격, 투표참관인의 교대, 투표참관인석의 마련, 투표참관인의 행위제한, 투표참관인의 시정요구, 투표상황의 촬영 등이 그것임
 - 그러나 후보자별 참관인을 신고하는 기한, 일정숫자 이상 또는 이하의 참관인 신고가 있을 경우의 참관인의 선정방법 등에 있어서 동일하지 않음. 이는 사전투표의 업무량이 선거일 투표의 그것과 동일하지 않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임
- 이에 대해서는 사전투표와 선거일 투표의 참관인 선정기준을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음. 이를 반영하게 될 경우의 개정안은 다음과 같음

공직선거법(안) 제162조(사전투표참관) ② (삭제)
 ③ (삭제)
 ④사전투표참관에 관하여는 제161조 제2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 “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관리관”으로, “투표참관인”은 “사전투표참관인”으로 본다.

- 위와 같이 사전투표와 선거일 투표의 참관인 선정기준을 통일시킬 경우에는 참관인 수당과 관련하여 증가된 예산이 필요하게 될 것으로 보임. 무엇보다 사전투표와 선거일 투표와 동일한 비중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의 문제가 있음
 - 앞서 보았듯이 사전투표의 비중을 줄이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전투표와 선거일 투표의 참관인 선정기준을 통일시키는 것이 적절하다고 볼 수 있을지는 의문임

○ 투표참관인의 수당지급기준과 관해서 공직선거법은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음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 ④ 제3항제6호에 따른 투표참관인 및 사전투표참관인 수당은 10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개표참관인 수당은 10만원으로 한다. 이 경우 투표참관인 및 사전투표참관인의 수당과 개표참관 도중 개표참관인을 교체하는 경우의 수당은 6시간 이상 출석한 사람에게만 지급한다.

○ 위 규정을 보면 ‘6시간 이상’ 출석한 참관인에 대해서만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음. 그런데 이에 대해서 ‘8시간 이상’ 출석한 참관인에 대해서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음

- 그러나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 제4항은 투표참관인, 개표참관인 등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이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현행 수준의 2배로 일괄 인상하는 내용으로 2022. 4. 22. 개정되었음
- 만약 수당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8시간 이상’ 출석한 참관인만 동일한 수당을 지급하게 될 경우 실질적으로 수당이 인하되는 결과를 가져옴. 이는 참관인들에 대한 수당을 높인 최근 법령개정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적절하다고 보기는 힘들

<참고문헌>

[국영문 문헌]

- 김광웅. (1997). 기초·원리·응용 방법론 강의.
- 김윤권·최순영 외. (2022). 미래예견적 국정관리와 정부운영(Ⅲ): 지능형 정부서비스의 지향 가치와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원.
- 김윤권·최순영 외. (2021). 미래예견적 국정관리와 정부운영: 지능형 정부인사관리(Ⅱ). 한국 행정연구원.
- 김윤권 외. (2020). 미래예견적 국정관리와 정부운영(Ⅰ): 지능형 정부조직관리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0). 공직선거 절차사무 편람.
- 문명재. (2021). 포용국가와 혁신경제 기반구축을 위한 정부혁신. 한국행정연구원 이종한 외. (2021). 포용국가와 혁신경제: 이론, 사례, 이행전략 3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1-05-03.
- 최순영·임성근·손명구·신우경. (2013). 효율적인 관세국경감시를 위한 감시수행체계 및 운영방안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관세청 용역보고서.
- Dermody, J., & Scullion, R. (2005). Young people's attitudes towards British political advertising: Nurturing or impeding voter engagement?. *Journal of Nonprofit & Public Sector Marketing*, 14(1-2), 129-149.

[웹사이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 공직선거법, 공직선거관리규칙 등
- 선거관리법(2022.07.22.).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주민등록 인구통계/연령별 인구현황.
<https://jumin.mois.go.kr/index.jsp#>(검색일: 2022.07.21.).

국가통계포털

- 경상남도 읍면동별 세대 및 인구



부록

제1절 연구 설계

1. 설문조사의 설계

- 본 설문조사는 선거벽보·선거공보·거리현수막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조사하고, 개별 선거운동용 매체의 효과성을 살펴볼 수 있도록 설문문항을 구성함
- 설문문항은 선거정보 수집을 위한 매체 선호도, 선거벽보·선거공보·거리현수막에 대해 각각 3문항, 3가지 선거운동용 매체 필요성 4문항, 기타 4문항, 응답자 특성 관련 6개 문항 등 총 24개 문항으로 구성됨

〈부록 표 1-1〉 설문문항 구성

	설문문항 내용	문항수
선호 매체	2022년도 대통령 선거 및 지방선거의 후보자와 정당에 대한 정보수집을 위해 선호하는 매체(1 ~ 4순위)	1개
선거벽보	선거운동용 선거벽보 목격 경험(예/아니오)	3개
	선거운동용 선거벽보가 응답자의 선거관심도에 미친 영향(5점)	
	선거운동용 선거벽보가 응답자의 최종 후보선택에 미친 영향(5점)	
선거공보	선거공보 정독 정도(5점)	3개
	선거공보가 응답자의 선거관심도에 미친 영향(5점)	
	선거공보가 응답자의 최종 후보선택에 미친 영향(5점)	
거리현수막	거리현수막 목격 경험(예/아니오)	3개
	거리현수막이 응답자의 선거관심도에 미친 영향(5점)	
	거리현수막이 응답자의 최종 후보선택에 미친 영향(5점)	
필요성	선거벽보·선거공보·거리현수막의 필요성 인식(예/아니오)	4개
	선거벽보 필요하지 않은 이유 2가지 선택	
	선거공보 필요하지 않은 이유 2가지 선택	
	거리현수막 필요하지 않은 이유 2가지 선택	

기타	선거벽보·선거공보·거리현수막 관련 개선안 자유의견 제시	4개
	정치 관심도(5점)	
	2022년 3월 제20대 대통령 선거 투표여부(예/아니오)	
	2022년 6월 제8대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여부(예/아니오)	
응답자 특성	성별	6개
	연령	
	최종학력	
	거주지역(17개)	
	거주지 행정구역1 (3개, 시/군/구)	
거주지 행정구역2 (2개, 읍·면/동)		
합 계		24개

2. 조사방법

- 2022년 투표권이 있는 20세 이상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 2022년 7월 20일부터 7월 29일까지 10일간 온라인 조사를 실시함
 - 온라인 조사를 위해 설문문항을 프로그램화하여 활용
- 응답자의 대표성을 위해 성별, 연령, 거주지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사대상자를 할당함
 - 시간 및 자원, 조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 1,000명을 조사목표로 설정함
 - 성별의 경우, 남녀의 비율이 각각 50%가 되도록 할당
 - 연령은 20~30대, 40~50대, 60세 이상으로 구분하여 각 집단별 최소 200명이 되도록 할당
 - 거주지의 경우,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충청권, 강원·제주권 등 5개 권역으로 구분하되, 각 권역별로 최소 100명 이상을 조사하도록 할당함
 - 대도시지역, 도농복합지역, 농·산·어촌지역 등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고자, 거주지의 행정구역별로 인구비례를 반영하여 조사대상자를 할당함

〈부록 표 1-2〉 응답자 거주지 행정구역 구분

행정구역 1	행정구역 2	구분
광역시	~동	대도시
광역시 및 도단위	~군	농산어촌
도단위 ~시	~읍, ~면	도농복합농산어촌
도단위 ~시	~동	도농복합도시

제2절 설문조사 응답자의 특성

○ 설문응답자의 성별 분포는 <부록 표 1-3>과 같음

- 전체 1,159명 중 남성은 51%에 해당하는 591명이었으며 여성은 568명으로 49%로 구성됨

<부록 표 1-3> 설문응답자 성별

구분	성별		합계
	남성	여성	
빈도 (명)	591	568	1,159
유효 퍼센트 (%)	51.0	49.0	100.0

○ 설문응답자의 연령대를 20-30대, 40-50대, 60대 이상로 구분하여 빈도분석한 결과는 다음 <부록 표 1-4>와 같음

- 전체 1,159명 중 응답자의 평균 연령은 48.97세였으며 최저 만 20세, 최고 만 79세였음.
- 연령대를 20-30대, 40-50대, 60대 이상의 3그룹으로 구분하였으며, 이들을 그룹별로 살펴보면 20-30대는 응답자의 29.8%, 40-50대는 31.5%, 60세 이상은 38.7%로 구성됨

<부록 표 1-4> 설문응답자 연령대

연령대 구분	빈도 (명)	유효 퍼센트 (%)
20-30대	345	29.8
40-50대	365	31.5
60대 이상	449	38.7
전체	1159	100.0

○ 응답자의 최종학력 분포를 살펴보면, 대학교 졸업이 약 62.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고등학교 졸업이 약 26.4%, 대학원 졸업 이상이 약 8.8% 순으로 나타남

〈부록 표 1-5〉 설문응답자 최종학력

구분	빈도 (명)	유효 퍼센트 (%)
중학교 졸업 이하	29	2.5
고등학교 졸업	306	26.4
대학교 졸업	720	62.1
대학원 졸업(석사) 이상	102	8.8
기타	2	0.2
전체	1,159	100.0

○ 설문응답자의 거주지역의 광역자치단체 (행정구역)은 표 〈3-6〉와 같음

〈부록 표 1-6〉 설문응답자 거주 지역 (광역자치단체별 구분)

거주지역	빈도 (명)	유효 퍼센트 (%)
서울	214	18.5
부산	65	5.6
대구	70	6.0
인천	67	5.8
광주	49	4.2
대전	42	3.6
울산	26	2.2
세종	22	1.9
경기	148	12.8
강원	52	4.5
충북	45	3.9
충남	56	4.8
전북	60	5.2
전남	51	4.4
경북	54	4.7
경남	57	4.9
제주	81	7.0
합 계	1,159	100.0

- 응답자의 거주지를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충청권, 강원/제주권 등 5개로 구분할 수 있음. 수도권 거주자는 37.0%, 영남권 23.5%, 호남권 13.8%, 충청권 14.2%, 강원/제주권 11.5%로 분포되어있으며 <부록 표 1-7>와 같음
- 설문 조사 설계 시 5개 권역별로 인구비례를 고려하여 응답자 비율을 설정함

<부록 표 1-7> 설문응답자 거주 지역(권역별) 분류.

구분	빈도 (명)	유효 퍼센트 (%)
수도권	429	37.0
영남권	272	23.5
호남권	160	13.8
충청권	165	14.2
강원/제주권	133	11.5
전체	1,159	100.0

- 응답자의 거주지 특성은 위치에 따른 권역별 구분 외에도 농산어촌 지역, 서울, 도농복합 도시지역, 도농복합 농산어촌 지역 등 다음과 같이 4가지로 구분하여 추가함.
 - 서울특별시를 제외하고, 대다수의 지역이 도시와 농산어촌이 공존함에 따라 거주지 주소를 기반으로 구분
 - 농산어촌지역: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광역자치단체의 군 단위 읍면지역
 - 도농복합 도시지역: 광역시와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에서 시 및 구 단위의 동에 거주하는 경우
 - 도농복합 농산어촌지역: 광역시의 군 단위의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와 광역자치단체의 시 단위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 응답자는 농산어촌 지역 거주자 19.3%, 서울특별시 거주자 18.5%, 도농복합 도시 지역 거주자 49.7%, 도농복합 농산어촌 지역 거주자 12.5%로 구성되며 <부록 표 1-8>과 같음

〈부록 표 1-8〉 설문응답자 거주 지역 특성

구분	빈도 (명)	유효 퍼센트 (%)
농산어촌 지역	224	19.3
서울특별시	214	18.5
도농복합 도시지역	576	49.7
도농복합 농산어촌 지역	145	12.5
전체	1,159	100.0

제3절 선거벽보·선거공보·거리현수막의 효과성 분석

1. 선거벽보

- 2022년도 대통령 선거 및 지방선거의 후보자와 정당에 대한 정보수집을 위해 선호하는 매체는 어디였는지에 대하여 다음의 매체(① 인터넷 검색 ② 신문·방송 등 언론 ③ 선거벽보·선거공보·거리현수막 ④ 지인)를 순위별로 선택해 달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다음 표와 같음(1 ~ 4순위)
- 선호매체 1순위로 가장 많은 응답을 보인 것은 인터넷 검색 45.1%이며, 다음으로 신문 방송 등 언론 40.4%이며, 다음으로 선거벽보, 선거공보, 거리현수막 11.4%의 순으로 나타남
- 선호매체 2순위로 가장 많은 응답을 보인 것은 신문 방송 등 언론 38.8%, 인터넷 검색 29.3%이며, 다음으로 선거벽보, 선거공보, 거리현수막 23.8%의 순으로 나타남

〈부록 표 1-9〉 2022년도 대통령 선거 및 지방선거의 후보자와 정당에 대한 정보수집을 위해 선호하는 매체

구분	선호매체1순위		선호매체2순위		선호매체3순위		선호매체4순위	
	빈도	유효 퍼센트	빈도	유효 퍼센트	빈도	유효 퍼센트	빈도	유효 퍼센트
인터넷검색	523	45.1	340	29.3	211	18.2	85	7.3
신문 방송 등 언론	468	40.4	450	38.8	179	15.4	62	5.3
선거벽보, 선거공보, 거리현수막	132	11.4	276	23.8	503	43.4	248	21.4
지인	36	3.1	93	8.0	266	23.0	764	65.9
전체	1,159	100.0	1,159	100.0	1,159	100.0	1,159	100.0

- 1순위를 4점, 2순위를 3점, 3순위를 2점, 4순위를 1점으로 하여 총점을 계산한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 표와 같음. 2022년도 대통령 선거 및 지방선거의 후보자와 정당에 대한 정보수집을 위해 선호하는 매체 1순위는 총점으로 보면, 신문 방송 등 언론이며, 2순위는 인터넷 검색이며, 선거벽보, 선거공보, 거리현수막은 3순위로 나타남

〈부록 표 1-10〉 선호매체 순위응답에 대한 총점과 순위

선호매체	선호매체 총점 (1순위를 4점, 2순위를 3점, 3순위를 2점, 4순위를 1점)	총점 순위
인터넷검색	3,619	2순위
신문 방송 등 언론	3,642	1순위
선거벽보, 선거공보, 거리현수막	2,610	3순위
지인	1,719	4순위
전체	11,590	

- 선거운동용 선거벽보를 목격한 경험이 있는가를 물어본 질문에 설문 응답자 1,159명 중 약 95%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함
- 선거운동용 선거벽보를 목격한 경험이 있는 1,100명을 대상으로, 선거벽보가 선거에 대한 관심도에 영향력을 미쳤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그렇다+매우 그렇다)는 244명(22.2%)였으며, 반대로 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지 않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361명(32.8%)로 나타남
 - 전체 응답자 평균은 5점 만점에 2.8점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보통 수준이라 할 수 있음
 - 부정적인 응답이 약 10.6%p 높음

〈부록 표 1-11〉 선거벽보를 읽고 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지 여부

질문내용		빈도 (명)	비율 (%)	평균	표준편차
선거운동용 선거벽보를 보고 귀하의 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까?	1. 전혀 그렇지 않다	127	11.6	2.80	.962
	2. 그렇지 않다	234	21.3		
	3. 보통이다	495	45.0		
	4. 그렇다	219	19.9		
	5. 매우 그렇다	25	2.3		
	합 계	1,100	100.0		

- 선거운동용 선거벽보를 목격한 경험이 있는 1,100명을 대상으로, 선거벽보가 응답자의 최종선택(투표)에 영향력을 미쳤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영향력을 받았다고 답한 응답자(그렇다+매우 그렇다)는 118명(10.7%), 영향력을 받지 않았다고 응답한 사람(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은 724명(65.8%)으로 나타남
 - 전체 응답자 평균은 5점 만점에 2.21점으로 나타남
 - 선거벽보가 최종 후보선택에 미친 영향력에 대해 응답자의 약 3분의 2가 부정적인 것으로 평가함

〈부록 표 1-12〉 선거벽보와 최종후보 선택(투표)

질문내용		빈도 (명)	비율 (%)	평균	표준편차
선거 운동용 거리현수막의 내용이 귀하의 최종 후보선택(투 표)에 영향을 주었습니까?	1. 전혀 그렇지 않다	284	25.8	2.21	.983
	2. 그렇지 않다	440	40.0		
	3. 보통이다	258	23.5		
	4. 그렇다	99	9.0		
	5. 매우 그렇다	19	1.7		
	합 계	1,100	100.0		

2. 선거공보 관련

- 선거공보를 읽어본 경험에 대해 묻는 설문 문항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전혀 읽지 않았다고 응답한 사람은 164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약 14.2%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995명(85.8%)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선거공보를 읽었다고 응답함
 - 응답자 1,159명의 평균은 5점 만점에 2.7점으로 나타남
 - 상대적으로 자세히 읽었다(자세히 읽었다 + 매우 자세히 읽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약 22.5%에 해당함

〈부록 표 1-13〉 선거공보 경험

질문내용		빈도 (명)	비율 (%)	평균	표준편차
귀하는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 관한 정보제공을 위해 제공된 선거공보를 읽어보셨습니까?	1. 전혀 읽지 않았다	164	14.2	2.71	1.063
	2. 부분적으로 읽었다	322	27.8		
	3. 대충 읽었다	412	35.6		
	4. 자세히 읽었다	206	17.8		
	5. 매우 자세히 읽었다	55	4.8		
	합 계	1159	100.0		

- 선거공보를 읽어본 경험이 있는 995명을 대상으로, 선거공보가 선거에 대한 관심도에 영향력을 미쳤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관심이 높아졌다는 반응을 보인 응답자(그렇다+매우 그렇다)는 331명으로 약 33.3%였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응답자(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는 259명으로 약 26.0%로 나타남
 - 전체 응답자 평균은 5점 만점에 3.1점으로 나타남

〈부록 표 1-14〉 선거공보를 읽고 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지 여부

질문내용		빈도 (명)	비율 (%)	평균	표준편차
선거공보를 읽고 귀하의 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까?	1. 전혀 그렇지 않다	51	5.1	3.06	0.927
	2. 그렇지 않다	208	20.9		
	3. 보통이다	405	40.7		
	4. 그렇다	293	29.5		
	5. 매우 그렇다	38	3.8		
	합 계	995	100.0		

○ 선거공보가 최종선택(투표)에 영향력을 미쳤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보통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약 32.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그렇지 않다(약 28.6%), 그렇다(약 22.5%), 전혀 그렇지 않다(약 11.9%) 순으로 응답이 많았음

- 전체 응답자 995명 평균은 5점 만점에 2.8점으로 나타남
- 투표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응답자(그렇지 않다+매우 그렇지 않다)는 403명(40.5%)이었으며, 영향을 받았다는 응답자(그렇다+매우 그렇다)는 270명의 약 1.5배로 나타남

〈부록 표 1-15〉 선거공보와 최종후보 선택(투표)

질문내용		빈도 (명)	비율 (%)	평균	표준편차
선거공보의 내용이 귀하의 최종 후보선택(투표)에 영향을 주었습니까?	1. 전혀 그렇지 않다	118	11.9	2.79	1.063
	2. 그렇지 않다	285	28.6		
	3. 보통이다	322	32.4		
	4. 그렇다	224	22.5		
	5. 매우 그렇다	46	4.6		
	합 계	995	100.0		

3. 거리현수막 관련

- 선거운동용 거리현수막을 목격한 경험이 있는가를 물어본 질문에 설문 응답자 1,159명 중 약 96%인 1,113명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함
- 선거운동용 거리현수막을 목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1,113명을 대상으로 거리현수막을 통해 선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보통이다(3점)’라고 응답한 비율이 약 37.6%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그렇지 않다’가 약 25.5%, ‘전혀 그렇지 않다’와 ‘그렇다’가 모두 17.3% 순으로 나타남
 - 전체 응답자 1,113명 평균은 5점 만점에 2.6점으로 나타남
 - 관심이 증가했다고 답한 응답자(그렇다+매우 그렇다)는 218명(19.6%)이었으며, 이는 관심이 증가하지 않았다고 답한 응답자(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인 457명(42.9%)의 절반보다 낮은 수준임

〈부록 표 1-16〉 거리현수막을 보고 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지 여부

질문내용		빈도 (명)	비율 (%)	평균	표준편차
선거운동용 거리현수막을 보고 귀하의 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까?	1. 전혀 그렇지 않다	193	17.3	2.62	1.032
	2. 그렇지 않다	284	25.5		
	3. 보통이다	418	37.6		
	4. 그렇다	193	17.3		
	5. 매우 그렇다	25	2.3		
	합 계	1,113	100.0		

- 선거운동용 거리현수막이 최종선택(투표)에 영향력을 미쳤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응답(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이 약 62.9%를 차지한 반면,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은(그렇다+매우 그렇다) 약 11.0%에 그침. 이는 응답자들의 부정적인 반응이 유의미하게 우세하다고 볼 수 있음
 - 전체 응답자 1,113명 평균은 5점 만점에 2.2점으로 나타남

〈부록 표 1-17〉 거리현수막과 최종후보 선택(투표)

질문내용	빈도 (명)	비율 (%)	평균	표준편차	
선거운동용 거리현수막의 내용이 귀하의 최종 후보선택(투표)에 영향을 주었습니까?	1. 전혀 그렇지 않다	320	28.8	2.21	1.015
	2. 그렇지 않다	380	34.1		
	3. 보통이다	291	26.2		
	4. 그렇다	103	9.3		
	5. 매우 그렇다	19	1.7		
	합 계	1,113	100.0		

4. 선거벽보·선거공보·거리현수막의 필요성

- 선거벽보, 선거공보, 거리현수막의 필요성을 각각 물어보는 응답을 살펴보면, 거리현수막의 필요성에 대해 대한 응답이 가장 낮았으며, 선거공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0% 이상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가장 높았음

〈부록 표 1-18〉 선거 운동용 매체의 필요성

구 분	필요성		합 계
	아니요 (%)	예 (%)	
선거벽보	519 (44.8%)	640 (55.2%)	1,159 (100.0%)
선거공보	342 (29.5%)	817 (70.5%)	1,159 (100.0%)
거리현수막	721 (62.2%)	438 (37.8%)	1,159 (100.0%)

- 선거벽보가 필요없다고 응답한 519명을 대상으로 그 이유에 대해 다시 질문하였으며, 응답자들이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 2가지를 선택하도록 하였음
 - 1순위로 선택된 이유를 살펴보면, 자원낭비라는 응답(34.5%)이 가장 많으며, 정보전달력 부족(24.9%), 거리미관 해침 (20.2%) 순으로 많음
 - 2순위를 살펴보면, 자원낭비가(33.1%)가 가장 빈도가 높으며, 지나치게 많이 게시되는 수량 (23.7%), 정보전달력 부족(21.4%) 순으로 많음
 - 전체적인 빈도를 살펴보면, 자원낭비라는 응답(351명)이 가장 많으며, 정보전달력 부족 (240명), 지나치게 많은 수량(217명) 등의 순으로 많음

〈부록 표 1-19〉 선거 운동용 벽보가 필요하지 않은 이유

항 목	1순위	2순위	합 계
1) 거리의 미관을 해친다	105 (20.2%)	82 (15.8%)	187
2) 다른 선거운동 방법에 비해 정보전달력이 떨어진다	129 (24.9%)	111 (21.4%)	240
3) 지나치게 많은 수량이 게시된다	94 (18.1%)	123 (23.7%)	217

4) 자원 낭비이다	179 (34.5%)	172 (33.1%)	351
5) 도보 및 운전 방해가 된다	12 (2.3%)	31 (6.0%)	43
합 계	519 (100.0%)	519 (100.0%)	1,038

○ 가중치를 부여하여 점수를 낸 결과는 이하와 같음

- 1순위 가중치 10점, 2순위엔 가중치 5점 부여
- 합계점수를 살펴보면, 자원 낭비가 가장 높으며 정보전달력 부족이 두 번째로 높음. 이는 상기한 결과와 동일함

〈부록 표 1-20〉 선거 운동용 벽보가 필요하지 않은 이유 (가중치 부여)

항 목	1순위	2순위	합 계
1) 거리의 미관을 해친다	105*10	82*5	1,460
2) 다른 선거운동 방법에 비해 전보전달력이 떨어진다	129*10	111*5	1,845
3) 지나치게 많은 수량이 게시된다	94*10	123*5	1,555
4) 자원 낭비이다	179*10	172*5	2,650
5) 도보 및 운전 방해가 된다	12*10	31*5	275

○ 선거공보가 필요없다고 응답한 342명을 대상으로 응답자들이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 2가지를 선택하도록 하였음

- 1순위로 선택된 이유를 살펴보면, 자원낭비(42.4%)와 선거공보보다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다른 경로가 있다(41.8%) 순으로 많았음
- 2순위 또한 자원낭비(36.5%), 선거공보보다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다른 경로가 있다(29.8%) 순으로 많았음

〈부록 표 1-21〉 선거공보가 필요하지 않은 이유

항 목	1순위	2순위	합 계
1) 선거공보 대신 인터넷 검색 등 다른 다양한 경로를 통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143 (41.8%)	102 (29.8%)	245
2) 자원 낭비이다	145 (42.4%)	125 (36.5%)	270
3) 우편물 받는 것이 번거롭다	42 (12.3%)	77 (22.5%)	119
4) 사이즈가 제각각이라 보기 불편하다	12 (3.5%)	38 (11.1%)	50
합 계	342 (100.0%)	342 (100.0%)	

○ 가중치를 부여하여 점수를 낸 결과는 이하와 같음

- 1순위 가중치 10점, 2순위엔 가중치 5점 부여
- 합계점수를 살펴보면, 자원 낭비가 가장 높으며 정보전달력 부족이 두 번째로 높음. 이는 마찬가지로 상기한 결과와 동일함

〈부록 표 1-22〉 선거공보가 필요하지 않은 이유 (가중치 적용)

항 목	1순위	2순위	합 계
1) 선거공보 대신 인터넷 검색 등 다른 다양한 경로를 통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143*10	102*5	1,940
2) 자원 낭비이다	145*10	125*5	2,075
3) 우편물 받는 것이 번거롭다	42*10	77*5	805
4) 사이즈가 제각각이라 보기 불편하다	12*10	38*5	310

○ 선거운동용 거리현수막이 필요없다고 응답한 712명을 대상으로 응답자들이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 2가지를 선택하도록 하였음

- 1순위로 선택된 이유를 살펴보면, 자원낭비(29.8%)와 거리 미관 저해(23.0%), 상대적으로 낮은 정보력(22.3%), 지나치게 많은 수량 게시(20.8%)로 나타남
- 2순위의 경우 자원낭비(33.7%), 지나치게 많은 수량 게시 (24.5%), 거리미관 저해 (17.2%) 등의 순으로 나타남

〈부록 표 1-23〉 선거운동용 거리현수막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

항 목	1순위	2순위	합 계
1) 다른 선거운동 방법에 비해 전보전달력이 떨어진다	161 (22.3%)	107 (14.8%)	268
2) 거리의 미관을 해친다	166 (23.0%)	124 (17.2%)	290
3) 지나치게 많은 장소에 게시된다	150 (20.8%)	177 (24.5%)	327
4) 자원 낭비이다	215 (29.8%)	243 (33.7%)	458
5) 도보 및 운전 방해가 된다	29 (4.0%)	70 (9.7%)	99
합 계	721 (100.0%)	721 (100.0%)	

○ 가중치를 부여하여 점수를 낸 결과는 이하와 같음

- 1순위 가중치 10점, 2순위엔 가중치 5점 부여
- 합계점수를 살펴보면, 자원 낭비가 3,365점으로 가장 높으며, 지나치게 많은 수량 게시가 2,385점으로 상기한 결과와 동일함

〈부록 표 1-24〉 선거운동용 거리현수막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 (가중치 적용)

항 목	1순위	2순위	합 계
1) 다른 선거운동 방법에 비해 전보전달력이 떨어진다	161*10	107*5	1,940
2) 거리의 미관을 해친다	166*10	124*5	2,075
3) 지나치게 많은 장소에 게시된다	150*10	177*5	805
4) 자원 낭비이다	215*10	243*5	310
5) 도보 및 운전 방해가 된다	29*10	70*5	640

5. 기타

- 기타 문항으로 응답자의 정치 관심도를 5점 척도로 기입하도록 하였을 때, 응답자 1,159명의 평균은 3.4점으로 나타남

〈부록 표 1-25〉 응답자들의 정치 관심도

질문 내용		빈도(명)	비율(%)	평균	표준편차
귀하의 정치에 대한 관심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낮다	32	2.8	3.37	0.897
	2. 낮다	118	10.2		
	3. 보통이다	515	44.4		
	4. 높다	377	32.5		
	5. 매우 높다	117	10.1		
	합 계	1,159	100.0		

- 2022년 치러진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의 참여 여부를 조사하였을 때, 전체 응답자 1,159명 중 제20대 대통령 선거 투표에 참여한 비율은 92.6%였으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에 참여한 비율은 82.5%였음

〈부록 표 1-26〉 응답자들의 투표 참여 여부

구 분	투표 참여 여부		합 계
	예 (%)	아니오 (%)	
제20대 대통령 선거	1,073 (92.6%)	86 (7.4%)	1,159 (100.0%)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956 (82.5%)	203 (17.5%)	1,159 (100.0%)

제4절 세대별, 지역별 효과성 분석 (집단 간 차이 분석)

1. 세대(연령대)별 효과성 차이 분석

(1) 선호매체

○ 2022년도 대통령 선거 및 지방선거의 후보자와 정당에 대한 정보수집을 위해 선호하는 매체는 어디였는지에 대하여 다음의 매체(① 인터넷 검색 ② 신문·방송 등 언론 ③ 선거벽보·선거공보·거리현수막 ④ 지인)를 순위별로 선택해 달라는 질문에 대한 1순위 응답에 대하여 연령대별로 교차분석한 결과는 다음 <부록 표 1-27>와 같음

- 선호매체 1순위에 대하여 20-30대, 40-50대의 경우 인터넷 검색이 각각 58.3%와 47.4%로 가장 많은 반면, 60대 이상은 신문방송 등 언론이 51.9%로 가장 많이 선택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집단 간 차이는 유의수준 0.001하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

<부록 표 1-27> 선호매체 순위에 대한 연령대별 선호 차이 분석

선호매체 1순위		연령대			전체	x ²	p
		20-30대	40-50대	60대 이상			
인터넷검색	빈도	201	173	149	523	58.384	.000
	연령대 중 %	58.3%	47.4%	33.2%	45.1%		
	전체 중 %	17.3%	14.9%	12.9%	45.1%		
신문 방송 등 언론	빈도	94	141	233	468		
	연령대 중 %	27.2%	38.6%	51.9%	40.4%		
	전체 중 %	8.1%	12.2%	20.1%	40.4%		
선거벽보, 선거공보, 거리현수막	빈도	40	38	54	132		
	연령대 중 %	11.6%	10.4%	12.0%	11.4%		
	전체 중 %	3.5%	3.3%	4.7%	11.4%		
지인	빈도	10	13	13	36		
	연령대 중 %	2.9%	3.6%	2.9%	3.1%		
	전체 중 %	0.9%	1.1%	1.1%	3.1%		
전체	빈도	345	365	449	1159		
	연령대 중 %	100.0%	100.0%	100.0%	100.0%		
	전체 중 %	29.8%	31.5%	38.7%	100.0%		

(2) 선거운동용 선거벽보와 선거에 대한 관심, 최종 후보선택 영향

- 선거운동용 선거벽보를 보고 귀하의 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지에 대한 연령대별 평균 차이 분석 결과, 유의수준 0.05 하에서 연령대별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선거운동용 선거벽보가 귀하의 최종 후보선택(투표)에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연령대별 평균 차이 분석 결과는 다음 표와 같음. 모든 연령대에서 선거운동용 선거벽보가 귀하의 최종 후보선택(투표)에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하여 보통 미만의 그렇지 않다는 응답을 보여주고 있으나, 20~30대는 다른 연령대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은 평균(2.32)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유의수준 0.05 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부록 표 1-28〉 선거운동용 선거벽보가 귀하의 최종 후보선택(투표)에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연령대별 평균 차이 분석

	N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확률
20-30대	332	2.32	1.008	3.410	.033
40-50대	342	2.13	0.953		
60대 이상	426	2.18	0.980		
전체	1100	2.21	0.983		

(3) 선거공보

-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 관한 정보제공을 위해 제공된 선거공보를 읽어보았는지에 대하여 전혀 읽지 않았다 1, 부분적으로 읽었다 2, 대충 읽었다 3, 자세히 읽었다 4, 매우 자세히 읽었다 5로 응답하게 한 연령대별 평균 차이는 다음 표와 같음
 - 모든 연령대에서 선거공보를 읽어보셨는지에 대하여 보통 미만의 '부분적으로 읽었다'에 가까운 응답을 보여주고 있으나, 20~30대는 다른 연령대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은 평균(2.83)을 보여주고 있어 '대충 읽었다'에 가까운 평균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유의수준 0.05 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부록 표 1-29〉 선거공보 읽은 경험에 대한 연령대별 평균 차이

연령대	N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확률
20-30대	345	2.83	1.147	3.380	.034
40-50대	365	2.63	1.023		
60대 이상	449	2.68	1.021		
전체	1159	2.71	1.063		

○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 관한 정보제공을 위해 제공된 선거공보를 읽어보셨는지에 대하여 전혀 읽지 않았다 1, 부분적으로 읽었다 2, 대충 읽었다 3, 자세히 읽었다 4, 매우 자세히 읽었다 5로 응답하게 한 결과에 대하여 연령대별 교차분석²⁹⁾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와 같음

- 20~30대의 경우 ‘대충 읽었다’가 33.0%로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부분적으로 읽었다’가 24.6%로 두 번째로 높은 응답을 보였음
- 40~50대의 경우 ‘대충 읽었다’가 37.3%로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부분적으로 읽었다’가 28.8%로 두 번째로 높은 응답을 보였음
- 60대 이상 이상의 경우 ‘대충 읽었다’가 36.1%로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부분적으로 읽었다’가 29.4%로 두 번째로 높은 응답을 보였음
- 20~30대에서 ‘자세히 읽었다’가 20.0%, ‘매우 자세히 읽었다’가 8.1%로 자세히 읽은 비율도 28.1%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임

〈부록 표 1-30〉 선거공보 읽은 경험에 대한 연령대별 교차분석

선거공보 읽은 경험		연령대			전체	x ²	p
		20-30대	40-50대	60대 이상			
전혀 읽지 않았다	빈도	49	55	60	164	16.817	.031
	연령대 중 %	14.2%	15.1%	13.4%	14.2%		
	전체 중 %	4.2%	4.7%	5.2%	14.2%		
부분적으 로 읽었다	빈도	85	105	132	322		
	연령대 중 %	24.6%	28.8%	29.4%	27.8%		
	전체 중 %	7.3%	9.1%	11.4%	27.8%		

29) 선거공보 읽은 경험에 대한 응답은 5점 척도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교차분석을 병행하여 실시함.

대충 읽었다	빈도	114	136	162	412
	연령대 중 %	33.0%	37.3%	36.1%	35.5%
	전체 중 %	9.8%	11.7%	14.0%	35.5%
자세히 읽었다	빈도	69	57	80	206
	연령대 중 %	20.0%	15.6%	17.8%	17.8%
	전체 중 %	6.0%	4.9%	6.9%	17.8%
매우 자세히 읽었다	빈도	28	12	15	55
	연령대 중 %	8.1%	3.3%	3.3%	4.7%
	전체 중 %	2.4%	1.0%	1.3%	4.7%
전체	빈도	345	365	449	1159
	연령대 중 %	100.0%	100.0%	100.0%	100.0%
	전체 중 %	29.8%	31.5%	38.7%	100.0%

(4) 선거공보의 내용과 최종 후보선택 영향

○ 선거공보의 내용이 귀하의 최종 후보선택(투표)에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하여 연령대별 평균 차이를 분석을 한 결과는 다음 표와 같음. 평균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함

- 20~30대는 보통보다 높은 평균 3.15를 보여주고 있고 40대~60대 이상 이상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선거공보의 내용이 최종 후보선택(투표)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부록 표 1-31〉 선거공보가 최종 후보선택(투표)에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연령대별 평균 차이 분석

연령대	N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확률
20-30대	296	3.15	1.024	24.692	.000
40-50대	310	2.66	1.026		
60대 이상	389	2.63	1.059		
전체	995	2.79	1.063		

(5) 거리현수막의 내용과 최종 후보선택 영향

- 선거운동용 거리현수막의 내용이 귀하의 최종 후보선택(투표)에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하여 연령대별 평균 차이를 분석을 한 결과는 다음 표와 같음. 평균 차이는 유의수준 0.01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 선거운동용 거리현수막의 내용은 모든 연령대에서 보통 미만의 평균을 보여주고 있어 최종 후보선택(투표)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20~30대는 상40대~60대 이상 이상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덜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 선거공보와 거리현수막이 최종 후보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보면, 20~30대에서는 선거공보의 내용이 최종 후보선택에 영향을 어느 정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거리현수막은 별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부록 표 1-32〉 거리현수막이 최종 후보선택(투표)에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연령대별 평균 차이 분석

연령대	N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확률
20-30대	330	2.38	1.039	6.432	0.002
40-50대	350	2.12	0.953		
60대 이상	433	2.16	1.031		
전체	1113	2.21	1.015		

(6) 선거벽보, 선거공보, 거리현수막 필요성과 연령대별 인식 차이

- 선거벽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연령대별 인식은 유의수준 0.01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선거벽보의 필요성에 대하여 20~30대의 63.2%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어 40~50대의 50.4% , 60대 이상 이상의 53.0%에 비하여 더 높은 비율로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여주고 있음

〈부록 표 1-33〉 선거벽보 필요성에 대한 연령대별 인식 차이

선거벽보 필요성			연령대			전체	x ²	p
			20~30대	40~50대	60대 이상			
선거벽보	아니오	빈도	127	181	211	519	13.162	0.001
		연령대 중 %	36.8%	49.6%	47.0%	44.8%		
		전체 중 %	11.0%	15.6%	18.2%	44.8%		
	예	빈도	218	184	238	640		
		연령대 중 %	63.2%	50.4%	53.0%	55.2%		
		전체 중 %	18.8%	15.9%	20.5%	55.2%		
전체	빈도	345	365	449	1159			
	연령대 중 %	100.0%	100.0%	100.0%	100.0%			
	전체 중 %	29.8%	31.5%	38.7%	100.0%			

- 선거공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연령대별 인식은 유의수준 0.05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거리현수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연령대별 인식은 유의수준 0.001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거리현수막에 대하여는 20~30대에서는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51.3%, 40~50대에서는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67.9%, 60대 이상에서는 65.9%로 나타나고 있음
 - 거리현수막에 대하여는 모든 연령대에서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과반수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20~30대에서 상대적으로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남

〈부록 표 1-34〉 거리현수막 필요성에 대한 연령대별 인식 차이

			연령대			전체	x ²	p
			20~30대	40~50대	60대 이상			
거리현수막	아니오	빈도	177	248	296	721	25.195	.000
		연령대 중 %	51.3%	67.9%	65.9%	62.2%		
		전체 중 %	15.3%	21.4%	25.5%	62.2%		
	예	빈도	168	117	153	438		
		연령대 중 %	48.7%	32.1%	34.1%	37.8%		
		전체 중 %	14.5%	10.1%	13.2%	37.8%		
전체	빈도	345	365	449	1159			
	연령대 중 %	100.0%	100.0%	100.0%	100.0%			
	전체 중 %	29.8%	31.5%	38.7%	100.0%			

2. 지역별 효과성 차이 분석

(1) 선호매체

- 2022년도 대통령 선거 및 지방선거의 후보자와 정당에 대한 정보수집을 위해 선호하는 매체는 어디였는지에 대하여 다음의 매체(① 인터넷 검색 ② 신문·방송 등 언론 ③ 선거벽보·선거공보·거리현수막 ④ 지인)를 순위별로 선택해 달라는 질문에 대한 1순위 응답에 대하여 5개 권역(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충청원, 강원/제주권)별로 교차분석한 결과, 집단 간 차이는 유의수준 0.05하에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지역특성별로 농어촌 지역, 서울특별시, 도농복합 도시 지역, 도농복합 농촌으로 구분하고, 선호매체 1순위 응답에 대하여 이들 지역특성별로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에 대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집단 간 차이는 유의수준 0.05하에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행정구역을 읍면 지역과 동지역으로 구분하고, 선호매체 1순위 응답에 대하여 읍면 지역과 동 지역 간에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에 대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집단 간 차이는 유의수준 0.05하에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2) 선거운동용 선거벽보와 선거에 대한 관심, 최종 후보선택 영향

- 선거운동용 선거벽보를 보고 귀하의 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지에 대한 5개 권역(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충청원, 강원/제주권)별로 평균 차이 분석 결과, 유의수준 0.05 하에서 5개 권역별로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선거운동용 선거벽보가 귀하의 최종 후보선택(투표)에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하여 5개 권역(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충청원, 강원/제주권)별로 평균 차이 분석 결과, 유의수준 0.05 하에서 5개 권역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선거운동용 선거벽보를 보고 귀하의 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지에 대하여 농어촌 지역, 서울특별시, 도농복합 도시 지역, 도농복합 농촌의 지역특성별로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에 대하여 평균 차이 분석 결과, 유의수준 0.05 하에서 농어촌 지역,

서울특별시, 도농복합 도시 지역, 도농복합 농촌의 지역특성별로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선거운동용 선거벽보가 귀하의 최종 후보선택(투표)에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하여 농어촌 지역, 서울특별시, 도농복합 도시 지역, 도농복합 농어촌의 지역특성별로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에 대하여 평균 차이 분석 결과, 유의수준 0.05 하에서 지역특성별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선거운동용 선거벽보를 보고 귀하의 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지에 대한 읍면 지역과 동 지역 간에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에 대하여 평균 차이 분석 결과, 유의수준 0.05 하에서 읍면 지역과 동 지역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선거운동용 선거벽보가 귀하의 최종 후보선택(투표)에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하여 읍면 지역과 동 지역 간에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에 대하여 평균 차이 분석 결과, 유의수준 0.05 하에서 읍면 지역과 동 지역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3) 선거공보

-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 관한 정보제공을 위해 제공된 선거공보를 읽어보셨는지³⁰⁾에 대하여 5개 권역(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충청원, 강원/제주권)별로 평균 차이 분석 결과, 유의수준 0.05 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권역별 평균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 관한 정보제공을 위해 제공된 선거공보를 읽어보셨는지에 대하여 전혀 읽지 않았다 1, 부분적으로 읽었다 2, 대충 읽었다 3, 자세히 읽었다 4, 매우 자세히 읽었다 5로 응답하게 한 결과에 대하여 5개 권역(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충청원, 강원/제주권)별로 교차분석³¹⁾을 실시한 결과, 유의수준 0.05 하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 관한 정보제공을 위해 제공된 선거공보를 읽어보셨는지에 대하여 농어촌 지역, 서울특별시, 도농복합 도시 지역, 도농복합 농촌의 지

30) 전혀 읽지 않았다 1, 부분적으로 읽었다 2, 대충 읽었다 3, 자세히 읽었다 4, 매우 자세히 읽었다 5로 응답하게 함

31) 선거공보 읽은 경험에 대한 응답은 5점 척도라고 보기에 는 무리가 있으므로 교차분석을 병행하여 실시함.

역특성별로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에 대하여 평균 차이 분석 결과, 유의수준 0.05 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지역특성별 평균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 관한 정보제공을 위해 제공된 선거공보를 읽어보셨는지에 대하여 읍면 지역과 동 지역 간에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에 대하여 평균 차이 분석 결과, 유의수준 0.05 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평균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4) 선거공보의 내용과 최종 후보선택 영향

- 선거공보의 내용이 귀하의 최종 후보선택(투표)에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하여 5개 권역(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충청원, 강원/제주권)별로 평균 차이 분석 결과, 유의수준 0.05 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권역별 평균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선거공보의 내용이 귀하의 최종 후보선택(투표)에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하여 농어촌 지역, 서울특별시, 도농복합 도시 지역, 도농복합 농촌의 지역특성별로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에 대하여 평균 차이 분석 결과, 유의수준 0.05 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지역특성별 집단 간 평균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선거공보의 내용이 귀하의 최종 후보선택(투표)에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하여 읍면 지역과 동 지역 간에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에 대하여 평균 차이 분석 결과, 유의수준 0.05 하에서 읍면 지역과 동 지역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평균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5) 거리현수막의 내용과 최종 후보선택 영향

- 선거운동용 거리현수막의 내용이 귀하의 최종 후보선택(투표)에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하여 5개 권역(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충청원, 강원/제주권)별로 평균 차이 분석 결과, 유의수준 0.05 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권역별 평균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선거운동용 거리현수막의 내용이 귀하의 최종 후보선택(투표)에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하여 농어촌 지역, 서울특별시, 도농복합 도시 지역, 도농복합 농촌의 지역특성별로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에 대하여 평균 차이 분석 결과는 다음 표와 같음. 유의수준 0.05 하에서 지역특성별 집단 간 평균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

- 선거운동용 거리현수막의 내용이 귀하의 최종 후보선택(투표)에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하여 지역특성별 평균을 살펴보면, 농촌지역은 2.12, 서울시 2.13, 도농복합도시의 도시지역 2.22, 도농복합도시의 농촌지역 2.44를 보여주고 있어 대체로 ‘그렇지 않다’는 부정적인 응답을 보여주고 있으나 도농복합도시의 농촌지역은 평균 2.44로 다른 집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평균을 보여주고 있음

〈부록 표 1-35〉 거리현수막이 투표에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지역특성별 평균 차이 분석

지역특성별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확률
농촌지역	217	2.12	0.952	3.262	0.021
서울시	201	2.13	1.047		
도농복합도시의 도시지역	562	2.22	1.016		
도농복합도시의 농촌지역	133	2.44	1.033		
전체	1113	2.21	1.015		

- 선거운동용 거리현수막의 내용이 귀하의 최종 후보선택(투표)에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하여 읍면 지역과 동 지역 간에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에 대하여 평균 차이 분석 결과, 유의수준 0.05 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집단별 평균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6) 선거벽보, 선거공보, 거리현수막 필요성

- 선거벽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5개 권역(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충청원, 강원/제주권)별로 교차분석 결과, 유의수준 0.05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선거벽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농어촌 지역, 서울특별시, 도농복합

도시 지역, 도농복합 농촌의 지역특성별로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에 대하여 교차분석 결과, 유의수준 0.05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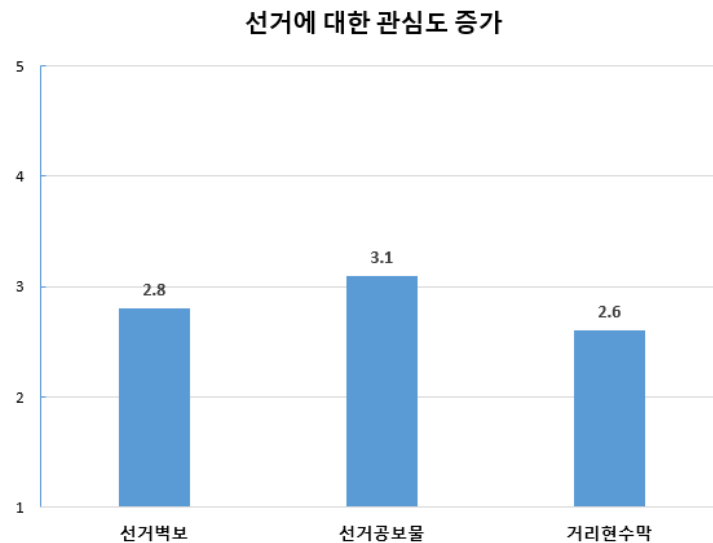
- 선거벽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읍면 지역과 동 지역 간에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에 대하여 교차분석 결과, 유의수준 0.05하에서 읍면 지역과 동 지역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제5절 소결

1. 선거벽보·선거공보·거리현수막 선호 및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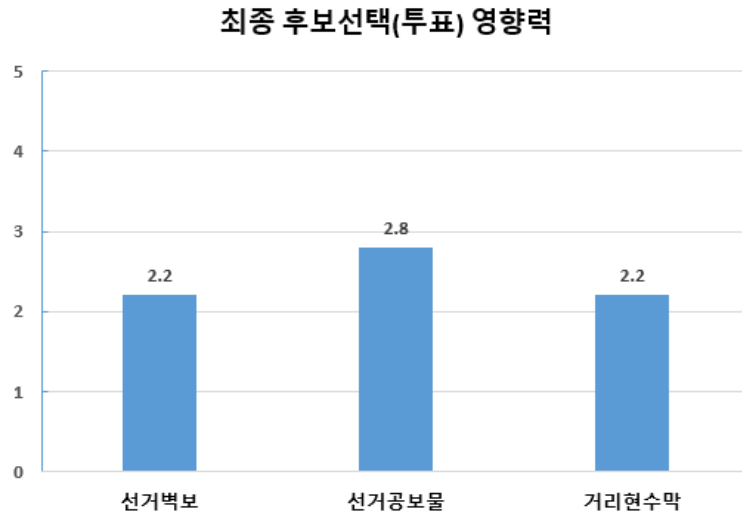
- 시민들이 선거와 관련된 정보를 얻기 위해 인터넷 검색, 신문·방송 등 언론을 선호하며, 선거벽보·선거공보·거리현수막은 상대적으로 선호가 낮은 매체임
- 선거벽보·선거공보·거리현수막이 선거에 대한 관심을 높였는가를 살펴본 문항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선거벽보 평균은 2.8점, 선거공보 평균은 3.1점, 거리현수막은 2.6점으로 나타남. 이에 상대적으로 다른 두 매체에 비해 선거공보의 영향력이 크다고 할 수 있음

〈부록 그림 1-1〉 선거벽보·선거공보·거리현수막의 선거 관심 유도 정도



- 선거벽보·선거공보·거리현수막이 최종 후보선택(투표)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쳤는가에 대한 설문결과를 정리하면, 선거벽보 평균은 2.2점, 선거공보 평균은 2.8점, 거리현수막은 2.2점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선거공보의 영향력이 크다고 할 수 있음. 이에 상대적으로 다른 두 매체에 비해 선거공보의 영향력이 크다고 할 수 있음

〈부록 그림 1-2〉 선거벽보·선거공보·거리현수막의 최종 후보선택(투표) 영향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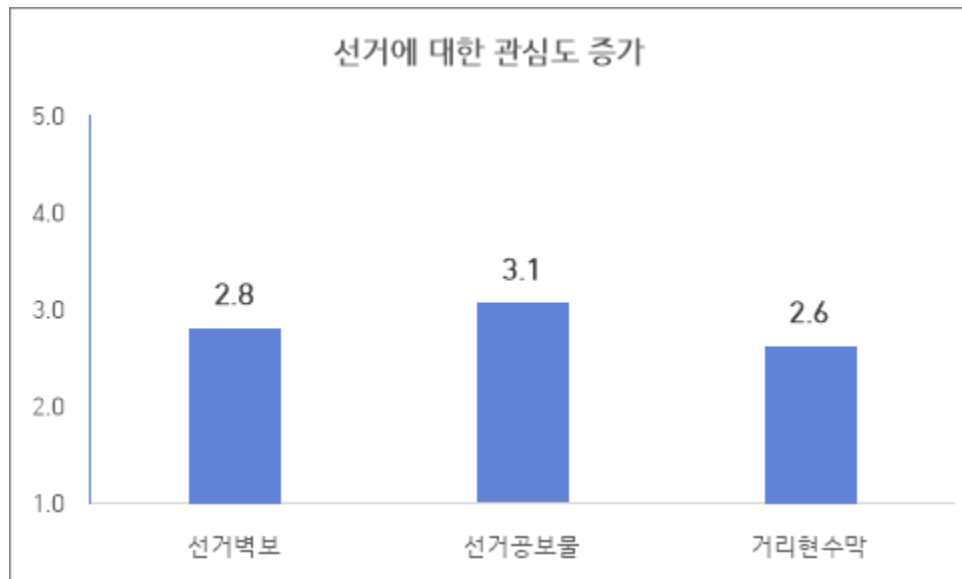
- 종합하면, 선거공보가 선거벽보와 거리현수막에 비해 상대적으로 효과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선거에 대한 관심도 증가, 최종 후보선택 영향력 등에서 선거공보·거리현수막 전반적인 점수를 살펴보면 보통수준(3점)이거나 하회하고 있어 효과성이 높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 추가 분석을 통해 연령대별로 선호매체 순위 및 선거벽보·선거공보·거리현수막의 효과성에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음
 - 20-30대와 40-50대는 인터넷 검색을 가장 선호하는 반면, 60대 이상에서는 신문방송 등 언론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30대에서 선거벽보·선거공보·거리현수막의 효과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선거벽보·선거공보·거리현수막의 효과성은 지역 및 지역특성별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인터넷 검색, 언론 등을 통해서 거주지와 상관없이 선거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선거벽보·선거공보·거리현수막의 효과성이 낮음을 재확인시켜준다고 할 수 있음

2. 선거벽보·선거공보·거리현수막 필요성

- 선거벽보·선거공보·거리현수막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을 종합해보면, 선거공보, 선거벽보, 거리현수막 순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 선거벽보·선거공보·거리현수막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이유에 대해 3가지 선거운동용 매체 모두 자원 낭비라는 점이 지적됨. 그리고 다른 매체와 비교하였을 때 정보 전달력이 낮다는 점도 문제임
- 앞서 살펴본 연령대별, 지역별 선거벽보·선거공보·거리현수막의 효과성을 함께 고려한다면, 향후 효과적인 선거 정보 전달을 위해 모바일 등을 통해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
 - 선거벽보·선거공보·거리현수막은 첩부, 우편발송, 설치 등을 위한 상당한 시간 및 노동력이 필요하며, 비용이 발생함에도 그 효과성이 크지 않음

□ 선거벽보 · 선거공보 · 거리현수막 효과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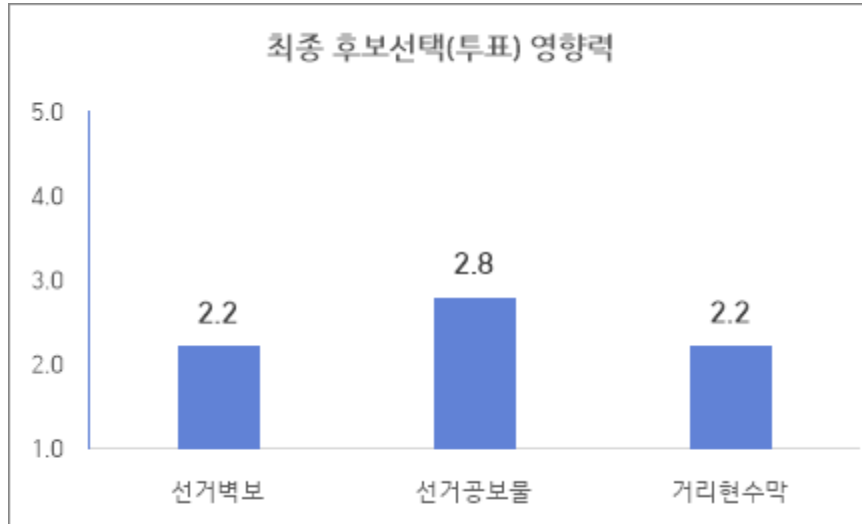
1	선거벽보 or 선거공보 or 거리현수막을 보고 귀하의 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까?
---	--



- 선거벽보, 선거공보, 거리현수막 등 3가지 선거운동용 매체가 선거에 대한 관심도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쳤는가를 5점 척도로 점수를 매기도록 하였음
- 선거벽보 평균은 2.8점, 선거공보 평균은 3.1점, 거리현수막은 2.6점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다른 두 매체에 비해 선거공보의 영향력이 크다고 할 수 있음

2

선거벽보 or 선거공보 or 거리현수막이 귀하의 최종 후보선택(투표)에 영향을 주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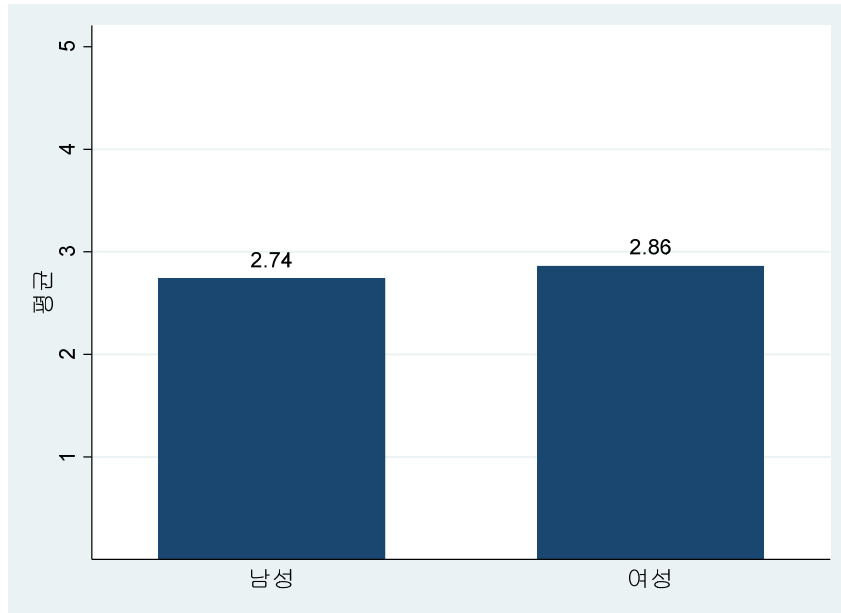


- 선거벽보, 선거공보, 거리현수막 등이 응답자의 투표행태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쳤는가를 5점 척도로 점수를 매기도록 하였음
- 선거벽보 평균은 2.2점, 선거공보 평균은 2.8점, 거리현수막은 2.2점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선거공보의 영향력이 크다고 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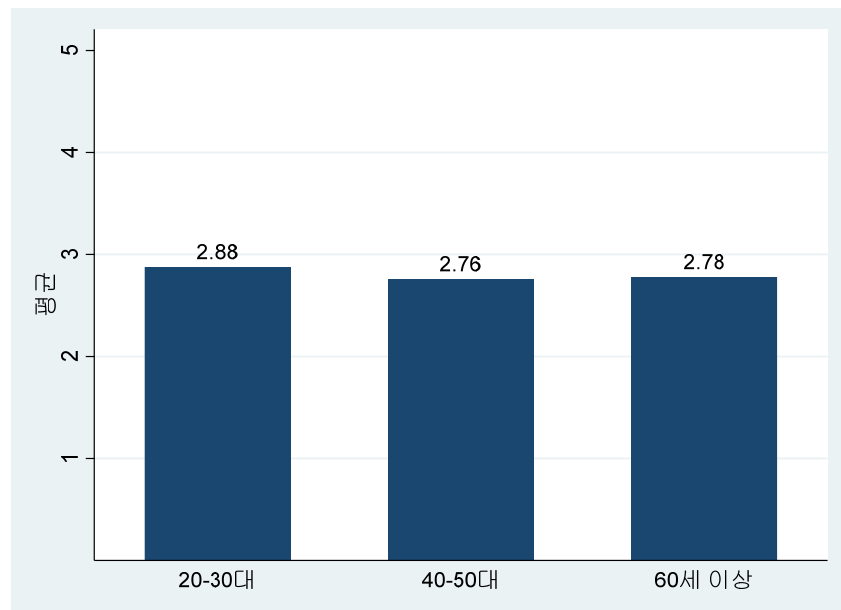
□ 선거운동용 선거벽보 효과 분석

1	선거벽보를 보고 귀하의 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까?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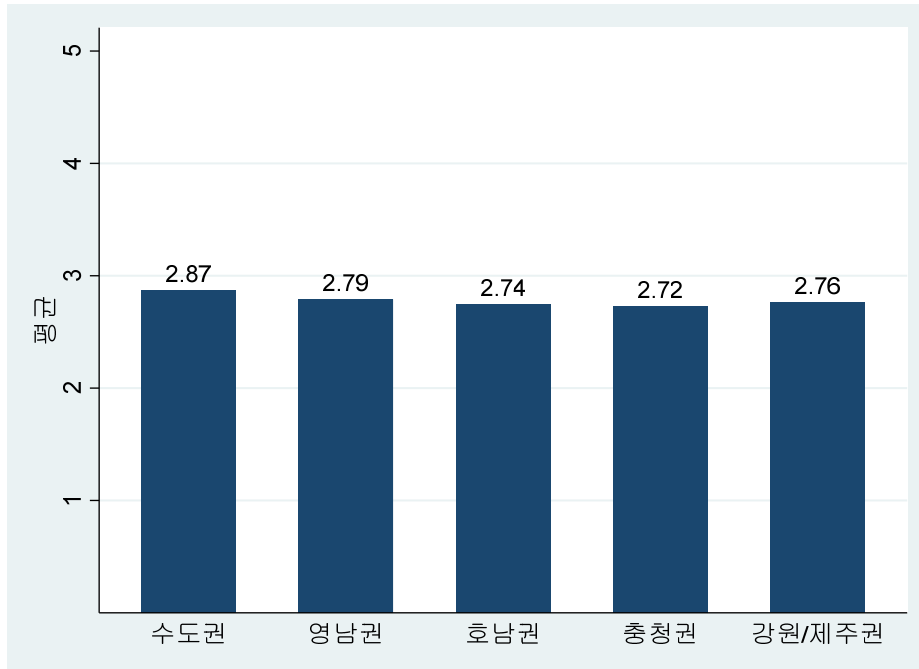
1) 성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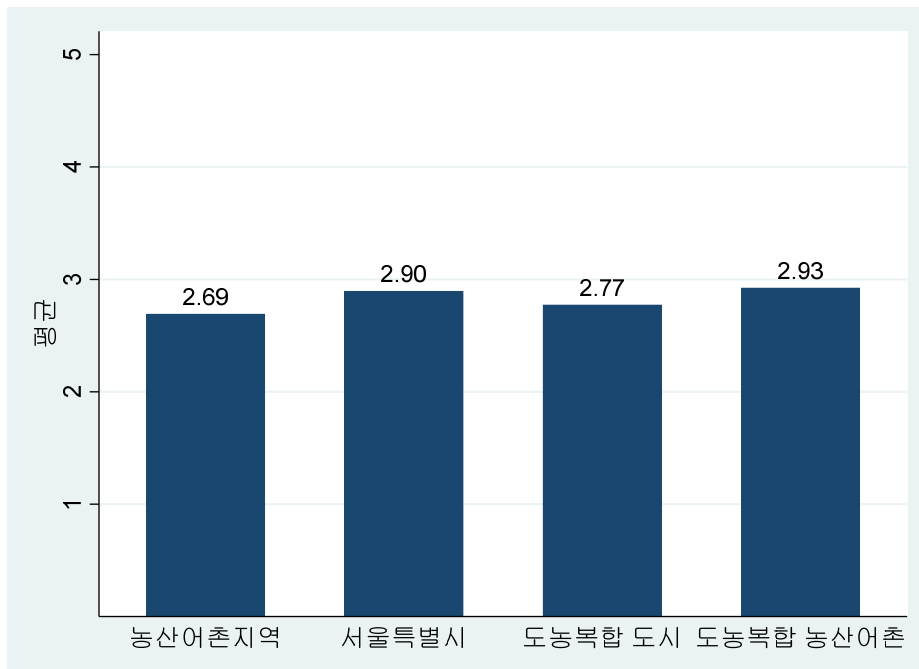
2) 연령대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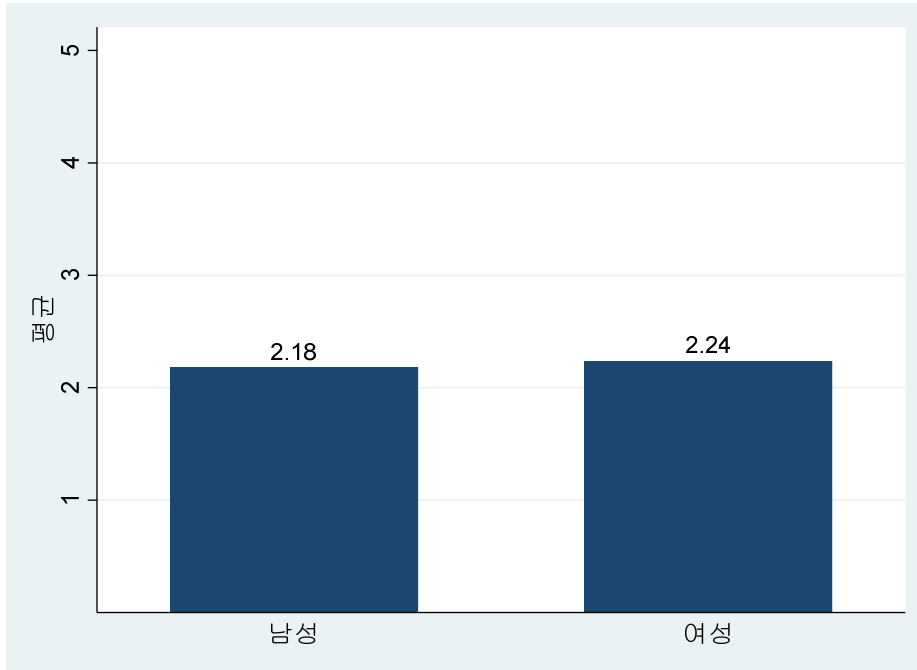
3) 지역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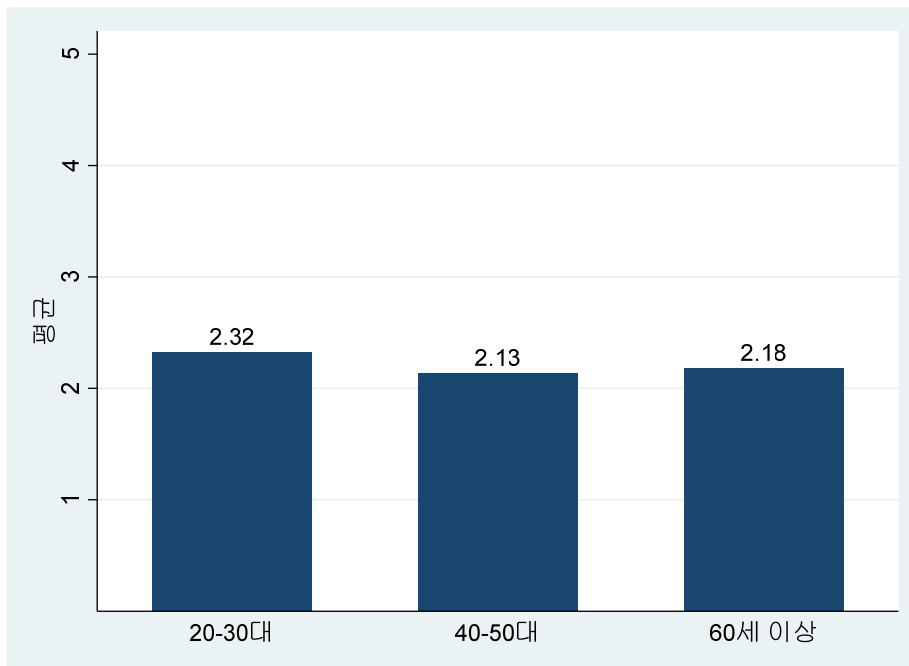
4) 지역 특성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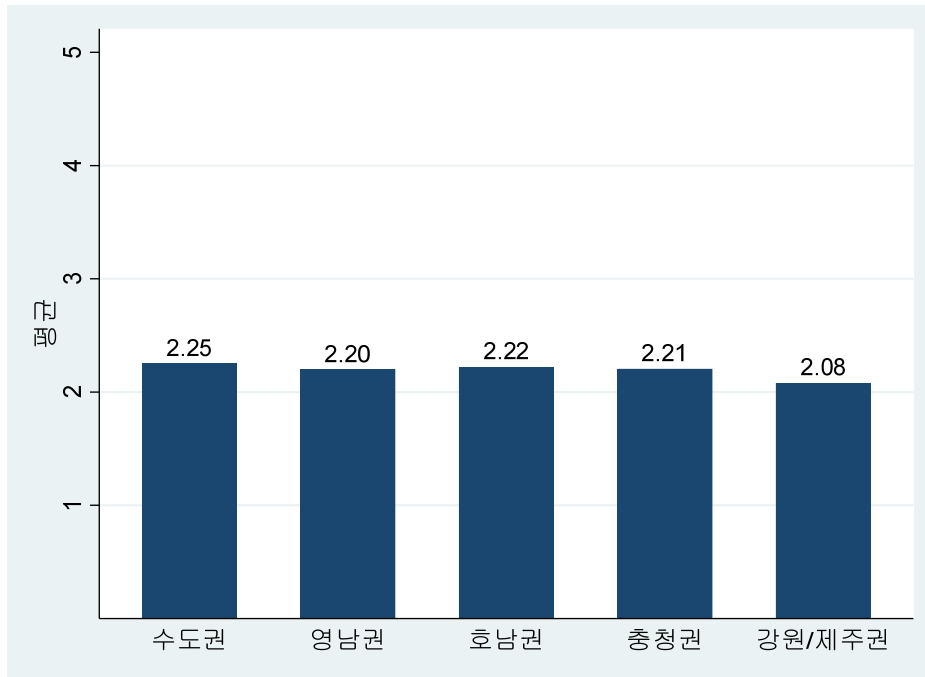
1) 성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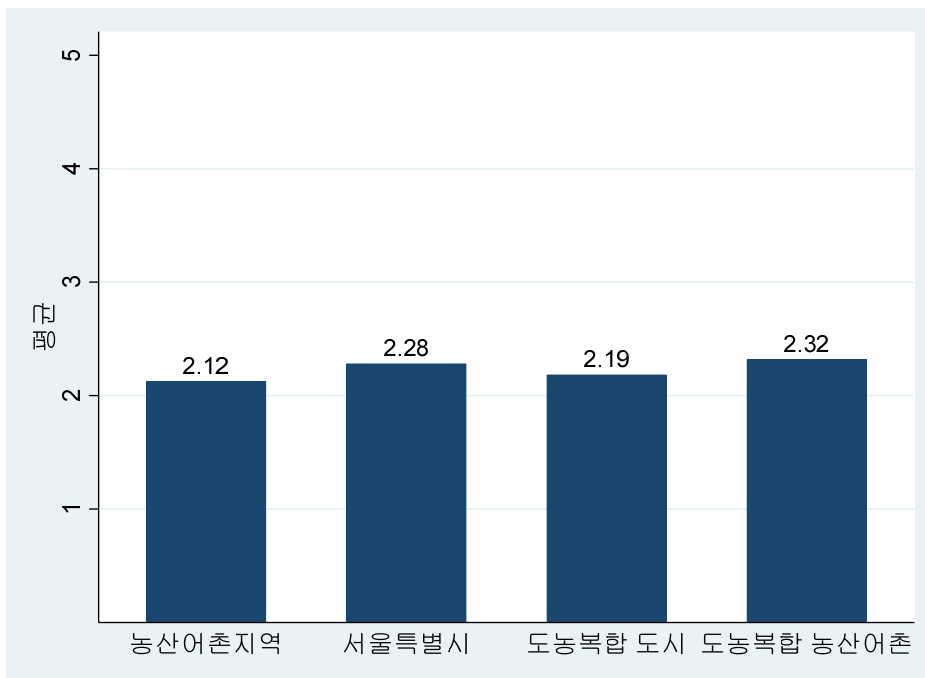
2) 연령대별 평균



3) 지역별 평균



4) 지역 특성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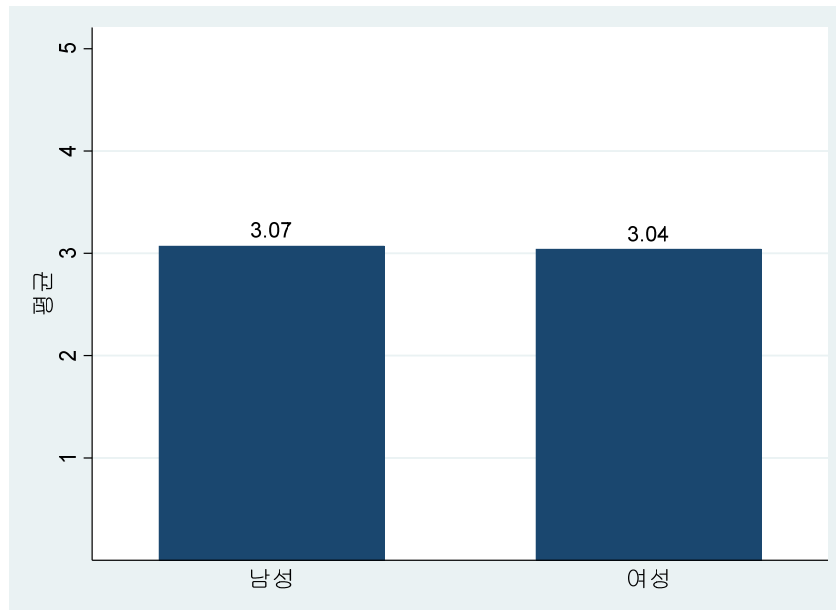


□ 선거공보 효과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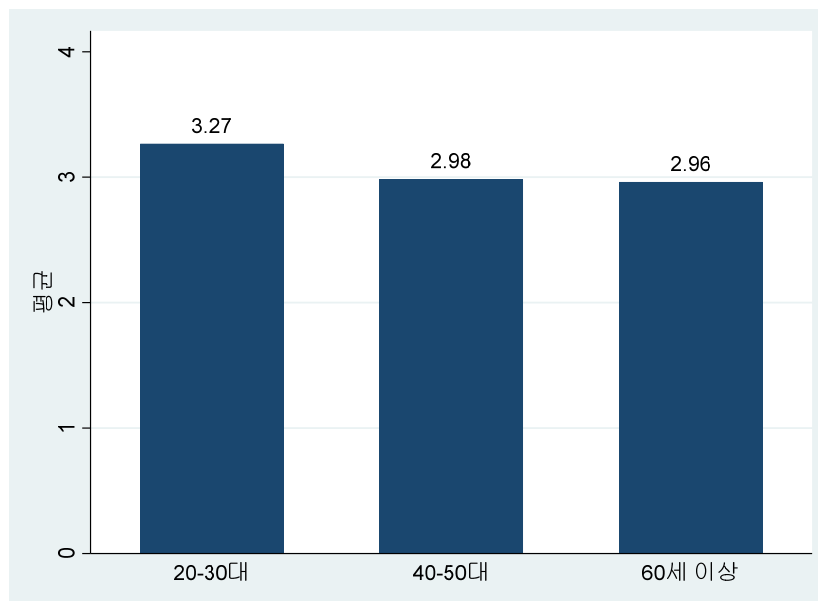
1

선거공보를 읽고 귀하의 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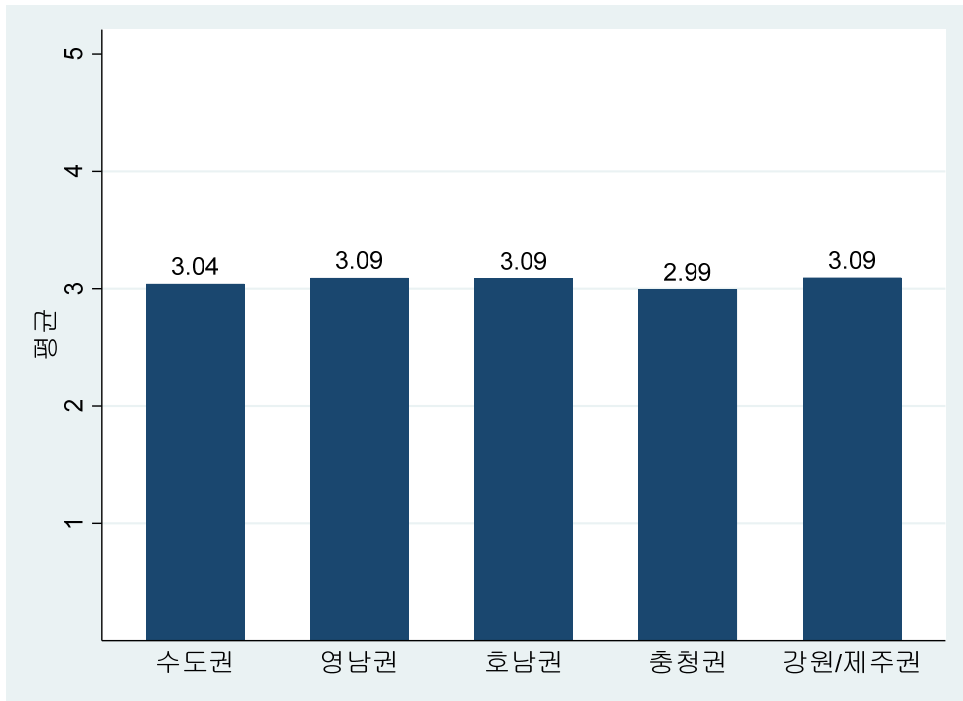
1) 성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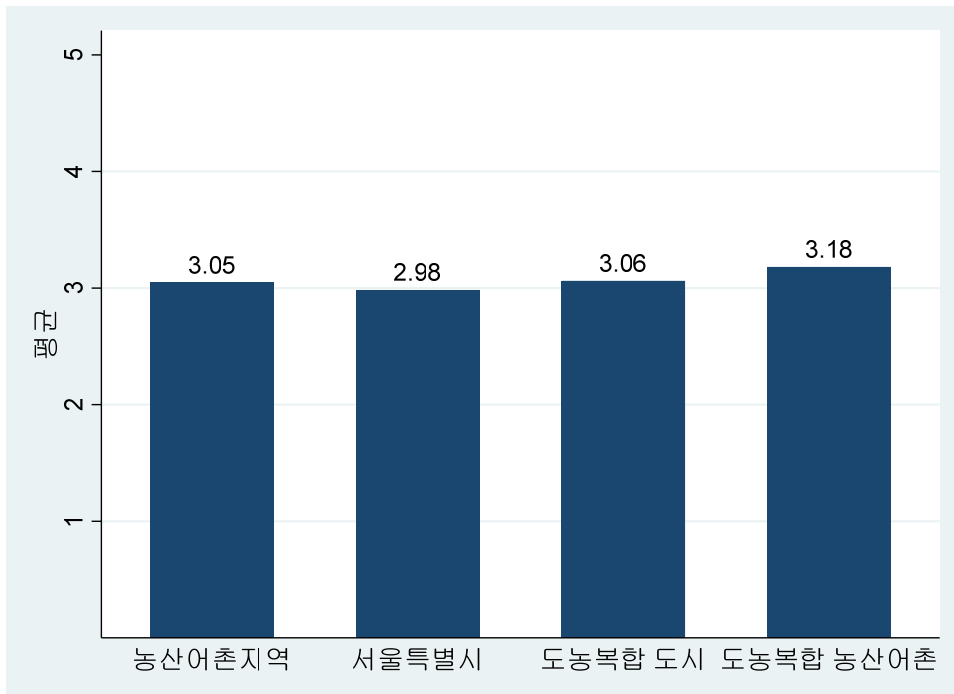
2) 연령대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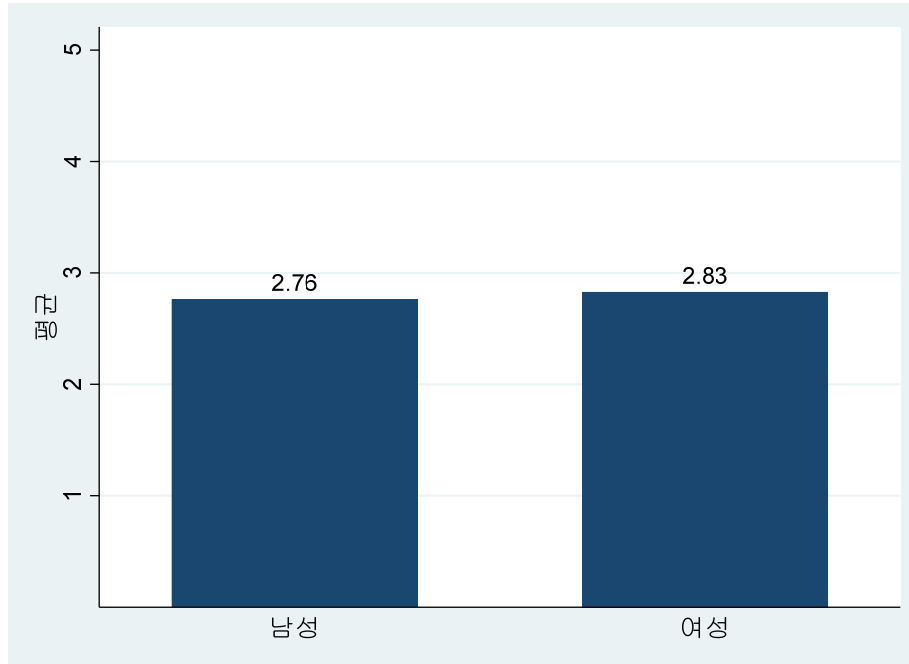
3) 지역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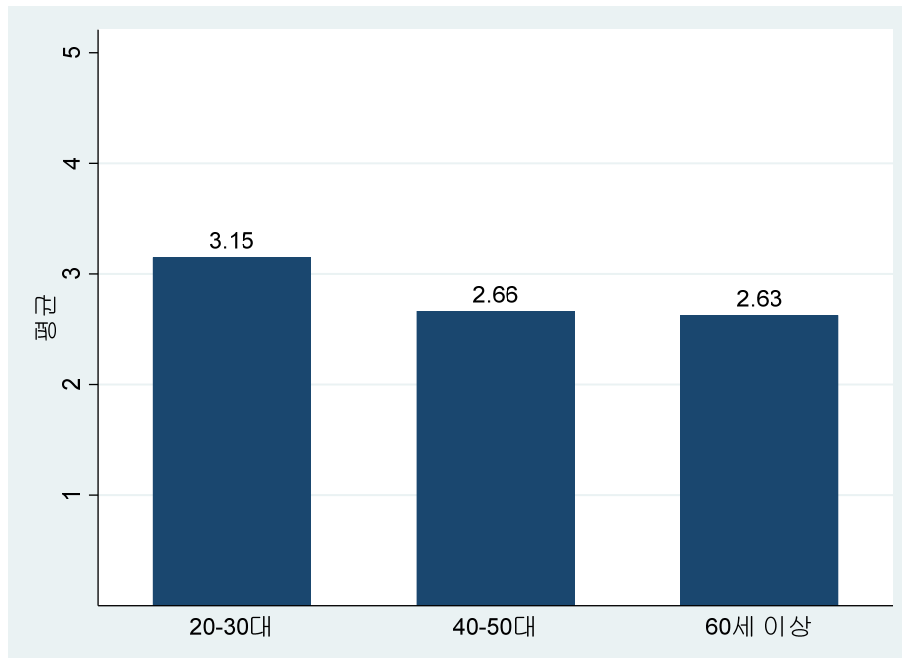
4) 지역 특성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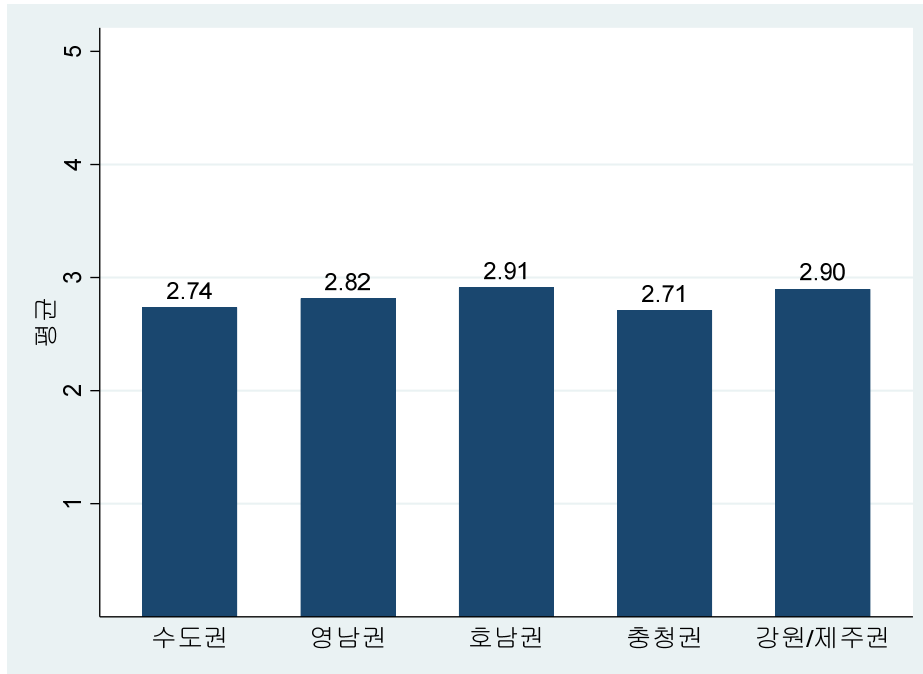
1) 성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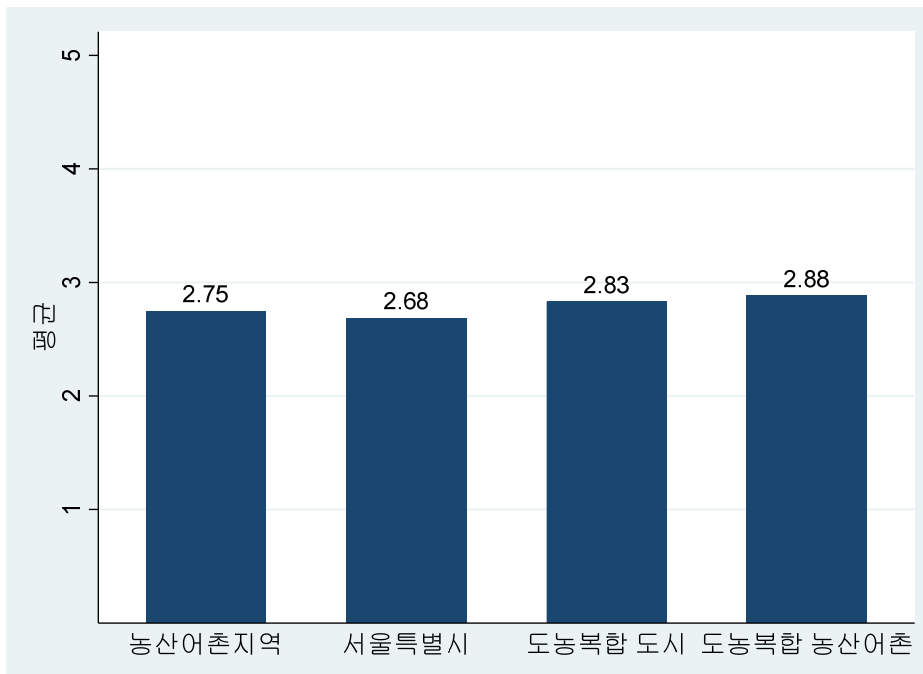
2) 연령대별 평균



3) 지역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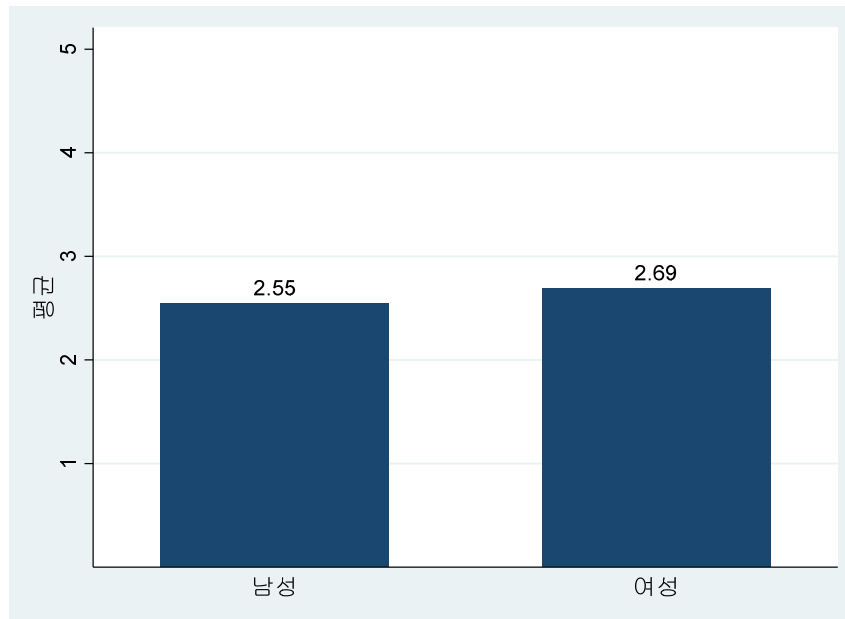
4) 지역 특성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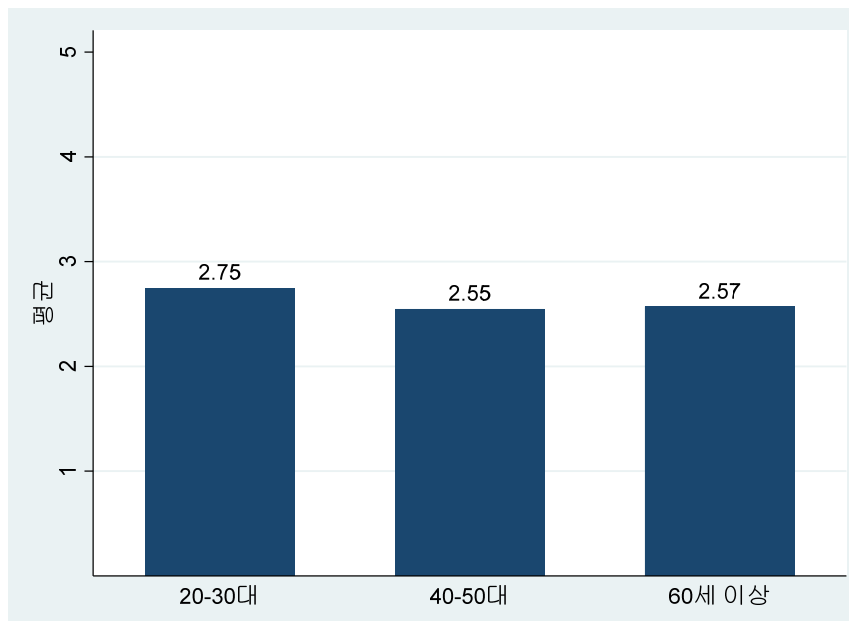
□ 선거운동용 거리현수막 효과 분석

1	선거운동용 거리현수막을 보고 귀하의 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까?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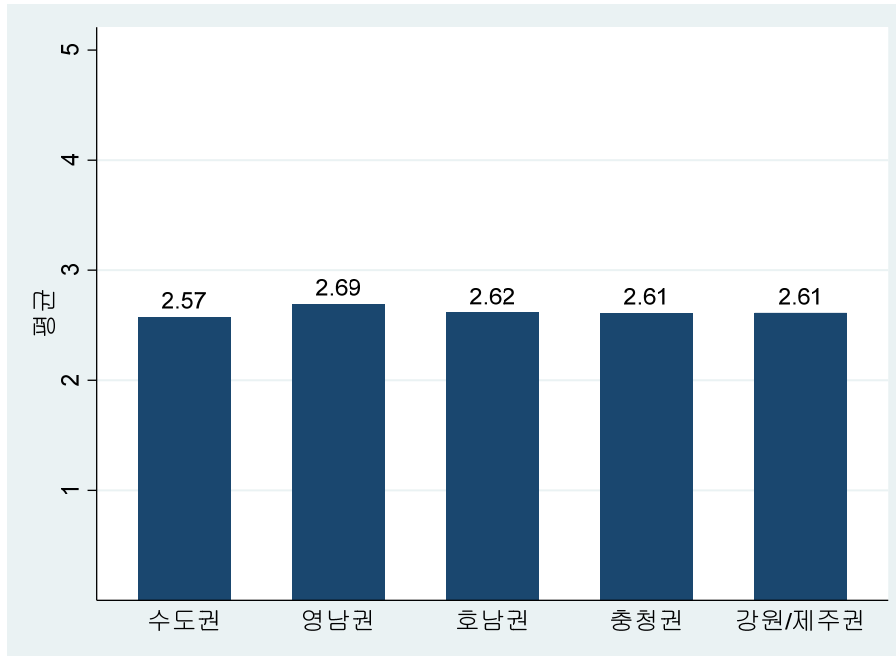
1) 성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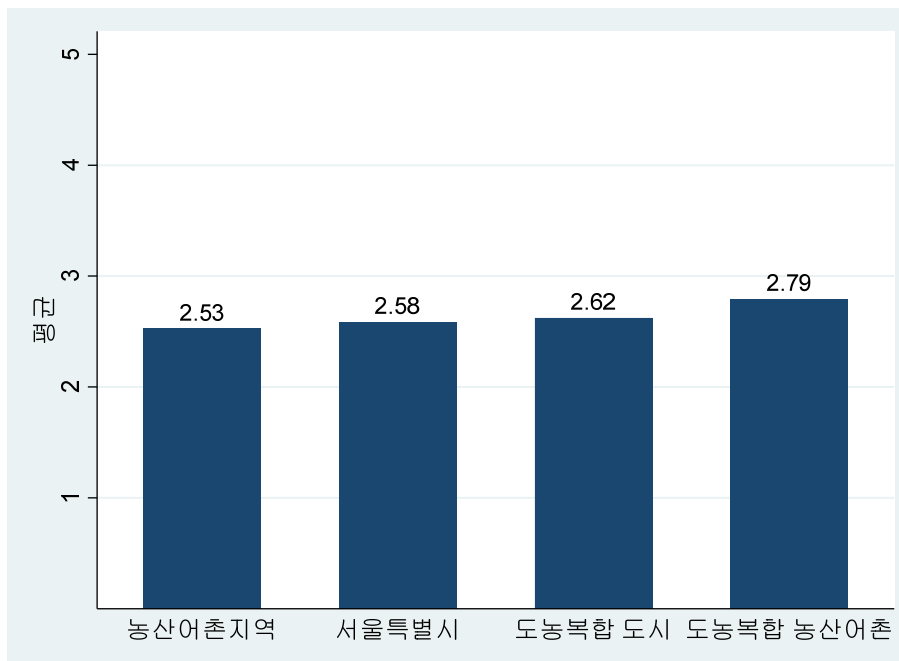
2) 연령대별 평균



3) 지역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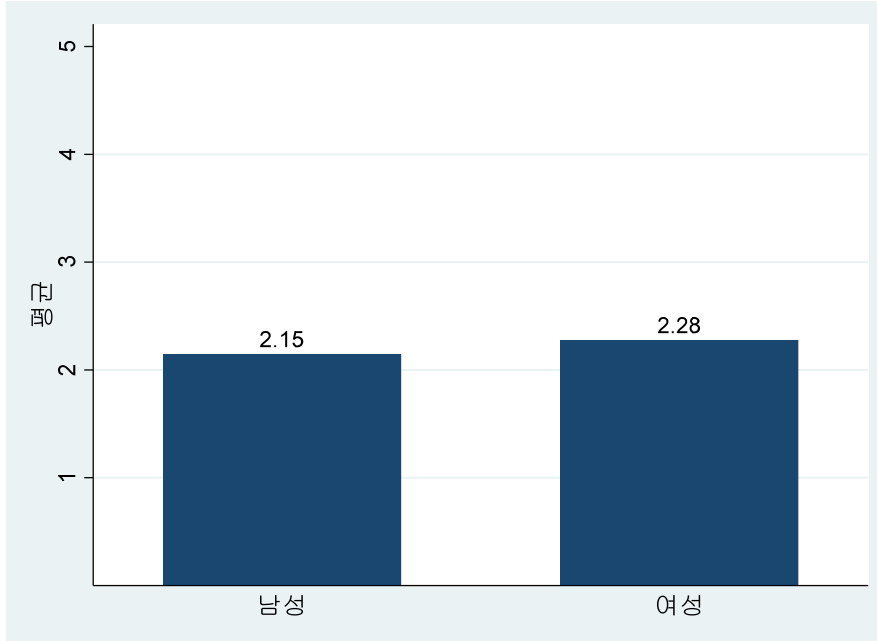
4) 지역 특성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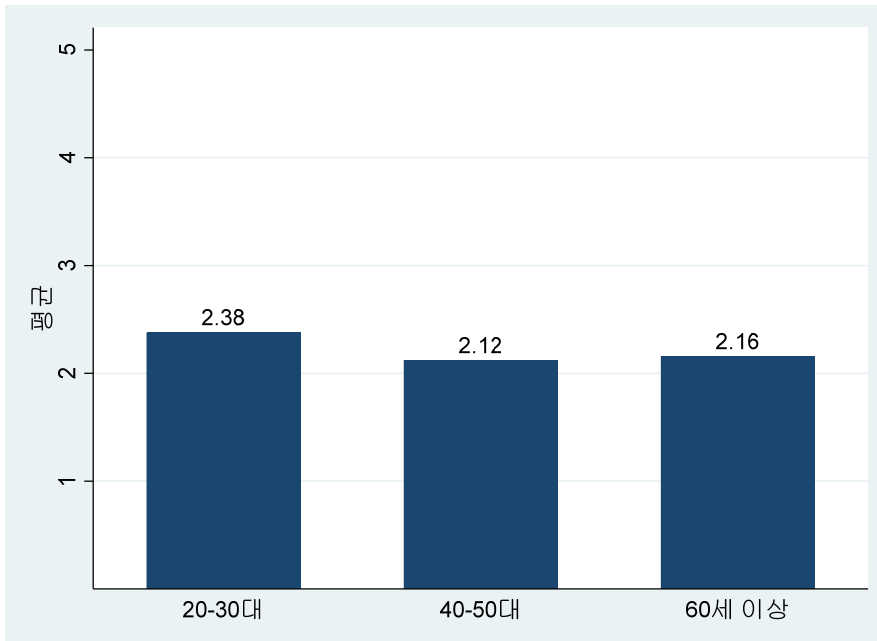
2

선거운동용 거리현수막의 내용이 귀하의 최종 후보선택(투표)에 영향을 주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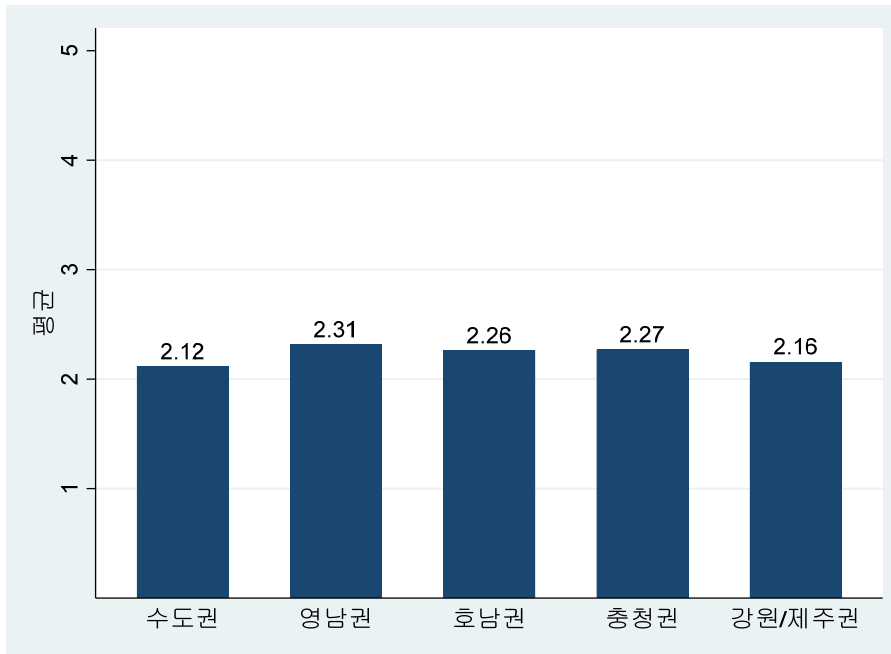
1) 성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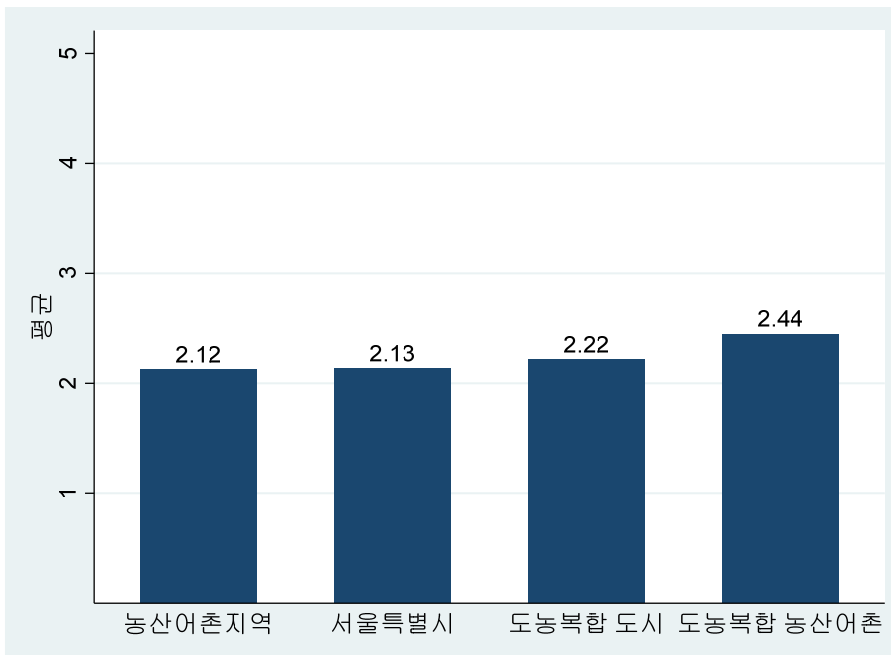
2) 연령대별 평균



3) 지역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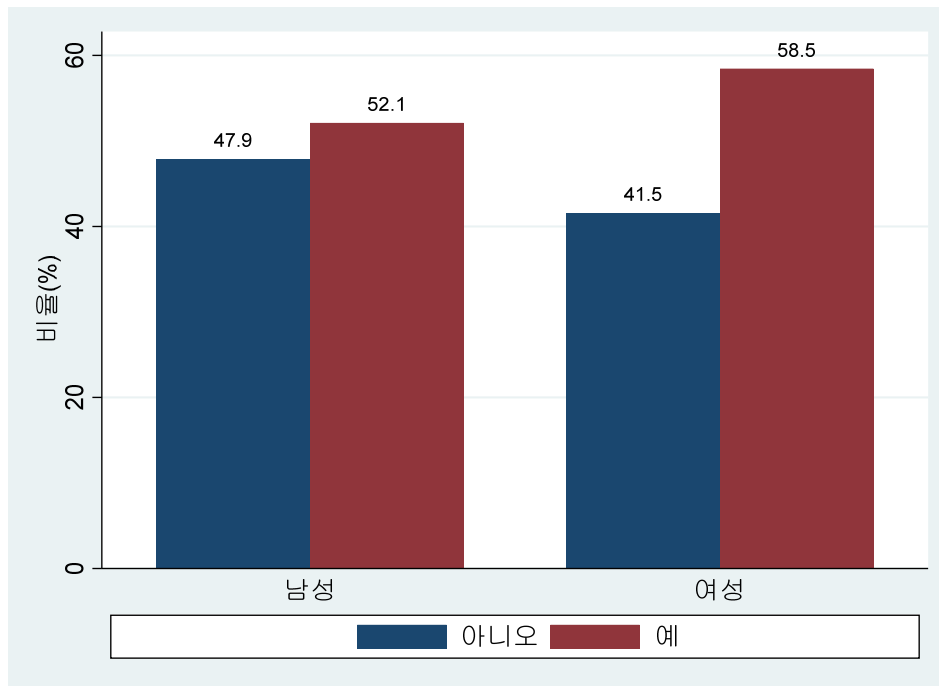
4) 지역 특성별 평균



□ 선거벽보 · 선거공보 · 거리현수막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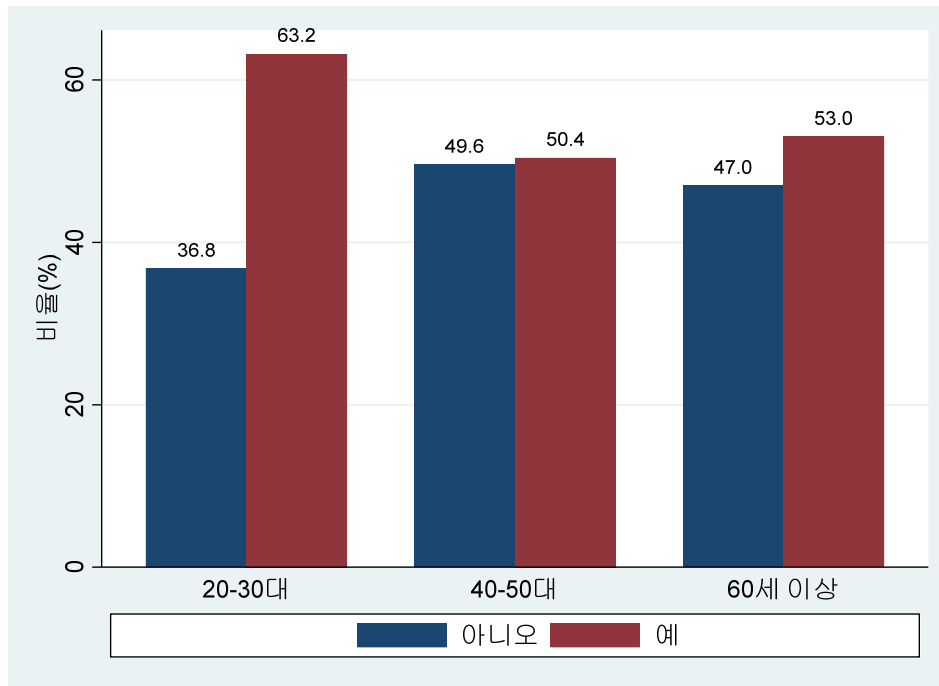
1	선거운동용 선거벽보 필요성
---	----------------

1)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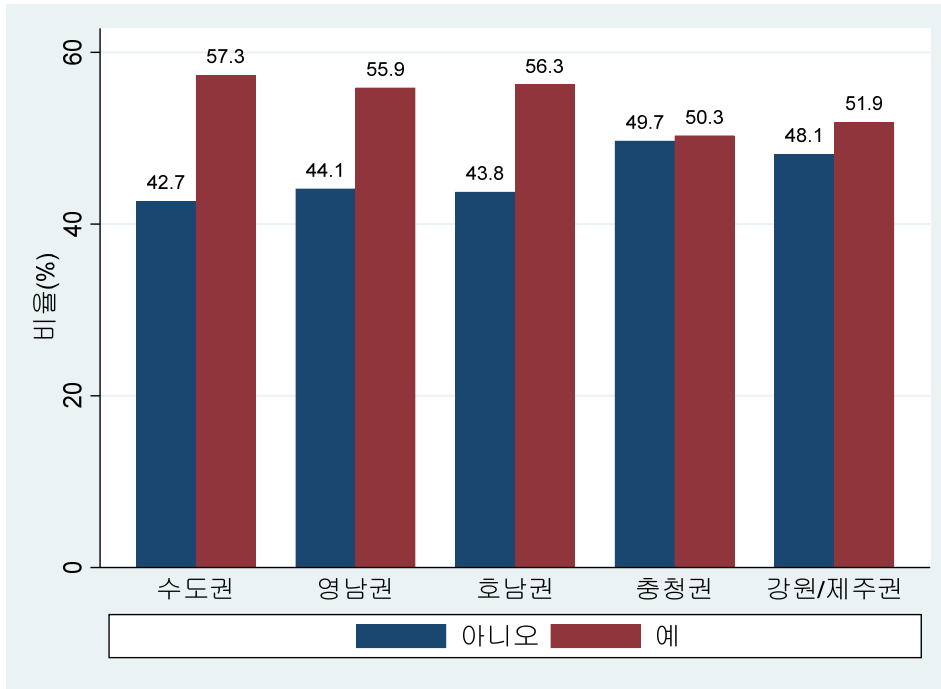
		성별		합 계
		남성	여성	
선거벽보 필요성	아니오	283 (47.9%)	236 (41.6%)	519 (44.8%)
	예	308 (52.1%)	332 (58.45%)	640 (55.2%)
합 계		591 (100.0%)	568 (100.0%)	1,159 (100.0%)

2) 연령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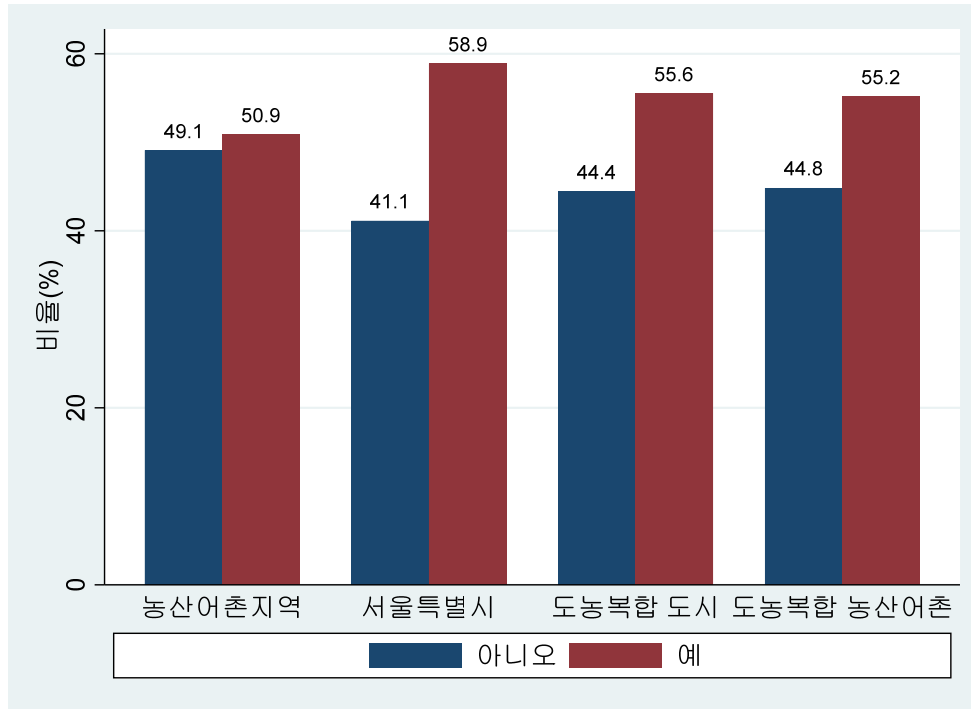
		연령대			합 계
		20-30대	40-50대	60세 이상	
선거벽보 필요성	아니오	127 (36.8%)	181 (49.6%)	211 (47.0%)	519 (44.8%)
	예	218 (63.2%)	184 (50.4%)	238 (53.0%)	640 (55.2%)
합 계		345 (100.0%)	365 (100.0%)	449 (100.0%)	1,159 (100.0%)

3) 지역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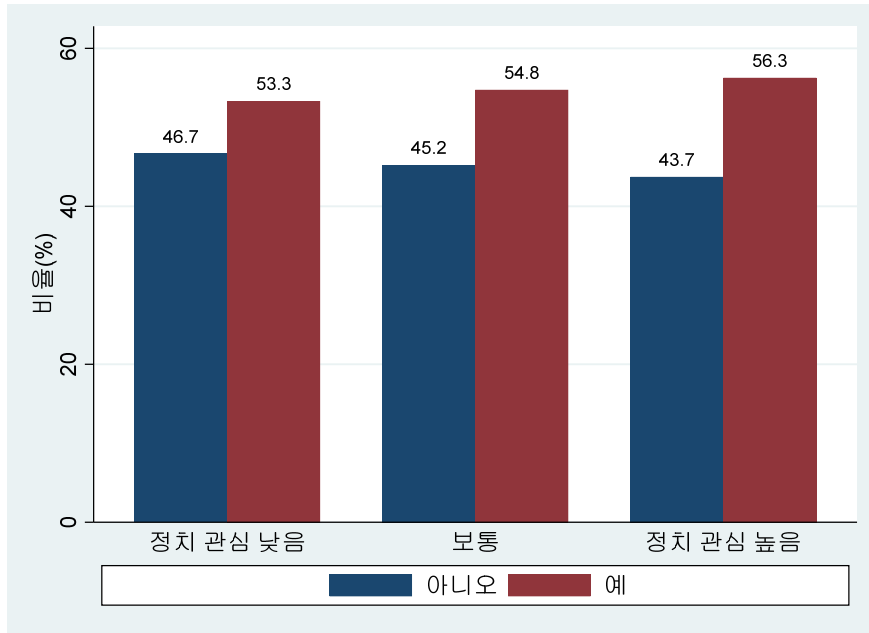
		지역별					합 계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충청권	강원/제주	
선거벽보 필요성	아니오	183 (42.7%)	120 (44.1%)	70 (43.8%)	82 (49.7%)	64 (48.1%)	519 (44.8%)
	예	246 (57.3%)	152 (55.9%)	90 (56.3%)	83 (50.3%)	69 (51.9%)	640 (55.2%)
합 계		429 (100.0%)	272 (100.0%)	160 (100.0%)	165 (100.0%)	133 (100.0%)	1,159 (100.0%)

4) 지역특성별



		지역 특성별				합 계
		농산어촌 지역	서울특별시	도농복합 도시	도농복합 농산어촌	
선거혁보 필요성	아니오	110 (49.1%)	88 (41.1%)	256 (44.4%)	65 (44.8%)	519 (44.8%)
	예	114 (50.9%)	126 (58.9%)	320 (55.6%)	80 (55.2%)	640 (55.2%)
합 계		224 (100.0%)	214 (100.0%)	576 (100.0%)	145 (100.0%)	1,159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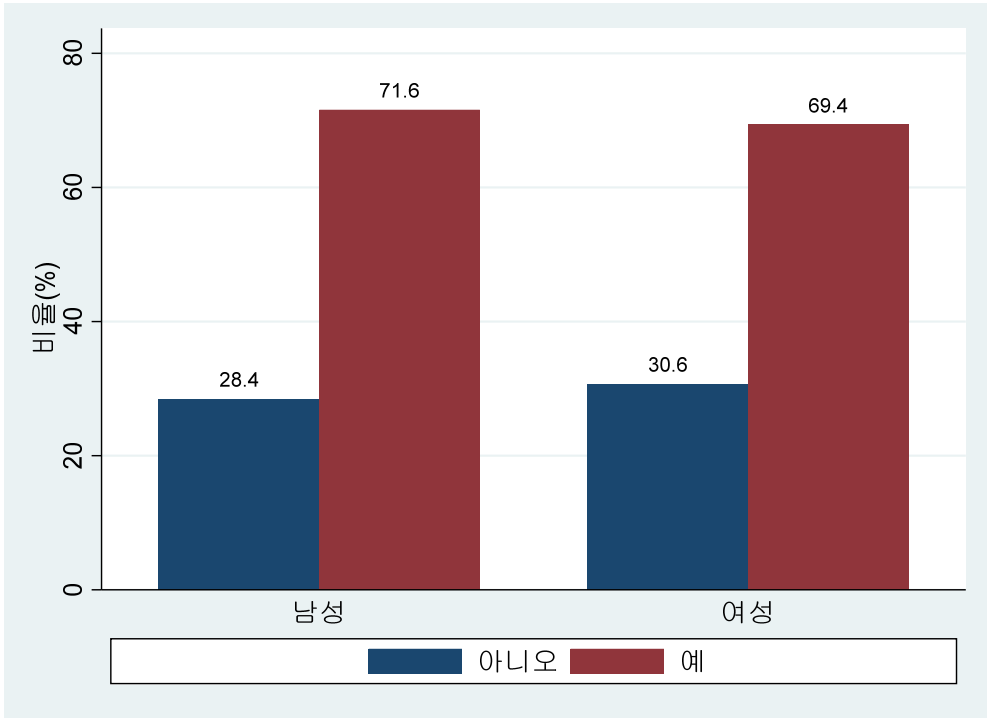
5) 정치 관심 수준별(낮음/보통/높음)



		정치 관심			합 계
		낮음	보통	높음	
선거벽보 필요성	아니오	70 (46.7%)	233 (45.2%)	216 (43.7%)	519 (44.8%)
	예	80 (53.3%)	282 (54.7%)	278 (56.3%)	640 (55.2%)
합 계		150 (100.0%)	515 (100.0%)	494 (100.0%)	1,159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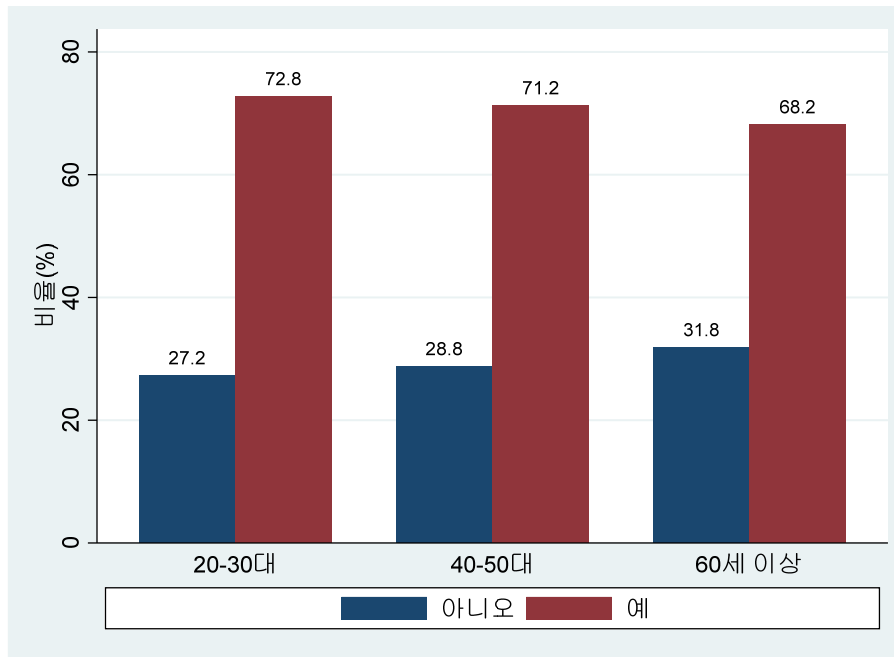
2	선거공보 필요성
---	----------

1)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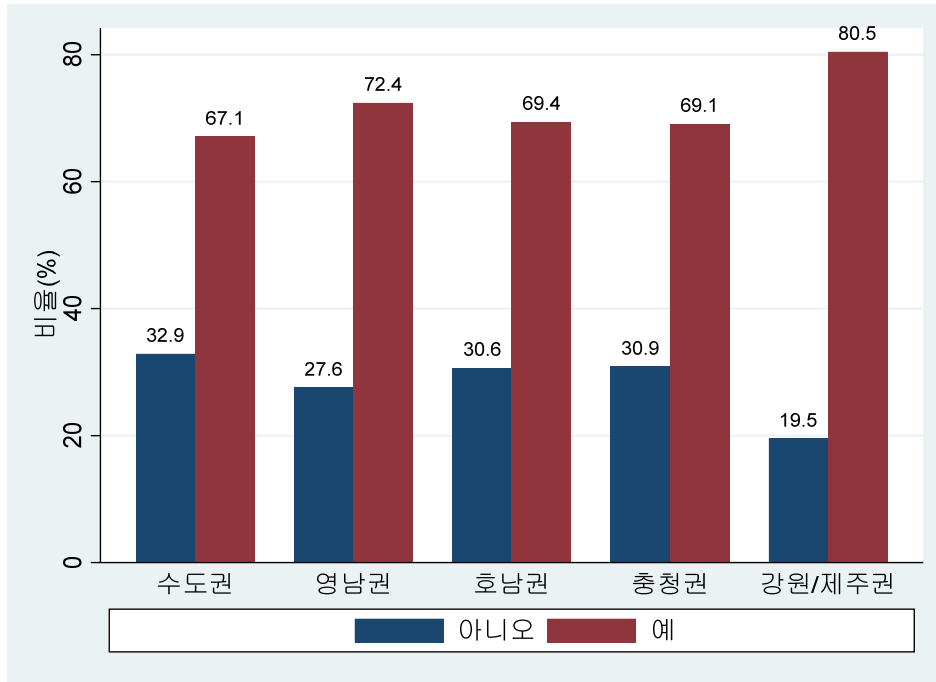
		성별		합 계
		남성	여성	
선거공보 필요성	아니오	168 (28.4%)	174 (30.63%)	342 (29.5%)
	예	423 (71.6%)	394 (69.4%)	817 (70.5%)
합 계		591 (100.0%)	568 (100.0%)	1,159 (100.0%)

2) 연령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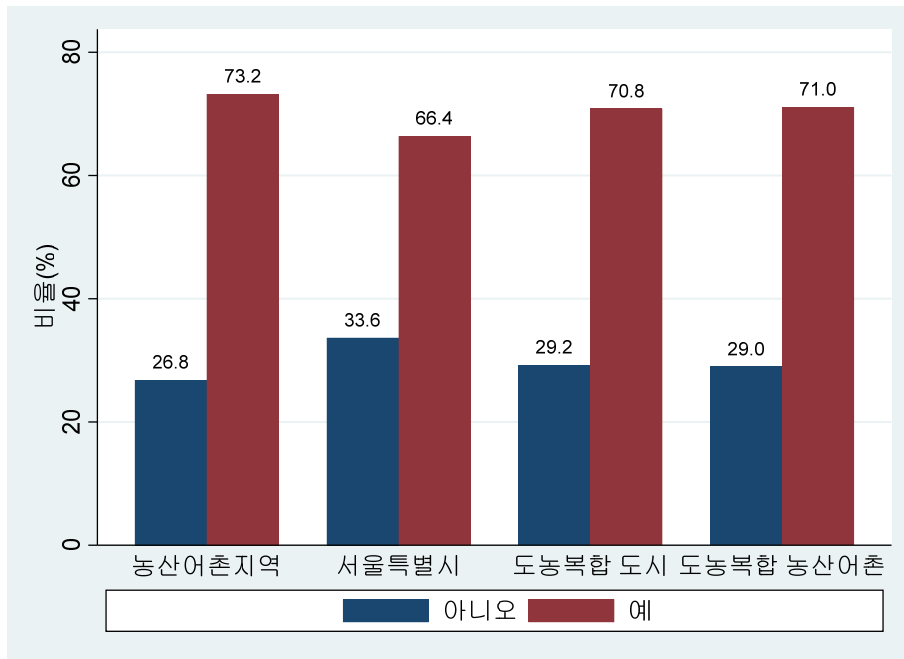
		연령대			합 계
		20-30대	40-50대	60세 이상	
선거공보 필요성	아니오	94 (27.3%)	105 (28.8%)	143 (31.9%)	342 (29.5%)
	예	251 (72.8%)	260 (71.2%)	306 (68.2%)	817 (70.5%)
합 계		345 (100.0%)	365 (100.0%)	449 (100.0%)	1,159 (100.0%)

3) 지역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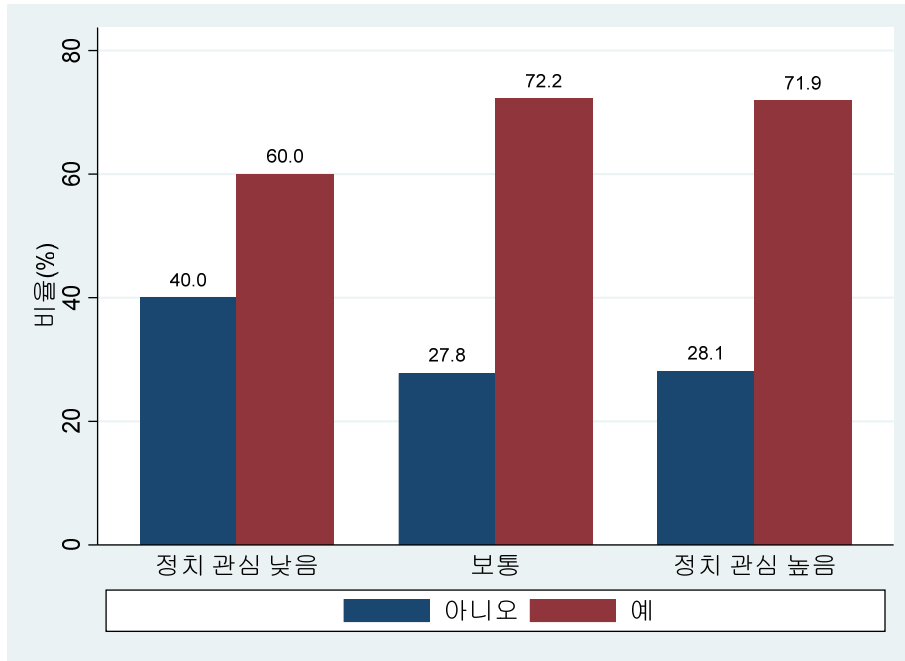
		지역별					합 계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충청권	강원/제주	
선거공보 필요성	아니오	141 (32.9%)	75 (27.6%)	49 (30.6%)	51 (30.9%)	26 (19.6%)	342 (29.5%)
	예	288 (67.1%)	197 (72.4%)	111 (69.4%)	114 (69.1%)	107 (80.5%)	817 (70.5%)
합 계		429 (100.0%)	272 (100.0%)	160 (100.0%)	165 (100.0%)	133 (100.0%)	1,159 (100.0%)

4) 지역특성별



		지역 특성별				합 계
		농산어촌 지역	서울특별시	도농복합 도시	도농복합 농산어촌	
선거공보 필요성	아니오	60 (26.8%)	72 (33.6%)	168 (29.2%)	42 (29.0%)	342 (29.5%)
	예	164 (73.2%)	142 (66.4%)	408 (70.8%)	103 (71.0%)	817 (70.5%)
합 계		224 (100.0%)	214 (100.0%)	576 (100.0%)	145 (100.0%)	1,159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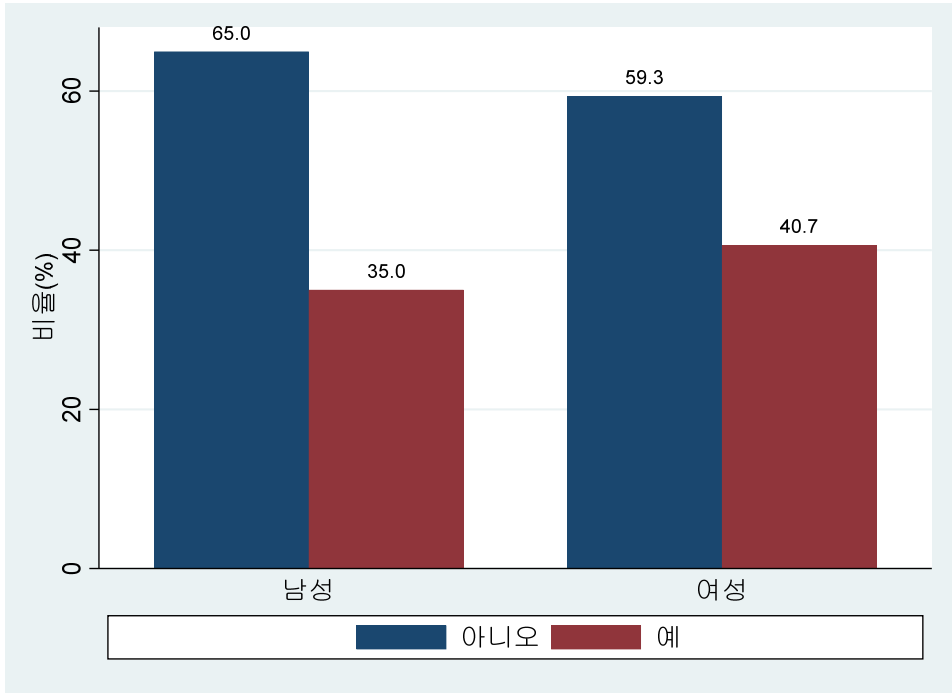
5) 정치 관심 수준별(낮음/보통/높음)



		정치 관심			합 계
		낮음	보통	높음	
선거공보 필요성	아니오	60 (40.0%)	143 (27.8%)	139 (28.1%)	342 (29.5%)
	예	90 (60.0%)	372 (72.2%)	355 (71.9%)	817 (70.5%)
합 계		150 (100.0%)	515 (100.0%)	494 (100.0%)	1,159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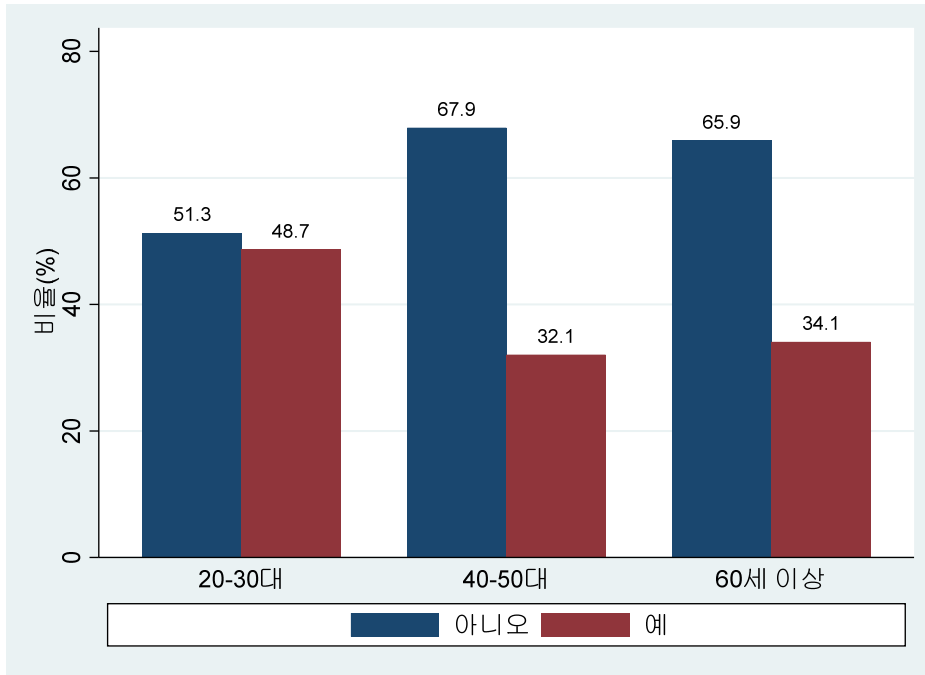
3 선거운동용 거리현수막

1)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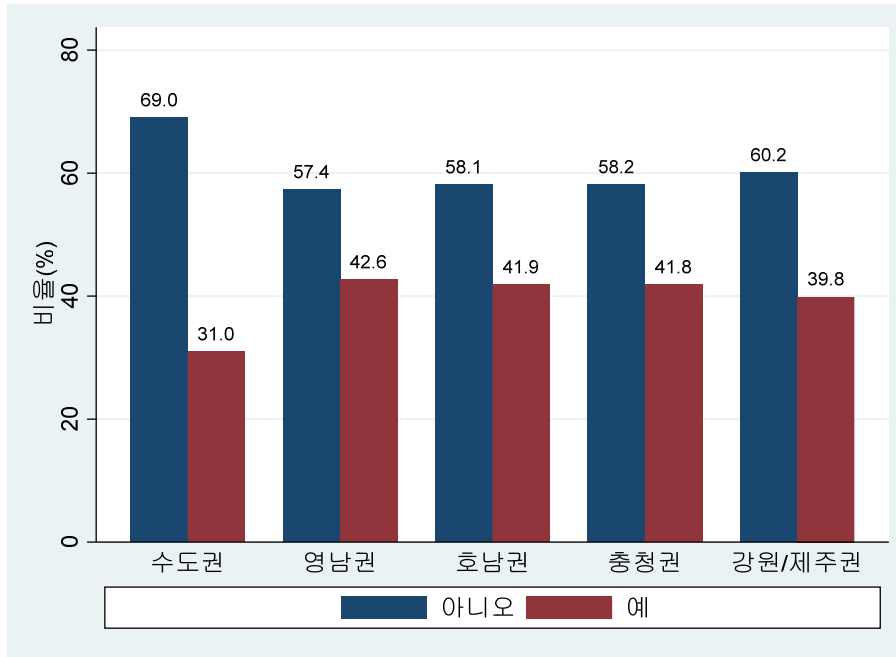
		성별		합 계
		남성	여성	
거리현수막 필요성	아니오	384 (65.0%)	337 (59.3%)	721 (62.2%)
	예	207 (35.0%)	231 (40.7%)	438 (37.8%)
합 계		591 (100.0%)	568.0 (100.0%)	1159.0 (100.0%)

2) 연령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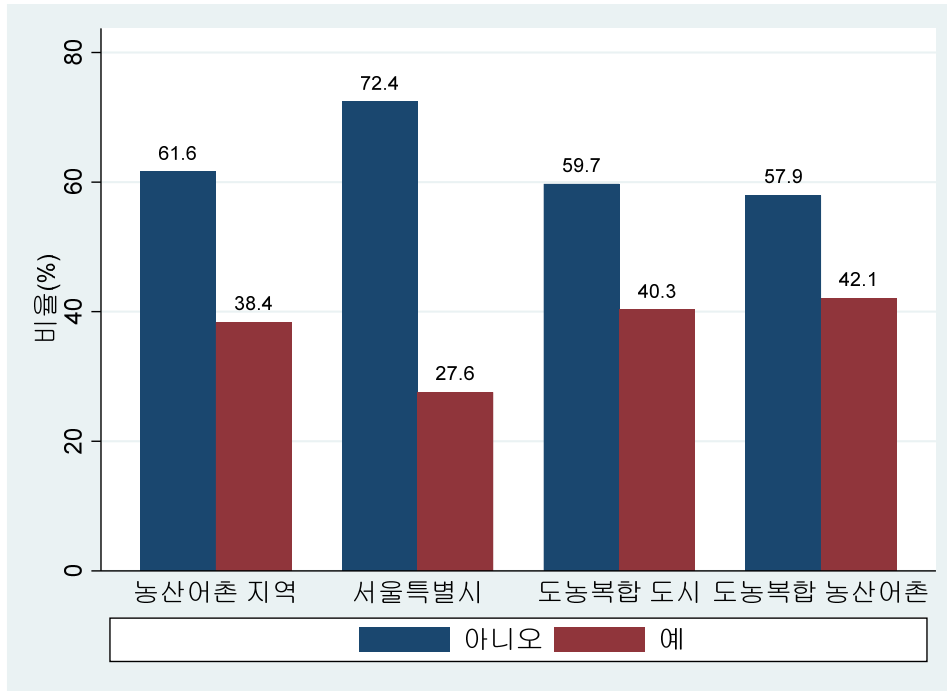
		연령대			합 계
		20-30대	40-50대	60세 이상	
거리현수막 필요성	아니오	177 (51.3%)	248 (68.0%)	296 (65.9%)	721 (62.2%)
	예	168 (48.7%)	117 (32.1%)	153 (34.1%)	438 (37.8%)
합 계		345 (100.0%)	365 (100.0%)	449 (100.0%)	1,159 (100.0%)

3) 지역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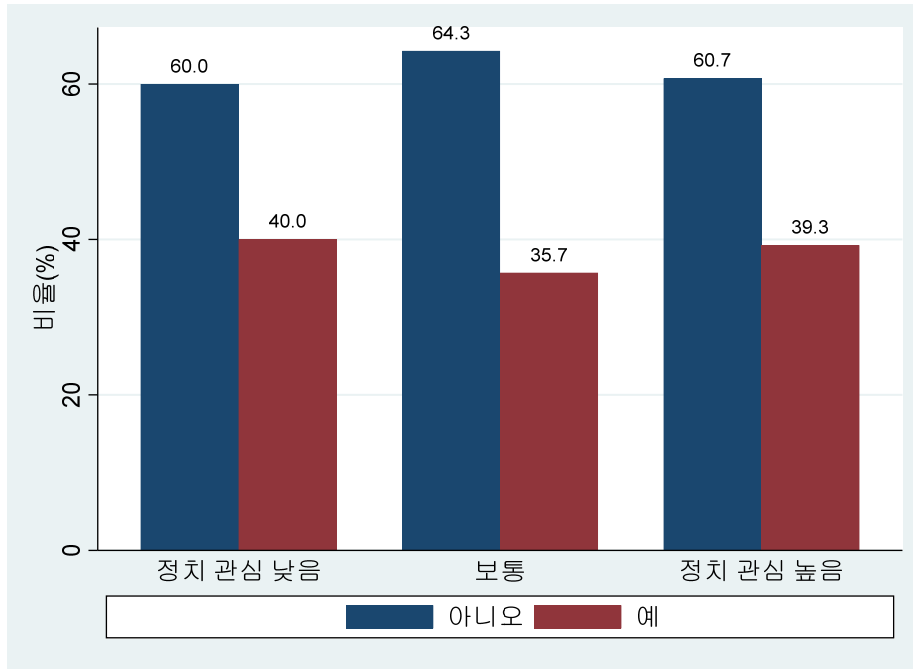
		지역별					합 계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충청권	강원/제주	
거리현수막 필요성	아니오	296.0 (69.0%)	156.0 (57.4%)	93 (58.1%)	96 (58.2%)	80 (60.2%)	721 (62.2%)
	예	133.0 (31.0%)	116.0 (42.7%)	67 (41.9%)	69 (41.8%)	53 (39.9%)	438 (37.8%)
합 계		429 (100.0%)	272 (100.0%)	160 (100.0%)	165 (100.0%)	133 (100.0%)	1,159 (100.0%)

4) 지역특성별



		지역 특성별				합 계
		농산어촌 지역	서울특별시	도농복합 도시	도농복합 농산어촌	
거리현수막 필요성	아니오	138 (61.6%)	155 (72.43)	344 (59.72)	84 (57.93)	721 (62.21)
	예	86 (38.4%)	59 (27.6%)	232 (40.3%)	61 (42.1%)	438 (37.8%)
합 계		224 (100.0%)	214 (100.0%)	576 (100.0%)	145 (100.0%)	1,159 (100.0%)

5) 정치 관심 수준별(낮음/보통/높음)



		정치 관심			합 계
		낮음	보통	높음	
거리현수막 필요성	아니오	90 (60.0%)	331 (64.3%)	300 (60.7%)	721 (62.2%)
	예	60 (40.0%)	184 (35.7%)	194 (39.3%)	438 (37.8%)
합 계		150 (100.0%)	515 (100.0%)	494 (100.0%)	1,159 (100.0%)

1. 현행 선거벽보 법정수량

□ 법령상 선거벽보 첩부 수량

○ 공직선거법 제64조(선거벽보)

- 공직선거법 제64조 제1항에서는 선거운동에 사용하는 선거벽보는 동에 있어서는 인구 500명에 1매, 읍에 있어서는 인구 250명에 1매, 면에 있어서는 인구 100명에 1매의 비율을 한도로 작성·첩부한다. 다만, 인구밀집상태 및 첩부장소 등을 감안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구 1천 명에 1매의 비율까지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벽보의 수량을 선거기간개시일 전 10일까지 공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수량을 가산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부록 표 3-1〉공직선거법 상 선거벽보 첩부비율

행정구역	첩부비율
동	인구 500명에 1매
읍	인구 250명에 1매
면	인구 100명에 1매

* 인구밀집상태 및 첩부장소 등을 감안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구 1천 명에 1매의 비율까지 조정

○ 공직선거법 제206조(선거벽보에 관한 특례)

- 공직선거법 제206조에서는 선거벽보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203조제1항에 따라 동시선거를 실시하는 때의 선거벽보의 매수는 2개의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때에는 제64조제1항에 따른 기준매수의 3분의 2, 3개 이상의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때에는 기준매수의 2분의 1에 각 상당하는 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지난 2022년 6월에 있었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시도지사, 교육감, 구사군의장, 사도의회의원, 구사군의원의 5개 선거가 동시에 실시되었기 때문에 제64조제1항에 따른 기준매수의 2분의 1에 각 상당하는 수가 선거벽보의 매수가 되며, 이것이 법정 첩부수량이 됨

○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9조(선거벽보)

-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9조(선거벽보) 제2항에서는 ‘구시·군위원회가 첩부하는 선거벽보는 읍면동을 단위로 읍, 동 및 2만 명 이상인 면은 인구 1천 명에 1매, 인구 5천 명 이상 2만 명 미만인 면은 50매에 인구 5천 명을 넘는 매 1천 명까지 마다 1매를 더한 매수, 인구 5천 명 미만인 면은 인구 100명에 1매의 비율을 한도로 동시에 같은 장소에 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산출한 매수가 5매 미만인 경우에는 5매로 함’을 규정하고 있음
-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9조(선거벽보) 제3항에서는 ‘법 제64조제3항에 따라 정당 또는 후보자가 제출할 선거벽보의 수량은 구·시·군위원회(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관할 선거구)별로 제2항에 따라 산출한 수량에 그 100분의 5에 상당하는 매수를 더한 수량으로 하며, 보완첩부용으로 보관할 수량은 제2항에 따라 산출한 수량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매수로 한다. 이 경우 법 및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할 수 있는 총수량의 단수가 10미만인 때에는 10매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부록 표 3-2〉공직선거관리규칙 상 선거벽보 첩부비율

행정구역	첩부비율
읍, 동 및 2만 명 이상인 면	인구 1천 명에 1매
인구 5천명 이상 2만명 미만인 면	50매에 인구 5천명을 넘는 매 1천명까지 마다 1매를 더한 매수
인구 5천명 미만인 면	인구 100명에 1매
*공직선거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가산수량은 위의 표내용과 같이 산출한 수량에 그 100분의 5에 상당하는 매수를 더한 수량으로 하며, 보완첩부용으로 보관할 수량은 제2항에 따라 산출한 수량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매수로 한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9조 제3항)	

출처: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9조

2. 서울시 법정수량과 첩부장소수 등 분석

1) 서울시 선거구별 첩부장소수 및 첩부수량 대비 18세 이상 인구수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첩부장소수와 첩부수량 대비 서울시 자치구별 18세 이상 인구(행정안전부 2022년 6월 주민등록 인구 통계 기준)³²⁾는 다음 표와 같음

- 강서구 외에는 법정 첩부수량과 첩부수량이 일치함
- 서울시는 법정첩부장소수 대비 18세 이상 인구수가 1,674명이며, 법정첩부수량 대비 18세 이상 인구수 709명임.³³⁾ 첩부장소수 대비 18세 이상 인구수는 1,678명이며, 첩부수량 대비 18세 이상 인구수는 728명임
- (법정)첩부장소수 대비 18세 이상 인구수는 1,517명~1,766명의 분포를 보이고 있음. 첩부장소수 대비 18세 이상 인구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중구이며, 가장 많은 지역은 관악구임
- (법정)첩부수량 대비 18세 이상 인구수는 388명~883명의 분포를 보이고 있음. 첩부수량 대비 18세 이상 인구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종로구이며, 가장 많은 지역은 관악구임

〈부록 표 3-3〉 서울시 선거구별 첩부장소 및 첩부수량 대비 18세 이상 인구수

선거구명	구사군명	후보자수	법정첩부장소수 대비 18세 이상 인구수	법정첩부수량 대비 18세 이상 인구수	첩부장소수 대비 18세 이상 인구수	첩부수량 대비 18세 이상 인구수
합계		60	1674	709	1678	728
종로구	종로구	4	1551	388	1551	388
중구	중구	2	1517	758	1517	758
용산구	용산구	3	1680	560	1680	560
성동구	성동구	2	1665	833	1782	833

32) 주민등록 인구통계/연령별 인구현황. <https://jumin.mois.go.kr/index.jsp#>(검색일: 2022.07.21.).

33) 공직선거법 제64조 제1항과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9조에 의한 선거벽보 첩부비율은 18세 이상 인구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인구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음. 서울시의 경우 18세 이상 인구수가 전체 인구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구마다 다르지만, 대략 80%에서 9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따라서 18세 이상 인구수가 아니라 전체 인구수 기준을 적용하여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규정하는 첩부비율과 비교하여 법정수량의 적정성을 가늠해볼 수 있음.

광진구	광진구	2	1702	851	1702	851
동대문구	동대문구	2	1694	847	1694	847
종랑구	종랑구	2	1702	851	1702	851
성북구	성북구	2	1671	836	1671	836
강북구	강북구	3	1729	576	1729	576
도봉구	도봉구	3	1699	566	1699	566
노원구	노원구	2	1661	830	1661	830
은평구	은평구	2	1706	853	1706	853
서대문구	서대문구	2	1702	851	1702	851
마포구	마포구	3	1683	561	1683	561
양천구	양천구	4	1642	410	1642	410
강서구	강서구	3	1683	561	1683	842
구로구	구로구	2	1694	847	1694	847
금천구	금천구	2	1738	869	1738	869
영등포구	영등포구	2	1692	846	1692	846
동작구	동작구	2	1691	845	1691	845
관악구	관악구	2	1766	883	1766	883
서초구	서초구	2	1590	795	1590	795
강남구	강남구	2	1624	812	1624	812
송파구	송파구	2	1636	818	1636	818
강동구	강동구	3	1659	553	1659	553

2) 서울시 선거구별 인구 1천명 1매 기준 첩부수량과 법정 첩부수량

○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9조(선거벽보) 제2항을 기준으로 인구 1천명 1매 기준 첩부수량 계산

-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9조(선거벽보) 제2항에서는 구시군위원회가 첩부하는 선거벽보는 읍면동을 단위로 읍, 동 및 2만 명 이상인 면은 인구 1천 명에 1매의 비율을 한도로 동시에 같은 장소에 첩부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서울시 구별 첩부수량에 대하여 인구 1천명에 1매의 비율로 첩부수량을 계산하고 과다첩부수량(법정첩부수량-인구 1천명 1매 기준 첩부수량)을 계산하여 과다첩부수량이 100을 초과하는 구를 제시하면 다음 표와 같음

〈부록 표 3-4〉 서울시 선거구별 법정 첩부수량과 인구 1천명 1매 기준 첩부수량

선거구 명	법정		첩부장소수	첩부수량	총 인구수	인구 1천명에 1매 기준 첩부수량	법정첩부수량 -인구 1천명에 1매 기준 첩부수량
	첩부장소 수	첩부수 량					
합계	5,004	11,812	4,994	11,512	9,494,807	9,495	2,317
종로구	84	336	84	336	143,624	144	192
중구	74	148	74	148	122,088	122	26
용산구	119	357	119	357	222,263	222	135
성동구	152	304	142	304	283,821	284	20
광진구	179	358	179	358	339,893	340	18
동대문 구	178	356	178	356	337,330	337	19
중랑구	204	408	204	408	388,509	389	19
성북구	225	450	225	450	433,559	434	16
강북구	156	468	156	468	296,653	297	171
도봉구	166	498	166	498	314,791	315	183
노원구	266	532	266	532	508,066	508	24
은평구	245	490	245	490	473,674	474	16
서대문 구	159	318	159	318	305,623	306	12
마포구	193	579	193	579	367,584	368	211
양천구	231	924	231	924	444,548	445	479
강서구	300	900	300	600	573,045	573	327
구로구	209	418	209	418	394,850	395	23
금천구	122	244	122	244	231,565	232	12
영등포 구	201	402	201	402	376,437	376	26
동작구	203	406	203	406	385,898	386	20
관악구	254	508	254	508	486,946	487	21
서초구	217	434	217	434	407,672	408	26
강남구	278	556	278	556	531,777	532	24
송파구	349	698	349	698	662,961	663	35
강동구	240	720	240	720	461,630	462	258

3) 서울시 선거구별 첩부장소수 대비 면적(m²) 고려 첩부장소수 분석

- 유권자가 선거벽보를 접할 확률은 첩부장소수 대비 해당 선거구의 면적과 관련이 있으므로 다음에서는 이를 분석함

〈부록 표 3-5〉 서울시 선거구별 첩부장소수 대비 면적(m²)

선거구별	법정		첩부장소수	첩부수량	면적 (km ²)	면적(m ²)/첩부 장소수
	첩부장소수	첩부수량				
소계	5,004	11,812	4,994	11,512	605.24	121
종로구	84	336	84	336	23.91	285
중구	74	148	74	148	9.96	135
용산구	119	357	119	357	21.87	184
성동구	152	304	142	304	16.86	119
광진구	179	358	179	358	17.06	95
동대문구	178	356	178	356	14.22	80
중랑구	204	408	204	408	18.50	91
성북구	225	450	225	450	24.58	109
강북구	156	468	156	468	23.60	151
도봉구	166	498	166	498	20.65	124
노원구	266	532	266	532	35.44	133
은평구	245	490	245	490	29.71	121
서대문구	159	318	159	318	17.63	111
마포구	193	579	193	579	23.85	124
양천구	231	924	231	924	17.41	75
강서구	300	900	300	600	41.45	138
구로구	209	418	209	418	20.12	96
금천구	122	244	122	244	13.02	107
영등포구	201	402	201	402	24.55	122
동작구	203	406	203	406	16.36	81
관악구	254	508	254	508	29.57	116
서초구	217	434	217	434	46.98	216
강남구	278	556	278	556	39.50	142
송파구	349	698	349	698	33.88	97
강동구	240	720	240	720	24.59	102

3. 부산시

1) 부산시 선거구별 첩부장소수 및 첩부수량 대비 18세 이상 인구수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첩부장소수와 첩부수량 대비 부산시 자치구별 18세 이상 인구(행정안전부 2022년 6월 주민등록 인구 통계 기준)³⁴⁾ 는 다음 표와 같음
 - 북구, 강서구 외에는 법정 첩부수량과 첩부수량이 일치함
 - 부산시는 법정첩부장소수 대비 18세 이상 인구수가 1,590명이며, 법정첩부수량 대비 18세 이상 인구수 639명임. 첩부장소수 대비 18세 이상 인구수는 1,590명이며, 첩부수량 대비 18세 이상 인구수는 673명임
 - (법정)첩부장소수 대비 18세 이상 인구수는 1,194명~1,701명의 분포를 보이고 있음. 첩부장소수 대비 18세 이상 인구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금정구이며, 가장 많은 지역은 기장구임
 - (법정)첩부수량 대비 18세 이상 인구수는 255명~846명의 분포를 보이고 있음. 첩부수량 대비 18세 이상 인구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중구이며, 가장 많은 지역은 강서구임

(부록 표 3-6) 부산시 선거구별 첩부장소 및 첩부수량 대비 18세 이상 인구수

선거구명	구·시·군 명	후보자수	법정첩부장소수 대비 18세 이상 인구수	법정첩부수량 대비 18세 이상 인구수	첩부장소수 대비 18세 이상 인구수	첩부수량 대비 18세 이상 인구수
합계		41	1590	639	1590	673
중구	중구	3	1194	398	1194	398
서구	서구	3	1630	543	1630	543
동구	동구	2	1641	820	1641	820
영도구	영도구	2	1620	810	1620	810
부산진구	부산진구	2	1692	846	1692	846
동래구	동래구	3	1623	541	1623	541

34) 주민등록 인구통계/연령별 인구현황. [https://jumin.mois.go.kr/index.jsp#\(검색일: 2022.07.21.\)](https://jumin.mois.go.kr/index.jsp#(검색일: 2022.07.21.)).

남구	남구	2	1617	809	1617	809
북구	북구	3	1673	558	1673	836
해운대구	해운대구	2	1638	819	1638	819
기장군	기장군	5	1276	255	1276	255
사하구	사하구	2	1671	835	1671	835
금정구	금정구	2	1636	818	1636	818
강서구	강서구	3	1438	479	1438	719
연제구	연제구	2	1626	813	1626	813
수영구	수영구	3	1701	567	1701	567
사상구	사상구	2	1677	839	1677	839

2) 부산시 선거구별 인구 1천 1매 기준 첩부수량과 법정 첩부수량

○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9조(선거벽보) 제2항을 기준 첩부수량 계산

〈부록 표 3-7〉 부산시 선거구별 법정 첩부수량과 공직선거관리규칙 기준 첩부수량

선거구명	법정		첩 부 장소수	첩부 수량	총 인구수 ³⁵⁾	공직선거 관리규칙 기준 첩부수량	법정첩부수 량-공직선 거관리규칙 기준 첩부수량
	첩부장소수	첩부수량					
합계	1,815	4,518	1,815	4,292	3,348,874	3,398	1,120
중구	32	96	32	96	40,537	41	55
서구	58	174	58	174	104,863	107	67
동구	49	98	49	98	87,906	88	10
영도구	62	124	62	124	110,425	111	13
부산진구	186	372	186	372	352,462	352	20
동래구	141	423	141	423	270,338	270	153
남구	141	282	141	282	261,209	261	21
북구	148	444	148	296	282,535	283	161
해운대구	208	416	208	416	395,788	396	20
기장군	113	565	113	565	176,935	223	342

사하구	161	322	161	322	305,922	306	16
금정구	124	248	124	248	226,875	227	21
강서구	78	234	78	156	143,098	143	91
연제구	111	222	111	222	207,342	207	15
수영구	92	276	92	276	174,867	175	101
사상구	111	222	111	222	207,772	208	14

3) 선거구별 첩부장소수 대비 면적(m²) 고려 첩부장소수

- 유권자가 선거벽보를 접할 확률은 첩부장소수 대비 해당 선거구의 면적과 관련이 있으므로 다음에서는 이를 분석함

〈부록 표 3-8〉 부산시 선거구별 첩부장소수 대비 면적(m²)

선거구별	법정		첩부장소수	첩부수량	면적 (km ²)	면적(m ²)/첩부장소수
	첩부장소수	첩부수량				
합계	1,815	4,518	1,815	4,292	770.17	424
중구	32	96	32	96	2.83	88
서구	58	174	58	174	13.95	241
동구	49	98	49	98	9.87	201
영도구	62	124	62	124	14.20	229
부산진구	186	372	186	372	29.67	160
동래구	141	423	141	423	16.63	118
남구	141	282	141	282	26.82	190
북구	148	444	148	296	39.37	266
해운대구	208	416	208	416	51.54	248
기장군	113	565	113	565	218.32	1,932
사하구	161	322	161	322	41.77	259
금정구	124	248	124	248	65.28	526
강서구	78	234	78	156	181.50	2,327
연제구	111	222	111	222	12.10	109
수영구	92	276	92	276	10.22	111
사상구	111	222	111	222	36.10	325

35) 2022년 1월 31일 기준.

4. 대구시

1) 대구시 선거구별 첩부장소수 및 첩부수량 대비 18세 이상 인구수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첩부장소수와 첩부수량 대비 대구시 자치구별 18세 이상 인구(행정안전부 2022년 6월 주민등록 인구 통계 기준)³⁶⁾ 는 다음 표와 같음

- 달성군 외에는 법정 첩부수량과 첩부수량이 일치함
- 대구시는 법정첩부장소수 대비 18세 이상 인구수가 1,515명이며, 법정첩부수량 대비 18세 이상 인구수 633명임. 첩부장소수 대비 18세 이상 인구수는 1,515명이며, 첩부수량 대비 18세 이상 인구수는 690명임
- (법정)첩부장소수 대비 18세 이상 인구수는 1093명~1649명의 분포를 보이고 있음. 첩부장소수 대비 18세 이상 인구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달성군이며, 가장 많은 지역은 남구임
- (법정)첩부수량 대비 20세 이상 인구수는 273~824명의 분포를 보이고 있음. 첩부수량 대비 18세 이상 인구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달성군이며, 가장 많은 지역은 남구임

〈부록 표 3-9〉 대구시 선거구별 첩부장소 및 첩부수량 대비 18세 이상 인구수

선거구명	구사군명	후보자수	법정첩부장소수 대비 18세 이상 인구수	법정첩부수량 대비 18세 이상 인구수	첩부장소수 대비 18세 이상 인구수	첩부수량 대비 18세 이상 인구수
합계		14	1515	633	1515	690
동구	동구	2	1641	821	1641	821
서구	서구	2	1616	808	1616	808
남구	남구	2	1649	824	1649	824
북구	북구	2	1615	807	1615	807
수성구	수성구	2	1591	795	1591	795
달성군	달성군	4	1093	273	1093	364

36) 주민등록 인구통계/연령별 인구현황. [https://jumin.mois.go.kr/index.jsp#\(검색일: 2022.07.21.\)](https://jumin.mois.go.kr/index.jsp#(검색일: 2022.07.21.)).

2) 대구시 선거구별 공직선거관리규칙 기준 첩부수량과 법정 첩부수량

○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9조(선거벽보) 제2항을 기준으로 첩부수량 계산

- 대구시 구별 첩부수량에 대하여 공직선거관리규칙 기준 첩부수량을 계산하고 과다첩부수량(법정첩부수량-공직선거관리규칙 기준 첩부수량)을 계산하여 과다첩부수량이 100을 초과하는 구를 진하게 표시하여 제시하면 다음 표와 같음

〈부록 표 3-10〉 대구시 선거구별 법정 첩부수량과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9조에 의한 첩부수량

선거구명	법정		첩부장소수	첩부수량	총 인구수 ³⁷⁾	공직선거관리규칙 기준 첩부수량	법정첩부수량 - 공직선거관리규칙 기준 첩부수량
	첩부장소수	첩부수량					
합계	1,000	2,392	1,000	2,196	1,764,706	1,888	504
동구	181	362	181	362	341,710	342	20
서구	93	186	93	186	164,127	164	22
남구	79	158	79	158	142,753	143	15
북구	231	462	231	462	437,023	437	25
수성구	220	440	220	440	416,706	417	23
달성군	196	784	196	588	262,387	385	399

37) 2022년 1월 31일 기준.

3) 선거구별 첩부장소수 대비 면적(m²) 분석

- 유권자가 선거벽보를 접할 확률은 첩부장소수 대비 해당 선거구의 면적과 관련이 있으므로 다음에서는 이를 분석함

〈부록 표 3-11〉 대구시 선거구별 첩부장소수 대비 면적(m²)

선거구별	법정		첩부장소수	첩부수량	면적 (km ²)	면적(m ²)/ 첩부장소수
	첩부장소수	첩부수량				
합계	1,000	2,392	1,000	2,196	883.7	884
동구	181	362	181	362	182.14	1,006
서구	93	186	93	186	17.33	186
남구	79	158	79	158	17.43	221
북구	231	462	231	462	93.99	407
수성구	220	440	220	440	76.54	348
달성군	196	784	196	588	426.68	2,177

5. 인천광역시

1) 인천광역시 선거구별 첩부장소 및 첩부수량 대비 18세 이상 인구수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첩부장소수와 첩부수량 대비 인천광역시 자치구별 18세 이상 인구(행정안전부 2022년 6월 주민등록 인구 통계 기준)³⁸⁾ 는 다음 표와 같음

- 서구 외에는 법정 첩부수량과 첩부수량이 일치함
- 인천광역시는 법정첩부장소수 대비 18세 이상 인구수가 1,377명이며, 법정첩부수량 대비 18세 이상 인구수 618명임. 첩부장소수 대비 18세 이상 인구수는 1,377명이며, 첩부수량 대비 18세 이상 인구수는 618명임
- (법정)첩부장소수 대비 18세 이상 인구수는 190~1,706명의 분포를 보이고 있음. 첩부장소수 대비 18세 이상 인구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옹진군이며, 가장 많은 지역은 계양구임
- (법정)첩부수량 대비 18세 이상 인구수는 91~836명의 분포를 보이고 있음. 첩부수량 대비 18세 이상 인구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강화군이며, 가장 많은 지역은 부평구임

〈부록 표 3-12〉 인천광역시 선거구별 첩부장소 및 첩부수량 대비 18세 이상 인구수

선거구명	구·시·군명	후보자수	법정첩부장소수 대비 18세 이상 인구수	법정첩부수량 대비 18세 이상 인구수	첩부장소수 대비 18세 이상 인구수	첩부수량 대비 18세 이상 인구수
합계		24	1377	576	1377	618
중구	중구	2	1528	764	1528	764
동구	동구	3	1324	441	1324	441
미추홀구	미추홀구	2	1662	831	1662	831
연수구	연수구	2	1563	782	1563	782
남동구	남동구	2	1647	823	1647	823
부평구	부평구	2	1672	836	1672	836

38) 주민등록 인구통계/연령별 인구현황. <https://jumin.mois.go.kr/index.jsp#>(검색일: 2022.07.21.).

계양구	계양구	3	1706	569	1706	569
서구	서구	3	1592	531	1592	796
강화군	강화군	3	274	91	274	91
옹진군	옹진군	2	190	95	190	95

2) 인천시 선거구별 공직선거관리규칙 기준 첩부수량과 법정 첩부수량

○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9조(선거벽보) 제2항을 기준으로 첩부수량 계산

- 인천시 구별 첩부수량에 대하여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라 첩부수량을 계산하고 과다첩부수량(법정첩부수량-공직선거관리규칙 첩부수량)을 계산하여 과다첩부수량이 100을 초과하는 구를 진하게 표시하여 제시하면 다음 표와 같음

〈부록 표 3-13〉 인천시 선거구별 법정 첩부수량과 인구 1천명 1매 기준 첩부수량

선거구명	법정		첩 부 장소수	첩부 수량	총 인구수 ³⁹⁾	공직선거관 리규칙 기준 첩부수량	법정첩부수량 -공직선거관 리규칙 기준 첩부수량
	첩부장소수	첩부수량					
합계	1,840	4,398	1,840	4,103	2,928,805	3,304	1,094
중구	80	160	80	160	144,088	144	16
동구	41	123	41	123	61,222	61	62
미추홀구	216	432	216	432	407,353	407	25
연수구	203	406	203	406	389,263	389	17
남동구	269	538	269	538	517,894	518	20
부평구	256	512	256	512	486,445	486	26
계양구	152	456	152	456	295,450	295	161
서구	295	885	295	590	557,342	557	328
강화군	230	690	230	690	69,748	447	243
옹진군	98	196	98	196	20,345	190	6

39) 2022년 1월 31일 기준.

3) 선거구별 첩부장소수 대비 면적(m²) 고려 첩부장소수

- 유권자가 선거벽보를 접할 확률은 첩부장소수 대비 해당 선거구의 면적과 관련이 있으므로 다음에서는 이를 분석함

〈부록 표 3-14〉 인천시 선거구별 첩부장소수 대비 면적(m²)

선거구별	법정		첩부장소수	첩부수량	면적 (km ²)	면적(m ²)/ 첩부장소수
	첩부장소수	첩부수량				
소계	1,840	4,398	1,840	4,103	1063.26	578
중구	80	160	80	160	140.29	1,754
동구	41	123	41	123	7.19	175
미추홀구	216	432	216	432	24.83	115
연수구	203	406	203	406	54.95	271
남동구	269	538	269	538	57.02	212
부평구	256	512	256	512	32.01	125
계양구	152	456	152	456	45.57	300
서구	295	885	295	590	117.09	397
강화군	230	690	230	690	411.43	1,789
옹진군	98	196	98	196	172.5	1,760

6. 광주광역시

1) 광주광역시 선거구별 첩부장소수 및 첩부수량 대비 18세 이상 인구수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첩부장소수와 첩부수량 대비 광주광역시 자치구별 18세 이상 인구(행정안전부 2022년 6월 주민등록 인구 통계 기준)⁴⁰⁾ 는 다음 표와 같음

- 모든 구에서 법정 첩부수량과 첩부수량이 일치함
- 광주광역시는 법정첩부장소수 대비 18세 이상 인구수가 1,565명이며, 법정첩부수량 대비 18세 이상 인구수 783명임. 첩부장소수 대비 18세 이상 인구수는 1,565명이며, 첩부수량 대비 18세 이상 인구수는 783명임
- (법정)첩부장소수 대비 18세 이상 인구수는 1,513~1,587명의 분포를 보이고 있음. 첩부장소수 대비 18세 이상 인구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동구이며, 가장 많은 지역은 북구임
- (법정)첩부수량 대비 18세 이상 인구수는 756~793명의 분포를 보이고 있음. 첩부수량 대비 18세 이상 인구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동구이며, 가장 많은 지역은 북구임

〈표 3-15〉 광주광역시 선거구별 첩부장소 및 첩부수량 대비 18세 이상 인구수

선거구명	구·시·군명	후보자수	법정첩부장소수 대비 18세 이상 인구수	법정첩부수량 대비 18세 이상 인구수	첩부장소수 대비 18세 이상 인구수	첩부수량 대비 18세 이상 인구수
합계		8	1565	783	1565	783
동구	동구	2	1513	756	1513	756
서구	서구	2	1580	790	1580	790
남구	남구	2	1530	765	1530	765
북구	북구	2	1587	793	1587	793

40) 주민등록 인구통계/연령별 인구현황. [https://jumin.mois.go.kr/index.jsp#\(검색일: 2022.07.21.\)](https://jumin.mois.go.kr/index.jsp#(검색일: 2022.07.21.)).

2) 광주시 선거구별 인구 1천 1매 기준 첩부수량과 법정 첩부수량

○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9조(선거벽보) 제2항을 기준으로 인구 1천명 1매 기준 첩부수량 계산

- 광주시 구별 첩부수량에 대하여 인구 1천명에 1매의 비율로 첩부수량을 계산하고 과다첩부수량(법정첩부수량-인구 1천명 1매 기준 첩부수량)을 계산하면 과다첩부수량이 100을 초과하는 구는 없는 것을 알 수 있음

〈부록 표 3-16〉 광주시 선거구별 법정 첩부수량과 인구 1천명 1매 기준 첩부수량

선거구명	법정		첩 부 장소수	첩 부 수 량	총 인구수 ⁴¹⁾	인구 1천명에 1매 기준 첩부수량	법정첩부수량- 인구 1천명에 1매 기준 첩부수량
	첩 부 장소수	첩 부 수 량					
합계	564	1,128	564	1,128	1,037,317	1,037	91
동구	60	120	60	120	103,466	103	17
서구	157	314	157	314	291,235	291	23
남구	118	236	118	236	215,739	216	20
북구	229	458	229	458	426,877	427	31

41) 2022년 1월 31일 기준.

3) 선거구별 첩부장소수 대비 면적(m²) 고려 첩부장소수 분석

- 유권자가 선거벽보를 접할 확률은 첩부장소수 대비 해당 선거구의 면적과 관련이 있으므로 다음에서는 이를 분석함

〈부록 표 3-17〉 광주시 선거구별 첩부장소수 대비 면적(m²)

선거구별	법정		첩부장소수	첩부수량	면적 (km ²)	면적(m ²)/ 첩부장소수
	첩부장소수	첩부수량				
합계	564	1,128	564	1,128	501.13	889
동구	60	120	60	120	49.31	822
서구	157	314	157	314	47.76	304
남구	118	236	118	236	60.99	517
북구	229	458	229	458	120.27	525

7. 대전광역시

1) 대전시 선거구별 첩부장소 및 첩부수량 대비 18세 이상 인구수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첩부장소수와 첩부수량 대비 대전광역시 자치구별 18세 이상 인구(행정안전부 2022년 6월 주민등록 인구 통계 기준)⁴²⁾ 는 다음 표와 같음
 - 모든 구에서 법정 첩부수량과 첩부수량이 일치함
 - 대전광역시는 법정첩부장소수 대비 18세 이상 인구수가 1,603명이며, 법정첩부수량 대비 18세 이상 인구수는 801명임. 첩부장소수 대비 18세 이상 인구수는 1,603명이며, 첩부수량 대비 18세 이상 인구수는 801명임
 - (법정)첩부장소수 대비 18세 이상 인구수는 1,575~1,630명의 분포를 보이고 있음. 첩부장소수 대비 18세 이상 인구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유성구이며, 가장 많은 지역은 중구임
 - (법정)첩부수량 대비 18세 이상 인구수는 788~815명의 분포를 보이고 있음. 첩부수량 대비 18세 이상 인구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유성구이며, 가장 많은 지역은 중구임

42) 주민등록 인구통계/연령별 인구현황. [https://jumin.mois.go.kr/index.jsp#\(검색일: 2022.07.21.\)](https://jumin.mois.go.kr/index.jsp#(검색일: 2022.07.21.)).

〈부록 표 3-18〉 대전광역시 선거구별 첩부장소 및 첩부수량 대비 18세 이상 인구수

선거구명	구사군명	후보자수	법정첩부장소수 대비 18세 이상 인구수	법정첩부수량 대비 18세 이상 인구수	첩부장소수 대비 18세 이상 인구수	첩부수량 대비 18세 이상 인구수
합계		10	1603	801	1603	801
동구	동구	2	1583	792	1583	792
중구	중구	2	1630	815	1630	815
서구	서구	2	1612	806	1612	806
유성구	유성구	2	1575	788	1575	788
대덕구	대덕구	2	1623	812	1623	812

2) 대전시 선거구별 인구 1천 1매 기준 첩부수량과 법정 첩부수량

-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9조(선거벽보) 제2항을 기준으로 인구 1천명 1매 기준 첩부수량 계산

〈부록 표 3-19〉 대전시 선거구별 법정 첩부수량과 인구 1천명 1매 기준 첩부수량

선거구명	법정		첩부장소수	첩부수량	총 인구수	인구 1천명에 1매 기준 첩부수량	법정첩부수량-인구 1천명에 1매 기준 첩부수량
	첩부장소수	첩부수량					
합계	770	1,540	770	1,540	1,451,272	1,451	89
동구	122	244	122	244	221,592	222	22
중구	123	246	123	246	229,555	230	16
서구	248	496	248	496	473,019	473	23
유성구	183	366	183	366	351,622	352	14
대덕구	94	188	94	188	175,484	175	13

3) 선거구별 첩부장소수 대비 면적(m²) 고려 첩부장소수 분석

- 유권자가 선거벽보를 접할 확률은 첩부장소수 대비 해당 선거구의 면적과 관련이 있으므로 다음에서는 이를 분석함

〈부록 표 3-20〉 대전시 선거구별 첩부장소수 대비 면적(m²)

선거구별	법정		첩부장소수	첩부수량	면적 (km ²)	면적(m ²)/ 첩부장소수
	첩부장소수	첩부수량				
합계	770	1,540	770	1,540	539.6	701
동구	122	244	122	244	136.7	1,120
중구	123	246	123	246	62.2	506
서구	248	496	248	496	95.5	385
유성구	183	366	183	366	176.5	964
대덕구	94	188	94	188	68.7	731

8. 울산광역시

1) 울산시 선거구별 첩부장소수 및 첩부수량 대비 18세 이상 인구수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첩부장소수와 첩부수량 대비 울산광역시 자치구별 18세 이상 인구(행정안전부 2022년 6월 주민등록 인구 통계 기준)⁴³⁾ 는 다음 표와 같음

- 중구 외에는 법정 첩부수량과 첩부수량이 일치함
- 울산광역시는 법정첩부장소수 대비 18세 이상 인구수가 1,346명이며, 법정첩부수량 대비 18세 이상 인구수 551명임. 첩부장소수 대비 18세 이상 인구수는 1,346명이며, 첩부수량 대비 18세 이상 인구수는 591명임
- (법정)첩부장소수 대비 18세 이상 인구수는 835~1,630명의 분포를 보이고 있음. 첩부장소수 대비 18세 이상 인구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울주군이며, 가장 많은 지역은 남구임

43) 주민등록 인구통계/연령별 인구현황. <https://jumin.mois.go.kr/index.jsp#>(검색일: 2022.07.21.).

- 첩부수량 대비 18세 이상 인구수는 418~815명의 분포를 보이고 있음. 첩부수량 대비 18세 이상 인구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울주군이며, 가장 많은 지역은 남구임

〈부록 표 3-21〉 울산광역시 선거구별 첩부장소 및 첩부수량 대비 18세 이상 인구수

선거구명	구·시·군 명	후보자수	법정첩부장 소수 대비 18세 이상 인구수	법정첩부수 량 대비 18세 이상 인구수	첩부장소수 대비 18세 이상 인구수	첩부수량 대비 18세 이상 인구수
합계		13	1346	551	1346	591
중구	중구	3	1586	529	1586	793
남구	남구	2	1630	815	1630	815
동구	동구	3	1560	520	1560	520
북구	북구	3	1552	517	1552	517
울주군	울주군	2	835	418	835	418

2) 울산시 선거구별 공직선거관리규칙 기준 첩부수량과 법정 첩부수량

○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9조(선거벽보) 제2항을 기준으로 첩부수량 계산

〈부록 표 3-22〉 울산시 선거구별 법정 첩부수량과 공직선거관리규칙 기준 첩부수량

선거구명	법정		첩부장소수	첩부수량	총 인구수 ⁴⁴⁾	공직선거관리규칙 기준 첩부수량	법정첩부수량 - 공직선거관리규칙 기준 첩부수량
	첩부장소수	첩부수량					
합계	701	1,712	701	1,597	1,121,100	1,339	373
중구	115	345	115	230	212,502	213	132
남구	165	330	165	330	313,427	313	17
동구	82	246	82	246	153,975	154	92
북구	113	339	113	339	219,121	219	120
울주군	226	452	226	452	222,075	440	12

3) 선거구별 첩부장소수 대비 면적(m²) 고려 첩부장소수

○ 유권자가 선거벽보를 접할 확률은 첩부장소수 대비 해당 선거구의 면적과 관련이 있으므로 다음에서는 이를 분석함

〈부록 표 3-23〉 울산시 선거구별 첩부장소수 대비 면적(m²)

선거구별	법정		첩부장소수	첩부수량	면적 (km ²)	면적(m ²)/ 첩부장소수
	첩부장소수	첩부수량				
합계	701	1,712	701	1,597	1,062.08	1,515
중구	115	345	115	230	37.01	322
남구	165	330	165	330	73.51	446
동구	82	246	82	246	36.07	440
북구	113	339	113	339	157.35	1,392
울주군	226	452	226	452	758.14	3,355

44) 2022년 1월 31일 기준.

9. 세종특별자치시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첩부장소수와 첩부수량 대비 세종특별자치시 자치구별 18세 이상 인구(행정안전부 2022년 6월 주민등록 인구 통계 기준)⁴⁵⁾는 다음 표와 같음
- 세종특별자치시는 법정첩부장소수 대비 18세 이상 인구수가 779명이며, 법정첩부수량 대비 18세 이상 인구수 390명임. 첩부장소수 대비 18세 이상 인구수는 783명이며, 첩부수량 대비 18세 이상 인구수는 392명임

〈부록 표 3-24〉 세종특별자치시 선거구별 첩부장소 및 첩부수량 대비 18세 이상 인구수

선거구명	구사군명	후보자수	법정첩부장소수 대비 18세 이상 인구수	법정첩부수량 대비 18세 이상 인구수	첩부장소수 대비 18세 이상 인구수	첩부수량 대비 18세 이상 인구수
합계		2	779	390	783	392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2	779	390	783	392

45) 주민등록 인구통계/연령별 인구현황. [https://jumin.mois.go.kr/index.jsp#\(검색일: 2022.07.21.\)](https://jumin.mois.go.kr/index.jsp#(검색일: 2022.07.21.)).

2) 세종시 선거구별 인구 1천 1매 기준 첩부수량과 법정 첩부수량

○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9조(선거벽보) 제2항을 기준 첩부수량 계산

〈부록 표 3-25〉 세종시 선거구별 법정 첩부수량과 인구 1천명 1매 기준 첩부수량

선거구명	법정		첩부장소수	첩부수량	총 인구수 ⁴⁶⁾	인구 1천명에 1매 기준 첩부수량	법정첩부수량-인구 1천명에 1매 기준 첩부수량
	첩부장소수	첩부수량					
합계	367	734	365	730	374,377	704	30
세종특별자치시	367	734	365	730	374,377	704	30

3) 선거구별 첩부장소수 대비 면적(m²) 고려 첩부장소수

○ 유권자가 선거벽보를 접할 확률은 첩부장소수 대비 해당 선거구의 면적과 관련이 있으므로 다음에서는 이를 분석함

〈부록 표 3-26〉 세종시 선거구별 첩부장소수 대비 면적(m²)

선거구별	법정		첩부장소수	첩부수량	면적 (km ²)	면적(m ²)/첩부장소수
	첩부장소수	첩부수량				
합계	367	734	365	730	465	1,274
세종특별자치시	367	734	365	730	465	1,274

46) 2022년 1월 31일 기준.

10. 경기도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첩부장소수와 첩부수량 대비 경기도 자치구별 18세 이상 인구(행정안전부 2022년 6월 주민등록 인구 통계 기준)⁴⁷⁾는 다음 표와 같음
- 모든 구의 법정 첩부수량과 첩부수량이 일치함
- 경기도는 법정첩부장소수 대비 18세 이상 인구수가 1,271명이며, 법정첩부수량 대비 18세 이상 인구수 520명임. 첩부장소수 대비 18세 이상 인구수는 1,271명이며, 첩부수량 대비 18세 이상 인구수는 520명임
- (법정)첩부장소수 대비 18세 이상 인구수는 351~1,722명의 분포를 보이고 있음. 첩부장소수 대비 18세 이상 인구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양평군이며, 가장 많은 지역은 부천시임
- (법정)첩부수량 대비 18세 이상 인구수는 79~861명의 분포를 보이고 있음. 첩부수량 대비 18세 이상 인구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가평군이며, 가장 많은 지역은 부천시임

〈부록 표 3-27〉 경기도 선거구별 첩부장소 및 첩부수량 대비 18세 이상 인구수

선거구명	구사군명	후보자수	법정첩부장소수 대비 18세 이상 인구수	법정첩부수량 대비 18세 이상 인구수	첩부장소수 대비 18세 이상 인구수	첩부수량 대비 18세 이상 인구수
합계		79	1271	520	1271	520
수원시	수원시	2	1623	812	1623	812
	수원시장안구	2	1647	823	1647	823
	수원시권선구	2	1627	814	1627	814
	수원시팔달구	2	1664	832	1664	832
	수원시영통구	2	1582	791	1582	791
성남시	성남시	3	2446	815	2446	815

47) 주민등록 인구통계/연령별 인구현황. <https://jumin.mois.go.kr/index.jsp#>(검색일: 2022.07.21.).

	성남시수정구	3	1652	551	1652	551
	성남시중원구	3	1686	562	1686	562
	성남시분당구	3	1601	534	1601	534
의정부시	의정부시	3	1676	559	1676	559
안양시	안양시	2	1619	810	1619	810
	안양시만안구	2	1661	830	1661	830
	안양시동안구	2	1587	794	1587	794
부천시	부천시	2	1722	861	1722	861
광명시	광명시	2	1574	787	1574	787
평택시	평택시	2	1174	587	1174	587
양주시	양주시	3	928	309	928	309
동두천시	동두천시	3	1595	532	1595	532
안산시	안산시	4	1668	417	1668	417
	안산시상록구	4	1670	417	1670	417
	안산시단원구	4	1666	416	1666	416
고양시	고양시	3	1648	549	1648	549
	고양시덕양구	3	1654	551	1654	551
	고양시일산동구	3	1639	546	1639	546
	고양시일산서구	3	1644	548	1644	548
과천시	과천시	2	1574	787	1574	787
의왕시	의왕시	2	1647	823	1647	823
구리시	구리시	3	1663	554	1663	554
남양주시	남양주시	2	1388	694	1388	694
오산시	오산시	4	1595	399	1595	399
화성시	화성시	2	1070	535	1070	535

시흥시	시흥시	3	1590	530	1590	530
군포시	군포시	2	1641	820	1641	820
하남시	하남시	2	1572	786	1572	786
파주시	파주시	2	1107	554	1107	554
여주시	여주시	2	454	227	454	227
이천시	이천시	2	661	331	661	331
용인시	용인시	2	1418	709	1418	709
	용인시처안구	2	1092	546	1092	546
	용인시수지구	2	1574	787	1574	787
	용인시기흥구	2	1576	788	1576	788
안성시	안성시	2	505	252	505	252
김포시	김포시	4	1237	309	1237	309
광주시	광주시	2	1241	621	1241	621
포천시	포천시	2	454	227	454	227
연천군	연천군	3	382	127	382	127
양평군	양평군	2	351	176	351	176
가평군	가평군	5	393	79	393	79

2) 경기도 선거구별 인구 1천 1매 기준 첩부수량과 법정 첩부수량

○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9조(선거벽보) 제2항을 기준 첩부수량 계산

〈부록 표 3-28〉 경기도 선거구별 법정 첩부수량과 인구 1천명 1매 기준 첩부수량

선거구명	구사군명	법정		첩부 장소수	첩부 수량	총 인구수 ⁴⁸⁾	인구 1천명에 1매 기준 첩부수량	법정 첩부수량- 인구 1천명에 1매 기준 첩부수량
		첩부 장소수	첩부 수량					
합계		9,030	22,068	9,030	22,068	13,571,450	17,282	4,786
수원시	수원시	625	1,250	625	1,250	1,184,404	1,184	66
	장안구	121	242	121	242	273,399	273	-31
	권선구	217	434	217	434	367,044	367	67
	팔달구	99	198	99	198	181,990	182	16
	영통구	188	376	188	376	361,971	362	14
성남시	성남시	491	1,473	491	1,473	931,072	931	542
	수정구	127	381	127	381	235,887	236	145
	중원구	111	333	111	333	210,344	210	123
	분당구	253	759	253	759	484,841	485	274
의정부시	의정부시	238	714	238	714	463,877	464	250
안양시	안양시	291	582	291	582	548,654	549	33
	만안구	127	254	127	254	237,288	237	17
	동안구	164	328	164	328	311,366	311	17
부천시	부천시	410	820	410	820	804,990	805	15
광명시	광명시	158	316	158	316	292,214	292	24
평택시	평택시	403	806	403	806	565,827	778	28
양주시	양주시	213	639	213	639	236,284	416	223
동두천시	동두천시	51	153	51	153	93,527	94	59

안산시	안산시	343	1,372	343	1,372	652,036	652	720
	상록구	183	732	183	732	349,973	350	382
	단원구	160	640	160	640	302,063	302	338
고양시	고양시	561	1,683	561	1,683	1,078,924	1,079	604
	덕양구	278	834	278	834	483,251	483	351
	일산동구	140	420	140	420	298,593	299	121
	일산서구	143	429	143	429	297,080	297	132
과천시	과천시	39	78	39	78	76,139	76	2
의왕시	의왕시	85	170	85	170	163,040	163	7
구리시	구리시	99	297	99	297	191,660	192	105
남양주시	남양주시	438	876	438	876	734,013	860	16
오산시	오산시	119	476	119	476	229,973	230	246
화성시	화성시	658	1,316	658	1,316	887,910	1278	38
시흥시	시흥시	270	810	270	810	512,092	512	298
군포시	군포시	141	282	141	282	267,941	268	14
하남시	하남시	168	336	168	336	321,043	321	15
파주시	파주시	362	724	362	724	484,729	666	58
여주시	여주시	216	432	216	432	112,353	422	10
이천시	이천시	285	570	285	570	222,997	554	16
용인시	용인시	626	1,252	626	1,252	1,076,830	1,077	175
	처인구	203	406	203	406	259,969	393	13
	수지구	147	294	147	294	375,442	375	-81
	기흥구	276	552	276	552	441,419	441	111
안성시	안성시	323	646	323	646	189,510	627	19
김포시	김포시	318	1,272	318	1,272	486,651	621	651

광주시	광주시	264	528	264	528	387,563	513	15
포천시	포천시	291	582	291	582	148,867	602	-20
연천군	연천군	99	297	99	297	42,739	187	110
양평군	양평군	303	606	303	606	121,300	591	15
가평군	가평군	142	710	142	710	62,291	278	-135

3) 선거구별 첩부장소수 대비 면적(m²) 고려 첩부장소수 분석

- 유권자가 선거벽보를 접할 확률은 첩부장소수 대비 해당 선거구의 면적과 관련이 있으므로 다음에서는 이를 분석함

〈부록 표 3-29〉 경기도 선거구별 첩부장소수 대비 면적(m²)

선거구명	구사군명	법정		첩부장소수	첩부수량	면적 (km ²)	면적(m ²)/첩부장소수
		첩부장소수	첩부수량				
합계		9,030	22,068	9,030	22,068	10195.4	1,129
수원시	수원시	625	1,250	625	1,250	121.1	194
	장안구	121	242	121	242	33.17	274
	권선구	217	434	217	434	47.1	217
	팔달구	99	198	99	198	12.86	130
	영통구	188	376	188	376	27.7	147
성남시	성남시	491	1,473	491	1,473	141.6	288
	수정구	127	381	127	381	48.38	381
	중원구	111	333	111	333	36.14	326
	분당구	253	759	253	759	69.41	274
의정부시	의정부시	238	714	238	714	81.6	343
안양시	안양시	291	582	291	582	58.5	201
	만안구	127	254	127	254	36.53	288
	동안구	164	328	164	328	21.93	134

48) 2022년 1월 31일 기준.

부천시	부천시	410	820	410	820	53.5	130
광명시	광명시	158	316	158	316	38.5	244
평택시	평택시	403	806	403	806	458.2	1,137
양주시	양주시	213	639	213	639	310.4	1,457
동두천시	동두천시	51	153	51	153	95.7	1,876
안산시	안산시	343	1,372	343	1,372	156.4	456
	상록구	183	732	183	732	57.83	316
	단원구	160	640	160	640	91.23	570
고양시	고양시	561	1,683	561	1,683	268.1	478
	덕양구	278	834	278	834	165.51	595
	일산동구	140	420	140	420	59.1	422
	일산서구	143	429	143	429	42.8	299
과천시	과천시	39	78	39	78	35.9	921
의왕시	의왕시	85	170	85	170	54	635
구리시	구리시	99	297	99	297	33.3	336
남양주시	남양주시	438	876	438	876	458.1	1,046
오산시	오산시	119	476	119	476	42.7	359
화성시	화성시	658	1,316	658	1,316	698.2	1,061
시흥시	시흥시	270	810	270	810	139.7	517
군포시	군포시	141	282	141	282	36.4	258
하남시	하남시	168	336	168	336	93	554
파주시	파주시	362	724	362	724	673.9	1,862
여주시	여주시	216	432	216	432	608.3	2,816
이천시	이천시	285	570	285	570	461.4	1,619
용인시	용인시	626	1,252	626	1,252	591.2	944
	차인구	203	406	203	406	467.6	2,303
	수지구	147	294	147	294	42.1	286
	기흥구	276	552	276	552	81.6	296
안성시	안성시	323	646	323	646	553.5	1,714
김포시	김포시	318	1,272	318	1,272	276.6	870
광주시	광주시	264	528	264	528	431	1,633
포천시	포천시	291	582	291	582	826.9	2,842
연천군	연천군	99	297	99	297	676.3	6,831

양평군	양평군	303	606	303	606	877.7	2,897
가평군	가평군	142	710	142	710	676.3	4,763

11. 강원도

1) 강원도 선거구별 첩부장소수 및 첩부수량 대비 18세 이상 인구수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첩부장소수와 첩부수량 대비 강원도 자치구별 18세 이상 인구(행정안전부 2022년 6월 주민등록 인구 통계 기준)⁴⁹⁾ 는 다음 표와 같음

- 삼척시 제외 법정 첩부수량과 첩부수량이 일치함
- 강원도는 법정첩부장소수 대비 18세 이상 인구수가 625명이며, 법정첩부수량 대비 18세 이상 인구수 225명임. 첩부장소수 대비 18세 이상 인구수는 625명이며, 첩부수량 대비 18세 이상 인구수는 229명임
- (법정)첩부장소수 대비 18세 이상 인구수는 252~1,524명의 분포를 보이고 있음. 첩부장소수 대비 18세 이상 인구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평창군이며, 가장 많은 지역은 속초시임
- (법정)첩부수량 대비 18세 이상 인구수는 84~762명의 분포를 보이고 있음. 첩부수량 대비 18세 이상 인구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평창군이며, 가장 많은 지역은 속초시임

〈부록 표 3-30〉 강원도 선거구별 첩부장소 및 첩부수량 대비 18세 이상 인구수

선거구명	구사군명	후보자수	법정첩부장소수 대비 18세 이상 인구수	법정첩부수량 대비 18세 이상 인구수	첩부장소수 대비 18세 이상 인구수	첩부수량 대비 18세 이상 인구수
합계		50	625	225	625	229

49) 주민등록 인구통계/연령별 인구현황. [https://jumin.mois.go.kr/index.jsp#\(검색일: 2022.07.21.\)](https://jumin.mois.go.kr/index.jsp#(검색일: 2022.07.21.)).

춘천시	춘천시	3	886	295	886	295
원주시	원주시	2	967	483	967	483
강릉시	강릉시	4	778	195	778	195
동해시	동해시	3	1403	468	1403	468
삼척시	삼척시	4	670	167	670	223
태백시	태백시	3	1230	410	1230	410
정선군	정선군	2	397	199	397	199
속초시	속초시	2	1524	762	1524	762
고성군	고성군	2	386	193	386	193
양양군	양양군	2	301	151	301	151
인제군	인제군	3	279	93	279	93
홍천군	홍천군	2	327	163	327	163
횡성군	횡성군	3	300	100	300	100
영월군	영월군	3	343	114	343	114
평창군	평창군	3	252	84	252	84
화천군	화천군	2	261	131	261	131
양구군	양구군	4	380	95	380	95
철원군	철원군	3	623	208	623	208

2) 강원도 선거구별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9조 기준 첩부수량과 법정 첩부수량

○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9조(선거벽보) 제2항을 기준으로 첩부수량 계산

〈부록 표 3-31〉 강원도 선거구별 법정 첩부수량과 공직선거관리규칙 기준 첩부수량

선거구명	법정		첩부 장소수	첩부 수량	총 인구수 ⁵⁰⁾	공직선거 관리규칙에 의한 첩부수량	법정첩부수량 —공직선거관 리규칙에 의한 첩부수량
	첩부장 소수	첩부수량					
합계	2,137	5,926	2,137	5,842	1,538,660	4,006	1,920
춘천시	277	831	277	831	284,933	475	356
원주시	313	626	313	626	358,127	599	27
강릉시	239	956	239	956	212,907	452	504
동해시	55	165	55	165	90,045	90	75
삼척시	84	336	84	252	63,458	155	181
태백시	29	87	29	87	40,750	41	46
정선군	81	162	81	162	35,634	151	11
속초시	47	94	47	94	82,771	83	11
고성군	64	128	64	128	27,257	124	4
양양군	84	168	84	168	27,866	165	3
인제군	100	300	100	300	32,236	198	102
홍천군	187	374	187	374	68,251	364	10
횡성군	139	417	139	417	46,436	268	149
영월군	100	300	100	300	37,893	183	117
평창군	148	444	148	444	41,120	297	147
화천군	81	162	81	162	24,105	154	8
양구군	49	196	49	196	21,705	94	102
철원군	60	180	60	180	43,166	113	67

50) 2022년 1월 31일 기준.

3) 선거구별 첩부장소수 대비 면적(m²) 고려 첩부장소수 분석

- 유권자가 선거벽보를 접할 확률은 첩부장소수 대비 해당 선거구의 면적과 관련이 있으므로 다음에서는 이를 분석함

〈부록 표 3-32〉 강원도 선거구별 첩부장소수 대비 면적(m²)

선거구별	법정		첩부장소수	첩부수량	면적 (km ²)	면적(m ²)/ 첩부장소수
	첩부장소수	첩부수량				
합계	2,137	5,926	2,137	5,842	16871.7	7,895
춘천시	277	831	277	831	1116.4	4,030
원주시	313	626	313	626	868.2	2,774
강릉시	239	956	239	956	1,040.8	4,355
동해시	55	165	55	165	180.2	3,276
삼척시	84	336	84	252	1187.8	14,140
태백시	29	87	29	87	303.5	10,466
정선군	81	162	81	162	1219.9	15,060
속초시	47	94	47	94	105.8	2,251
고성군	64	128	64	128	660.8	10,325
양양군	84	168	84	168	629.7	7,496
인제군	100	300	100	300	1646.1	16,461
홍천군	187	374	187	374	1820.6	9,736
횡성군	139	417	139	417	998.0	7,180
영월군	100	300	100	300	1127.3	11,273
평창군	148	444	148	444	1464.0	9,892
화천군	81	162	81	162	908.9	11,221
양구군	49	196	49	196	704.3	14,373
철원군	60	180	60	180	889.7	14,828

12. 충청북도

1) 충청북도 선거구별 첩부장소수 및 첩부수량 대비 18세 이상 인구수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첩부장소수와 첩부수량 대비 충청북도 자치구별 18세 이상 인구(행정안전부 2022년 6월 주민등록 인구 통계 기준)⁵¹⁾ 는 다음 표와 같음

- 모든 구의 법정 첩부수량과 첩부수량이 일치함
- 충청북도는 법정첩부장소수 대비 18세 이상 인구수가 677명이며, 법정첩부수량 대비 18세 이상 인구수 270명임. 첩부장소수 대비 18세 이상 인구수는 677명이며, 첩부수량 대비 18세 이상 인구수는 270명임
- (법정)첩부장소수 대비 18세 이상 인구수는 232~1,315명의 분포를 보이고 있음. 첩부장소수 대비 18세 이상 인구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괴산군이며, 가장 많은 지역은 청주시 청원구임
- (법정)첩부수량 대비 18세 이상 인구수는 96~657명의 분포를 보이고 있음. 첩부수량 대비 18세 이상 인구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영동군이며, 가장 많은 지역은 청주시 청원구임

〈부록 표 3-33〉 충청북도 선거구별 첩부장소 및 첩부수량 대비 18세 이상 인구수

선거구명	구사군명	후보자수	법정첩부장소수 대비 18세 이상 인구수	법정첩부수량 대비 18세 이상 인구수	첩부장소수 대비 18세 이상 인구수	첩부수량 대비 18세 이상 인구수
합계		29	677	270	677	270
청주시	청주시	2	1114	557	1114	557
	청주시 상당구	2	841	421	841	421
	청주시 서원구	2	1188	594	1188	594
	청주시 흥덕구	2	1212	606	1212	606

51) 주민등록 인구통계/연령별 인구현황. <https://jumin.mois.go.kr/index.jsp#>(검색일: 2022.07.21.).

	청주시 청원구	2	1315	657	1315	657
충주시	충주시	4	616	154	616	154
제천시	제천시	3	785	262	785	262
단양군	단양군	2	340	170	340	170
영동군	영동군	3	287	96	287	96
보은군	보은군	3	293	98	293	98
옥천군	옥천군	2	364	182	364	182
음성군	음성군	2	432	216	432	216
진천군	진천군	2	548	274	548	274
괴산군	괴산군	2	232	116	232	116
증평군	증평군	4	1102	275	1102	275

2) 충청북도 선거구별 공직선거관리규칙에 의한 첩부수량과 법정 첩부수량

○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9조(선거벽보) 제2항을 기준 첩부수량 계산

〈부록 표 3-34〉 충청북도 선거구별 법정 첩부수량과 공직선거관리규칙 기준 첩부수량

선거구명	구사군명	법정		첩부장소수	첩부수량	총인구수 ⁵²⁾	공직선거관리규칙 기준	법정 첩부수량-공직선거관리규칙 기준 첩부수량
		첩부장소수	첩부수량					
합계		2,018	5,069	2,018	5,069	1,597,097	3,814	1,255
청주시	청주시	638	1,276	638	1,276	848,797	1234	42
	청주시 상당구	193	386	193	386	194,105	375	11
	청주시 서원구	139	278	139	278	192,993	266	12
	청주시 흥덕구	184	368	184	368	267,504	360	8
	청주시 청원구	122	244	122	244	194,195	233	11
충주시	충주시	294	1,176	294	1,176	209,368	557	619
제천시	제천시	146	438	146	438	131,407	275	163
단양군	단양군	76	152	76	152	28,263	144	8
영동군	영동군	144	432	144	432	45,692	265	167
보은군	보은군	99	297	99	297	31,871	186	111
옥천군	옥천군	123	246	123	246	50,020	239	7
음성군	음성군	188	376	188	376	92,113	367	9
진천군	진천군	130	260	130	260	85,458	254	6
괴산군	괴산군	152	304	152	304	37,525	240	64
증평군	증평군	28	112	28	112	36,583	53	59

52) 2022년 1월 31일 기준.

3) 선거구별 첩부장소수 대비 면적(m²) 고려 첩부장소수 분석

- 유권자가 선거벽보를 접할 확률은 첩부장소수 대비 해당 선거구의 면적과 관련이 있으므로 다음에서는 이를 분석함

〈부록 표 3-35〉 충청북도 선거구별 첩부장소수 대비 면적(m²)

선거구 명	구사 군명	법정		첩부 장소수	첩부 수량	면적 (km ²)	면적(m ²)/ 첩부장소수
		첩부 장소수	첩부 수량				
합계		2,018	5,069	2,018	5,069	7407	3,670
청주시	청주시	638	1,276	638	1,276	153.4	240
	청주시 상당구	193	386	193	386	403.8	2,092
	청주시 서원구	139	278	139	278	110.8	797
	청주시 흥덕구	184	368	184	368	198.2	1,077
	청주시 청원구	122	244	122	244	215	1,762
충주시	충주시	294	1,176	294	1,176	983.6	3,346
제천시	제천시	146	438	146	438	883.5	6,051
단양군	단양군	76	152	76	152	780.1	10,264
영동군	영동군	144	432	144	432	846.1	5,876
보은군	보은군	99	297	99	297	584.2	5,901
옥천군	옥천군	123	246	123	246	537.3	4,368
음성군	음성군	188	376	188	376	520.2	2,767
진천군	진천군	130	260	130	260	407.3	3,133
괴산군	괴산군	152	304	152	304	842.1	5,540
증평군	증평군	28	112	28	112	81.8	2,921

13. 충청남도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첩부장소수와 첩부수량 대비 충청남도 자치구별 18세 이상 인구(행정안전부 2022년 6월 주민등록 인구 통계 기준)⁵³⁾ 는 다음 표와 같음
- 모든 구의 법정 첩부수량과 첩부수량이 일치함
- 충청남도는 법정첩부장소수 대비 18세 이상 인구수가 559명이며, 법정첩부수량 대비 18세 이상 인구수 218명임. 첩부장소수 대비 18세 이상 인구수는 559명이며, 첩부수량 대비 18세 이상 인구수는 218명임
- (법정)첩부장소수 대비 18세 이상 인구수는 249~1,402명의 분포를 보이고 있음. 첩부장소수 대비 18세 이상 인구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청양군이며, 가장 많은 지역은 천안시 서북구임
- (법정)첩부수량 대비 18세 이상 인구수는 83~452명의 분포를 보이고 있음. 첩부수량 대비 18세 이상 인구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청양군이며, 가장 많은 지역은 아산시 임

〈부록 표 3-36〉 충청남도 선거구별 첩부장소 및 첩부수량 대비 18세 이상 인구수

선거구명	구사군명	후보자수	법정첩부장소수 대비 18세 이상 인구수	법정첩부수량 대비 18세 이상 인구수	첩부장소수 대비 18세 이상 인구수	첩부수량 대비 18세 이상 인구수
합계		37	559	218	559	218
천안시	천안시	4	1140	285	1140	285
	천안시 서북구	4	1402	350	1402	350
	천안시 동남구	4	942	236	942	236
공주시	공주시	3	417	139	417	139
보령시	보령시	3	418	139	418	139
아산시	아산시	2	904	452	904	452

53) 주민등록 인구통계/연령별 인구현황. <https://jumin.mois.go.kr/index.jsp#>(검색일: 2022.07.21.).

서산시	서산시	2	509	255	509	255
태안군	태안군	2	402	201	402	201
금산군	금산군	2	294	147	294	147
논산시	논산시	2	412	206	412	206
계룡시	계룡시	2	381	191	381	191
당진시	당진시	2	520	260	520	260
부여군	부여군	2	276	138	276	138
서천군	서천군	2	301	151	301	151
홍성군	홍성군	4	509	127	509	127
청양군	청양군	3	249	83	249	83
예산군	예산군	2	361	181	361	181

2) 충청남도 선거구별 공직선거관리규칙 기준 첩부수량과 법정 첩부수량

○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9조(선거벽보) 제2항을 기준 첩부수량 계산

〈부록 표 3-37〉 충청북도 선거구별 법정 첩부수량과 인구 1천명 1매 기준 첩부수량

선거구명	구사군명	법정		첩부장소수	첩부수량	총인구수 ⁵⁴⁾	공직선거관리규칙 기준 첩부수량	법정 첩부수량 공직선거관리규칙 기준 첩부수량
		첩부장소수	첩부수량					
합계		3,219	8,269	3,219	8,269	2,118,638	6,228	2,041
천안시	천안시	480	1,920	480	1,920	658,150	976	944
	천안시 서북구	207	828	207	828	402,877	447	381
	천안시 동남구	273	1,092	273	1,092	255,273	482	610
공주시	공주시	220	660	220	660	103,021	422	238
보령시	보령시	207	621	207	621	98,142	380	241
아산시	아산시	293	586	293	586	325,412	565	21
서산시	서산시	292	584	292	584	176,630	565	19
태안군	태안군	138	276	138	276	61,462	267	9
금산군	금산군	153	306	153	306	50,335	294	12
논산시	논산시	244	488	244	488	114,430	474	14
계룡시	계룡시	91	182	91	182	43,338	178	4
당진시	당진시	269	538	269	538	167,050	522	16
부여군	부여군	209	418	209	418	63,599	397	21
서천군	서천군	153	306	153	306	50,703	287	19
홍성군	홍성군	166	664	166	664	99,267	317	347
청양군	청양군	112	336	112	336	30,396	216	120
예산군	예산군	192	384	192	384	76,703	368	16

54) 2022년 1월 31일 기준.

3) 선거구별 첩부장소수 대비 면적(m²) 고려 첩부장소수 분석

- 유권자가 선거벽보를 접할 확률은 첩부장소수 대비 해당 선거구의 면적과 관련이 있으므로 다음에서는 이를 분석함

〈부록 표 3-38〉 충청남도 선거구별 첩부장소수 대비 면적(m²)

선거구 명	구사 군명	법정		첩부 장소수	첩부 수량	면적 (km ²)	면적(m ²)/ 첩부장소수
		첩부 장소수	첩부 수량				
합계		3,219	8,269	3,219	8,269	8,246.2	2,562
천안시	천안시	480	1,920	480	1,920	636.1	1,325
	천안시 서북구	207	828	207	828	197.7	955
	천안시 동남구	273	1,092	273	1,092	438.4	1,606
공주시	공주시	220	660	220	660	864.1	3,928
보령시	보령시	207	621	207	621	586.7	2,834
아산시	아산시	293	586	293	586	542.9	1,853
서산시	서산시	292	584	292	584	742.1	2,541
태안군	태안군	138	276	138	276	516	3,739
금산군	금산군	153	306	153	306	577.2	3,773
논산시	논산시	244	488	244	488	555.6	2,277
계룡시	계룡시	91	182	91	182	60.7	667
당진시	당진시	269	538	269	538	705.5	2,623
부여군	부여군	209	418	209	418	624.6	2,989
서천군	서천군	153	306	153	306	366.1	2,393
홍성군	홍성군	166	664	166	664	446.7	2,691
청양군	청양군	112	336	112	336	479.1	4,278
예산군	예산군	192	384	192	384	542.7	2,827

14. 전라북도

1) 전라북도 선거구별 첩부장소수 및 첩부수량 대비 18세 이상 인구수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첩부장소수와 첩부수량 대비 전라북도 자치구별 18세 이상 인구(행정안전부 2022년 6월 주민등록 인구 통계 기준)⁵⁵⁾ 는 다음 표와 같음

- 모든 구의 법정 첩부수량과 첩부수량이 일치함
- 전라북도는 법정첩부장소수 대비 18세 이상 인구수가 590명이며, 법정첩부수량 대비 18세 이상 인구수 174명임. 첩부장소수 대비 18세 이상 인구수는 575명이며, 첩부수량 대비 18세 이상 인구수는 169명임
- (법정)첩부장소수 대비 18세 이상 인구수는 229~1,620명의 분포를 보이고 있음. 첩부장소수 대비 18세 이상 인구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임실군이며, 가장 많은 지역은 전주시 덕진구임
- (법정)첩부수량 대비 18세 이상 인구수는 57~540명의 분포를 보이고 있음. 첩부수량 대비 18세 이상 인구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임실군이며, 가장 많은 지역은 전주시 덕진구임

〈부록 표 3-39〉 전라북도 선거구별 첩부장소 및 첩부수량 대비 18세 이상 인구수

선거구명	구사군명	후보자수	법정첩부장소수 대비 18세 이상 인구수	법정첩부수량 대비 18세 이상 인구수	첩부장소수 대비 18세 이상 인구수	첩부수량 대비 18세 이상 인구수
합계		46	590	174	590	174
전주시	전주시	6	1593	531	1593	531
	전주시 완산구	3	1620	540	1620	540
	전주시 덕진구	3	1559	520	1559	520
군산시	군산시	4	764	191	764	191

55) 주민등록 인구통계/연령별 인구현황. [https://jumin.mois.go.kr/index.jsp#\(검색일: 2022.07.21.\)](https://jumin.mois.go.kr/index.jsp#(검색일: 2022.07.21.)).

익산시	익산시	4	667	167	667	167
정읍시	정읍시	3	432	144	432	144
남원시	남원시	5	383	77	383	77
김제시	김제시	3	337	112	337	112
완주군	완주군	3	393	131	393	131
진안군	진안군	3	263	88	263	88
무주군	무주군	3	276	92	276	92
장수군	장수군	3	245	82	245	82
임실군	임실군	4	229	57	229	57
순창군	순창군	2	252	126	252	126
고창군	고창군	3	267	89	267	89
부안군	부안군	3	276	92	276	92

2) 전라북도 선거구별 공직선거관리규칙 기준 첩부수량과 법정 첩부수량

○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9조(선거벽보) 제2항을 기준으로 첩부수량 계산

〈부록 표 3-40〉 전라북도 선거구별 법정 첩부수량과 인구 1천명 1매 기준 첩부수량

선거구명	구사군명	법정		첩부장소수	첩부수량	총 인구수 ⁵⁶⁾	공직선거관리규칙	법정 첩부수량 공직선거관리규칙 기준 첩부수량
		첩부장소수	첩부수량					
합계		2,601	8,831	2,601	8,831	1,785,392	4,934	3,897
전주시	전주시	346	1,038	346	1,038	656,766	661	377
	전주시 완산구	193	579	193	579	335,292	340	239
	전주시 덕진구	153	459	153	459	321,474	321	138
군산시	군산시	295	1,180	295	1,180	265,160	552	628
익산시	익산시	360	1,440	360	1,440	277,664	686	754
정읍시	정읍시	217	651	217	651	106,534	406	245
남원시	남원시	181	905	181	905	79,308	327	578
김제시	김제시	215	645	215	645	80,933	411	234
완주군	완주군	199	597	199	597	91,060	383	214
진안군	진안군	86	258	86	258	24,957	159	99
무주군	무주군	77	231	77	231	23,735	152	79
장수군	장수군	79	237	79	237	21,683	152	85
임실군	임실군	106	424	106	424	26,686	200	224
순창군	순창군	95	190	95	190	26,768	178	12
고창군	고창군	179	537	179	537	53,366	345	192
부안군	부안군	166	498	166	498	50,772	322	176

56) 2022년 1월 31일 기준.

3) 선거구별 첩부장소수 대비 면적(m²) 고려 첩부장소수 분석

- 유권자가 선거벽보를 접할 확률은 첩부장소수 대비 해당 선거구의 면적과 관련이 있으므로 다음에서는 이를 분석함

〈부록 표 3-41〉 전라북도 선거구별 첩부장소수 대비 면적(m²)

선거구 명	구사 군명	법정		첩부 장소수	첩부 수량	면적 (km ²)	면적(m ²)/ 첩부장소수
		첩부 장소수	첩부 수량				
합계		3,219	8,269	3,219	8,269	8,246.2	2,562
전주시	전주시	346	1,038	346	1,038	206	595
	전주시 완산구	193	579	193	579	92.6	480
	전주시 덕진구	153	459	153	459	112.9	738
군산시	군산시	295	1,180	295	1,180	397.2	1,346
익산시	익산시	360	1,440	360	1,440	506.6	1,407
정읍시	정읍시	217	651	217	651	693	3,194
남원시	남원시	181	905	181	905	752.2	4,156
김제시	김제시	215	645	215	645	545.9	2,539
완주군	완주군	199	597	199	597	821.1	4,126
진안군	진안군	86	258	86	258	789	9,174
무주군	무주군	77	231	77	231	631.8	8,205
장수군	장수군	79	237	79	237	533.2	6,749
임실군	임실군	106	424	106	424	597.2	5,634
순창군	순창군	95	190	95	190	495.8	5,219
고창군	고창군	179	537	179	537	607.5	3,394
부안군	부안군	166	498	166	498	493.2	2,971

15. 전라남도

1) 전라남도 선거구별 첩부장소수 및 첩부수량 대비 18세 이상 인구수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첩부장소수와 첩부수량 대비 전라남도 자치구별 18세 이상 인구(행정안전부 2022년 6월 주민등록 인구 통계 기준)⁵⁷⁾ 는 다음 표와 같음

- 나주시, 진도군 외 법정 첩부수량과 첩부수량이 일치함
- 전라남도는 법정첩부장소수 대비 18세 이상 인구수가 493명이며, 법정첩부수량 대비 18세 이상 인구수 164명임. 첩부장소수 대비 18세 이상 인구수는 509명이며, 첩부수량 대비 18세 이상 인구수는 169명임
- (법정)첩부장소수 대비 18세 이상 인구수는 231~1,480명의 분포를 보이고 있음. 첩부장소수 대비 18세 이상 인구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곡성군이며, 가장 많은 지역은 목포시임
- (법정)첩부수량 대비 18세 이상 인구수는 67~493명의 분포를 보이고 있음. 첩부수량 대비 18세 이상 인구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영암군이며, 가장 많은 지역은 목포시임

〈부록 표 3-42〉 전라남도 선거구별 첩부장소 및 첩부수량 대비 18세 이상 인구수

선거구명	구사군명	후보자수	법정첩부장소수 대비 18세 이상 인구수	법정첩부수량 대비 18세 이상 인구수	첩부장소수 대비 18세 이상 인구수	첩부수량 대비 18세 이상 인구수
합계		58	493	164	509	169
목포시	목포시	3	1480	493	1480	493
여수시	여수시	4	1015	254	1015	254
순천시	순천시	3	855	285	855	285
나주시	나주시	5	433	87	433	108

57) 주민등록 인구통계/연령별 인구현황. [https://jumin.mois.go.kr/index.jsp#\(검색일: 2022.07.21.\)](https://jumin.mois.go.kr/index.jsp#(검색일: 2022.07.21.)).

광양시	광양시	4	780	195	780	195
담양군	담양군	2	247	123	247	123
장성군	장성군	2	245	122	245	122
곡성군	곡성군	2	231	116	231	116
구례군	구례군	3	276	92	276	92
고흥군	고흥군	2	260	130	260	130
화순군	화순군	2	397	199	397	199
장흥군	장흥군	3	376	125	10917	125
강진군	강진군	2	264	132	264	132
완도군	완도군	2	331	165	331	165
진도군	진도군	2	256	128	299	149
영암군	영암군	5	336	67	336	67
무안군	무안군	5	497	99	497	99
영광군	영광군	2	390	195	390	195
함평군	함평군	3	232	77	232	77
신안군	신안군	2	235	118	235	118

2) 전라남도 선거구별 공직선거관리규칙 기준 첩부수량과 법정 첩부수량

○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9조(선거벽보) 제2항을 기준 첩부수량 계산

〈부록 표 3-43〉 전라남도 선거구별 법정 첩부수량과 인구 1천명 1매 기준 첩부수량

선거구명	법정		첩부장소수	첩부수량	총 인구수 ⁵⁸⁾	공직선거관리규칙 기준 첩부수량	법정첩부수량-공직선거관리규칙 기준 첩부수량
	첩부장소수	첩부수량					
합계	3,018	9,076	2,919	8,817	1,726,213	5,833	3,243
목포시	124	372	124	372	218,700	219	153
여수시	234	936	234	936	276,957	428	508
순천시	276	828	276	828	280,699	635	193
나주시	229	1,145	229	916	116,601	430	715
광양시	161	644	161	644	151,796	311	333
담양군	169	338	169	338	46,144	324	14
장성군	157	314	157	314	43,343	305	9
곡성군	109	218	109	218	27,508	207	11
구례군	83	249	83	249	25,173	156	93
고흥군	221	442	221	442	62,631	423	19
화순군	139	278	139	278	62,584	269	9
장흥군	87	261	3	261	36,514	156	105
강진군	115	230	115	230	33,664	218	12
완도군	130	260	130	260	48,481	244	16
진도군	105	210	90	180	29,996	206	4
영암군	139	695	139	695	53,022	263	432
무안군	151	755	151	755	91,102	291	464
영광군	116	232	116	232	52,045	223	9
함평군	123	369	123	369	31,157	239	130
신안군	150	300	150	300	38,096	286	14

3) 선거구별 첩부장소수 대비 면적(m²) 고려 첩부장소수 분석

- 유권자가 선거벽보를 접할 확률은 첩부장소수 대비 해당 선거구의 면적과 관련이 있으므로 다음에서는 이를 분석함

〈부록 표 3-44〉 전라남도 선거구별 첩부장소수 대비 면적(m²)

선거구별	법정		첩부장소수	첩부수량	면적 (km ²)	면적(m ²)/ 첩부장소수
	첩부장소수	첩부수량				
합계	3,018	9,076	2,919	8,817	12,345.2	4,229
목포시	124	372	124	372	51.6	416
여수시	234	936	234	936	512	2,188
순천시	276	828	276	828	911	3,301
나주시	229	1,145	229	916	608.4	2,657
광양시	161	644	161	644	463	2,876
담양군	169	338	169	338	455	2,692
장성군	157	314	157	314	518.40	3,302
곡성군	109	218	109	218	547	5,018
구례군	83	249	83	249	443	5,337
고흥군	221	442	221	442	807	3,652
화순군	139	278	139	278	787	5,662
장흥군	87	261	3	261	622	207,333
강진군	115	230	115	230	500.9	4,356
완도군	130	260	130	260	396.8	3,052
진도군	105	210	90	180	440.1	4,890
영암군	139	695	139	695	612.6	4,407
무안군	151	755	151	755	449.7	2,978
영광군	116	232	116	232	475	4,095
함평군	123	369	123	369	392.1	3,188
신안군	150	300	150	300	655.6	4,371

58) 2022년 1월 31일 기준.

16. 경상북도

1) 경상북도 선거구별 첩부장소수 및 첩부수량 대비 18세 이상 인구수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첩부장소수와 첩부수량 대비 경상북도 자치구별 18세 이상 인구(행정안전부 2022년 6월 주민등록 인구 통계 기준)⁵⁹⁾ 는 다음 표와 같음

- 모든 구에서 법정 첩부수량과 첩부수량이 일치함
- 경상북도는 법정첩부장소수 대비 18세 이상 인구수가 585명이며, 법정첩부수량 대비 18세 이상 인구수 221명임. 첩부장소수 대비 18세 이상 인구수는 585명이며, 첩부수량 대비 18세 이상 인구수는 221명임
- (법정)첩부장소수 대비 18세 이상 인구수는 231~1,198명의 분포를 보이고 있음. 첩부장소수 대비 18세 이상 인구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의성군이며, 가장 많은 지역은 구미시임
- (법정)첩부수량 대비 18세 이상 인구수는 82~521명의 분포를 보이고 있음. 첩부수량 대비 18세 이상 인구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봉화군이며, 가장 많은 지역은 포항시 남구임

〈부록 표 3-45〉 경상북도 선거구별 첩부장소 및 첩부수량 대비 18세 이상 인구수

선거구명	구사군명	후보자수	법정첩부장소수 대비 18세 이상 인구수	법정첩부수량 대비 18세 이상 인구수	첩부장소수 대비 18세 이상 인구수	첩부수량 대비 18세 이상 인구수
합계		56	587	221	587	221
포항시	포항시	4	1028	514	1028	514
	포항시 북구	2	1017	508	1017	508
	포항시 남구	2	1042	521	1042	521
울릉군	울릉군	2	453	226	453	226

59) 주민등록 인구통계/연령별 인구현황. [https://jumin.mois.go.kr/index.jsp#\(검색일: 2022.07.21.\)](https://jumin.mois.go.kr/index.jsp#(검색일: 2022.07.21.)).

경주시	경주시	2	798	399	798	399
김천시	김천시	4	499	125	499	125
안동시	안동시	3	555	185	555	185
구미시	구미시	4	1198	300	1198	300
영주시	영주시	2	593	296	593	296
영천시	영천시	3	427	142	427	142
상주시	상주시	4	360	90	360	90
문경시	문경시	3	486	162	486	162
경산시	경산시	2	996	498	996	498
청도군	청도군	2	312	156	312	156
고령군	고령군	3	284	95	284	95
성주군	성주군	2	256	128	256	128
칠곡군	칠곡군	3	621	207	621	207
군위군	군위군	2	264	132	264	132
의성군	의성군	2	231	116	231	116
청송군	청송군	2	232	116	232	116
영양군	영양군	2	288	144	288	144
영덕군	영덕군	2	265	132	265	132
봉화군	봉화군	3	245	82	245	82
울진군	울진군	2	294	147	294	147

2) 경상북도 선거구별 공직선거관리규칙 기준 첩부수량과 법정 첩부수량

○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9조(선거벽보) 제2항을 기준 첩부수량 계산

〈부록 표 3-46〉 경상북도 선거구별 법정 첩부수량과 공직선거관리규칙 기준 첩부수량

선거구명	구사군명	법정		첩부장소수	첩부수량	총 인구수 ⁶⁰⁾	공직선거관리규칙 기준 첩부수량	법정 첩부수량-공직선거관리규칙 기준 첩부수량
		첩부장소수	첩부수량					
합계		3,795	10,070	3,795	10,070	2,568,592	7,152	2,918
포항시	포항시	418	836	418	836	503,404	806	30
	포항시 북구	228	456	228	456	272,841	446	10
	포항시 남구	190	380	190	380	230,563	360	20
울릉군	울릉군	18	36	18	36	8,866	32	4
경주시	경주시	277	554	277	554	251,627	523	31
김천시	김천시	242	968	242	968	140,144	455	513
안동시	안동시	246	738	246	738	156,729	464	274
구미시	구미시	283	1,132	283	1,132	412,345	527	605
영주시	영주시	151	302	151	302	101,879	283	19
영천시	영천시	214	642	214	642	101,634	411	231
상주시	상주시	236	944	236	944	95,615	448	496
문경시	문경시	130	390	130	390	70,935	240	150
경산시	경산시	232	464	232	464	268,157	447	17
청도군	청도군	124	248	124	248	41,903	239	9
고령군	고령군	98	294	98	294	30,623	186	108
성주군	성주군	154	308	154	308	42,916	296	12
칠곡군	칠곡군	155	465	155	465	113,683	298	167

군위군	군위군	82	164	82	164	23,008	156	8
의성군	의성군	204	408	204	408	50,561	389	19
청송군	청송군	98	196	98	196	24,535	186	10
영양군	영양군	52	104	52	104	16,289	98	6
영덕군	영덕군	122	244	122	244	35,282	192	52
봉화군	봉화군	115	345	115	345	30,682	198	147
울진군	울진군	144	288	144	288	47,775	278	10

60) 2022년 1월 31일 기준.

3) 선거구별 첩부장소수 대비 면적(m²) 고려 첩부장소수 분석

- 유권자가 선거벽보를 접할 확률은 첩부장소수 대비 해당 선거구의 면적과 관련이 있으므로 다음에서는 이를 분석함

〈부록 표 3-47〉 경상북도 선거구별 첩부장소수 대비 면적(m²)

선거구명	구사군명	법정		첩부장소수	첩부수량	면적 (km ²)	면적(m ²)/첩부장소수
		첩부장소수	첩부수량				
합계		3,795	10,070	3,795	10,070	18,369.5	4,840
포항시	포항시	418	836	418	836	1130	2,703
	포항시 북구	228	456	228	456	734.8	3,223
	포항시 남구	190	380	190	380	393	2,068
울릉군	울릉군	18	36	18	36	72.9	4,050
경주시	경주시	277	554	277	554	1324.9	4,783
김천시	김천시	242	968	242	968	1009.8	4,173
안동시	안동시	246	738	246	738	1522.1	6,187
구미시	구미시	283	1,132	283	1,132	615.4	2,175
영주시	영주시	151	302	151	302	670	4,437
영천시	영천시	214	642	214	642	919.2	4,295
상주시	상주시	236	944	236	944	1254.6	5,316
문경시	문경시	130	390	130	390	911.9	7,015
경산시	경산시	232	464	232	464	411.8	1,775
청도군	청도군	124	248	124	248	693.8	5,595
고령군	고령군	98	294	98	294	384	3,918
성주군	성주군	154	308	154	308	616.3	4,002
칠곡군	칠곡군	155	465	155	465	450.9	2,909
군위군	군위군	82	164	82	164	614.3	7,491
의성군	의성군	204	408	204	408	1174.7	5,758
청송군	청송군	98	196	98	196	846.1	8,634
영양군	영양군	52	104	52	104	815.8	15,688
영덕군	영덕군	122	244	122	244	741.2	6,075

봉화군	봉화군	115	345	115	345	1202	10,452
울진군	울진군	144	288	144	288	990	6,875

17. 경상남도

1) 경상남도 선거구별 첩부장소 및 첩부수량 대비 18세 이상 인구수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첩부장소수와 첩부수량 대비 경상남도 자치구별 18세 이상 인구(행정안전부 2022년 6월 주민등록 인구 통계 기준)⁶¹⁾ 는 다음 표와 같음

- 모든 구에서 법정 첩부수량과 첩부수량이 일치함
- 경상남도는 법정첩부장소수 대비 18세 이상 인구수가 718명이며, 법정첩부수량 대비 18세 이상 인구수 275명임. 첩부장소수 대비 18세 이상 인구수는 718명이며, 첩부수량 대비 18세 이상 인구수는 275명임
- (법정)첩부장소수 대비 18세 이상 인구수는 221~1,645명의 분포를 보이고 있음. 첩부장소수 대비 18세 이상 인구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산청군이며, 가장 많은 지역은 창원시 성산구임
- (법정)첩부수량 대비 18세 이상 인구수는 57~823명의 분포를 보이고 있음. 첩부수량 대비 18세 이상 인구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합천군이며, 가장 많은 지역은 창원시 성산구임

〈부록 표 3-48〉 경상남도 선거구별 첩부장소 및 첩부수량 대비 18세 이상 인구수

선거구명	구사군명	후보자수	법정첩부장소수 대비 18세 이상 인구수	법정첩부수량 대비 18세 이상 인구수	첩부장소수 대비 18세 이상 인구수	첩부수량 대비 18세 이상 인구수
합계		49	718	275	718	275
창원시	창원시	10	1358	679	1358	679
	창원시 의창구	2	1377	688	1377	688
	창원시 성산구	2	1645	823	1645	823
	창원시 마산합포구	2	891	446	891	446

61) 주민등록 인구통계/연령별 인구현황. [https://jumin.mois.go.kr/index.jsp#\(검색일: 2022.07.21.\)](https://jumin.mois.go.kr/index.jsp#(검색일: 2022.07.21.)).

	창원시 마산회 원구	2	1594	797	1594	797
	창원시 진해구	2	1535	767	1535	767
진주시	진주시	2	835	417	835	417
통영시	통영시	4	807	202	807	202
고성군	고성군	2	294	147	294	147
사천시	사천시	3	523	174	523	174
김해시	김해시	2	1128	564	1128	564
밀양시	밀양시	2	430	215	430	215
거제시	거제시	4	664	166	664	166
의령군	의령군	3	255	85	255	85
함안군	함안군	2	375	188	375	188
창녕군	창녕군	4	306	76	306	76
양산시	양산시	3	1199	400	1199	400
하동군	하동군	3	226	75	226	75
남해군	남해군	2	248	124	248	124
함양군	함양군	2	300	150	300	150
산청군	산청군	3	221	74	221	74
거창군	거창군	2	418	209	418	209
합천군	합천군	4	230	57	230	57

2)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9조에 따른 첩부수량과 법정 첩부수량

○ 경상남도 시·군·구에 대하여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9조에 따른 첩부수량과 법정 첩부수량 계산

〈부록 표 3-49〉 경상남도 선거구별 법정 첩부수량과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9조에 의한 첩부수량

구·시·군명	법정		첩부장소수	첩부수량	공직선거관리규칙제 29조에 의한 첩부수량 (2022.1.2월데이터)	법정첩부수량- 공직선거관리규칙제 29조에 의한 수량
	첩부장소수	첩부수량				
	3,921	10,231	3,921	10,231		
소계	646	1,292	646	1,292		
창원시의창구	135	270	135	270	270	0
창원시성산구	130	260	130	260	253	7
창원시마산합포구	176	352	176	352	381	-29
창원시마산회원구	101	202	101	202	187	15
창원시진해구	104	208	104	208	197	11
진주시	351	702	351	702	688	14
통영시	132	528	132	528	253	275
고성군	153	306	153	306	293	13
사천시	180	540	180	540	351	189
김해시	399	798	399	798	808	-10
밀양시	215	430	215	430	421	9
거제시	293	1,172	293	1,172	579	593
의령군	95	285	95	285	184	101
함안군	145	290	145	290	287	3
창녕군	177	708	177	708	338	370
양산시	245	735	245	735	481	254
하동군	176	528	176	528	339	189
남해군	156	312	156	312	306	6
함양군	115	230	115	230	221	9
산청군	143	429	143	429	275	154
거창군	127	254	127	254	248	6
합천군	173	692	173	692	331	361

3) 경상남도 선거구별 첩부장소수 대비 면적(m²) 고려 첩부장소수 분석

○ 유권자가 선거벽보를 접할 확률은 첩부장소수 대비 해당 선거구의 면적과 관련이 있으므로 다음에서는 이를 분석함

- 창원시 구별 면적은 2018년 국가통계포털 자료가 가장 최신자료이므로 이를 활용하였으며, 기타 진주시, 통영시, 고성군, 사천시 등 경상남도 시군의 면적은 2021년 자료임

<부록 표 3-50> 경상남도 선거구별 첩부장소수 대비 면적

구사군명	법정		첩부장소수	첩부수량	면적 (km ²) (2021년)	면적(m ²)/ 첩부장소수
	첩부장소수	첩부수량				
합계	3,921	10,231	3,921	10,231		
소계	646	1,292	646	1,292	748	1,158
창원시 의창구	135	270	135	270	211.15	1,564
창원시 성산구	130	260	130	260	82.23	633
창원시 마산합포구	176	352	176	352	241.04	1,370
창원시 마산회원구	101	202	101	202	90.58	897
창원시 진해구	104	208	104	208	122.92	1,182
진주시	351	702	351	702	712.83	2,031
통영시	132	528	132	528	240.21	1,820
고성군	153	306	153	306	517.95	3,385
사천시	180	540	180	540	398.7	2,215
김해시	399	798	399	798	463.52	1,162
밀양시	215	430	215	430	798.55	3,714
거제시	293	1,172	293	1,172	403.83	1,378
의령군	95	285	95	285	482.92	5,083
함안군	145	290	145	290	416.6	2,873
창녕군	177	708	177	708	532.64	3,009
양산시	245	735	245	735	485.62	1,982
하동군	176	528	176	528	674.91	3,835
남해군	156	312	156	312	357.54	2,292
함양군	115	230	115	230	725.62	6,310
산청군	143	429	143	429	794.64	5,557
거창군	127	254	127	254	803.42	6,326
합천군	173	692	173	692	983.07	5,682

18. 제주특별자치도

1)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구별 첩부장소수 및 첩부수량 대비 18세 이상 인구수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첩부장소수와 첩부수량 대비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구별 18세 이상 인구(행정안전부 2022년 6월 주민등록 인구 통계 기준)⁶²⁾는 다음 표와 같음

- 모든 구에서 법정 첩부수량과 첩부수량이 일치함
- 제주특별자치도는 법정첩부장소수 대비 18세 이상 인구수가 1,253명이며, 법정첩부수량 대비 18세 이상 인구수는 313명임. 첩부장소수 대비 18세 이상 인구수는 1,253명이며, 첩부수량 대비 18세 이상 인구수는 313명임
- (법정)첩부장소수 대비 18세 이상 인구수는 1,050~1,353명의 분포를 보이고 있음. 첩부장소수 대비 18세 이상 인구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서귀포시이며, 가장 많은 지역은 제주시임
- (법정)첩부수량 대비 18세 이상 인구수는 263~338명의 분포를 보이고 있음. 첩부수량 대비 18세 이상 인구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서귀포시이며, 가장 많은 지역은 제주시임

〈부록 표 3-51〉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구별 첩부장소 및 첩부수량 대비 18세 이상 인구수

선거구명	구사군명	후보자수	법정첩부장소수 대비 18세 이상 인구수	법정첩부수량 대비 18세 이상 인구수	첩부장소수 대비 18세 이상 인구수	첩부수량 대비 18세 이상 인구수
합계		4	1253	313	1253	313
제주시	제주시	4	1353	338	1353	338
서귀포시	서귀포시	4	1050	263	1050	263

62) 주민등록 인구통계/연령별 인구현황. <https://jumin.mois.go.kr/index.jsp#>(검색일: 2022.07.21.).

2)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9조에 따른 첩부수량과 법정 첩부수량

- 제주시는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구성되는데, 제주시는 4개의 읍, 3개의 면, 19개의 동으로 구성되며, 서귀포시는 3개의 읍, 2개의 면, 12개의 동으로 구성됨
-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9조(선거벽보) 제2항을 기준으로 첩부수량 계산
 -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9조(선거벽보) 제2항에서는 ‘구사·군위원회가 첩부하는 선거벽보는 읍·면·동을 단위로 읍, 동 및 2만 명 이상인 면은 인구 1천 명에 1매, 인구 5천 명 이상 2만 명 미만인 면은 50매에 인구 5천 명을 넘는 매 1천 명까지 마다 1매를 더한 매수, 인구 5천 명 미만인 면은 인구 100명에 1매의 비율을 한도로 동시에 같은 장소에 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산출한 매수가 5매 미만인 경우에는 5매로 함’을 규정하고 있음

〈부록 표 3-52〉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구별 법정 첩부수량과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9조에 의한 첩부수량

구사군명	법정		첩부장 소수	첩부수 량	총인구수	공직선거관리 규칙 제29조에 의한 첩부수량	법정첩부수량 —공직선거관 리규칙 제29조에 의한 첩부수량
	첩부장 소수	첩부수 량					
합계	450	1,800	450	1,800	697,476		
제주시	302	1,208	302	1,208	506,843	584	624
서귀포시	148	592	148	592	190,633	281	311

3)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구별 첩부장소수 대비 면적(m²) 고려 첩부장소수 분석

- 유권자가 선거벽보를 접할 확률은 첩부장소수 대비 해당 선거구의 면적과 관련이 있으므로 다음에서는 이를 분석함

〈부록 표 3-53〉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구별 첩부장소수 대비 면적

구사군명	법정		첩부장소수	첩부수량	면적 (km ²)	면적(m ²)/첩부장소수
	첩부장소수	첩부수량				
합계	450	1,800	450	1,800	1,846	4,102
제주시	302	1,208	302	1,208	978	3,238
서귀포시	148	592	148	592	871	5,883

1. 출퇴근시간

1) 4월2일~6월2일까지의 평균 출퇴근 시간

○ 4월2일~6월2일까지의 출퇴근 시간은 다음 표와 같음. 이어서 이러한 출근 시간과 퇴근시간을 그림으로 나타냄

- 그림에서 Y축은 분을 나타낸 것으로 600은 오전 10시(600/60분=10시)를 의미하며, 오전 9시는 540에 해당하며, 400은 오전 6.7시를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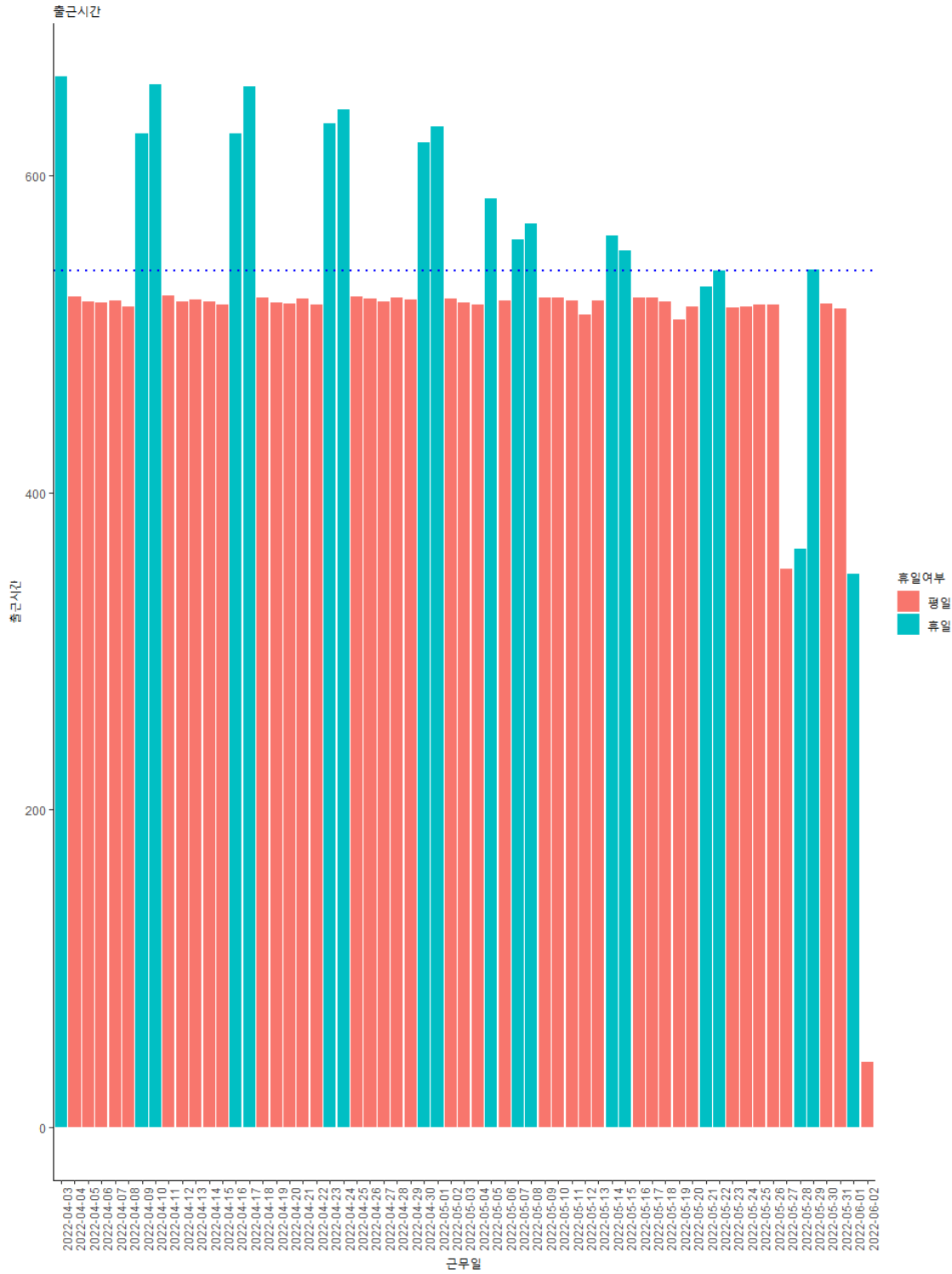
- 따라서 <부록 그림 4-1>에서 푸른 가로 점선은 오전 9시를 의미함
- <부록 그림 4-2>에서는 푸른선이 오후 6시, 녹색이 오후 7시, 붉은색이 오후 8시, 보라색이 오후 9시를 의미함

<부록 표 4-1> 4월2일~6월2일까지의 평균 출퇴근 시간과 1인 근무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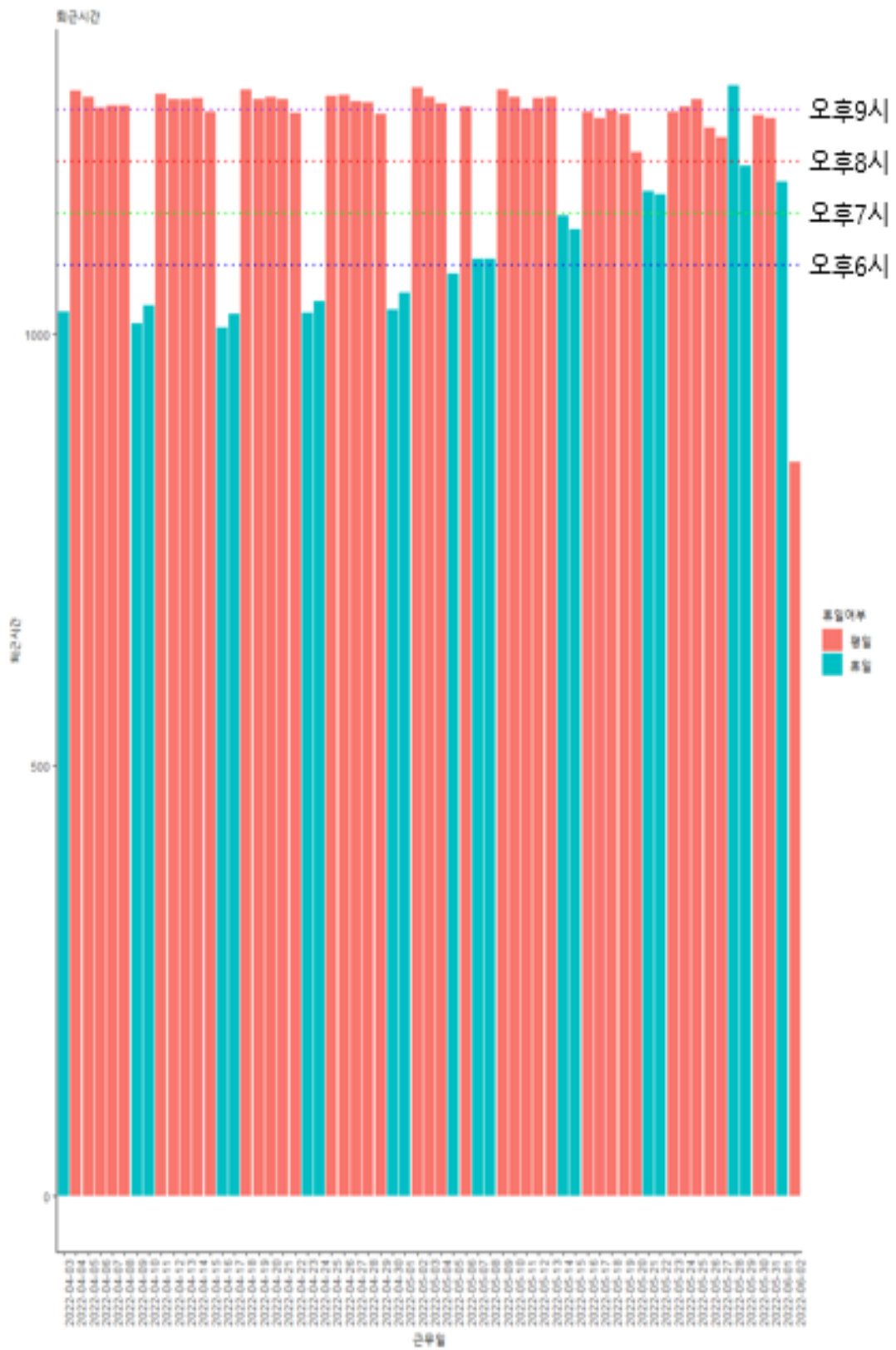
근무일	휴일 여부	출근 시간	퇴근 시간	1일 근무시간	근무일	휴일 여부	출근 시간	퇴근 시간	1일 근무시간
2022-04-02	휴일	10시34분	16시48분	6시간14분	2022-05-03	평일	8시40분	9시15분	12시간35분
2022-04-03	휴일	11시3분	5시7분	6시간4분	2022-05-04	평일	8시39분	9시8분	12시간29분
2022-04-04	평일	8시43분	9시23분	12시간40분	2022-05-05	휴일	9시46분	5시51분	8시간5분
2022-04-05	평일	8시40분	9시15분	12시간35분	2022-05-06	평일	8시41분	9시5분	12시간24분
2022-04-06	평일	8시40분	9시3분	12시간23분	2022-05-07	휴일	9시20분	6시8분	8시간48분
2022-04-07	평일	8시41분	9시5분	12시간24분	2022-05-08	휴일	9시30분	6시8분	8시간38분
2022-04-08	평일	8시37분	9시6분	12시간29분	2022-05-09	평일	8시43분	9시24분	12시간41분
2022-04-09	휴일	10시27분	4시53분	6시간26분	2022-05-10	평일	8시43분	9시15분	12시간32분
2022-04-10	휴일	10시57분	5시13분	6시간16분	2022-05-11	평일	8시41분	9시2분	12시간21분
2022-04-11	평일	8시44분	9시19분	12시간35분	2022-05-12	평일	8시32분	9시14분	12시간42분
2022-04-12	평일	8시40분	9시13분	12시간33분	2022-05-13	평일	8시41분	9시16분	12시간35분
2022-04-13	평일	8시41분	9시13분	12시간32분	2022-05-14	휴일	9시22분	6시58분	9시간36분

2022-0 4-14	평일	8시41 분	9시14 분	12시간33 분	2022-0 5-15	휴일	9시13 분	6시42 분	9시간29 분
2022-0 4-15	평일	8시38 분	8시58 분	12시간20 분	2022-0 5-16	평일	8시43 분	8시58 분	12시간15 분
2022-0 4-16	휴일	10시2 6분	4시48 분	6시간22 분	2022-0 5-17	평일	8시43 분	8시50 분	12시간7 분
2022-0 4-17	휴일	10시5 6분	5시4분	6시간8분	2022-0 5-18	평일	8시41 분	9시1분	12시간20 분
2022-0 4-18	평일	8시43 분	9시24 분	12시간41 분	2022-0 5-19	평일	8시29 분	8시56 분	12시간27 분
2022-0 4-19	평일	8시40 분	9시13 분	12시간33 분	2022-0 5-20	평일	8시37 분	8시12 분	12시간35 분
2022-0 4-20	평일	8시39 분	9시15 분	12시간36 분	2022-0 5-21	휴일	8시50 분	7시26 분	10시간36 분
2022-0 4-21	평일	8시42 분	9시13 분	12시간31 분	2022-0 5-22	휴일	9시0분	7시22 분	10시간22 분
2022-0 4-22	평일	8시39 분	8시57 분	12시간18 분	2022-0 5-23	평일	8시37 분	8시59 분	12시간22 분
2022-0 4-23	휴일	10시3 2분	5시4분	6시간32 분	2022-0 5-24	평일	8시37 분	9시4분	12시간27 분
2022-0 4-24	휴일	10시4 2분	5시19 분	6시간37 분	2022-0 5-25	평일	8시38 분	9시13 분	12시간35 분
2022-0 4-25	평일	8시44 분	9시17 분	12시간33 분	2022-0 5-26	평일	8시38 분	8시39 분	12시간1 분
2022-0 4-26	평일	8시42 분	9시17 분	12시간35 분	2022-0 5-27	평일	5시52 분	8시29 분	14시간37 분
2022-0 4-27	평일	8시41 분	9시10 분	12시간29 분	2022-0 5-28	휴일	6시5분	9시29 분	15시간24 분
2022-0 4-28	평일	8시43 분	9시9분	12시간26 분	2022-0 5-29	휴일	9시1분	7시56 분	10시간55 분
2022-0 4-29	평일	8시42 분	8시56 분	12시간14 분	2022-0 5-30	평일	8시39 분	8시54 분	12시간15 분
2022-0 4-30	휴일	10시2 1분	5시8분	6시간47 분	2022-0 5-31	평일	8시36 분	8시50 분	12시간14 분
2022-0 5-01	휴일	10시3 1분	5시28 분	6시간57 분	2022-0 6-01	휴일	5시49 분	7시37 분	13시간48 분
2022-0 5-02	평일	8시43 분	9시27 분	12시간44 분	2022-0 6-02	평일		2시11 분	

〈부록 그림 4-1〉 4월2일~6월2일 평일과 휴일의 평균 출근시간



〈부록 그림 4-2〉 4월2일~6월2일 평일과 휴일의 평균 퇴근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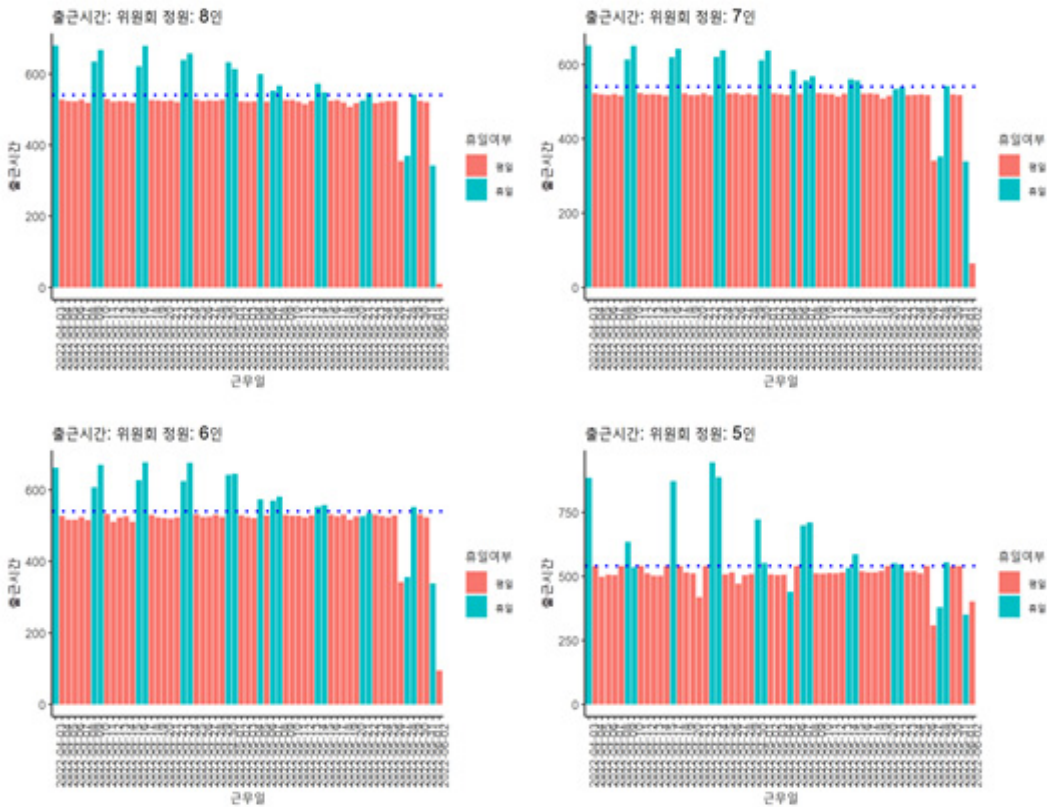


2) 위원회 규모별 출근 시간

(1) 5인, 6인, 7인, 8인 위원회의 출근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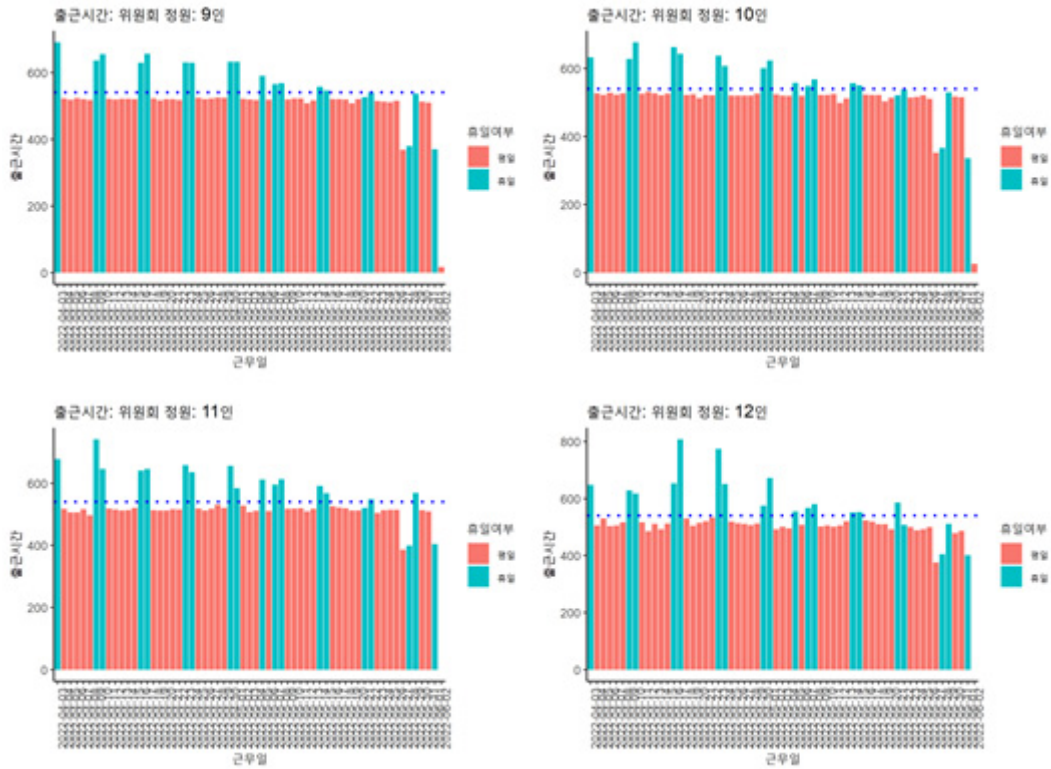
○ 위원회 규모별 출근 시간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 표와 같음

〈부록 그림 4-3〉 5인, 6인, 7인, 8인 위원회의 출근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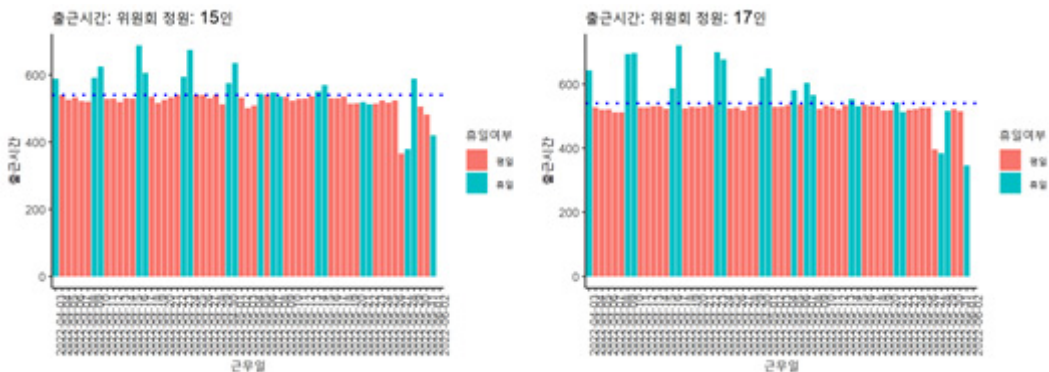
(2) 9인, 10인, 11인, 12인 위원회의 출근시간

〈부록 그림 4-4〉 9인, 10인, 11인, 12인 위원회의 출근시간



(3) 15인, 17인 위원회의 출근시간

〈부록 그림 4-5〉 15인, 17인 위원회의 출근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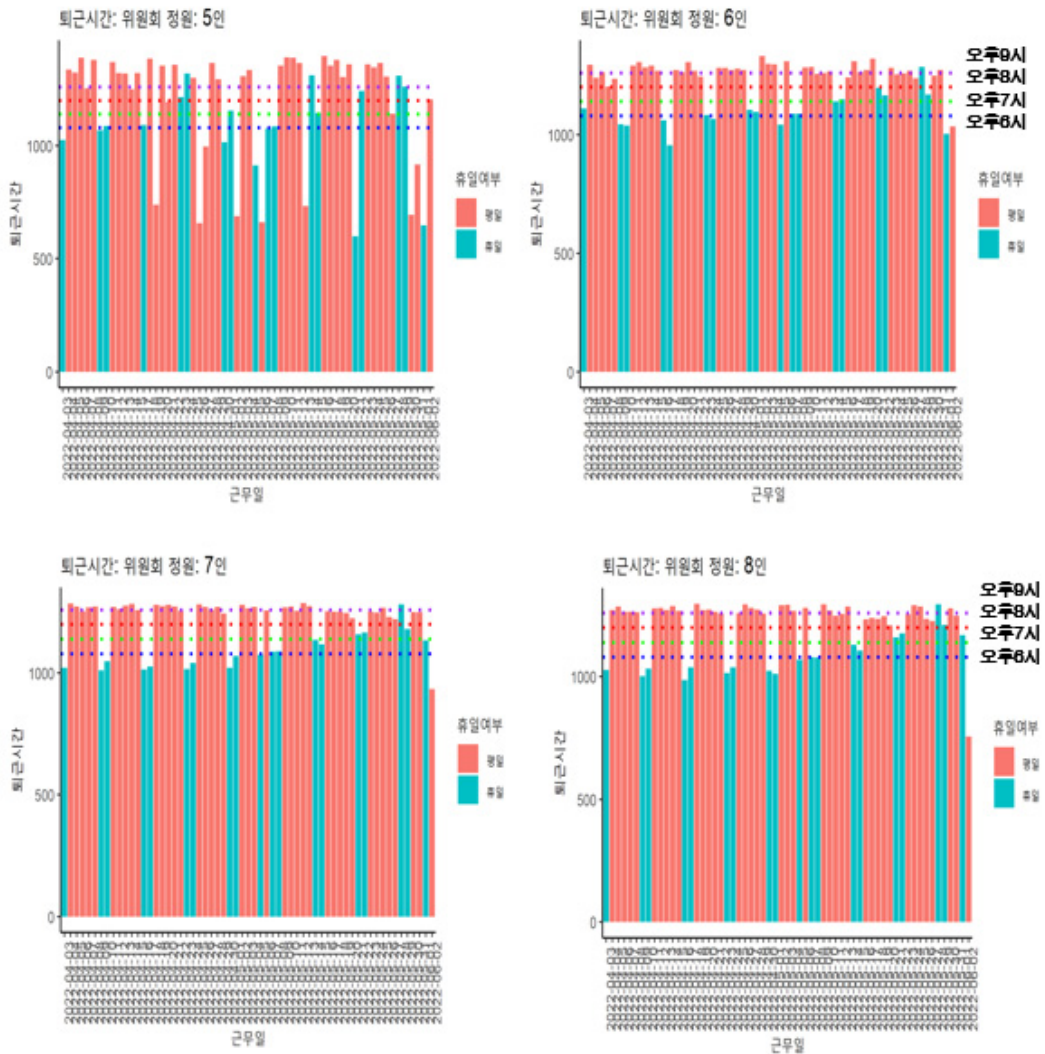


3) 위원회 규모별 퇴근 시간

(1) 5인, 6인, 7인, 8인 위원회의 퇴근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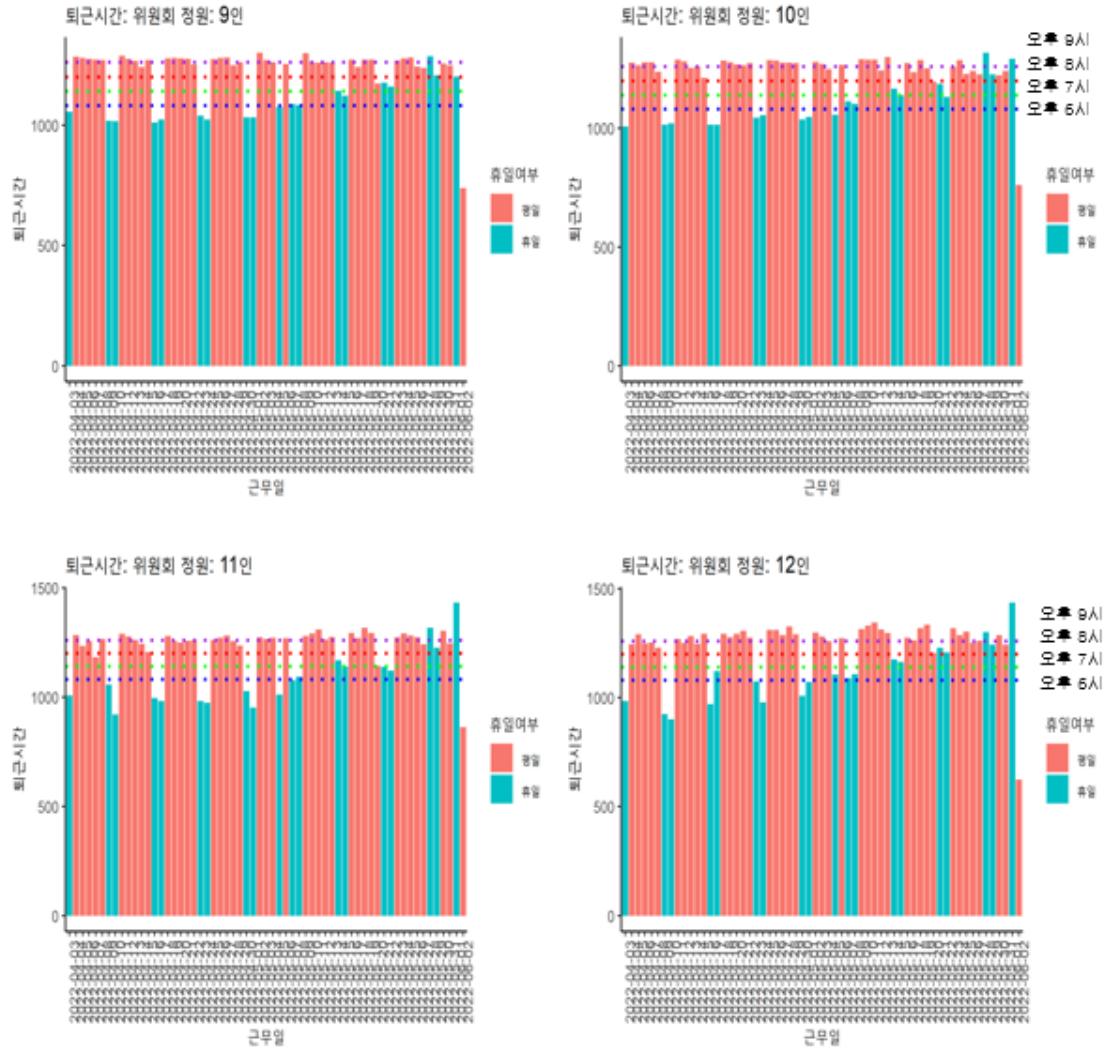
- 다음 그림에서 푸른 선이 오후6시, 녹색이 오후7시, 붉은색이 오후8시, 보라색이 오후9시임

〈부록 그림 4-6〉 5인, 6인, 7인, 8인 위원회의 퇴근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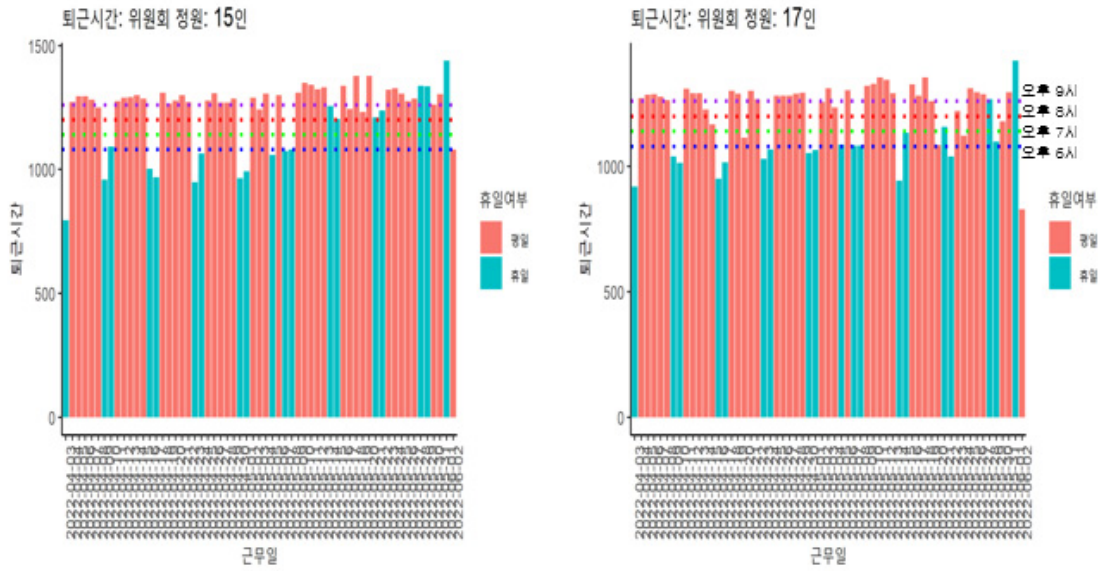
(2) 9인, 10인, 11인, 12인 위원회의 퇴근시간

〈부록 그림 4-7〉 9인, 10인, 11인, 12인 위원회의 퇴근시간



(3) 15인, 17인 위원회의 퇴근시간

〈부록 그림 4-8〉 15인, 17인 위원회의 퇴근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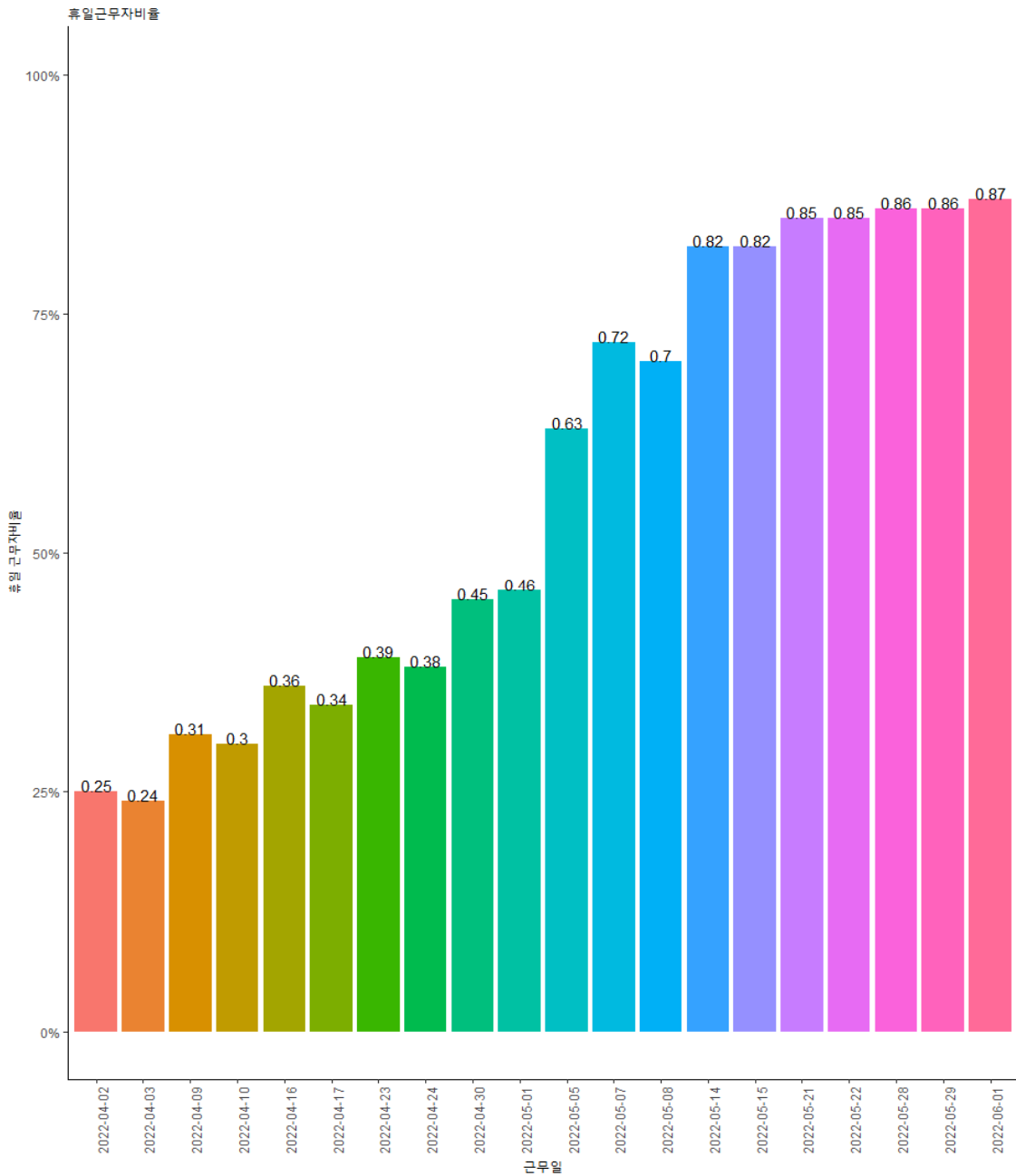


2. 휴일근무자 비율

1) D-60(2022.4.2.)~D-0(2022.6.1.)의 휴일근무자 비율

○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휴일 근무자 비율이 90%에 가까워짐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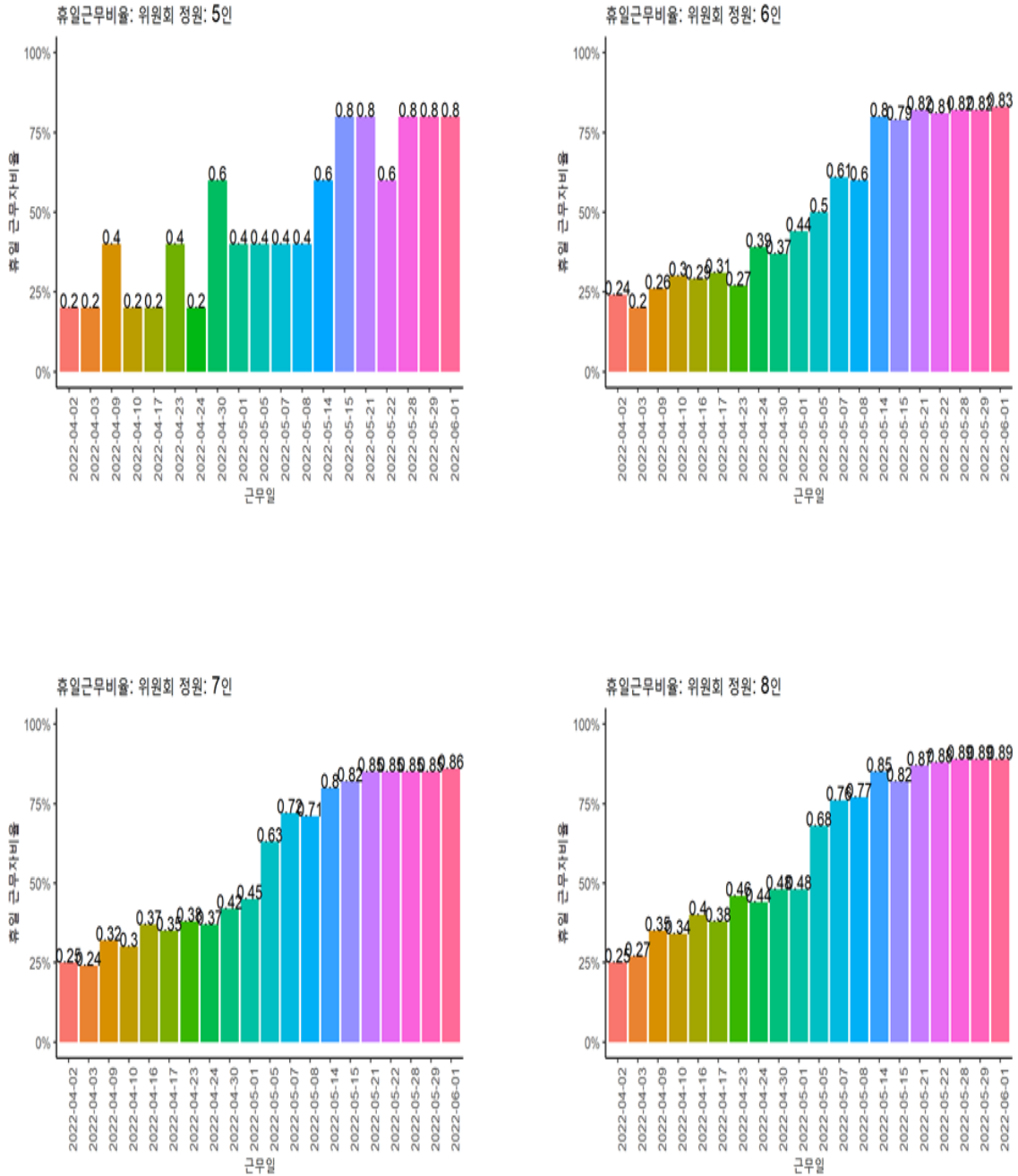
〈부록 그림 4-9〉 D-60~D-0 휴일 근무자 비율



2) 위원회 규모별 휴일근무자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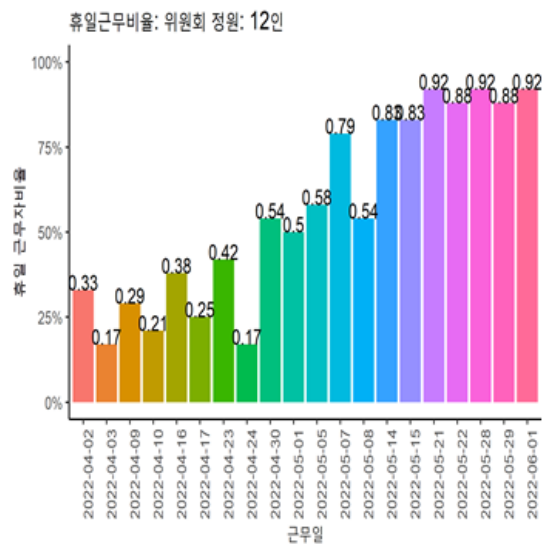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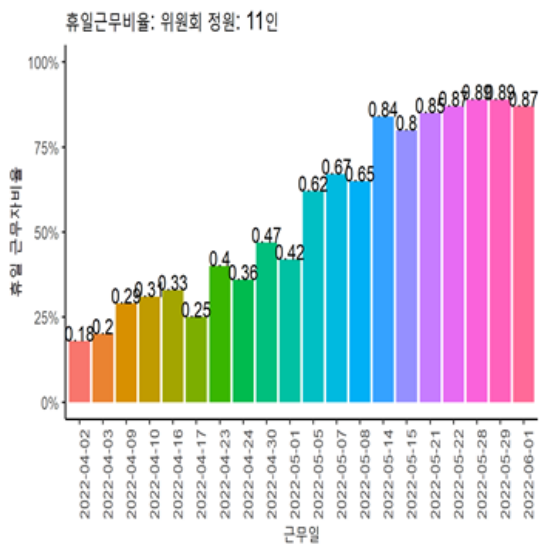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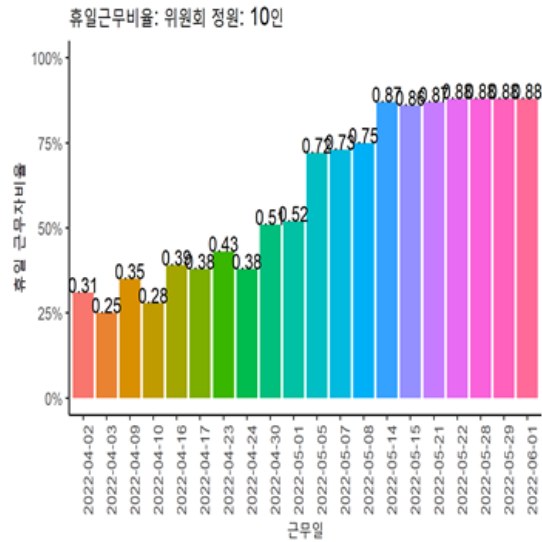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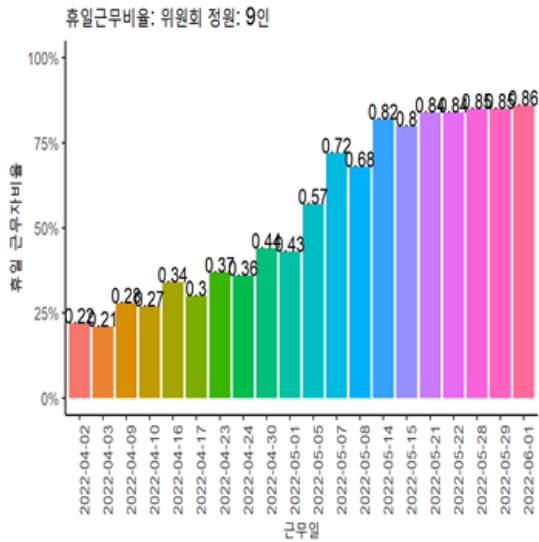
(1) 5인, 6인, 7인, 8인 위원회의 휴일근무자 비율

〈부록 그림 4-10〉 5인, 6인, 7인, 8인 위원회의 휴일근무자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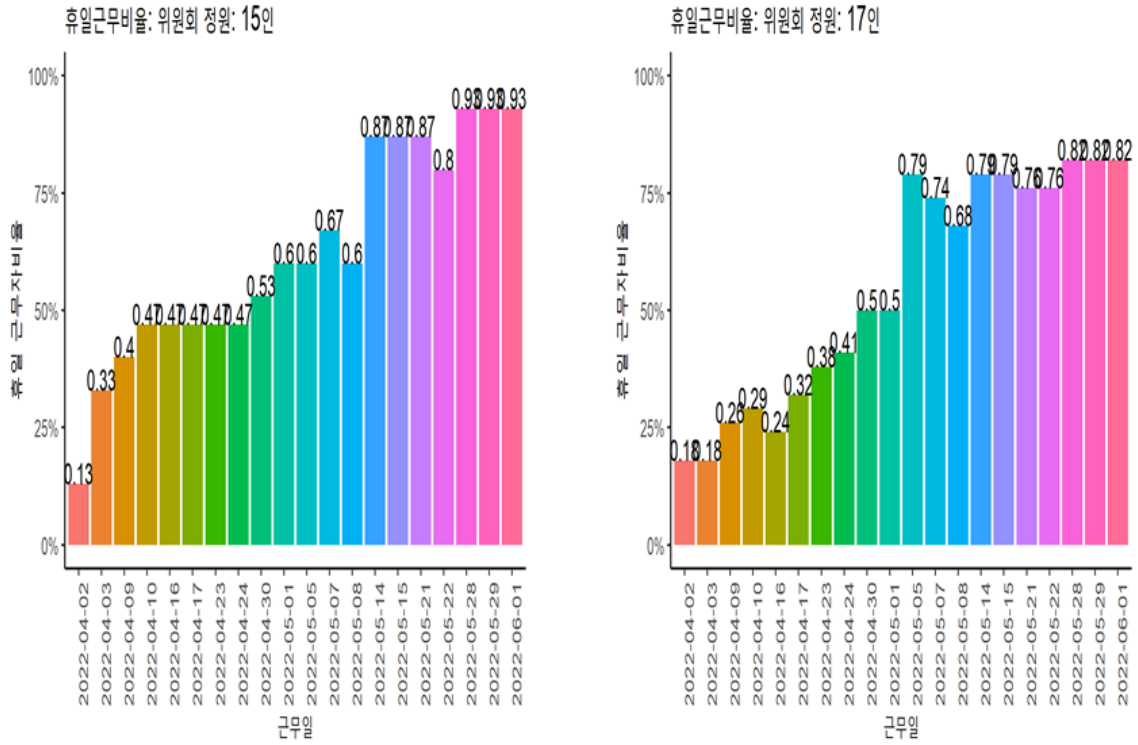
(2) 9인, 10인, 11인, 12인 위원회의 휴일근무자 비율

〈부록 그림 4-11〉 9인, 10인, 11인, 12인 위원회의 휴일근무자 비율



(3) 15인, 17인 위원회의 휴일근무자 비율

〈부록 그림 4-12〉 15인, 17인 위원회의 휴일근무자 비율



제1절 심층 인터뷰 설계

- 인터뷰는 구·시·군선거위원회 등 업무담당자,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업무조정, 간소화, 외부화, 정보화 등 개선 가능한 업무를 조사·분석하기 위해 수행되었으며, 인터뷰 질문은 다음과 같이 사전에 설계함

〈부록 표 6-1〉 심층 인터뷰 질문지 설계

인터뷰 항목	인터뷰 내용
본인에 대한 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이 근무하는 부서와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계 지도계 등 ○ 선관위 근무 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근무경력, 보직이동 등
구·시·군 업무의 중복 또는 비효율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사무 과중의 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이 담당하고 있는 선거기간 사무가 과중하다는 것을 무엇으로 보여줄 수 있는가? - 동료 및 조직의 경우는? ○ 선거사무 과중의 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사무가 과중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추가된 업무는 무엇이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 법적으로 정해진 업무 외에 행정 서비스 차원에서 진행되는 외적인 업무 추가 * 후보자 선거공보 접수 발송 시 오류 검토 - 비정규 인력의 교육 등 추가업무의 증가 - 선거 시기의 중첩(2022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의 중첩 등) - 조직에서의 업무 분담의 불균형 또는 비효율 - 공무원들의 업무에 대한 인식 변화(삶의 질 중시 등) - 효과성 낮은 선거공보, 선거벽보, 거리현수막 등으로 인한 업무 증가 ○ 간소화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이 담당하고 있는 선거사무에서 집중된 선거기간에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 임용을 기다리는 공무원들을 활용하는 방안 - 행정서비스 차원의 업무 축소 및 법적 업무 중심으로 선거사무 추진 * 후보자 공보 접수 발송 시 오류 검토 관련해 후보자들이 정확히 검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위원회의 법적 책임이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법적 책임성을 명확히 하는 방안 필요
공보, 벽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공보 관련 업무의 문제

<p>현수막 관련 업무의 문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공보를 24시까지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야근하는 문제 - 수량은 적정하다고 보는가? ○ 선거벽보 관련 업무의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량, 첨부장소 등은 적정하다고 보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산권 인식의 향상으로 인해 도시는 선거벽보 첨부 공간이 부족함 - 선거벽보를 첨부 공간이 부족하여 생기는 문제는 무엇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벽보 첨부장소 모든 곳에 대한 승낙서를 받아야 하는데, 이러한 추가적 업무에 대한 공감 부족 - 선거벽보 관련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벽보 붙일 수 있는 공간을 공공기관 및 학교 등으로 축소하고 선거벽보 수량 조정 * 도시 지역은 현재 첨부 수량이 너무 많은데 줄인다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그 지역에 첨부 가능한 공공기관은 몇 개나 되는지, 붙일 수 있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 ○ 거리현수막 관련 업무의 문제 ○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량의 적정성 기준을 제안한다면? - 수량을 축소하는 방안의 제도화 방식은? (법령, 위원회 의결 등)
<p>후보자 등록 관련 시스템 연동 문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보자등록 업무의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선 때만 중앙에서 후보자 등록을 받고, 지방선거의 경우 전 위원회에서 후보자 등록을 받음 - 지방선거의 경우 후보자 등록 서류를 자세히 검토하지 않고 선관위 직원들에게 검토를 부탁하는 경우가 많은데, 법적 책임성 문제가 발생 - 후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허위사실, 비방, 오타 등 선관위 직원들이 알 수 없는 시안들까지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서, 책임성이 모호하고 업무도 과중됨 ○ 책임성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준: 법률 개정안과 업무 개선안 - 관련 시스템 현황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보자등록시스템: 후보자의 재산, 세금 등 유관정보시스템과 연동되도록 함 * 활용 가능한 시스템 현황: 공직자 재산신고시스템 등, 각 부처가 운영하는 시스템 조사 * 기관 협조 방안 필요: 국세청, 법무부 등 - 시스템 연동 시 법적인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를 제공하고 후보자가 자료를 작성하는 각 단계마다 법적 책임성을 부여할 수 있는 절차가 정교하게 설계되어야 함. 예를 들면, 자료의 진위 오류 시의 책임 소재는 누구인지, 절차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후보자가 작성하는 경우에 '후보자가 확인하였습니다' 와 같은 식으로 책임을 부여할 수 있는 절차가 명확히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함 ○ 외부 전문가 활용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에서는 개인이 세금을 신고할 때 전문가에게 맡기고 그 비용을 국가에서 지급하는 방안 활용 - 유사 사례 조사
<p>사전투표 관련 업무 개선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 과다 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투표의 경우 타지역 투표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배달시키는데, 이 우편 분량이 위원회에 따라서 과다한 경우가 있음

	<p>* 과거 부재자투표 때는 수량이 적었기 때문에 하나하나 바코드를 찍어서 송부하는 것이 가능했으나, 사전투표가 도입되면서 수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를 일일이 바코드 찍을 경우 업무 증가로 인해 밤을 새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업무 시간이 늘어지다 보니 부정선거 의혹도 생김</p> <p>○ 업무 개선방안</p>
<p>추가로 각종 대장을 만드는 중복 사례</p>	<p>○ 실태와 개선방안</p>
<p>업무분장 및 인력 활용 방안 관련</p>	<p>○ 선거 시 관리단 편성의 운영 방안에 대해</p> <p>○ 사회복지요원 활용 방안에 대해</p> <p>○ 단기 선거사무보조원 활용 방안에 대해</p> <p>○ 읍면동 위원회 및 주민센터의 협조 실태에 대해</p>

제2절 인터뷰 결과 분석

1. 공통사항

□ 인력

○ 간사서기

- 동사무소 주민등록 담당이나 선거 담당 활용
- 간사서기가 본연 업무 이외에 선거 기간에 선거 업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확보하기 어려움

○ 투표관리관

- 투표관리관 위촉 및 교체 시 인원들의 코로나확진으로 인해 애로사항을 겪음
- 코로나로 인해 투표관리관 업무에 대한 수당 또는 사례금의 단가를 일시적으로 높였더니 상대적으로 잘 구해졌음, 향후 현재 수당 유지 필요
- 투표관리관의 업무가 특수하기 때문에 교대근무도 어렵고, 수당을 올리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나 특히 젊은 사람들 사이에 지금은 안 받고 안 하겠다는 분위기가 만연함.
- 투표관리관 교체로 내부적으로 교체문서를 내는 등 절차업무가 번거로움. 법에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법이 고쳐지지 않는 한 현행법령을 유지해야 하며, 관리관은 최대한 교체를 안 하는 방향으로 관리를 해야 할 듯함
- 개선방안으로, 투표 시간을 줄이는 방안, 교체가 필요하다면 예비 인력을 확보해서 현장에 투입 시키는 방안, 외부기관 직원을 투표관리관으로 위촉하는 방안, 예비인력 및 수당 상승에 따른 예산 증액 방안이 필요

○ 개표사무원

- 개표사무원 인력이 부족하며, 말 그대로 참관하는 참관인보다 실무 일을 수행하는 개표사무원은 참관인 보다는 수당이 많아야 함
- 코로나로 수당이 오른 투표참관인과는 달리 개표관리관의 수당은 예전과 동일하여 인력을

구하는 것이 어려움

- 일반인들을 많이 활용하는데, 일반인들은 구하기는 쉽지만 전문적인 분야에 투입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음

○ 사무보조원

- 보통 2~3개월 고용하며, 짧게는 열흘, 길게는 한 달 정도 단기로 다수 채용
- 특정 시기에 업무가 많이 몰리는 지역에 인력을 좀 더 배치하는 유연한 접근이 필요
- 선관위 측에선 인력을 더 주고 싶지만, 공무원 인력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 대안으로 사무보조 인력이 필요한데, 이들을 구할 예산도 충분하지 않음. 현재 예산으로는 사무보조원을 2명밖에 채용할 수 없음. 그 대신 채용 가능 기간이 5개월이면 3개월만 고용하는 등, 채용 인력을 더 늘리는 방식을 채택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
- 공정선거지원단이 절차 업무를 도와줬으면 그것도 사무보조 활용을 한 것으로 봐야함.
- 사무보조 인력 확보가 어려움. 기존 인력들을 활용하면 좋는데, 이들이 계속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주로, 학생 휴학생 아니면 취업준비생 등을 활용하고 있음
- 사회복지요원들은 원래 선거 때 항상 보조 업무를 함. 이들은 배정된 업무가 따로 있음. 수당도 문제이지만 단기간으로 활동하는 것이다 보니 우수한 인력을 뽑을 수 없음
- 52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오전 5시부터 업무를 시작하면 저녁까지 일할 사무 보조원이 부족함

○ 공통의견

- 수당을 늘리고 공공기관이나 중앙부처의 특별행정기관 인력들을 활용하는 등, 투개표 인력의 다변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선 지방자치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가 요구됨

□ 교육

○ 투표관리관

- 투개표 책임 사무원들은 실제 실습과 강조사항이 있어서 대면 교육이 요구됨. 교육 시간을 맞추기 어렵고, 인원들을 한 번에 수용할 수 있는 장소를 구하기 어려운데, ○○○위원회의 경우 구민회관을 활용

○ 투표관리관

- 개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책임자 밖에 없음. ○○○위원회의 경우 개표소가 1개표소, 2개표소로 나뉘 있어서 교육대상 인원이 너무 많으며, 일반인들의 경우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떨어짐
- 관내 중앙 정부의 특별지방행정기관과 같은 공공기관의 도움을 받는 방안, 인력풀을 구축해서 선거 때마다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지원받는 방안 필요

○ 투표지분류기 운영

- 투표지분류기 고장 시 수리에 어려움 있음
- 중앙에서 교육을 받지만 고장 난 것을 고치는 건 별개의 문제임. 업체도 권역 단위로 한 개 뿐이어서 고장 나면 개표가 그만큼 지연됨. 업체 사람들도 당일 알바이기 때문에 고장 발생 시 도움이 별로 안 됨
- 담당 인력들이 기계의 운영 방법만 알지 기계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기계가 갑자기 오작동을 일으킬 시 대처가 불가능함
- 인력은 대학생들을 활용, 43대 분류기를 활용하기 때문에 교육 대상 인력이 많은데 담당자는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음. 내부 직원들의 교육은 매뉴얼을 활용하지 않고, ○○○위원회 직원들만의 운영 방안을 별도로 마련해 개표장에서 실질적으로 해야 할 행동을 교육했음. 낮 시간에는 못했고 저녁 시간에 두 번 정도 반복한 뒤 꼭 필요한 사람들은 개별적으로

연습했음. 해당 매뉴얼은 내부적으로 만든 것임. 후임이 누가 오든 업무가 자세하게 나와 있는 매뉴얼이 필요함. 이러한 방법 등으로 업무의 노하우가 전수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임

○ 사무보조원

- 선거사무보조원은 해당 업무를 안 해봤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관련 교육 필요함
- 예산문제로 지속적인 고용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며, 교육기간을 근무 기간에 포함하여, 1-2개월 전에 미리 뽑으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 제시

○ 회계책임자

- 회계 주무관들이 4대보험이나 원천세를 각 구·시·군별로 지출을 하는데 너무 어려움. 내용 자체가 어렵고 매뉴얼이 있긴 하지만 매뉴얼을 본다고 해서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임. 거기에 따른 교육까지 부재함. 교육이 있다면 주무관들이 조금 더 편하게 일을 할 수 있을 것임

○ 교육 전반

- 교육대상(투표관리관, 직무 대행자, 간사서기 등) 인원이 많아 한 번에 교육할 수가 없음. 오전 오후로 나눠서 해야 하기 때문에 교육 횟수가 많아지며 코로나로 인해 교육을 해야 할 대상자들이 더 많아졌음. 현재는 업무상 교육을 선거 기간 전, 후로 두 번 하는데 이것보다 교육이 더 많아지면 업무상 차질이 생김. 전담 교육 기관 필요
- ○○○위원회가 워낙 투표소가 많기 때문에 다른 위원회에서는 한 번에 끝내는 교육을 두 번, 세 번 나눠서 해야 함. 장기적으로는 지방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무원 인력을 꾸려서 연수원에서 교육시킨 후 필요할 때 인력을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 제시
- 교육 시 인원이 많기도 했지만 잘 따라오지 못함. 처음에는 교육대상자를 분리해서 교육하는 것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도 걱정했지만, 관리관들은 예상 사례, 문제 상황, 그리고 참관인들 위주로 교육을 했고 직무대행 같은 경우는 실습 교재를 따로 만들었음. 이렇게 교육을 분할해서 진행하니 실제 사전투표 기간에는 장비 담당 전화가 거의 없었음. 직무대행은 실무적으로 사전투표록과 관계 서류 및 인계 서류들을 작성함. 직무대행들은 직접 교육 실습을 받았다보니 업무가 굉장히 수월했음

- 교육을 분리해서 진행한 것이 이번 지선을 편하게 해준 것으로 느껴졌음. 이런 사례들은 우수사례로 일반화시키기에 좋음
- 다만 교육 업무가 늘어서 불만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 일종의 지침 형태로 만들면 좋을 듯함. 선거 업무가 매달 있는 게 아니라서 기억에 의존한 운영을 하게 됨
- 대부분 선거계장들이 교육하기 때문에 선거계장의 역량에 따라서 교육의 질이 차이가 남. 따라서 믿고 볼 수 있는 교육 자료가 필요함. 중앙에서 만든 자료들이 있지만 현장과 괴리되어 실용적이지 못함

○ 개선사항 및 우수사례

- 대상자별 분리교육, 현장과 밀착된 교재와 교육 매뉴얼 개발 및 배포, 전담 교육기관 운영 필요

□ 시설

○ 기관·시설 안의 기표소 운영

- 명부 작성 기간 중에 거소 투표 신고가 들어옴. 선거가 임박한 시점인데 관련 업무에 인력이 계속 투입됨. 선관위는 거소만 보내면 되는데 동사무소에서는 동 거주 전체 세대에 대해서 선거공보 발송 작업을 다 해서 힘들. 점자형선거공보를 제출한 후보자가 있고 안 낸 후보자도 있어서 헷갈림, 지방선거 기초의원선거 같은 경우는 후보자별로 거소 투표한 사람의 주소를 따로 다 구분해야 함. 거소 투표용지 발송 시 투표용지를 뽑고 봉투에 넣어서 보내는 거라 준비하는 게 많음
- 거소 투표용지 인쇄 시 일이 많음. 거소 투표 발송을 하려면 큰 봉투 안에 후보자별 선거공보가 들어가고, 내부 작은 봉투 안에는 투표용지가 들어감. 해당 투표용지를 사무실에서 미리 출력을 해 놓음. 투표용지를 찍는 과정은 다 확인해야 함. 초고 확인 후 원판을 들고 와서 확인 하거나 인쇄소에서 하는 경우도 있음. 디지털 인쇄하는 데는 인쇄소에서 확인하지만, 작은 데는 하나하나씩 다 확인해야 함. 인공지능으로 확인 할 수는 없는지에 대한 의견이 제시. 이에 디지털로 가능한 하지만, 현재는 아주머니들이 고용되어 확인
- 거소투표 준비에 시간과 인력이 생각보다 많이 소요되는데 이 일을 할 수 있는 인원이 너무 적음
- 기관·시설 안에 기표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기준 인원수가 현재는 10명인데, 거

소투표 인원이 적어도 설치해야 돼서 기관·시설 안에 설치해야 할 기표소 수가 필요 이상으로 늘어나는 문제가 있음. 인력이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 보임. 기존 인원수를 20명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있음. 그러나 이 경우 투표권을 제약한다는 등의 공정성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기관·시설 안에 기표소 설치가 필요한 곳의 사람들의 경우 실제로 투표소를 가 보면 특정 후보자를 이미 찍어 놓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없음

- 이 일을 선거기간 중에 해야 한다는 것도 문제. 특히 사전 투표 날에는 해당 업무를 못하기 때문에 며칠 안 되는 기간 동안 기관 시설에 가서 기표소를 운영해야 하는 문제가 있음. 기관·시설 안에 기표소 설치 기준을 강화하는 대안도 있고 인력을 좀 더 확보하는 대안도 있음
- 기관·시설 안에 기표소를 운영하기 위한 별도의 인력이 없어서 현존하는 인력풀을 활용한다는 어려움도 있음. 거소투표 신고인이 10명 이상인 경우 의무적으로 기표소 설치 대상이 되는데, 해당 기관이 총 7곳이었음. 선거일 전 일주일 내외가 가장 바쁜 시기여서 실질적으로 7곳을 직원이 다 나가서 참관하는 것은 어려움. 그래서 가장 큰 곳 두 곳은 참관을 가고 나머지는 지원단 분들의 도움을 활용했음. 또한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전날 필요한 설비 세팅을 하고 안내도 해줘야 함. 그런데 업무 중요도는 떨어져서 시간적으로 부담이 됨. 기관·시설 안에 기표소 설치의 취지가 대리 투표 방지라고 알고 있음. 그러나 설치를 한들, 기관·시설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미리 투표(기표)해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 실제로 전원이 미리 투표(기표)를 해서 투표 안하는 경우도 있었음. 따라서 투입하는 시간이나 노력에 비해 효율적인 제도가 아니라고 봄

○ 선거관계 서류 집중 보관 장소

- 낙후된 동네의 경우 투표소를 설치할 곳이 없어, 장소확보 어려움. 학교의 경우 장소를 대여하라고 강제할 수 없음. 특히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투표용지를 두 번 나눠 줘야 해서 조금 더 큰 면적이 필요함
- 투표구 기준 단위를 키워서 투표소 수를 줄이는 방안이 있음. 그러나 투표소가 줄어들면 접근성이 떨어져 주민들로부터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것임. 사실 투표소를 빌려 주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게 현실임. 의무적인 게 없으니까 협조가 안 되는 어려움이 있음
- 투표용지를 보관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회의실에 보관함. 선거소송이 걸리면 투표지 폐기가 안 됨. 부정선거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새벽부터 와 감시해서 직원들 스트레스가 심함.

다른 곳에 투표지를 보관해야 함. 투표용지는 보안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배부 전까지는 이 안(회의실)에 있는 게 맞음. 하지만 선거가 끝난 투표지는 다른 곳에서 보관해야 함. 물품과 투표지가 같은 공간에 있기 때문에 아르바이트생이 드나드는 보안 문제도 있음. 이에 법원에 별도공간을 마련하는 대안이 있음

- 업무가 겹치면 업무할 장소도 부족함. 예를 들어 투표지분류기 교육을 하려고 분류기를 설치했다가 사전투표 교육 때문에 다시 철거하는 등, 비효율적인 일이 비일비재함. 사전장비하고 투표지분류기장비를 두고서 교육만 할 수 있는 장소를 따로 찾으면 좋겠음
- 일정을 나눠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님. 후보자등록이 다 끝나야 업무가 해결이 되기 때문에 미리 해놓을 수가 없음. 후보자 등록 기간이 조금 더 앞이면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더 있긴 함.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투표용지 인쇄소도 한정적이어서 조금이라도 늦으면 되게 조급해지기 때문. 이를 위해서 후보자등록 일정을 5일 정도 앞당기는 방안이 있음. 정당에 선 조금 일찍 시작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지만, 선거 비용 보전과는 관계없어 현실성이 있는 대안임

○ 선거공보 발송 장소

- 광역동 실시로 인해 동 단위가 커져 선거공보 발송을 위한 장소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음. 마찬가지로 학교 체육관이 가장 적합한데, 학교는 학습권을 주장하여 섭외가 어려웠음. 다른 위원회는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작업들을 하루 종일 해야 함. 지난 대선 때는 선거공보 발송 작업을 할 공간이 없어서 체육관을 빌려서 업무를 해야 했음. 장소에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것도 모두 예산이 필요함. 지원이 안 되면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있음
- 꼭 관내 시설이어야 할 필요는 없지만, 관외로 가면 선거공보를 이동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임. 외주를 주고 물류센터를 확보하는 방법도 있지만, 문제가 생겼을 시 책임 관련 문제가 생길 수 있음. 결국 선거공보를 줄이는 것이 방법임. 유권자로부터 선거공보 발송신청을 받는 대안이 있음

○ (사전)투표소

- 사전투표소 관련 지방자치단체 관할 건물들은 협조를 얻기가 편함. 그러나 학교 같은 경우는 협조를 받기가 어려움. 사전투표는 특히 금요일에 걸려 있기 때문에 사전투표소로 쓸 수가 없는 상황임. 특히나 투표용지 발급기 모의시험 같은 경우 화요일, 목요일에 하기 때

문에 학교를 쓰기가 어려움

- 투표소 장소로 매우 부적합한 장소는 텐트를 설치해서 투표소를 운영함. 겨울에는 난로가 들어가고 여름에는 에어컨이 설치됨. 그런데 관리 업체 난로에 넣어야할 기름을 안주는 경우도 있었음. 예상치 못한 업무라 더 바쁘게 느껴졌음. 텐트는 정말 장소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 사용하는 것임. 법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투표 장소는 빌릴 수 있음. 문제는 한 학교에서 투표소를 여러 개를 두는 것을 싫어함

○ 개표소

- 개표소 확보가 가장 어려움. 개표소가 좁다 보니 인원수용, 장비수용이 어려웠음. ○○○ 구 내에 개표장으로 사용할만한 시설이 부재. 단일선거 때는 학교체육관 등을 사용할 수 있지만, 동시선거 때는 워낙 투표지 수량이 많아 불가능함. 결국 장소를 나누는 수 밖에 없는데, 이 경우 인력이 두 배로 늘어나게 되는 딜레마가 있음. 관내사전투표 같은 경우에는 끝나는 날 부터 개표할 때까지 선관위에서 보관을 함. 이에 대해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 되고, 이를 해소하고자 cctv를 달아서 공개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존재

○ 선거 후 선거물품 보관 장소

- 투표함 및 기표대 등을 보관할 장소가 협소함. 평소에는 활용을 안 하기 때문에, 선거기간에만 임차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함

□ 장비

○ 투표지분류기

- 18년형과 14년형 분류기 두 종류가 있는데 14년형의 경우 노후화로 인해 작동불량이 빈번히 발생했음. 기계 관리 지침이나 규정이 미비함. 14년 형이 전체의 몇 프로 인지, 그 중 불량률이 몇 프로인지, 교체를 언제부터 해 나갈 것인지 등의 실태조사를 하고 그 교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함. 선거가 끝날 때마다 투표지분류기 재확인 대상 및 장애 내역 비율 보고라는 것을 함. 그러나 이것에 대한 전국적인 분석 결과 및 보완 방법에 대한 피드백은 못 받음. 그런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계획이 필요함

○ 우편투표 회송용봉투 접수기

- 대선 중 우편투표 회송용봉투 접수기 노후화로 연락을 했더니 제조사에서 물량이 부족해 필요한 만큼 더 보내줄 수 없다는 답을 받았음. 중앙에서 미리 제조사와 협의를 해서 장기적인 로드맵을 짚으면 좋겠음
- 인원들이 기계의 운영 법만 알지 기계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기계가 갑자기 오작동을 일으킬 시 대처가 불가능함. 각 권역별로 몇 군데의 AS센터가 운영 중이지만 수가 현저히 부족함. 매 선거 때마다 장비 교체 사전 조사를 하는데, 항상 수요보다 장비가 적게 옴. 해당 사항이 예산에 반영 돼야 함

□ 선거관리시스템

○ 선거관리시스템의 활용 문제

- 지방자치단체랑 선거 담당 주무 부서랑 협이가 잘 안됨. 동 위원회가 협조적이지 않음. 선거관리시스템으로 보고 받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 문서로 안내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전화로 업무 지시를 해야 하는 것이 업무를 과중하게 하는 요인. 이 일이 지방자치단체의 대행 사무임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업무라고 생각을 안 함. 대안으로는 법률에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임을 명시하는 방안이 있음
- 후보자등록 서류를 입력하는 업무 자체가 과중함. 세부 사항을 입력하고 첨부 서류 같은 경우 스캔해야 하는데, 스캔을 하면 항상 오류가 존재함. 이는 시스템이나 표준화된 양식의 문제가 아니라, 입력해야 할 데이터의 양이 많기 때문. 후보자의 수도 많지만 기본적으로 선거의 종류가 많음. 선거구당 후보자가 2~3명만 출마해도 업무가 많아짐. 후보자 등록 관련해서는 지방선거가 대선이나 총선보다 훨씬 많음
- 읍·면·동위원회에서 선거관리시스템으로 보고하는 것이 어려움. 읍·면·동위원회에서 보고하지 않아도 구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시스템 처리를 할 수 있음. 하지만 책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읍·면·동위원회에서 발송한 것을 가져와서 오류가 있으면 계속 수정함. 선거공보도 보내면 되고, 선거벽보도 붙이면 되는데 왜 선거관리시스템에 다 입력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의견. 차라리 디폴트값이 다 들어가 있고, 안 된 곳만 보고를 했으면 좋겠음. 읍·면·동위원회에서 후보자별로 입력을 해줘야하기 때문. 오류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정을 하면 계속 선거관리시스템을 통해 보고를 해야 함. 특히 선거

운동관련 해서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는 것들은 법정 제출 부수, 발송 부수, 첩부 수량 등이 디폴트값로 들어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음

- 현재의 선거관리시스템으로 선거 운동 관련 신고·신청이 들어오면 또 업무포털에서 따로 접수를 해야 됨. 현재는 수기로 들어온 것은 업무포털로 접수를 하고, 선거관리시스템은 접수를 따로 한 다음에 인쇄 후 또 업무포털에서 접수하고 있음. 선거관리시스템과 업무포털 사이의 연동이 필요함
- 읍·면·동위원회에서는 투표 진행상황을 선거관리시스템을 통해 보고하는데 굳이 구·시·군 위원회에서까지 보고를 할 필요는 없음. 현재는 읍·면·동위원회가 선거관리시스템에 투표 소별 투표진행상황을 입력하면 구·시·군위원회가 취합 해서 그 합계를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있음. 이 절차를 통합하면 입력이 안 되어 있는 것만 처리하면 되니 업무를 효율화 할 수 있음. 업무를 통합할 수 있는 충분한 시스템이 필요함
- 선거관리시스템 보고와 관련하여 사무 보조원들이 자료를 입력하는데, 중앙에서는 선거가 끝나면 입력한 거와 별개로 추가적인 입력 요청을 함. 이러다 보니 사무 보조원들을 통해 입력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느껴진다는 의견

○ 선거인명부

- 선거인명부 작성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있기 때문에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작성한 명부를 전산을 통해 받아야 함. 이렇듯 업무가 이원화돼 있기 때문에 숫자가 안 맞으면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선거와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부담 또는 관여 정도 등을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지침을 내려 명확히 부담을 하든, 선거관리위원회 자체적으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함.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방적인 협조만을 바래야함
- 인구수 통보 접수 처리는 제일 큰 선거를 기준으로 함. 예비 후보자 등록 2달 전 말을 기준으로 그다음 달 15일까지 인구수를 통보하면 자치단체에서 시스템에 입력함. 이것이 시간 소요가 크고 착오가 많이 발생함. 도청에서 보낸 값과 선관위에서 각 위원회 자료를 취합한 값과 다른 경우도 생김. 이는 정해진 기준이 없기 때문임. 동사무소에서 ○○○에 보고하고, 그다음 선관위 쪽에 자료를 줌. 선관위는 자료를 다시 도위원회에 올려서 중앙위원회에 보냄. ○○○에서는 또 행안부에 보내서 행안부에서 자체 집계를 해서 줌. 문제가 생겼을 시 틀린 동사무소를 찾아야 함. 정확하게 일치할 때까지 모든 직원이 밤새 대기해야 함. 선거인명부 교육하는 것이 예전에는 선관위측 업무로 편람에 명시되었었지만, 현재는

자치단체 업무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해야 할 근거가 없음. 선거인명부 같은 경우는 특히 주민등록 전산망을 이용하는 거라 자치단체의 고유한 업무임. 현재 선관위는 주민등록 전산 정보를 모름에도 선거인명부관련 규정이 선거법에 명시돼 있다는 이유 하나로 선거인명부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관련 질문이 많이 들어옴. 5월 20일까지 선거인명부 확정 사항 통보서가 접수되어 구·시·군에서 넘어오면 확인을 해야 함. 이것도 맞추는 날 밤을 새야 함

- 시기마다 받아야 되는 파일들이 직관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음. 디테일한 부분이 적혀있지 않아 처음 업무를 맡으신 직원들은 어려움을 겪음. 선거인명부가 확정된 다음에 도에 있는 자료랑 대조를 하라고 하는데 자료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힘들지만, 구체적으로 뭘 대조하라 하는지는 잘 모르겠음. 처음 업무를 하는 입장에서는 왜 대기하는지도, 무엇을 봐야 하는지도 모름. 선거인명부 작성과 확정 사이에 사망자도 있기 때문에 변동이 있는데 해당 사실들을 잘 알려주지 않음. 정확히 뭘 대조하고 뭘 확인해야 되는지를 명시하면 좋을 것 같음. 선관위 측에선 선거인명부 업무는 자치 단체 고유 업무라고 주장을 하고 있음. 그러나 자치단체 쪽에서는 선거 관련 일이기 때문에 선관위의 책임이라고 주장함. 지방자치단체에서 사망을 확정 지으면 자동으로 시스템에 반영 돼야 하는데, 현재는 시스템에 연동이 안 됨. 선거인명부 작업 시 실무를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음. 업무를 처음 담당하는 사람들이 질문이 많은데, 질문을 해결해주고자 선거인명부를 하나하나 다시 확인할 수는 없기 때문임. 선관위에서는 주민등록 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애초에 행안부의 업무임. 행안부가 선관위와 협업해서 교육을 해야 될 문제로 보임. 최소한 중앙 담당자는 행안부와 소통해서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함.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업무도 행안부에서 알려줘야 함
- 선거인명부 작성 감독 상황을 적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잘 감독하고 있는 지도 의문이고 전산 감독의 특성상 인력이 많이 투입돼서 감독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 왜 작성해야 하는지 모르겠음. 감독의 기준도 모호. 감독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음
- 선거인명부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거소투표 신고임. 거소투표는 형식상 자필을 통해 본인이 투표권을 행사했음을 입증해야 함. 군부대나 병원, 요양원 같은 경우 기관장의 확인란이 있는데, 누락이 되면 정당한 신고서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주민센터의 담당 주무관에게 문의해야 함. 단순하게 형식적 요구가 몇 개 빠졌다고 해서 부적격 신고서로 처리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전화로 확인하다보면 시간 소요가 큼. 확인 시 요구되는 조건과 안 맞으면 동에 전화를 걸어 일일이 확인해야 함. 그 후 신고서 원본과 입력된 것을 위원회에

서 재차 대조함. 1차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에 있지만 거소투표용지 발송은 구·시·군위원회가 하기 때문에 최종 책임은 구·시·군위원회에 있음. 이에 대한 대안으로, 거소투표 신고를 우편으로 받아 읍·면·동 직원이 신고 내용을 입력하는 대신 거소투표신고자가 전산에 직접 입력하는 시스템화가 있음. 기존의 우편 방식은 내용을 대충 작성해도 발송이 된다는 문제점이 있음. 때문에 시스템 등록방식으로는 대충 작성 시 등록이 안 되도록 개선해야 함. 검토를 아예 하지 않고, 못 받는 경우 책임을 신고자에게 돌리는 대안도 있음. 그러나 신고를 본인이 아닌 타인이 대리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 확인 절차가 필요함. 현재는 필적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시스템적으로 개선되어야 함

□ 선거물품

○ 투표용지

- 투표용지 색깔이 비슷해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음. 특히 투표용지 색깔은 정당 색깔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투표용지를 눈에 확 띄게 바꾸고 7장을 한꺼번에 쬐으면 좋겠음. 그러나 한꺼번에 주면 잘못 투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조심히 접근해야 함. 이에 대해선 투표를 두 군데로 나눠서 하면 광역을 먼저 한 뒤 기초를 하는 등, 명확하게 구분 짓는 방안이 있음

○ 점자용 보조용구

- 점자용 보조 용구가 사전투표 전날 돼서야 배송이 된 적이 있었음. 사전투표 전날에 수령한 탓에 하루 만에 그걸 다 해야 된다는 압박감이 심했음. 재발 방지 차원에서 중앙에서 물품 계획을 제대로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음. 최소한 3일 전까지는 와야 준비기간을 가질 수 있음. 기존의 점자형 보조 용구가 시각장애인들이 사용하기에 많이 불편했다는 의견이 있었음. 대부분이 글자로 인쇄돼 있고 점자로 적힌 정보가 부족했다고 함. 더 많은 양의 점자를 인쇄해서 제작하는 기간이 오래 걸리는데 중앙에서는 업체를 한곳에서만 계약을 하다 보니 인쇄가 밀린 것 같음. 이러한 사고가 일어날 걸 좀 대비해서 분산해서 계약하는 등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좀 두는 게 필요할 것 같음

○ 배송

- 물품이 너무 많고 띄엄띄엄 와서 배분하는 것이 어려움. 또한 물품 종류는 많은데 업체마다 배송하는 물품도 달라 배분 작업을 하는 시간이 많이 소요. 종류도 많은데 잘못 제작되어 들어간 것이 있으면 박스를 모두 열어 교체해야 함. 이 때문에 업무 시간이 더 오래 걸림.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딱 맞게 발주하면 부족한 수량을 구하느라 업무가 과중될 수 있음. 또한 추가하라는 연락이 오면 정리해놓은 박스를 전부 다시 열어야함. 특정 색이 특정 정당을 상징해서 색상은 매우 민감한 사안인데, 중앙에서 물품을 보낼 때 파란 장갑을 보내는 등, 중앙이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는 의견

○ 검수

- 물품이 오면 기본적으로 검수를 해야 하는데, ○○시는 물량이 많아서 시간이 오래 걸렸음. 다른 데에서는 잘못 제작돼서 들어와서 교체하는 경우가 많다고 함. 또한 물품이 특정 정당을 상징하는 색깔과 비슷하면 교체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시도 마찬가지임. 급하게 시중에서 사서 문제를 해결해야 했음. 매번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중앙에서 주의해줘야 한다고 생각함
- 공통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들은 물품 세트에 넣어야 하는데 물품 세트를 여닫는 것도 어렵고, 선거사무보조원 들이 수차례 검사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임. 지속적인 물품검수는 업무 과부하를 초래함. 중앙에서 물품이 정확히 왔으면 좋겠고, 업체한테 개인 전화번호도 안 줬으면 좋겠음. 사무실로 온 전화는 누군가 받아서 메모를 해놓을 수 있는데, 개인 전화로 온 것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일일이 관리할 수가 없음
- 물품세트가 오면 위원회 측에서 검수함. 물품세트가 목록 표와 정확히 동일하게 온다면 검토할 업무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음. 물품이 오는 시간대가 다르고 택배로 오는 경우는 문자만 남기고 가는 경우가 있어 왔는지 안 왔는지 바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음. 택배가 분실될 위험은 적지만 사람이 워낙 많이 이동하기 때문에 담당자 입장에서는 즉각 확인을 하는 것이 마음이 놓임. 택배를 수령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
- 1차 검수를 하고, 중간에 또 추가되는 물품 때문에 2차 검수를 함. 마지막으로 선거 5일 전 정도에 3차 검수를 함. 이런 절차가 많아서 검수 업무가 과중함. 추가 물품 정리를 한번에 할 수도 있지만, 한꺼번에 모으면 양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나누어서 하는 것이 덜 힘듦.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일찍 하면 가장 마지막에 오는 시각장애인 기표 보조 도구를 또 검수해야 함. 너무 빨리 와도 문제고 너무 늦게 와도 문제임

○ 배부

- 물품 배부를 ○○시 선관위가 해야 했는데, 36개를 10개로 나눠서 무리 없이 배부하는 것이 어려웠음. 또한 물품이 적시에 오지 않고 계속 추가되어서 어려움을 겪음

○ 개선방안

- 사전투표 관리의 가장 어려운 점은 예측이 안 된다는 것임. 조금만 예측이 어긋나도 부족한 물품을 충당할 수 없음. 따라서 최대한으로 예측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물품을 너무 많이 사서 부정선거 의혹이 생길 수 있음. 사전투표 기간에 유투버가 투표소를 지키고 있어 차에 뭔가를 싣는 행위 자체가 문제 제기의 원인이 되기 때문
- 중앙 차원에서 시스템을 통해서 사전투표 예상 수를 지침으로 내려줬으면 좋겠음. 그렇게 된다면 어떤 실무자가 들어가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지 않고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임
- 소모품 수불 대장이 없었으면 좋겠음. 실무에 적용하기가 너무 어려움. 차라리 선거가 끝나고 일정 시기에 폐기하라고 하면 자유롭게 폐기해서 이전 거를 없앨 수 있었으면 좋겠음. 특히 남는 재고량이 많은 경우, 다음 선거 때 필요한 소모품을 사기가 어려움. 물품을 언제 폐기해야 할지 지침을 줬으면 좋겠음. 물품 관리 지침이 오히려 공정성 문제를 해소하는데도 도움을 줄 수 있음. 중앙에서 사전투표자 통계로 시스템적 예측을 해서 필요한 만큼의 물품 배부를 해줘야 함
- 물품세트에 넣어야 될 것이 한꺼번에 오는 것이 아니라, 일정별로 계속 추가가 됨. 예상치 못한 추가 품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나갔으면 함. 중앙에서 추가 품목을 최소화하고 검수할 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확인 후 보내야 함
- 물품 관련한 요구사항이 잘 반영되지 않음. 이것을 수용할 시간이 없었던 것 같음. 중앙 차원에서는 현장에서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음

□ 회계·예산

○ 선거사무 예산

- 선거가 생산적 일은 아니기 때문에 재정 당국에서도 예산을 예전처럼 주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음. 또한 선거가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 예산을 넉넉하게 받으려고 함. 그래서 나중에 보면 불용액이 다소 많은 것이 사실임 (사례: 사전투표는 기계로 하는데, 기계를 살 예산을 받지 못해 투표에 차질을 빚었던 전적이 있음. 심지어 있는 기계도 14, 18년도에 만들어져 노후화된 것이 많음)
- 선관위는 헌법기구이므로 원칙상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어 함. 그러나 예산이나 인력은 행정부에 의해 통제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실제적인 일은 선관위가 아니라 대부분의 읍면동위원회, 주민센터, 그리고 사무 보조들이 하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독립적이지 못함. 또한 선관위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예산, 법 개정을 행정부에 의존해야함
- 읍면동위원회에서 간사 서기들이 선거벽보 첩부 대행 사무를 하도록 업무를 분담해 주지만 노조가 대행 사무를 거부해서 많은 곳에서 선거벽보 첩부 업체를 돈 주고 샀음. 즉, 읍면동위원회에서 한 것이 아니라 구·시·군위원회가 직접 업체를 선정 후 돈을 주고 선거벽보 첩부·철거 업무를 위탁함. 내년도에는 선거공보 발송업무까지 위탁요구 할까봐 걱정이 많다는 의견. 선거벽보 첩부·철거 업무는 일용인부를 고용하여 추진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에 필요한 일용인부임을 읍·면·동위원회에 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해당 예산은 일용인부임으로 편성되어 있음. 그런데 업체에 위탁하려면 예산 비목이 달라짐. 일전에 관련 질의를 했을 때는 예산 명목 조정을 했다고 함. 지방선거 경비는 국비보다는 용도 전환이 쉽기 때문에 업체 위탁이 가능했음. 그러나 예산 전용이 자유롭지 못한 총선에서 문제가 크게 나올 것 같음. 국선 때 대비하기 위해서는 위탁 방식의 활용과 함께 이를 위한 예산 항목 변경, 예산 조정 등의 방안이 필요
- 세대 수에 따라서 선거공보를 발송하기 때문에 세대 수를 기준으로 인건비가 내려옴. 이 인력 산출 기준이 너무 작아서 인건비가 부족했음. 이 기준에 대해서 중앙에 개정안을 냈었고 ○○○시가 워낙 크다 보니까 반영이 되기는 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것이 현실임
- 인력에 대한 예산이 조금 더 중요하게 여겨졌으면 좋겠음. 현행 선거벽보 첩부·철거 예산과 인력으로는 업무 수행이 어려움. 현실적인 인력 산출을 통해 예산을 지급하는 것이 필요함

○ 회계

- 4대보험이랑 일용임금 소득 신고가 많은데 중앙에서 해당 업무 지원을 안 해줌. 지원단은 지원단대로 보험료를 계산해야 되고, 선거 사무원은 사무원대로 계산해야 해서 굉장히 일이 버거움. 전화로 상황만 중앙으로 보고하면 그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직원을 고용하는 방안이 있음. 회계 세무사들이 그런 업무를 대행하는 것임. 그러나 실현하기가 쉽지 않음. 회계 주무관들이 대부분 신규 주무관들임. 그렇기 때문에 회계 주무관이 업무에 부담을 호소함. 중앙이나 시도에서 노무사 등을 고용해서 일괄 모아서 처리 해 줬으면 좋겠음.
- 회계 주무관만이 4대 보험을 담당해야 하는 지에 대한 의문도 듬. 다른 위원회에서도 중앙에서 4대 보험 관리나 회계 지출을 담당하는 그런 팀을 따로 구성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를 위해선 시스템이 필요함
- 4대 보험이라는 것이 신고한 금액 기준으로 보험료가 나오고 월마다 나가는 보수에 대해 나중에 정산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괄적인 처리를 위한 통합된 시스템의 운영이 필요함.
- 수당 부분은 세무사나 전문 인력을 활용하면 좋겠음. 회계 세무사들이 업무를 대행하는 대안. 최소한 선거 기간 동안에만 회계사 내지 또는 회계 법인들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임. 4대 보험까지 나가는 인력들은 3개월 전부터 많이 활용됨. 3개월 전부터 90일 정도 기간에 중앙이나 시도에서 회계사나 노무사를 고용해서 구·시·군위원회 4대보험 업무를 처리하는 방법을 모색해 볼 수 있음
- 예산 기준, 즉 일선 지급 기준을 현실화 하는 것과 4대 보험 같이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은 중앙 혹은 외부에서 전문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임. 전문인력 활용이 안 된다면 최소한 주무관들에 대한 교육은 필요함
- 회계업무의 경우 비 선거기간에는 돌발 상황이 거의 없음. 그러나 선거 기간 중에는 돌발 상황이 자주 발생함. 이번 같은 경우엔 코로나 때문에 한시 사례금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일처리를 급하게 해야 되는 어려움을 겪었음. 갑자기 발생한 업무였고 예산도 기존에 계획되어 있지 않은 예산이었음. 그런데 이번에는 예산이 선거일 바로 이틀 전에 내려왔음. 직접 지급을 해도 일이 많아지는데, 다시 읍·면·동위원회에다가 배정까지 해야 함. 투표 사무원은 위원회 측에서 지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읍·면·동위원회에 전달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했음. 중앙에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돈을 내려 보내야 했음. 돌발 상황에 대비해서 예산은 여유 있게 내려 보내 달라고 요구해야 함. 시스템을 구비해 놓으면 중앙에서도 의사결정 타이밍을 맞출 수 있을 것임

- 회계 예산을 짤 때 예산 편성 집행 기준으로 예산을 늘려줌. 기준에 부합하는 것 말고도 더 지출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회계 주무관에게 문의하면 집행 기준에 없어 예산에 반영할 수 없다고 함. 예산 짤 때 목적을 너무 따지지 말고 자유롭게 해줬으면 좋겠음. 예산 변경 절차가 있긴 하나, 예산이 부족해 집행 기준에 있는 예산도 쓰기 빠듯한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러나 꼭 필요한 부분인데 집행 기준에 없다고만 하면 답답함을 느낌

2. 선거사무

□ 후보자등록서류 사전 검토

○ 후보자 등록

- 후보자등록신청서 접수 시 오류 검토 관련해 후보자들이 정확히 검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위원회의 법적 책임이 문제가 되고, 책임성 소재가 모호해짐. 중복 비율과 부적정한 업무 등, 책임성이 모호한 것에 대해서 행정학적으로, 정치학적으로, 법적으로 정확히 짚어주면 업무에 도움이 될 것임
- 후보자 등록의 경우 연동 시스템이 없어 책임성의 문제가 생김. 잘못 쓸 경우 누구의 책임 인지가 불분명함. 연말정산시스템과 같은 후보자등록시스템 필요함. 후보자의 재산, 세금 등이 연동이 될 경우 수기로 작성할 필요가 없으며 실수도 줄어듦. 여기에는 기관 협조가 필요하며, 활용이 가능한 시스템 현황을 우선적으로 파악하면 좋을 것임. 시스템에서 제공 가능한 정보의 현황이 나오고 그 시스템을 연동함에 있어서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음. 따라서 정보를 제공하고 후보자가 자료를 작성하는 각 단계마다 법적 책임성을 부여할 수 있는 절차가 정교하게 설계되어야 함
- D-20 기간에 예비 검토를 받은 후보자를 대상으로 후보자 정보 입력을 하는데, 시스템적으로 입력하는 것은 많이 간소화되어 있어 그 부분이 오래 걸리거나 어렵지 않음. 그러나 6가지 종류의 서류를 스캔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개인 정보를 마킹하는 시간이 오래 걸림. 선관위에서 후보자 재산 소명을 왜 확인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음. 형식 간소화가 필요해 보임
- 피선거권 및 범죄 경력 회보에 관한 협조 의뢰를 관할 기관에 요청함. 세무서에는 세금 납부 체납 증명 발급에 관한 협조 요청함. 선거법에는 자료들을 발급하게 되어 있는데, 해당 기관관련 법에서는 해 줄 의무를 명시한 법이 없음. 그런데 이것을 의무적으로 해주도록 법령에 명시하는 것이 법적 체계상 맞는 것인지 파악이 안 됨. 이를 법학 교수에게 법률 자문을 받아야 됨. 서류 발급과 관련하여 해당 기관에 별도 안내 없이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법정 의무를 부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 후보자 등록 시 예비 검토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등록 **서류가 워낙 복잡하고 다양**하다 보니 평균적으로 3~4번의 검토가 필요했음. 64명 정도로 후보자 등록을 했기 때문에 등록 직전 2주가량은 거의 10명 20명씩 검수를 했음. **재산 신고가 가장 난해**함. 다른 세금 납부 증명이나 병력, 학력 전과 등은 증명서를 발급받고 옮겨 적으면 되지만 재산 신고는 **본인이 갖고 있는 재산을 스스로 적어오는 것임. 내용 심사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재산 등록 신청서 서식에 맞게 잘 쓰여 있는지 위주로 검토**를 함. 재산을 타인과 50대 50 비율로 갖고 있는 경우, 주식 같은 경우 주식 총량을 모르는 경우 등 복잡한 경우도 있음. 전국민에게 공개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통일된 양식으로 재산 신고를 하게끔 하는데 쓰는 입장에서 알 수 있는 정도로만 쓰면 되지 않느냐는 반발이 있음. 예금이나 적금 신고 시 은행별로 얼마나 있는지도 계속 검토하기 때문에 예비 검토에 7할 이상은 재산 검토였음.
- 예비후보자 등록 시, 전과기록 및 학력에 관한 사항을 스캔을 뜯 후 **개인 정보 유출을 막아 주는 프로그램**을 돌림. 프로그램을 돌린 후 개인 정보가 유출되지 않았다는 마킹을 제대로 확인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시간이 많이 소요됨
- **예비후보자 공약집 또한 검토** 해줘야 함. 법적으로 의무는 없으나 행정 서비스 차원에서 검토해주는 것. 이는 위반 사항이 있는지 후보자 측에서 검토 요청이 들어오기 때문. 그런데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선관위를 탓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굉장히 염려. 책임 사유는 검토자가 아닌 후보 본인에게 있어야 하므로 법적으로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 선거 운동 분야 관련 홍보물, 공약집, 벽보 관련하여 수정·보완하도록 안내하지만, 이를 강요하여서는 안 됨. **법적 의무가 없는데 업무화**하고 있는 것임. 형식적 요건이 안 맞는 경우에는 맞춰 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으나, 내용 측면에서 법적으로 위반될 부분에 대해선 선관위가 나설 수 없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
- 총선이나 대선은 후보자 측에 후보자등록신청서류 작성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 수월했지만 지방선거는 후보자들 본인이 직접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아 어려움.
- 하지만 후보자 등록일 당일이 다가올수록 검토 받으러 오시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정신 없이 검토를 하다보면 **담당자가 가끔씩 실수**하는 부분이 있음. 이 실수를 다음번 검토 때 발견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번에는 고치라는 말이 없었다며 불편함을 표하기도 함. **후보자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해도 내용을 안내한 직원이기 때문에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듬. **안내를 해주는 것 자체는 이해를 하지만 문제는 너무 사소한 내용까지 알려주어야 한다는 점**임. 특히 고령 후보자분들은 시스템이나 워드로 출력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낌. 검토를 아예 하지 않을 수는 없으니 효율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이

중요해 보임. 현행 선관위 재산신고 양식은 너무 난해함. 시스템 상 연동을 하거나 후보자들이 당 쪽에도 재산 신고를 주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당 쪽에 냈던 신고를 활용하면 그나마 시간 소요가 적지 않을까 함

- 후보자 등록기간 중 수도권 지역은 후보가 많아 사전검토 업무가 과중해지는 경향이 있음. 법적 책임성이 모호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아예 검토를 해주지 말자는 의견도 있음. 이 경우, 정당에서 1차적으로 검토를 해주면 더 확실한 일처리를 할 수 있음. 또한 공천하게 되면 정당에서도 서류를 받는데, 이와 연계하여 후보자 등록 서류도 교육하면 업무가 수월해질 수 있음. 선관위와 정당이 협조 관계를 구축하고, 정당에 제출되는 서류가 동일하다면 사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
- 후보자들의 의식도 중요. 본인들이 그 안에 지켜야 되는 것들을 숙지하고 그에 따라서 본인이 책임져야 하는데, 선관위가 그것을 검토하는 순간 책임이 선관위에 전가됨. 아예 형식적인 요건만 보라는 지침이 있었으면 좋겠음. 형식적 요건이 빠져 있는 경우에는 접수를 안 해주는 방향으로 나아가면 될듯함
- 예비후보자 등록 기간이 있고 후보자 등록 정식 기간이 이틀 동안 있는데 재산, 세금 관련 서류가 미리 구비되어 있어야함. 그런데 경선 결과를 기다렸다가 후보자 등록 서류를 구비해서 제출을 하면 기간이 촉박해지는 문제가 있음
- 기존 공직자의 경우 후보자 재산신고와 공직자 재산신고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음
- 검토 해주는 것이 어렵다기보다 검토를 맡길 거면 인력 지원 필요, 차라리 예산을 많이 주고 인력들을 일찍 뽑을 수 있게 해줘서, 그 인력들을 직원처럼 전문적으로 교육을 계속 시키고 연습시켜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음. 미리 교육을 시켜서 파견 보내주면 좋을 듯함

○ 표지교부

- 선거사무 관계자는 선거사무원 표지를 목에 걸고 선거운동을 해야 됨. 표지는 선관위 측에서 발급을 해주고, 인원을 등재해 놓음. 후보자 인영 신고하는 날 이것도 같이 신청하면 후보자 인영 신고 담당자와 표지 교부 담당자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하나 매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존재함. 이에 낱자를 따로 떨어뜨려 놓으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 제시
- 후보자 등록이 끝나면 바로 표지 배부 준비에 들어감. 선거운동 개시 전날 일괄적으로 받으러 오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미리 배부를 하는 것임. 그런데 인력이 정말 부족함. 지방선

거는 선거 운동 분야도 사무보조가 3명 정도는 있어야 함

□ 선거벽보

○ 선거벽보 첩부 장소

- 선거벽보 첩부는 주로 이전에 첩부했던 곳으로 하지만, 여전히 승낙서를 다시 받아야 함. 또한 대선과는 다른 점이 선거 별로 선거벽보 붙여야 될 장소가 많아짐. 보통 읍면동의 간사서기들이 선거벽보 첩부 장소 사용 승낙서를 받아 오는데 요즘은 이것도 안 하겠다고 하는 실정임
- 선거벽보를 굳이 첩부해야 하는지 의문이 듦. 완전히 없애는 게 안 되면 좀 최소한 첩부 장소의 수라도 3분의 1정도 줄였으면 좋겠음
- 선거벽보를 첩부하기에 적합한 공간, 넓거나 긴 장소가 많지 않고 건물주가 협조를 안 해 주는 경우가 있어 어려움. 또한 노조로 인해 읍·면·동에서 협조를 잘 안 해주려고 함

○ 선거벽보 첩부 마감 기한

- 선거벽보 첩부 마감 기한이 너무 빠듯함. 벽보 제출 기한이 18일까지인데, 첩부는 20일까지 완료해야 함. 게다가 지방선거는 선거벽보를 대선처럼 일률적으로 붙이는 게 아니라 선거구별로 다 후보자가 달라서 어려움. 선거벽보 제출이 마무리 된 18일 저녁 6시부터 다음 날 2시까지 투입 작업을 하고, 19일 오전 8시에 업체 교육 후 9시부터 붙이기 시작 함. 투입 조와 첩부 조가 따로 있기 때문에 팀장 미팅은 또 따로 함. 업무가 겹치니까 일이 더 과중하게 느껴짐
- 선거벽보 접수 관련해서는 후보자들이 제 시간에 제출하지 않아서 늦게까지 대기했음

○ 선거벽보 예비 검토

- 예비 검토를 해줄 필요는 없지만, 내용 검토보다 위법 사항을 문의하는 경우가 있음. 그러면 선거벽보 예비 검토도 안 할 수가 없음. 이런 문제들을 어떤 식으로 개선해 나갈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함. 즉, 법적 업무가 아니고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안 해주는 걸로 갈 것인지, 계속 행정 서비스 차원에서 해주면 책임성 문제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함

○ 선거벽보 접수 업무

- 선거벽보를 끼우는 비닐 벽판 수량이 많고 읍면동에 다 나눠야 해서 손이 많이 감. 선거벽보는 후보자들이 읍·면·동위원회에 제출함. 일과 시간인 18시까지 접수해야 하는데 마지막 날 18시 이후부터 24시까지 제출하면 과태료를 내도록 돼 있음. 선거벽보를 제출 안하는 후보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24시까지 기다려야 함. 읍면동 직원들이 이에 관해 불만이 많음. 이에 마감 시간을 앞당겨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서비스를 줄이는 것이 가능할지 모르겠다는 답변

○ 선거벽보 현장 점검

- 선거벽보와 관련된 현장점검은 거의 사무 보조원이 한다고 보면 됨. 올해 이슈가 됐던 선거벽보 첩부 업무가 사실은 읍·면·동위원회 대행사무인데 읍·면·동위원회에서 거부를 함. 읍·면·동위원회 대행사무라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명시되어 있음. 선거벽보 업무가 부수적인 업무가 너무 많고 선거벽보가 훼손된 것을 보면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지 의문. 현재 sns나 방송 언론 등 온라인 선거운동 방법이 많이 발달해 있으니까 선거벽보의 실효성 등에 대해서 연구를 부탁한다는 요청

○ 선거벽보 첩부 외주 용역 관련

- 선거벽보 첩부 같은 경우는 직접 용역 계약을 수립했음. 원래 읍·면·동위원회에서 해야 하는 일이지만, 관리가 안 돼서 첩부를 직접 함. 아직도 첩부 장소는 읍·면·동위원회에서 선정하지만, 업체 얘기를 들어보면 장소 확인도 안하고 위치도 대충 알려주는 것이 현실임. 용역 업체 선정과 선정된 용역 업체하고의 업무 방향성 미팅이 시간을 많이 소비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주를 주는 것이 훨씬 편했음
- 현재 기본 예산에 선거벽보 첩부 외주 예산이 편성되어있지 않는데 다음 선거부터는 첩부 외주 예산이 꼭 필요함. 첩부를 직접 수행하는 인건비와 외주를 줬을 때 업체에 주는 총액을 비교했을 때도 차이가 나지 않음. 따라서 읍·면·동위원회에서 첩부하는 것보다 업체가 첩부하는 게 나음
- 선거벽보 첩부 업무는 읍·면·동위원회 통해서 위탁했음. 여기서 예산 처리 문제가 있었음. 업체에 위탁을 주면 용역비를 줘야하는데, 읍·면·동위원회에는 용역비가 없어서 선관위 측에서 수용비를 내려줌. 현재 인건비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업체한테 주는 돈도 부족함. 그

래서 대부분 현수막 업체에 선거벽보 첩부와 철거를 위탁함

- 선거벽보와 관련해서는 원래 읍·면·동위원회 대행사무이지만, 협조를 안 해줘 외주를 맡겼더니 책임성이 부족해 첩부 관련 문제가 발생했고, 이를 관리할 여유도 없었음.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를 할 수 있는 업체를 찾는 것부터가 어려움

○ 선거벽보 수량과 크기

- 선거벽보 첩부 같은 경우 대선과 지선의 규격이 달라서 불편함을 겪음. 굳이 대통령 선거 용을 크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음. 크다 보니 자꾸 떨어지는 문제점이 발생함. 또한 첩부하는 선거벽보의 수가 너무 많은 것 같음
- 선거운동의 온라인화가 이루어진 현 시점에서 선거벽보의 수를 감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개선안

- 법 개정을 통해 선거벽보 첩부 수량 산출을 국가기관, 학교, 경로당 등 공공기관 수로 하고, 첩부 장소를 공공기관 등의 담벼락 등에 해야 하며, 이에 맞게 선거벽보 수량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봄

□ 선거공보

○ 선거공보 접수

- 선거공보도 접수 마지막 날은 24시까지 접수해야 함. 이것도 늦게 내면 과태료인데 늦게라도 내고자 하는 후보가 있으면 기다려야 함. 선거공보를 안 내도 후보자정보공개자료는 내야 함. 내지 않을 시 등록 무효 사유가 되기 때문임. 선거공보 규격에 평균이 없고 일정 크기 이하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어떤 후보가 너무 작게 인쇄를 해서 발송 작업이 힘들었던 적이 있음. 선거공보 발송과 관련해서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그와 관련한 대응 업무가 많음. 특정 후보자 선거공보가 누락된 데는 추가로 배부하거나 더 간 데는 회수하는 경우도 있음. 구시·군위원회가 하는 업무가 아니라 읍·면·동위원회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생김

○ 선거공보 검토

- 선거공보 검토는 의무가 아니라 만약에 있을 사안에 대해서 안내 차원에서 해주는 것임. 선거공보는 후보자가 자율적으로 작성을 해서 자율적으로 제출해야 되는 게 맞는데, 위법한 상황이 생겨 상황이 복잡해지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검토하는 것 뿐
- 업무량의 완화 차원에서 선거공보 검토 후 확정하는 시기와 완성된 선거공보를 제출하는 시기에 간격을 뒀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그러나 정당공천을 받기 전에 후보자들이 기획해서 시안을 만드는 것이 쉽지 않음. 시안 계획에는 돈이 필요하고, 이는 후보 선출 후에야 받을 수 있기 때문임. 후보자등록일과 선거공보 제출일 이전에 법적으로 서류를 미리 제출한 후, 검토에 필요한 시간을 법으로 정하는 방법도 있음. 그러나 해당 기간에 업무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가 생김. 사실 선거공보는 후보자의 자유로운 선거 운동 방법 중에 한 가지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그에 따른 책임은 후보자에게 있음
- 선거공보 같은 경우는 면수 제한 등 형식적인 요건만 충족하는지 확인하면 된다는 의견. 선거공보, 선거벽보, 거리현수막의 위법 사항은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고 비용은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보조해 주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도 제시됨
- 나중에 혹시나 인쇄가 잘못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음. 사전에 미리 검토했던 사람들은 괜찮았는데, 막바지에 검토를 하려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발생함. 선거공보 같은 경우 후보자들이 작성한 그대로 배부하는 것을 고려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음. 그러나 걸러지지 않은 선거공보를 보내는 건 어려울 수도 있음. 아무래도 짝어서 갖고 오는 사람들이 곤란한 부분들이 있을 것임. 나머지는 본인이 선전하는 문구이니까 후보자 정보 공개 자료만 보내도 좋을 것 같음. 형식적 요건을 제대로 갖췄는지 위주로 보면 좋을 것 같음. 아무래도 후보자 수가 많다는 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임

○ 선거공보 수량과 크기

- 현재는 몇 cm 이내로 되어있는데 규격을 아예 표준화 시키는 방안임. 명함만 한 사이즈가 계속 나오는 바람에 발송 작업이 굉장히 힘들었음. 또한 너무 작아서 내용이 잘 안보임. 유권자의 알 권리 보장의 관점에서 선거공보를 정성들여 만들게끔 해야 함
- 군인들이 핸드폰 소지가 가능한 현 시점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선거공보 발송업무는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세대별로 우편으로 선거공보를 보내는 것이 낭비 같다는 의견

○ 선거공보 발송업무 위탁 관련

- 만약에 위탁을 줘도 세대주 명단은 받아야 하는데 자치단체에서 명단을 줄지 모르겠음. 제도 개선으로 위탁을 하더라도 개인정보를 주도록 법적으로 정비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 그러나 이는 유권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문제이기 때문에 위험성이 크다는 답변. 노조에선 다음 국선에는 선거공보 발송 업무를 외부 업체에 위탁하라고 주장할 것 같음. 그러나 상기했듯이 전 국민 주소 정보가 다 들어 있어 위탁을 못 맡길 수도 있어 보이는데, 노조에서는 위탁을 고집하면 협의가 안 될 것임. 그 점에 대해서 법 개정으로 아예 위탁 쪽으로 방향을 잡든지, 아니면 위탁은 어려우니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업무 협조 의무를 지방자치법에 확실하게 명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 선거공보 발송작업의 경우, 외주를 주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법제화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을 촉구하는 방안이 있음. 그러나 이 방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의 예상됨

○ 선거공보 발송 작업 장소

- 선거공보 발송 장소가 없음. 가장 좋은 곳이 학교인데 교육청하고 협업이 되더라도 학부모 때문에 활용하는 것이 어려움. 학교 시설 사용을 쉽게 해준다면 선거공보 발송 작업 장소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을 것
- 군인·경찰 등으로부터 선거공보 발송 신청을 받을 때 라벨지 시스템이 자동화가 되어있지 않아서 업무가 엄청 많음. 포맷에 정보를 입력하면 바로 라벨지로 변환되는 시스템이 필요함. 선거공보 발송 작업의 경우 세대 수가 많기 때문에 발송 작업에 필요한 책상 설계를 직접 했음. 책상 준비를 위해 임차비를 줘야 함. 여기서도 예산 문제가 큼
- 워낙 사람이 많아서 발송하는 통수가 많고, 선거공보를 수작업으로 해서 실수에 대한 걱정이 컸음. 이를 시스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음. 선거공보가 선거구 별로 정확히 들어가는 것도 문제였음. 선거공보 양이 워낙 많아서 외부 체육관 대관 후 발송 작업을 했어야 했음
- 선거공보 같은 경우는 양이 너무 많음. 또한 동시에 오는 게 아니라 후보자들이 기한에 임박해서 주기 때문에 선거공보 접수 업무가 굉장히 과중함. 선거공보 발송업무를 할 수 있는 시설 확보가 필요함. 선거공보를 책자형으로 간소화해 후보자가 다 들어갈 수 있게 제작하는 것도 방법임

- 선거벽보 및 선거공보 예비 검토 시, 수량도 많아서 검토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허위사실이라고 신고가 들어오면 굉장히 난처해짐. 선거벽보와 마찬가지로 선거공보의 양을 줄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됨. 대선, 총선 때마다 선거공보의 규격이 제각각 다른데, 규격을 동일하게 맞추었으면 좋겠음. 선거공보 검토를 변호사, 법무사, 행정사 등 전문가를 활용하자는 의견이 있음

□ (사전)투표관리

○ 사전투표 회송용봉투 접수 관련

- 사전투표를 하게 되면 타 지역 것을 회송용 봉투에 넣어 배달시킴. 이 우편 분량이 위원회에 따라서 과도한 경우가 있음. 이 업무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었으면 좋겠음. 과거 부재자투표 때는 수량이 적었기 때문에 하나하나 바코드를 찍어서 송부가 가능했으나, 사전투표가 도입되면서 수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함. 이를 일일이 바코드로 찍을 경우 업무 증가로 인해 밤을 새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업무 시간이 늘어지다 보니 부정선거 의혹도 생김
- 현재 화두 중에 하나는 회송용봉투 수량을 세고 또 접수를 하는 문제임. 그래도 실제 접수하는 과정에서 이중 투표자가 나오기 때문에 접수기로 걸러내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의견. 그러나 수십만 명 중에 한두 장을 걸러내고자 그 수많은 인력이 새벽까지 일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의견도 존재함

○ 사전투표 참관인 관련 업무

- 참관인 업무가 일이 많음. 참관인을 구해야 하는데, 대선은 지원자가 너무 많고 지방선거는 또 없음. 참관인이 없는 경우 자체 선정을 해야 함. 참관인도 투표하면 봉인하는 것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아침 5시 반까지는 와야 되고, 끝날 때까지도 있어야 돼서 잘 안 하려고 함
- 그런데 지금도 수시로 참관인 변경 신고를 한다고 함. 심지어는 투표 날 투표 관리하고 있는데 참관인 변경 신고 요청이 지속적으로 들어와서 처리하느라 고생했다고 함. 이렇듯 계속 업무에 부담이 되는 일이 중첩됨
- 참관인 규정을 바꿨으면 좋겠음. 참관인 교체는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하여 만들어

놓은 규정인데, 지금은 아예 투표참관인 신고를 할 때 교체 인원까지 신고가 들어옴. 수당 혹은 후보자의 선거 운동을 목적으로 사람들을 동원하는 것으로 보임. 어느 후보자나 이 제도를 악용한다고 보면 됨

- 8시간 이상 근무자에게만 수당을 지불하는 식으로 하면 좋을 거 같음. 실제 사전투표 기간에는 사전투표소에서 교체신고를 할 수 있음. 정확한 신고권자가 교체신고를 하는지 인영 확인 등 관련 업무가 많음. 읍·면·동위원회 간사서기가 먼저 확인을 하고 교체신고를 하는 편이 맞다고 생각함
- 참관인의 경우 읍·면·동위원회에서 접수를 받지만 구·시·군위원회도 마지막 날 참관인 관련 전화응대업무가 상당히 많음. 신고가 서면으로 오기도 하고, 선거관리시스템으로 오기도 해서 양쪽을 다 확인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음. 선거관리시스템으로 일원화를 했으면 좋겠음. 현재 선거관리시스템이라고 후보자들이 직접 선거사무원 신고도 하고 참관인 신고도 하는 시스템이 있음. 하지만 강제를 안 하다 보니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음. 선거관리시스템 사용을 위한 인증서를 받는 절차가 복잡해 보임. 차라리 인증서를 없애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하면 좋을 것 같음
- 투표참관인은 하루 종일 근무해도 수당이 10만원이고 반나절 교체로 해도 6시간 이상이면 같은 수당을 줌. 이 부분은 개선이 필요함. 참관인 교체 시 교체 신고서가 들어와야 함. 선거일에도 가능하고 투표장에서도 가능함. 문제는 교체 참관인 신고서가 선거관리시스템으로 와도 받아줘야 한다는 점임. 투표소에서 투표관리관이 계속 이 부분을 신경 써야 하기 때문에 선거일에는 투표참관인 신고를 못하게 하자는 의견도 있음. 정리하자면 방법을 표준화시키자는 의견도 있고, 시기적으로 바쁜 날에는 교체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안들도 나왔음
- 동시지방선거에 있어 사전투표 참관인이 8인으로 제한돼 있는데 8인이 넘어버림. 8인으로 제한하는 이유는 장소가 좁고 기계가 자리를 차지해 참관인을 다 받을 수 없기 때문. 정당을 우선으로 해서 뽑기 때문에 나머지 인원 신고가 들어오더라도 참관을 안 시킴. 그렇다 보니 기호 뒤 순위 정당이나 무소속으로부터 민원이 많이 들어옴
- 사전투표와 선거일 투표의 참관인 선발 기준이 다름. 사전투표는 정당이 선정·신고한 참관인을 먼저 뽑고 자리가 남으면 무소속 후보자가 선정·신고한 참관인을 추첨 함. 선거일 투표는 정당과 상관없이 추첨함. 다른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 사전투표 참관인 신고 당일이면 문의 전화가 빗발침. 통일된 기준이 있어야 함

○ 투·개표참관인 수당

- 투·개표참관인 수당은 법적으로 10만원으로 정해져있음. 그러면 개표사무원도 10만원으로 해야 되는데 사무원은 그대로고, 사례금만 더 주겠다고 했음. 이렇게 되면 참관인들은 근무만 해도 기본 10만 원을 주지만 투표사무원은 새벽 5시부터 와서 14시간 정도 일해도 수당이 20만 원이 채 안 됨

○ 사전투표 장비

- 장비 노후화 문제가 있음. 아무리 짧아도 4년 이상 된 물건이 많고 장비를 새로 제작하지도 않음. 장비를 교체하기 위해서는 업체에다 직접 요청하는데 이때 소요되는 시간이 많음. 시스템 운영을 위해 보안USB를 활용하는데, 때때로 USB가 인식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함. 이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사전투표가 지체됨. 장비상의 문제점들이 계속 나타났는데도 선거가 끝날 때까지 매끄럽게 해결되지 못한 부분들이 많았음
- 통신 부분도 문제가 있음. 사전투표소에서 실제 운영하는 유무선 통신장비를 교체한 적이 있는데, 통신망이 많이 불안정하다는 지적들이 제기되었음. 통신사에서 상주인력을 지원 해주지만, 인원이 충분치가 않아 주로 거점 대기 형식으로 운영함
- 최초 사전투표와 지금의 사전투표율은 최소 세 배 이상 차이나지만 장비의 수량은 그대로임. 즉, 장비가 부족하니까 대기 인원이 많아지는 거고, 대기자가 많아지니 사전투표소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게 됨. 투표율이 높아진 것을 반영해서 장비 보완을 해야 함. 이번엔 사전투표율이 많이 오른 것을 근거로 기재부로부터 예산을 확보했음.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적, 혹은 시스템적인 정비가 필요함
- 우편투표 회송용봉투 접수기의 경우 기계 운용이 쉽지 않고 기계 대수도 부족함. 5대의 기계로 3만 8천통의 우편접수를 해야 했음. 접수 중에도 2-3장씩 내부에서 겹치는 등, 기계 작동이 원활하지 않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음. 수량을 확보하는 것만큼 기계 자체를 개선하는 것도 중함
- 기계 노후화에 따른 장애 발생률이 높았음

○ 사전투표 시간 변경 관련

- 사전투표일을 하루로 줄이는 방안이 있음, 그러나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는 의문임. 다만 투표 시작 시간을 늦춰 9시부터 6시까지로 운영하는 대안도 있음. 이를 위해선 사전 투표할

때 6시부터 투표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이 필요함. 이 문제를 선관위 직원들의 업무 부담 경감 차원에서 접근하면 설득이 안 됨. 선거 절차 업무의 효율성 제고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임

- 시간 조정은 필요하다고 봄. 한 8시쯤 시작하면 좋을 듯함
- 사전투표 시간도 너무 이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듦
- 시간은 좀 조정이 됐으면 좋겠음. 굳이 오전 6시부터 해야 할 이유가 있나 싶음. 그렇지만 퇴근 이후로 조정하는 것은 더 힘들 것 같음. 현재는 금토를 하고 있는데 금요일을 빼고 토요일, 일요일만 하는 방안이 있음. 그러나 이 경우도 회송용 봉투 접수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선거일 투표도 연동되어 같이 미루어야 되는 어려움이 있음
- 사전투표 시간을 비웠으면 좋겠음. 지금은 6시부터 하는데 선거일 투표도 할 수 있으면 8시부터 시작하면 좋을 듯함
- 사전투표 시간에 대한 공무원들의 피로감 호소. 사전투표 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사전투표소 업무시스템 관련

- 선거관리시스템에 사전투표소의 현황을 입력 할 때 수어 통역사 배치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그 시기에는 수어 통역사 여부를 알 수 없음. 수어통역 협회에서 원하는 사전투표소를 찍어서 주기 때문임. 추후에 정보 수정을 하려고 하면 중앙에 수정 요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수어통역사 배치 여부는 실제로 확보가 됐을 때 넣는 방식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음
- 구시·군위원회에서는 모든 사전투표소를 기재한 큰 광고문을 거리, 버스정류장 벽 등에 붙이는데 해당 업무의 필요성이 의심됨. 사전투표소는 인터넷에서 다 나오기도 하고, 사전투표소를 투표 안내문 봉투 뒷면에다가 인쇄하면 해결되는 문제임

○ 사전투표 모의시험

- 모의시험은 두 번만 해도 될 것 같음. 여러 번 해볼수록 불안감이 줄어드는 건 알겠지만 실무자 차원에서는 2번만 해도 매끄럽게 진행되었던 것 같음
- 모의시험은 2차정도가 충분함

○ 부정선거 시비 관련

- 사전투표 후 구·시·군위원회에 우편 투표가 들어오게 되면서 부정선거 의혹이 생겨났고, 이에 따른 유튜버들 대응 업무도 추가로 발생했음
- 우편투표 회송용봉투 접수 작업을 사무국장실에서 하는데 통수 등을 확인하기 때문에 장시간 작업이 필요함. 이와 관련해서 부정선거 의혹이 있었음. 그러나 규정을 보면 CCTV는 우편투표함 보관 장소에만 있으면 되고 접수 작업하는 장소에는 설치할 의무가 없음. 우체국에서 온 것을 확인하고서 그냥 그 숫자만큼 우편투표함에 투입하고 그 우편투표함을 보관 장소에 집어넣는다면 부정선거 의혹이 줄어들 것 같음
- CCTV 보관 장소를 확인하는 PC를 놓고 민원인이 신청서를 내면 구·시·군위원회에서 보게 해줌. 구·시·군위원회 차원에서 굳이 그렇게까지 해줘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듦
- 관내 사전투표 같은 경우에는 사전투표가 끝나는 날 부터 개표할 때까지 선관위에서 보관을 함. 이에 대해 부정적인 의혹이 제기되고, 이를 해소하고자 cctv를 달아서 공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존재함
- 사전투표 부정선거와 같은 의혹들을 중앙차원에서 해소시켜주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

○ 사전투표 취지 퇴색 관련

- 사전투표라는 제도의 본래 목적이 퇴색된 것 같음. 특히나 사전투표랑 선거일 투표 사이에 벌어진 사안들에 대해서는 유권자의 표심이 반영 되지 않음
- 사전투표의 최초 목적은 선거일 투표 때 투표를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는데 지금 보면 투표할 사람들이 미리 하는 형국임. 그래서 관외는 필요하지만 관내는 사전투표를 하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됨
- 희망자에 한해서는 모바일 투표도 고려해볼 수 있음. 이를 위해 모바일 투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 필요

○ 선거일 투표 상황 보고

- 사전투표 상황은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보고되는데 선거일 투표 상황은 매시간 보고해야 하므로 일선에서 피로를 호소하는 경우가 잦음

○ 선거일 투표 장애인 교통편의

- 장애인 교통편의 제공은 협의가 잘 되는 편이지만 지역마다 편차가 있음. 차량, 활동 보조인을 확보한 것에 비해 이용 실적이 낮음

○ (사전)투표참관인 교체 신청

- 참관인 교체 신청도 문제임. 원칙대로는 참관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야 하지만, 수당을 여러 사람 받게 하기 위해서 오전 오후 참관인을 교체함. 신고를 두 번 해야 하기 때문에 번거로움. 6시간이 아닌 10시간 이상 근무한 사람에 한해 수당을 주는 방안이 있음. 혹은, 아예 오전 오후로 나눠서 신청을 받고 추첨을 하는 것도 대안임. 법률상 투표참관인은 6시간 이상 근무를 했을 때만 참관수당을 주도록 규정 되어 있음. 오전 오후 반 이라는 개념이 원래는 없음. 처음 참관인 신고를 받을 때 교체 신고는 안 받는 방법이 있음. 교체를 할 사람이 있으면 추후에 (사전)투표소에서 교체를 하면 됨. 이를 위해서는 중앙선관위의 편람을 일괄적으로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음
- 투표참관인, 개표참관인은 정당에서 지정해주는 것인데, 투표가 임박해 업무가 과중된 상황에서 신고를 해서 문제임. 동시 선거, 단일 선거 때 투표참관인 개표참관인 인원수가 달라서 정당과 선거사무소 모두가 어려워함. 기준을 동일하게 했으면 좋겠음. 투표 참관인을 신고하는 과정이 복잡함. 투표참관인 선정 기준이 사전투표와 선거일 투표, 동시지방선거와 기타 선거와 상이해서 헷갈리는 부분이 많음. 이를 위해선 여러 가지 상황을 대비한 매뉴얼 등, 가이드라인이 필요함. 정당에서 투표참관인으로 적합한 사람들을 추천해줬으면 좋겠음. 아르바이트 한다는 생각으로 오는 참관인들이 너무 많음

□ 개표관리

○ 개표사무원 관련

- 지선 때는 개표사무원이 많아서 위촉하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렸음. 또한 개표사무원 수당이 안 올랐음. 개표사무원도 정말 힘든데 수당이 14만 원 정도밖에 안 됨. 예산 확보가 반드시 필요함. 가장 시급한 것은 투개표사무원 수당을 현실화하는 것임.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 사무원도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기준은 맞춰야 함

○ 개표업무 관련

- 우리 위원회의 특수한 개표과정 문제는 광역동은 10개는 살아있고 사전투표소는 36개로 되어 있다는 점임. 개표 과정은 동별 개표다 보니까 5개에서 온 사전 투표함을 하나로 모으는 작업이 필요함. 그 후 한꺼번에 투표지분류기로 가서 업무를 처리해야 함. 다른 동은 안 해도 되는 작업을 하는 것임. 통합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한 투표소에서 나온 것은 바로 개표를 했으면 좋겠음. 이를 중앙위원회와 이야기해봤지만 해결이 안 되었음. 시스템적으로 ○○○ 지역만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음. ○○○는 광역동에 해당하는 투표소가 5개인데 선거 공보 보낼 때 사전투표소도 한군데만 안내가 가능하게 되어 있어서 따로 인쇄를 해서 첨부했음. 이처럼 광역동이 되고나서 다른 위원회에서 안 하는 일이 많아짐. 3개 위원회가 있을 때는 24명이었고 2017년도에 통합됐을 때 19명으로 줄은 뒤, 지난 국선까지 15명으로 줄었음. 인력이 너무 부족해서 선거 기간 때 인력을 1-2 명씩 총원해주지만 여전히 부족함. 인력이 줄어든 상태에서 업무량은 비슷하기 때문에 업무가 과중해졌음. 사전투표는 사전투표소별로 하는데 개표는 동별로 해서 번거로움. 개표를 동별이 아닌 사전투표소별로 했으면 좋겠음

□ 기타

○ 민원인 대응

- 중앙위원회에서 민원 응대 매뉴얼을 메일로 보내주었음. 그러나 매뉴얼을 준수해도 실질적인 효과는 없었음

○ 선거방송토론

- 이번에 14일부터 20일까지 일이 몰렸었음. 언론기관이 선거개시일전 3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18일)까지 사이에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를 19일에 반영을 해야 해서 19일에 위원회 회의를 해야 했음. 다음에 22일 날 선거방송토론을 했는데, 일정이 너무 과중됐음. 위원회를 열기 전에 의제와 진행 방식을 결정해야 하는데, 이 시기가 선거공보 발송 업무와 겹침. 여론조사를 조금만 앞당겨도 일이 수월해 질 것임. 여론조사 반영하는 기간을 앞으로 당겨야지만 그 다음 일을 진행 할 수 있음. 선거운동이랑 선거방송토론 업무를 선거2계에서 하기 때문에 업무가 겹치는데, 이것은 위원회마다 업무 부담이 다를 수

있음. 선거방송토론 업무는 사실 간사가 거의 혼자 하는 업무임. 그렇다 보면 주무관이 선거운동 관련 업무를 혼자 하게 됨. 선거방송토론 업무를 구·시·군이 할 것이 아니라 시·도에서 일괄 수행하는 방안이 있음

- 지역 방송국 일정에 따라 가다 보니까 서울에는 녹화할 수 있는 스튜디오가 많지 않았음. 이로 인한 일정 조정의 문제가 있었음. 현재는 참여 후보를 확정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일정을 맞추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토론 참석 대상을 조기에 확정했으면 좋겠음. 해당 사안에 대해 여야 합의를 통한 법령의 개정이 필요

○ 재외선거

- 해외에서 투표하겠다고 신고 후, 선거 기간 전에 귀국한 경우에도 신고하고 당일 날 투표할 수 있음. 그런데 한창 업무가 바쁠 때 해당 신고를 하러오는 사람들이 있음. 전자 우편으로 하든 간소화했으면 좋겠음. 이것도 법적인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듯함

○ 후원회등록

- 후원회등록 신청을 수리하기 위해선 수리 문서를 만들고 후보자, 후원자한테 통지해줘야 하기 때문에 기본 3개의 서류가 필요함. 선거벽보·선거공보와 다른 업무, 후원보자등록 신청을 받는 중에도 상기한 업무가 동시다발적으로 들어와서 부담이 과중함

○ 기타 업무 절차 개선

- 개표사무원 교육 통지를 전화로도 확인하는데, 사무보조원들. 혹은 공정선거지원단 측에서 다 처리함. 공정 선거 지원단은 단속 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 절차 사무에만 동원된다는 불만이 있음

부록 6] 전문가 자문의견

외부 전문가	자문의견 주요 내용
정치학 전공 교수	<p>• 원칙적인 수준에서 법률 규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인력 지원을 요청하는 것은, 비록 사무인력 조달의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는 없을지라도, 가장 일차적이며 다른 조치에 앞서서 선행되어야 할 조치라고 생각됨 -> 이러한 일차적인 해법이 우선적으로 마련되고 난 후에 그래도 부족하면 보조 혹은 대체 선거사무 인력 조달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p> <p>• 물론 이 보고서에서 제시된 다양한 형태의 사무인력 동원, 조달 방안 역시 매우 진지하게 고려되어야 하며 절대 무시할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함</p> <p>•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기적 선거 때만 필요한 단기적인 선거사무를 위해서 추가적인 재정지원이 소요되는 우회적인 보조 혹은 대체 사무인력 동원 방식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전제되지 않은 가운데 이루어질 경우 다른 국가기관의 인력조달 문제와 형평성 문제를 낳을 수 있음 -> 예컨대 최근 이태원 참사 역시 일선 파출소 등의 경찰, 치안인력의 부족에서 빚어진 바가 컸다는 주장도 가능함; 기타 일선에서 국민과 접촉하는 각급 국가기관 역시 나름의 인적, 재정적 고충이 있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일차적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모든 국가기관이 헌법을 포함하여 관련 법규정과 이에 대한 사법부 혹은 현재의 판례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됨</p> <p>* 이렇게 볼 때 현행 법률이나 법규상 일차적으로 동원되어야 할 지방자치단체 인력이 동원되지 않은 채 다른 인력과 재원이 활용되는 것은 선후가 도치된 것으로 생각되며 국민여론도 지지해 주지 않을 것으로 봄</p> <p>* 실제로 이 중간보고서에는 선거사무에서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인력을 활용하도록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규정한 내용이 헌법이나 법률에도 언급되어 있다고 보고 아래와 같은 내용을 적고 있음; 현재의 판례 역시 이러한 점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적고 있음</p> <p>헌법 제115조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시를 받은 당해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재량규정이 아니라 강제규정임</p> <p>공직선거법 제5조(선거사무협조) 관공서 기타 공공기관은 선거사무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 재량규정이 아니라 강제규정임</p> <p>• 헌법의 취지, 현행 공직선거법의 규정, 그리고 현재의 판례의 취지를 따라 선거사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인적, 물적 부담이 선행된 이후 다양한 형태의 보조적인 수단이 동원되어야 옳다는 것이 자문자의 생각임 -> 원칙에 따르는 조치가 마련된 이후 이러한 조치가 지니는 부작용과 부담을 경감할 조치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됨</p>

외부 전문가	자문의견 주요 내용
	<p>* 기타 개별 사항에 대한 의견은 아래와 같음 -> 밑줄 친 부분이 자문자 의견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기간에만 인력과 예산이 집중적으로 필요하다는 문제 -> 이러한 문제로 인해 “선거시기별 채용되는 선거사무보조인력을 대상으로 주 52시간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 선거기간에만 적용되는 특수임금제도 등을 운용 필요하다고 봄”는 주장에 동의함 • 선거기간 동안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근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노조의 반발에 대응하기 위하여 선거 절차 관련 사무가 지방자치단체 업무임을 명시하는 지방자치법 개정 필요 -> 시도할 수 있는 조치로 보임 • 선거사무에 대하여 장소와 시기에 따라 한시적으로 공공기관 인력의 활용 방안 적극적 모색 필요 -> 행안부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음 + 포괄적으로 국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 투표소, 개표소, 선거홍보물 발송 장소 등 선거관리시설 확보 관련, 적정규모 이상의 시설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고, 학부모 등의 반대로 학교 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움 -> 선거는 일종의 민주시민교육이므로 이러한 면을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음; 학교나 교회시설을 투표설비 시설로 이용하는 것은 참고할 만한 의견이라고 생각함 • 선거행정전문가(가칭) 활용 관련, 후보자가 선거 전문가 3인의 검토를 거쳐 후보자 정보를 등록하도록 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지위에 걸맞는 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면 잘 응하려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한편 만에 하나 정파적인 이유로 특정 후보를 떨어뜨리려는 자에 의해 조정될 가능성도 있음; 선관위 자체가 반대할 수도 있음;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 전문가를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함 • 후보자등록과 재산신고 연계 관련, 공직자윤리법 제6조의5(금융거래정보·부동산 정보의 제공 및 활용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후보자등록이 이루어지면, 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요청이 자동적으로 처리되고, 금융기관의 장은 금융거래 중 잔액에 관한 자료(신용정보 중 대출 잔액에 관한 자료 포함)를 2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의 장에게 부동산 보유·등기, 과세정보(지적, 건축, 주택에 관한 자료 포함)의 제공 요청이 전달되도록 하고, 이들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관련 자료를 2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절차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임; 아직도 실현되지 않고 있는 것이 의아함; 이러한 절차의 자동화에 의해서 윤리문제에 자신이 없는 후보가 출마하지 않도록 하는 효과도 지닐 수 있음 • 인공지능 및 업무자동화 등을 활용하여 업무자동화 혁신 -> 그러나 알고리즘의 오류 등으로 문제가 생기면 대형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시급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임 • 선거사무에 관하여 장소와 시기별로 업무량이 폭주하는 구.시.군위원회와 피크기에 적합한 공공기관의 업무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기관장 MOU 체결 등을 통하여 선거기간 선거사무 협조를 공공기관의 업무분장표에 넣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문서화된 업무분장은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사전투표 시간을 9시부터 오후 6시로 하고 사전투표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으나 단점은 새벽에 빨리 투표하고, 일상을 누리고 싶은 사람에 대한 배려가 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음 -> 투표 개시 시간을 늦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봄 • 사전투표율 등을 근거로 하여 장비 관련 예산 확보 필요: 사전투표 인원이 사전투표를 처음 실시했을 때와 비교하여 최소 2배 이상 증가했으나 관련 장비 수량은 그대로이며, 4년 이상 지난 장비도 많고, 관련 업체가 장비를 신규 제작하지 않으며, 장비 교체를 요청해도 시간이 많이 소요 -> 필요하다고 봄; 특히 코로나

외부 전문가	자문의견 주요 내용
	<p>상황 등 고려할 때 그러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투표 일정 및 시간을 조정하는 대안 검토 : 현행 오전 6시 시작을 오전 8시 시작으로 변경 -> 바람직하지 않음 • 선거관리관련 법제개선방안에서 우선 사전투표를 2일간 실시하고 있는데, 본투표와 마찬가지로 1일로 줄이는 방안-> 반대의견임; 사전투표, 본투표 모두 국민의 참정권 행사라는 점에서는 본질적으로 동일함; 사전투표와 관련하여 현행의 제도를 없애거나 혹은 이를 축소하는 방향으로의 개정은 그 자체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됨; 사족이지만 보수진영에서 사전투표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강한데, 사전투표를 없애거나 그 시간을 줄이려는 시도가 있으면 이는 정파적인 것으로 오해받을 여지가 있고 여야간 합의도출이 쉽지 않으리라 보임; 투표율 제고, 국민의 참여확대, 국민편의적 투표 등이 사실상 규범화되어 있는 현실 속에서 사전투표 기간을 연장하지는 못할 바에는 현행 그대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정치학 전공 박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직선거법」 제147조제9항에 따라 투개표 관리 종사자들은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 각급 학교의 교직원,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의 직원, 공공기관(한국은행 포함)·공공조합·지방공사 및 공단의 직원, 그 밖에 투표사무를 보조할 능력이 있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일반 국민으로 구성됨. 보고서에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선거사무는 경험이 있을수록 더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중 공무원의 역할이 크다고 할 수 있음. <p>하지만, 이정진(2021)에 따르면, 투개표 사무원 업무의 과중, 투개표 사무에 대한 책임감에서 비롯되는 부담감, 열악한 근무수당에 따라 지원인력 모집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음. 보고서 인터뷰에서도 지적하고 있듯이, 실제로 2022년 4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서 지방공무원의 투개표 사무원 동원 비율을 줄이고, 선거수당을 최저임금 이상 수준으로 책정할 것을 요구하는 등 최근 투개표 사무원 동원에 대한 지방공무원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임. 특히 선거관리의 특성상, 과중한 업무량 외에 사건·사고 발생에 대한 부담감도 투개표 사무관리를 꺼리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관리관의 경우 특히 그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대체로 지방공무원으로 채워졌음. 2022년 대선, 2020년 총선, 2018년 지방선거에서 투표관리관은 거의 모두 지방공무원이 담당했으며, 일부만 국가공무원이 담당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력 충원 방안으로 두 가지가 제시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일반인의 비율을 늘리는 것임. 일반인 투표사무원 후기를 검색하면 다양한 후기가 있고, 대체로 긍정적으로 후기를 쓰고 있다는 점, 그리고 최근 SNS와 블로그 등에 후기를 올리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일반인들의 관심이 높다는 점에서 일반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 생각됨. 다만,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고려되어야 함. <p>① 선거사무원의 신뢰도에 관한 문제임. 우리나라는 재외선거를 비롯한 모든 선거에서 직접 방문투표를 시행하며, 우편투표와 전자투표를 도입하고 있지 않은 국가로, 선거제도에 있어서는 OECD 국가들 중에서 비교적 보수적인 국가에 속함. 심지어 코로나19 상황 속 선거에서도 선거를 연기하지 않고 직접투표로 선거를 치렀음. 이는 중복투표와 부정선거에 대한 우려 때문인데, 유권자는 투개표 사무에 중립성과 엄격함을 기대함. 따라서 투개표 사무원을 일반인으로 충원할 때 기준과 자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예컨대, 캐나다, 일본, 독일, 그리고 미국의 대다수 주에서 투개표 사무원의 자격을 선거권자로 규정하고 있고, 그 밖의 제한 사항들을 두고 있음.</p> <p>또한, 현재는 일반인의 경우 지역마다 요청경로와 충원 방법이 달라서 그 기준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예를 들어, 어느 지방자치단체는 근처 대학교에 요청을 한다면, 어느 지방자치단체는 신청을 받는다고 하거나 하는 식임. 충원 방법을 통일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p>

외부 전문가	자문의견 주요 내용
	<p>② 교육에 관한 문제임. 투개표 사무원을 위한 매뉴얼은 상당히 잘 마련되어 있으며, 양이 적지 않음. 다양한 상황에 대한 대처방안이 제시되어 있으나 교육이 충분하지 않다면 투개표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특히 투표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유권자의 선거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함. 최근 지방선거에서 중대선거구 투표 시 1명의 후보에게만 투표해야 하는데, 2명을 찍으면 된다고 사무원이 잘못 안내했다고 유권자가 문제를 제기한 사례가 있음. 따라서 교육이 철저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교육시간에 대해서도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고, 투표소에서의 업무 분담도 명확히 하여 돌발상황에서의 대처와 안내는 투표관리관이 전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두 번째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임. 보고서에서는 선거 사무가 지방자치단체 업무임을 명시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계시며, 타당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함. 특히 투표관리관은 지방공무원의 역할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투표관리관에 한해서라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다만 지적하신대로 수당의 현실화가 필요함. 특히 공무원의 경우에는 하루에 가능한 초과근무시간이나 수당액이 정해져 있는데, 투개표사무원은 근무시간이 투표소와 개표소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고, 후보가 많거나 투개표 상황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혹은 코로나19 팬데믹처럼 특별한 상황이 경우 근무시간이 새벽부터 시작되거나, 끝나는 시간이 자정을 넘기기도 함. 따라서 가능하다면, 근무 상황에 따라 수당이 적절히 지급될 필요할 있음. • 효율적이고 완벽한 교육을 위하여 교육프로그램과 방식이 다양화될 필요가 있고, 관리관·사무원이 교육에 들이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여 합당한 보상이 제공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보고서에서 제시하신 '선거절차사무분야 교육프로그램 다양화'에서 교육대상자를 분리한 교육방식의 운영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함. 다만, 투표관리관은 이미 사무원과 구분되어 별도의 교육을 추가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전문교육기관 연계와 온라인 방식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교육을 수강하는 사람들의 부담을 덜고, 효율적으로 교육을 진행할 필요가 있음. • 기타 의견으로는 선거공보에 관해서 선거공보를 없애거나 감축하는 안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반대함. 우편을 통해 전달되는 선거공보는 그 자체로 유권자들에게 선거가 다가오는 것을 알릴뿐만 아니라, 후보에 대한 정보와 공약을 시각적으로 전달한다는 점에서 비용보다 얻는 이익이 큼. 아울러 공보규격 표준화는 자칫하면 지나친 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히 고려될 필요가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선거운동 규제가 강한 편으로, 규격을 통일할 경우 선거운동 규제로 이해될 수 있고, 일부 후보자들에게는 규격에 맞추는 것이 새로운 부담일 수 있음. 다만, 중앙선관위에서 어플을 통해 후보들의 공약을 홍보했던 선거가 있었는데, 어플을 활용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수 있을 것 같음.
행정학 전공 박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절 인력 및 예산 확보와 효율적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군위원회에 따라 후보자 수 과다 등으로 업무량이 많은 위원회에는 인력 및 예산을 더 배정하는 유연한 접근이 필요해보임.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선거사무보조원 등 인력의 유연한 배치가 필요해보임 • 제2절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과의 협업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 공무원들이 합리적인 사유 없이 업무를 거부하는 경우, 성과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은, 성과평가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는지 의문스러우며, 성과평가 반영이 설사 실시된다고 하더라도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스러움, • 제3절 전문가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후보자의 서류 등 자료를 검토하는 경우, 인터뷰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책임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선거행정전문가(가칭)활용 방안은 후보자의 정보를 검토하는 하나의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외부 전문가	자문의견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절 후보자등록 관련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세청 연말정산 시스템과 같은, 재산 등의 정보와 연동되는 후보자등록시스템을 개발하는 방향은 적절해보임 • 제5절 교육 관련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과 관련하여 일괄적인 통일된 매뉴얼과 각 사무를 교육하는 간소화된 매뉴얼로 양분하여 방향이 적절해보임. 또한 현장에서 구체적 업무처리시 검색가능하도록 하는 매뉴얼 자동검색 시스템 대안은 적절한 대안으로 보임 • 제7절 선거 벽보 및 공보 관련 업무개선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거벽보를 존치시키면서 첩부수량 및 규격 축소는 적절한 방향으로 보임. -선거 공보를 없애는 것은 부적절해 보임. 대부분의 국민은 인터넷을 통해 선거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령층 등 일부 계층의 경우,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이 부족한 상황임. 비록 소수가 참고한다고 하더라도 선거공보는 유지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유권자의 알권리보호 차원에서 선거공보 규격을 표준화하고자 하는 방향은 적절해 보임 • 제11절 업무자동화 및 인공지능 적용 직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사무자동화 및 인공지능 적용 관련해서는, 장기적으로는 그 방향으로 가야 할 것으로 보임. 다만 시스템 개발 등이 선행되어야 가능하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추진하는 것이 필요해보임
<p style="text-align: center;">법학 전공 교수</p>	<p>※ 제4장 제1절 공통 업무개선 사항</p> <p>→ 1.에서 인력 및 예산 확보와 관련하여 사회복지요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p> <p>→ 4.에서 후보자등록과 재산신고 연계는 나름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이를 위한 법률적 근거의 마련이 필수적일 것임. 관련한 시간상의 문제는 예비후보자 등록시부터 적용하는 것을 통해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p> <p>→ 5.에서 인공지능 등의 활용 문제는 최근 자동개표에 대해서조차 불신이 팽배해 있는 상황에서 당장 도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임.</p> <p>※ 제5장 제4절 중 선거벽보첩부 및 선거공보발송 축소에 대한 반대이견</p> <p>→ 한편으로는 인력과 예산 및 장소 확보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선거벽보 및 선거공보의 효용이 별로 없다고 주장하면서, 선거벽보, 선거공보를 장기적으로 모두 온라인으로 대체하는 방향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과도기 차원에서 온, 오프라인 병행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선거벽보, 선거공보의 양을 절반으로 축소할 것을 제안하고 있음</p> <p>→ 그러나 이러한 제안은 본질적으로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라고 비판받을 수 있으며, 시행되어서는 안 될 것임. 선거벽보와 선거공보 등 오프라인 선거정보가 그렇게 효용이 없다면 왜 정당과 후보자들이 선거벽보와 선거공보 작성에 그렇게 많은 예산과 노력을 투자하겠는가? 오프라인 정보, 예컨대 현수막이나 대자보 등이 갖는 파급효를 완전히 무시하는 의견이며, 상당히 많은 수의 유권자들이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선거직전에 선거공보나 선거벽보를 보고서 취득 및 비교한다는 점을 간과한 주장임. 저자들 스스로도 인정한 바와 같이 이를 위한 행정비용도 상당히 많이 든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과연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줄여서 얻는 행정내부의 편의도 얼마나 있는지 의문임.</p> <p>※ 제5장 제4절 중 대통령선거의 선거벽보규격과 지역구국회의원·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벽보규격을 통일하자는 제안에 대한 반대이견</p> <p>→ 대통령 선거와 기타 선거의 비중과 유권자의 수 및 후보자에 대한 인지도를 고려할 때, 대통령선거의 벽보크기를 다른 선거의 벽보크기보다 더 크게 하는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됨. 과연 예컨대, 군수 선거의 후보자에 대한 정</p>

외부 전문가	자문의견 주요 내용
	<p>보와 대통령선거의 후보자에 대한 정보의 비중이 같은 것인가? 유권자들이 과연 이것을 원하겠는가? 행정편의적인 관점이 아니라 유권자 입장에서 생각하기 바람.</p> <p>■ 다음의 인터뷰 결과에 대한 법적 검토 의견이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p> <p>○ 후보자 등록서류와 선거공보에 대한 위원회 검토와 관련한 법적 책임성 문제에 대한 법적 검토</p> <p>- (예비)후보자 홍보물(선거공보, 선거벽보, 후보자공약집 등) 사전 검토와 관련 형식적 요건 구비 여부 등을 중점점검하고 법규 위반되는 사항(위반소지가 있는 사항 포함)은 수정·보완하도록 안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홍보물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예비)후보자들은 선거관리위원회 사전 검토를 받았다는 사유를 들어 법적 책임 등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 책임성 소재가 모호해지는 문제가 있음</p> <p>→ 사전검토에서 선관위가 지적한 사항에 제대로 수정되었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함. 만일 사전검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인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선관위의 책임도 인정될 수 있으며,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선관위가 사전검토를 할 이유가 없다고 비판될 수 있음.</p> <p>→ 다만, 선관위에 책임이 일부 있다는 것이 (예비)후보자들은 당연히 면책되는 것으로 인정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p> <p>※ 후보자 등록의 경우 연동 시스템이 없어 (후보자 재산 신고 등에 오류가 발생하면) 책임성의 문제가 생김. (후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잘못 쓸 경우 누구의 책임인지가 불분명함. ○○도 ○○○후보자의 재산 과소 신고가 언론에서 문제가 된 것을 사례로 들 수 있음</p> <p>→ 이러한 경우와 관련해서는 선관위가 실질적 내용검토를 할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가운데 책임의 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있음</p> <p>■ 다음의 <표 3-2> 공직선거법 개정안(중간보고서 p.182)에 대한 검토의견</p> <p>○ 공직선거법 개정안 제60조의4(예비후보자공약집)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방안</p> <p>- ④ 예비후보자공약집의 내용에 대한 법적 책임은 예비후보자에게 있다.</p> <p>→ 이 조항의 신설은 앞서 지적한 사항과 많이 중복되는 바, 원칙적으로 타당하다고 볼 수 있지만, 그렇다면 선관위의 역할은 무엇이며, 공약집의 선관위 제출, 작성근거 등의 표시와 제출 등에 대해 선관위 규칙으로 정할 이유가 무엇이나는 비판이 나올 수 있음. 이에 대한 설득력 있는 설명 및 정리가 필요할 것임.</p> <p>→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선관위에 제출되고, 선관위에 의해 확인된 사실(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선관위 규칙 등을 통해 정할 수 있을 것임)을 제외한 예비후보자의 공약집의 내용에 대해서는 예비후보자가 법적 책임을 지는 것으로 정리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음.</p>
정치학 전공 교수	<p>□ 선거절차사무 관리인력 확보 방안</p> <p>○ 정치외교 및 행정학 관련 전공 대학(원)생 활용 방안 검토 필요</p> <p>- 전공 교육과 연계 또는 대외 활동 인정 교육 프로그램 개발</p> <p>- 교육 프로그램 수료시 위원장 또는 사무총장 명의 수료증 발급 및 출석 인정</p> <p>- 지역별 참여 학교 확대 후 선관위 서포터즈 활동 지원 및 시민 교육과 연계 방</p>

외부 전문가	자문의견 주요 내용
	<p>안 검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학교 교수 활용 교육프로그램 공동 개발, 교차 특강 - 참여 인센티브: 기본 수당 외 우수 활동자 시상, 지역 연수 기회 부여, 참여 경험 공모전 개최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연계 방안 검토 - 지방자치단체 문화센터 활용 관리인력 상시 교육 및 선거관리인력 풀 확대 - 선거관심 제고 민주시민 교육 확대 의미 - 참여 인센티브: 타지역 방문/관광 프로그램 제공 ○ 정치학/행정학 관련 학회 협업 체계 구축 필요 - 교육프로그램 개발, 선거관리인력 풀 확대 및 유지 방안 관련 - 선거관리 업무 유형 및 난이도별 참여 방법 다변화 고려할 필요. 학회 전문 인력 활용 방안 검토 필요 ○ 퇴직공무원 활용 방안 검토 필요 <p><input type="checkbox"/> 장애인 본투표 및 사전투표 관리 검토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 유형별 투표자 관리 매뉴얼 검토 ○ 투표보조 시 직접 및 비밀투표 원칙 준수 검토 ○ 향후 감염병 재창궐시 사전 대비에 유용한 방안 병행 검토 <p><input type="checkbox"/> 후보자등록시스템 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보자등록시스템 마련 시 수집정보 관리방안과 그 법적 근거 검토 필요 ○ 선관위 퇴직공무원 활용 선거행정사 양성화 방안 검토 필요 <p><input type="checkbox"/> 인공지능 및 업무자동화 등을 활용하여 업무자동화 혁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공지능 활용 업무자동화 성공 사례 보완해야 할 것으로 보임. 현재 글에서는 내용이 다소 빈약하고 논거도 풍부해보이지 않음 - 시군구 차원 업무자동화 방식 논의 보완 필요해 보임 - 연구와 인터뷰 내용간 괴리가 다소 커 보임 - 인공지능 도입 반대 논리 검토 필요 <p><input type="checkbox"/> 선거 벽보 및 공보 관련 업무개선 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공보물 디지털화 시급함. - 환경보호 측면과 비용절감 측면 그리고 인터넷 보급률 고려 과감한 축소 필요 - 정당별 유불리 완화 가능 ○ 다만, 선거벽보는 당분간 현행 유지가 바람직해 보임. 상당수 유권자와 미래 유권자들이 벽보를 통해 정보를 얻는 것으로 보임 - 선거분위기 조성과 홍보에 일정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선거벽보 형식은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안 선호 - 선거현수막은 대체보다는 보완 방식으로 도입할 필요 <p><input type="checkbox"/> 회계업무 통합시스템 구축 시급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당보조금과 선거보조금 이중 지출 축소 후 폐지 위한 근거 자료 마련에도 필요해 보임 ○ 정당활동 위축 비판 대응 방안 검토 필요 ○ 회계업무 업무분장 체계 구축 검토 필요 ○ 선거공영제 원칙 구현에 있어서 적절한 선거 관리 비용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회계업무 시스템이 무엇인지 검토할 필요

외부 전문가	자문의견 주요 내용
정치학 전공 박사	<p>공직선거 절차사무 개선을 위한 방안들의 경우 핵심은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선거 시기에 집중적으로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시 고용인력을 늘리기보다는 선거 시기 가용인력을 확보해야 하며, 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산과 제도정비가 필수적이다. 다만 예산 확보와 타 부처의 협조를 원활하게 하는 제도정비가 당장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에서 선거를 치러야하는 만큼 선관위는 제4장에서 제기하고 있는 다양한 대안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p> <p>제한된 예산으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고서에서 제안하는 바와 같이 유관기관 협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해야 하고 선거사무에 응할 수 있는 민간 인력풀을 미리 확보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 치러진 수 차례의 선거에서 선관위의 선거관리에 대해서 의혹이 제기된 바가 있었던 만큼 민간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인력 풀을 사전에 확보하고 교육에 투자해야 한다.</p> <p>공무원에 대한 유권자들의 신뢰도가 높은 만큼 공무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기관의 협업을 법제화하는 제도개선도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어려운 만큼 공무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늘리기 위해 인건비의 현실화 및 휴가 등을 통한 공휴일 선거업무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공무원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민간인을 동시에 활용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최저임금 규정을 원용하여 인건비를 책정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으로 고려해 볼만하다.</p> <p>장기적으로는 보고서에서 제안하는 업무 자동화가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작동 가능한 후보자등록시스템을 구축하고, 반복적인 업무의 자동화 및 인공지능 적용은 인력확보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근본적 해결책이지만 당장 도입하는 데에는 고려사항이 많을 것이다.</p> <p>제4장에서 다양한 해법들을 제시하였는데, 이 해결책들을 단기적 대책과 장기적 대책으로 나눠서 서술한다면 제안 사항이 보다 일목요연하게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p> <p>선거 벽보 및 공보 관련 업무와 관련해서는 정보화 사회의 도래 및 환경보호 등을 고려하여 선거공보 자체를 없애거나 대폭 감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공감한다. 하지만 정보 접근성을 고려할 때 정보화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은 만큼 점진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벽보 및 공보를 없애는데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p>
행정학 전공 박사	<p>○ 선거절차 사무를 개선하는 데에 있어서 방향이 간단하게 나와있긴 함. 그러나 사회 환경의 변화나 IT기술의 발달 등, 큰 방향 맥락 하에서 이 문제를 개선하려는건지, 아니면 말단 실무자 입장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것들을 개선하려는건지 그런 방향성에 대한 제시가 불분명해보임.</p> <p>○ 후자의 경우, 실무를 보는 공무원들이 힘들어하는 이유는 사실 중앙, 상부에서 뭔가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임. 우선 중앙 차원에서의 방향성이 바뀌어야 한다는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느냐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선거의 환경이 과거와 많이 달라졌다는 게 우선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듯함. 사실 선거 절차사무의 경우 다른 분야에서 IT기술을 활용하는 것에 비해 너무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음. 그렇기에 연구 전반부에 선거 사무에 있어서 큰 변화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고, 말단 실무자들의 불만을 그 불만을 해결하는 선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그런 큰 방향 관점에서 어떤 방향이 낫지 않을까를 제시해주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음.</p>

외부 전문가	자문의견 주요 내용
	<p>○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제시된 해결책들은 문제점 각각을 해결하는데 국한된 것들에 불과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보긴 어렵기 때문임. 예를 들어 재산등록 같은 경우는 말단 공무원들이 불편하다고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님. 중앙 차원에서 모든 사무를 전산화해야 된다, 전산에 올라와있는걸 믿고 가야된다던지, 그런 방향들이 해결이 안 되면 밑에서 아무리 불편함을 호소한다한들 해결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함.</p> <p>○ 그러한 방향에 있어서 과거엔 개개인 하나하나에 맞춤형, 오프라인형, 그리고 전자화가 안 된 서류중심형 등과 같은 요소들이 새로운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이 듬. 또한 그러한 과정들에 있어서 나이 드신 분들이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과 같은 정치적 약자들을 위해 어떻게 보완할 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임.</p> <p>○ 업무 범위에 대해서 정해줘야 되는 게 선거관리위원회인데 말단에서의 불만만 가지고 이것 해결하려고하면 어려울 수밖에 없음.</p> <p>○ 후보자 등록 문제에 대해서 논하자면, 이건 개인 책임이라 봐야 함. 근본적으로는 개인책임이지만, 어디까지가 개인책임이고 어디부터가 국가의 책임인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고민해봐야 함. 재산등록을 예로 들어보면, 재산이라는 요소가 굉장히 다분화 되어 있음. 상황이 이러니 본인도 본인 재산을 모르는 경우가 비일비재함. 본인도 모르는 걸 어느 한 기관이 누구의 책임이다 아니다를 지정해주는 건 쉽지 않다고 보지만, 어쨌거나 그런 부분에서의 원칙이나 기준같은 걸 고민하는게 필요하다는 입장임.</p> <p>○ 이런 부분들은 변호사한테 자문을 들었다고 해서 맹신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님. 변호사들도 다 의견이 갈라지기 때문임. 따라서 외부 전문가한테 맡기는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까지 국가에서 책임을 질지 그 기준을 정하는 게 중요함. 결국 재산등록도 선거의 과정일 뿐이고 진실 찾기가 아님. 선거 과정에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신고를 했으면 그걸 신뢰해주는 관점에서 가는거지, 거짓말을 했냐 안했느냐를 집요하게 잡아내는 과정이 아니라고 봄. 이 기준을 중앙에서 고민해야 되는거고 말단에서는 그 기준에 따라 판단만 해줘야 되는 게 맞음. 근데 제가 봤을 땐 이런 기준이 없으니까 실무 현장에서 각 건마다 개별로 판단을 해야 됨. 그러니까 실무에 가이드라인을 주고, 문제가 생길 때 마다 그 가이드라인을 수정하는 방향으로 갔어야 했는데, 지금 봤을 땐 그런 가이드라인 자체가 없어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거임.</p> <p>○ 개표 사무원들은 하루 이틀 일당 받으면서 하는 사람들일 텐데, 공문을 읽어보면 어떤 사람을 원하는지 조차 내용이 없음. 선거 개표 과정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과정인데, 이 인력들한테 무슨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건지 의문이 들었음. 차라리 그러기 보다는, 매년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놓고, 자체적으로 교육을 이수한 인원들 사이에서만 뽑아도 된다고 생각함. 사이트같은걸 개설해서 각종 케이스나 교육 같은 걸 동영상으로 게재한 후, 이수한 인원 중 간단한 테스트 문항들을 통과한 인원들만 선발해도 충분함.</p> <p>○ 어차피 사무원들은 공공기관 출신이 다수임. 교육을 법정필수과목으로 넣어놓으면 공공기관 직원들은 이 교육 시간을 채워하기 때문에 호응도가 높을거라고 봄.</p>

외부 전문가	자문의견 주요 내용
	<p>○ 보고서상에선 선거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따로 기재되어 있지 않음. 예를 들면 선거인 명부 작성은 어떻게 진행되며, 법적 규정은 어떻게 등, 현황에 대한 내용을 따로 수록하면 좋을 것 같음. 현재는 팩트에 대한 내용들이 인터뷰 및 설문조사 안에 간접적으로만 묘사되어있어서 제3자 입장에서는 추론을 통해서 밖에 확인할 길이 없음.</p> <p>○ 그리고 법적 문제에 대해 논하자면, 이번 서울교통공사 스토킹 사건을 예로 들면 공사 입장에선 지원자의 법적 결격 사유에 대해서 더 이상 확인할 길이 없음. 법이 바뀌었기 때문임. 국정원이나 경찰서 같은 극히 예외 기관을 제외하면 해당 지원자의 전과 사실을 조회할 권한이 없고 수사기관에서도 결격사유 조회에 대해서 타 기관에게 답변할 의무가 없음. 이와 같은 맥락에서 다른 기관의 업무들을 선관위의 관점에서만 처리할 수는 없으며, 더 이상 법령도 선거의 관점에서만 제정할 수는 없게 됨. 사회가 중요시하는 가치가 너무 다원화되었기 때문임.</p> <p>○ 다른 기관의 협조를 구하는 것 역시 그렇게 쉽지 않을 거임. '타 기관의 협조 요청에 따라야 한다'라고 법에 명시를 해도 애매한 것이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기 때문임. 이러한 점들에서 환경변화와 선거라고 하는 사무가 처한 환경변화, 이 두 가지에 대한 고민이 연구에 필요할 것임.</p> <p>○ 학부생들과 대졸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줘서 전문 인력을 모집하는 방안이나 퇴직 공무원들을 활용하는 의견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함. 그렇지만 이젠 더 이상 특정한 계층의 사람에게 특정한 업무만을 시키는 시대는 지나갔다고도 생각함. 구인 조건과 자격 요건을 명확하게 제시하면 거기에 지원할 일반 시민들은 굉장히 많음. 평균 학력이 워낙 높아졌기 때문임. 그러니까 그런 부류의 조건들을 걸고 구인하기보단, 선거 사무에 정말 필요한 조건, 예를 들면 선거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 사이에서 구인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함. 하고자 하는 사람은 많음.</p> <p>○ 그다음 전산화와 관련된 것도 절차 사무에서 사람이 반드시 필요 없는 부분은 전부 대체해야한다고 생각함. 신원 확인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직접 차로 대가면서 일일이 확인하고 있는데,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고 봄. 이미 코로나 사태 때 QR코드 인증 같은 플랫폼들이 구축되어 있어서 마음만 먹으면 금방 개발하고 적용할 수 있음. 미리 바코드나 QR코드를 주는 방법 등, 방법은 굉장히 많음. 굳이 사람이 일일이 확인하는 방법을 고집해야 될 이유는 없음.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p> <p>○ 사전 투표도 투표 비율로 점점 높아지고 있음. 이걸 사람들이 사전투표 방식을 선호한다는 걸 의미함. 사전 투표의 어느 부분이 매력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선호하는지를 고민해봐야 할 것임.</p> <p>○ 이는 사전투표 방식을 본 투표에도 적용하자는 의견으로도 이어짐. 투표를 굳이 하루만 정해서 그날 안에 다 끝내야 될 이유는 없음. 왜 사전투표를 반드시 본투표 5일전에 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들을 한 번 고민해봐야 될 필요가 있음.</p> <p>○ 공보나 벽보 감축도 없애겠다는 걸 미리 예고를 했으면 좋겠음. 어느 순간 갑자기 하지 말고, 예를 들면 4년 후 대선 때부터 점차 줄이겠다,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감축을 해야 함. 만약 이럼에도 받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따로 링크를 주는 등, 사각지대를 보완할 방법은 많음. 솔직히 벽보나 공보나 더 이상 필요하지</p>

외부 전문가	자문의견 주요 내용
	<p>않다는 점은 사람들 사이에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 그렇지만 반대하는 한 두 명 소수의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강행할 수 없는 거임. 그러나 그걸 과감하게 넘어서면 벽보를 붙이는 게 신기한 세상이 옴. 다만 그걸 할 수 없으니까 단계적으로 줄여나가야 할 것임.</p> <p>○ 벽보도 보면 사람이 자주 다니는 곳엔 첩부되어있지 않음. 사람이 잘 다닐만한 곳은 공간이 좁기 때문임. 그렇게 쓸데없는 걸 하다보니 그걸 훼손하는 사람을 관리하기 위해 또 인력이 붙음. 근본적인 문제를 없애버리면 따라오는 문제들도 다 없애버릴 수 있는데, 이것 유지하려고 하다보니까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는 거임.</p> <p>○ 앞으로 공보나 벽보 같은 것들은 선관위 사이트에 게재를 하든, 포털사이트에 게재 후 선관위가 직접 관리하는 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공보도 수령받은 걸 직접 뜯어보면 명함 한 장만 들어있는 경우도 있고, 젊은 후보들은 특이한 크기로 만들어서 오기도 함. 젊은 후보들은 온라인으로 했으면 더 많은걸 보여줄 수 있었는데 굳이 종이라는 방식을 고집하니까 쓸 게 없는 거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서 공보를 발송하는 것도 점차 줄여나가야 할 필요가 있고 굳이 받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본인이 직접 온라인상에서 확인하던지 출력을 하는 방향으로 가야할 것임.</p> <p>○ 그러므로 연구에선 시대가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명확하게 밝혀야 할 것임. 불필요한 사무들을 없앴다고 해서 1번을 찍을 사람이 2번을 찍게 되진 않음. 왜냐하면 어차피 1번을 찍기로 결심한 사람은 굳이 2번 후보의 자료를 보진 않음. 현실적으로 그럼.</p> <p>○ 그리고 선거 과정이 굉장히 공정해야 된다, 한 치의 오차도 없어야 되고 잡음이 없어야 된다는 생각에 너무 매몰되어 있는 것 같음. 선관위 입장에서 어떤 오차는 용인하고 어떤 오차는 용인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있냐는 것임. 없기 때문에 빌미를 줘서 잡음이 생기는 거임. 그러므로, 전산화 같은 과정이 이루어지면 이런 것들이 줄어들 수 있음. 여기서 전산화란 투표 자체를 전산화하는 게 아니라, 절차 사무들을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전산화 하는 것을 의미함.</p> <p>○ 발주처 쪽에선 은근히 인력 문제로 의견이 수렴되는 경향이 있는데, 인력이 많아진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님. 이건 원칙이 얼마나 명확하느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디까지 내가 책임지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거지 사람이 많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님. 말하고 싶은 바는 선거 업무 자체를 무엇으로 볼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한다는 것임.</p> <p>○ 그리고 진짜 보조 인력을 쓰고자 한다면, 평상시에 인력풀을 슬림하게 운용하고 선거기간에 탄력적으로 비정규직들을 충원하는 방식으로 운용을 해야 한다고 봄.</p> <p>○ CCTV 같은 경우엔 기존의 폐쇄회로 CCTV 대신, 네트워크식으로 교체해서 실시간으로 개방하는 편이 나은 것 같음. CCTV를 오픈해서 보길 원하는 사람은 자택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임.</p>

최종보고서

선거 절차사무 개선방안

구·시·군위원회 절차사무를 중심으로

